

이 冊子는 東西獨首相會談의 經過와 雙方의 提議 및 主張을  
原資料를 中心으로 編輯한 것으로 우리의 統一政策의 推進과  
統一戰略의 開發에 參考資料로 提供키 爲해 發刊하는 것임

編輯責任 尹 璟 泰  
(第 2 研究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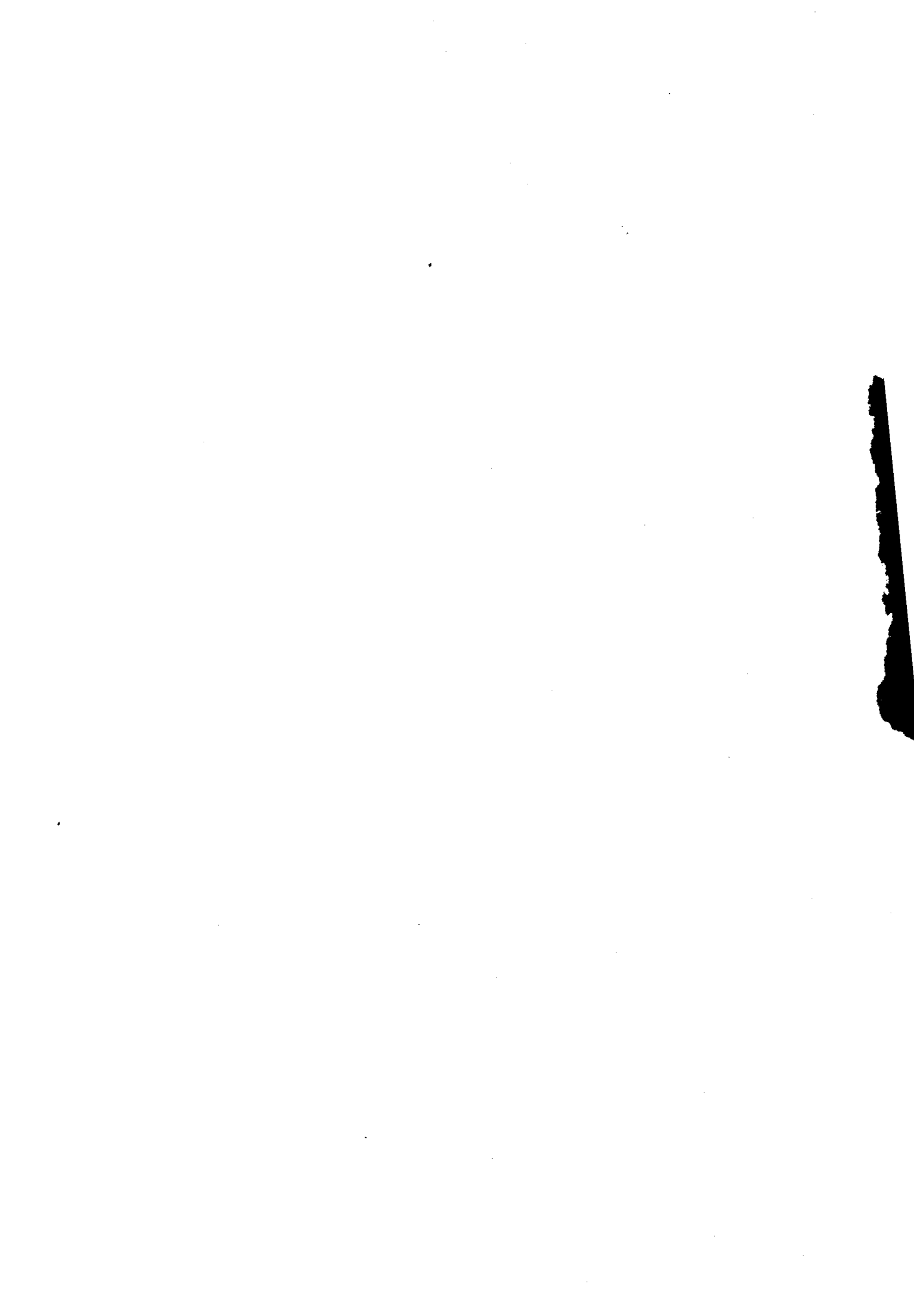
596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目 次

1. 東西獨의 統一政策·····	3
가. 兩獨의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3
나. 兩獨의 統一方案 및 協商提議·····	6
다. 「브란트」의 獨逸統一構想·····	10
2. 東西獨 首相會談·····	13
가. 兩獨間의 協商再開 提議와 兩獨의 立場·····	13
나. 兩獨首相의 「에어후르트」會談·····	16
다. 兩獨首相의 「캣셀」會談·····	23
3. 東西獨關係 正常化·····	28
가. 兩獨 國務相會談과 通行協商·····	28
나. 關係正常化會談·····	32
※ 附錄 1. 資 料·····	35
※ 附錄 2. 東西獨關係의 現況·····	293



# 1. 東西獨의 統一政策

## 가. 兩獨의 統一政策의 變遷過程

區 分	西 獨	東 獨
「아테나워」 時代 ( 1949 - 19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어도 1965 年까지는 西獨이 獨逸帝國과 同一하며 東獨은 國際法的意味의 國家가 아니라는 立場에 立脚하여 東獨이 西獨에 併合되는 合併統一을 追求</li> <li>○ 이 時期의 統一方案은 聯合國과 유엔監視下의 全獨 總선거임.</li> <li>○ 西方團合에 置重하면서 蘇聯과 東歐共產主義의 威脅을 막고 自由롭고 強한 西獨의 '힘'을 바탕으로 한 統一達成을 追求</li> <li>○ 「할슈타인」原則의 宣言 ( 1955 )으로 對東歐 強硬政策을 堅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의 絶對的인 비호하에 西獨과 마찬가지로 合併統一을 追求</li> <li>○ 東獨의 統一方案은 外勢의 干涉없는 兩獨間의 自由總선거라고 主張</li> <li>○ 西獨이 NATO에 加入하여 西方團合을 強化하자 蘇聯은 全獨 非블력化를 提議</li> <li>○ 西獨의 「할슈타인」原則을 平和攪亂行爲로 비난하고 '힘'의 政策을 追求</li> </ul>
「에어하르트」 時代 ( 1963 - 19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테나워」때 構築한 힘과 既存 東獨政策에 立脚하여 對蘇關係 正常화 및 對東歐 門戶開放政策 摸索으로 東獨의 孤立化를 企圖</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의 비호 및 支援下에 西獨孤立化政策 堅持</li> <li>○ 對蘇 外交強化로 東獨의 國際法上的 承認獲得에 注力</li> </ul>

区 分	西 独	東 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独承認만은 回避하면서 東独 孤立化를 위한 東歐에의 開放政策을 積極 推進하였음.</li> <li>○ 東西緊張緩和의 趨勢에 따라 유럽 平和維持를 위해 東歐와의 關係改善을 摸索하였음.</li> <li>○ 西伯林市長이었던 「브란트」는 對東伯林 接近政策을 追求하였음.</li> <li>○ 東独不承認 政策下에서도 西独 社民党的 進歩的 尤화론이 대두하여 兩独政党間의 接觸摸索이 顯저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独의 東歐와의 不可侵條約締結 要求에 대해 兩独의 유엔 加入, 西伯林的 獨立 政治団体로의 承認等を 主張</li> </ul>
「키싱거」· 「브란트」大聯 政時代 (1966-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歐諸国과의 友互關係樹立 및 東独과의 接觸을 試圖</li> <li>○ 東独과의 接觸을 強化하면서도 兩 独逸国家的 承認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立場을 堅持했음.</li> <li>○ 兩独逸人の 人間生活의 便利化에 關해 兩独間의 同等한 權限에서 協商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國際法上的 承認 後接觸 改善을 通해 人間生活의 便利化를 追求할 것을 主張.</li> <li>○ 西独의 单独代表權 主張에 대해 國際法上的 承認을 土臺로 한 兩独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條約締結을 主張</li> </ul>

区 分	西 独	東 独
	<p>할 것을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独不承認 政策의 持續 下에 「아테나워」, 「에어 하트르」에 構築한 越等한 힘을 背景으로 先緊張緩和 後統独政策 推進에 注力</li> </ul>	
<p>「브란트」時代 以後 ( 1969 - 現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独逸内  두個의 国家 ' 가 存在함을 既定事實로 認定하고 積極的인 東方政策을 推進</li> <li>○ 独逸 再統一의 基本要件인 独逸民族의 連繫性 回復에 力点</li> <li>○ 兩独은 相互 外國이 아니며, ' 內的 特殊關係 ' 라는 概念下에 東独과의 現實主義的 段階的 接觸擴大에 의한 關係正常化 推進</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法上의 承認과 同等한 資格에서의 兩独間의 接觸擴大를 主張</li> <li>○ 「호네카」의 登場後 「울 브리히트」의 強硬路線을 緩和하고 現實主義에 立脚하여  신축성 있는 對西独政策을 推進</li> </ul>

나. 兩獨의 統一方案 및 協商提議

西 獨	東 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獨選舉 提議 ( 1950.3.22 西獨政府 )</li> <li>○ 國際監視下의 全獨選舉提議 ( 1950.5.13 西方 3 大國 )</li>   <li>○ 全獨選舉를 위한 選舉秩序에 關聯된 14 個原則과 同選舉를 위한 中立委員會 構成政策 表明 ( 1951.9.27 「 아데나워 」 首相 )</li> <li>○ 自由選舉에 必要한 前提들이 保證되어 있는가에 關하여 4 個 占領地域內에서의 유엔 調査委員會團을 통한 調査實施를 提議 ( 1951.10.4 「 아데나워 」 首相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獨委員會의 構成과 講和條約 締結提議 ( 1950.10.20 東歐블럭 )</li> <li>○ 統獨問題의 共同論議를 提議 ( 1950.11.2 「 피에크 」 東獨大統領의 「 호이스 」 西獨大統領에 의 書翰 )</li> <li>○ 全獨委員會 構成提議 ( 1950.11.30 「 그로테볼 」 東獨首相의 「 아데나워 」 西獨首相에 의 書翰 )</li> <li>○ 講和條約의 早速締結을 위한 全獨委員會 召集促求 ( 1951.9.15 獨逸人民會議 )</li>   <li>○ 非武装中立原則下에 兩獨政府가 直接 參加하는 講和條約締結提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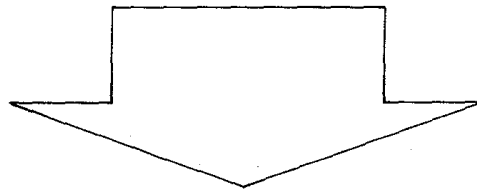
西 独	東 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 平和共存 妥協案 提議 ( 1962.12.2 「올브리히트」 )</li> <li>○ 兩独間 7 個項 協定提議 ( 1963.1.15 「올브리히트」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混成 全独技術委員會 構成提議 ( 1965.1.5 「멘데」全独問題相 )</li> <li>○ 東欧諸國과의 外交關係 樹立 및 東独과의 關係改善 提議 ( 1965.3.22 「멘데」全独問題相 )</li> <li>○ 東独 自民黨에 演士交換 提議 ( 1966.3.26 西独 自民黨 )</li> <li>○ 東独 社統黨에게 演士交換 提議 ( 1966.4.14 西独 社民黨 )</li> <li>○ 東独當局과의 接觸再開用意 表明 ( 1966.12.13 西独政府 聲明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6 個項 提議 ( 1966.1.1 「올브리히트」 )</li> <li>○ 兩独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새로운 接觸 提議 ( 1966.2.11 「올브리히트」 )</li> <li>○ 兩独 유엔加入 提議 ( 1966.3.21 「올브리히트」 )</li> <li>○ 演士 交換講演 提議 ( 1966.3.26 東独 社統黨 )</li> <li>○ 独逸問題에 관한 長官級 協商 提議 ( 1966.10.12 「올브리히트」 )</li> </ul>

西 独	東 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水災民救護金 伝達 提議 ( 1967.1.10 西独政府 )</li> <li>○ 16 個項의 对東独協商議題 提議 ( 1967.4.12 西独政府 )</li>   <li>○ 政治的 前提條件 없는 兩側의 全權代表 任命提議 ( 1967.6.13 「키징거」首相의 「슈토프」東独首相에의 答信 )</li>   <li>○ 西独의 16 個項의 討議를 거듭 主張 ( 1967.9.28 「키징거」首相의 「슈토프」東独首相에의 答信 )</li> <li>○ 兩独間의 6 個項 條約案 提示 ( 1969.2.12 西独自民党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協商 提議 ( 1967.5.10 「슈토프」首相의 「키징거」西独首相에의 書翰 )</li>   <li>○ 兩独間의 正常關係回復 및 保護義務 條約締結을 위한 協商提議 ( 1967.9.18 「슈토프」首相의 「키징거」西独首相에의 2次 書翰 )</li>   <li>○ 兩独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4 個項目 提議 ( 1968.6.21 東独 評議會 ) ( 그以後 東独側은 「슈토프」의 條約案에 대한 協商을 反復 主張 )</li> </ul>

다. 「브란트」의 獨逸統一構想

1) 獨逸政策의 出發點

- 獨逸內 2個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이 반드시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沮害하지 않는다는 點
- 獨逸民族의 自由로운 自決原則에 의해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에 平和秩序가 構築되어야 한다는 點
- 유럽의 平和를 基盤으로 東西獨間에 段階적으로 接近하는 것만이 獨逸再統一의 길을 短縮한다는 點
- 兩獨間에 深化되어가는 疏遠狀態를 防止하고 接觸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現實主義的 土台위에서 獨逸政策을 追求해야 한다는 點



- 現實認定을 통한 統一條件의 確保
- 兩獨間의 接觸增大를 통한 民族單一성과 連繫性的 維持  
( 1民族 2國家 )

2) 現實主義 政策追求의 背景과 要因

內的要因

- 政治·經濟·社會等 여러分野에 걸쳐 安定狀態에 있고 国力이 東獨에 비해 相對的으로 優위에 있었다는 점
- 獨逸의 再統一이 가까운 將來에 不可能하다하더라도 兩獨間의 接近과 接觸의 拋棄는 오히려 緊張을 促進하고 분단을 永久化하며 獨逸人의 再結合을 어렵게 한다는 現實的인 認識
- 分斷의 克服이 當장 不可能하다하더라도 東西獨의 國民들이 人道的 次元에서 人間生活을 便利化할 수 있는 狀態로 兩獨間의 關係가 改善되어야 한다는 國民의 興望
- 統一成就에 대한 흥분이나 感想的 호소는 오히려 統一接近을 위한 国力의 增進에 阻害要因이 된다는 점
- 周邊強大國이 東西獨의 現狀 동결을 強要하고 있는데 대한 게르만民族의 心理的 反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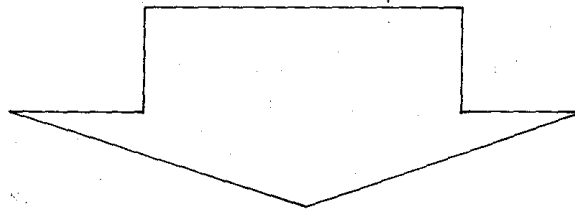
外的要因

- 東西陣營의 強大國들이 獨逸의 再統一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國際情勢에 대한 判斷
- 유럽의 東西對決 境界線과 東西獨의 分界線이 現實的으로 一致하며, 유럽의 平和를 위해서는 戰後에 이룩된 現狀의 認定이 現實的으로 不可避하다는 점
- NATO, EEC 등 유럽제국과의 結속을 通해 強力한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背景을 갖고 있다는 점
- 60年代後半 東西陣營間의 화해무드 造成과 平和共存에로의 國際情勢變化가 유럽의 政治的 安定을 가져왔다는 점
  - 西方側의 對東歐 유연정책으로의 轉換
  - 美·蘇兩國의 平和共存무드의 強化 趨勢 等

## 2) 再統一 戰略

- 西方과의 協力增大를 통한 自主的 統一基盤의 造成
- 蘇聯·東歐와의 外交關係 強化를 통한 統一與件의 造成
- 兩獨間의 接觸과 兩獨 國民의 生活上의 不便 除去를 통한 獨逸民族의 단일성 維持
- “內的 特殊關係”라는 國法上的 2개의 獨逸國家 承認下에 兩獨 間의 關係 正常化 摸索

獨逸政策과 緊張緩和政策의 併行推進



- 東西獨 協商再開用意 表明(1969.10.28)
- 「할슈타인」原則 拋棄 宣言(1969.10.29)
- 對蘇 武力不行使 共同宣言交涉 提議(1969.11.17)
- 對「폴란드」交涉提議(1969.11.25)
- 核擴散禁止 條約 署名(1969.11.25)

## 2. 東西獨 首相會談

### 가. 兩獨間의 協商再開 提議와 兩獨의 立場

#### 1) 「브란트」의 東西獨協商再開 提議

- 東獨이 獨逸內 第2 國家로서 存在하고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할 容의가 있음.
- 東獨政府와 同等權의 基礎下에 만날 容의가 있음.
- 西獨은 東獨住民에 對해 國際交易과 文化交易의 利點을 감되시키지 않을 것임.
- 그러나, 東獨에 對한 國際法上의 承認은 考慮될 수 없음.
- '2 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나 相互 '外國'은 아니며, 相互關係는 '特殊한' 方法에 依해서 成立될 수 있음.

(1969.10.28 施政演說에서) (資料 1)

- 兩獨의 併存을 거쳐 共存을 이룩하려는 試圖
- 分斷의 結果를 緩和하고 深化되고 있는 分離生活의 防止가 目的

反 應

- 「바르샤바」條約 國家의 反應
  - 現實主義 政策追求의 證明임.
  - 西獨이 東歐諸國과의 關係協定을 맺기전에 東獨을 承認해야 한다는 從來의 主張을 緩和하고 歡迎을 表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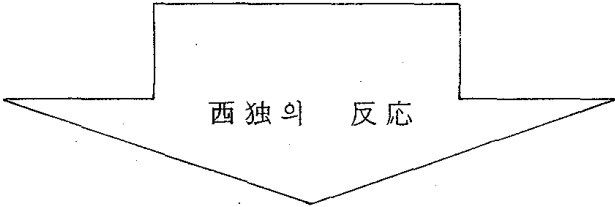
(1969.12.4 「바르샤바」條約國家會議의 聲明에서)

- 東獨의 反應
  - 東獨을 同等權을 가진 第2의 獨逸國家로 取扱하고 相互 外國이 아니라고 하는 西獨의 主張은 後見者的 役割을 하겠다는 저의라고 非難 (1969.12.12 「울브리히트」의 聲明) (資料 2)

2) 「울브리히트」, 國際法上的 承認을 要求하는 條約案과 協商提議

- 兩獨間의 平和的 共存과 善隣關係는 一般的으로 承認되고 効力 있는 國際法的 基礎위에서 設定되어야 함.
- 協商과 條約의 署名은 「슈토프」首相과 「빈처」外相에게 委任함.
- 可能한限 1970.10 안에 協商을 開始할 것을 提議함.
- 正常的 同等關係의 設定, 武力拋棄, 安全 및 軍縮方案 樹立, 유엔加入等 9個項을 提示

( 1969.12.17 「하이네만」西獨 大統領에의 서한 ) ( 資料 3 )



西獨의 反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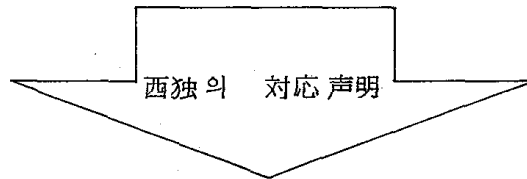
- 「하이네만」西獨 大統領, 協商權限이 「브란트」西獨首相에게 있음을 通告
  - 유럽의 緊張緩和에 對한 責任이 兩獨에 있음에는 同감임.
  - 平和의 確保, 緊張緩和에 協調할 義務를 느끼고 있음.
  - 獨逸民族의 단일성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共同的 熱望임.
  - 協商을 始作할 것을 歡迎하며 그에 對한 檢討는 聯邦政府의 責任임.

( 1969.12.19 「울브리히트」에의 答信 ) ( 資料 4 )



3) 兩獨의 立場 再闡明

西 獨	東 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逸民族의 自決은 否認할 수 없으며 實質的課題는 可能的한 한 兩獨間의 경직화에서 벗어나서 民族의 單一性을 維持하는데 있음.</li> <li>○ 規制된 병존을 通해 共存에 이른다는 것은 獨逸의 利害關係에도 一致하며  유럽平和에도 意義를 가짐.</li> <li>○ 西獨과 東獨은 결코 外國이 아니며, 東獨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은 考慮될 수 없음.</li> <li>○ 東獨을 西獨의 內國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東獨의 主張은 不合理한 것임. (1970. 1.14 「브란트」首相의 시정보고)(資料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제시한 9個項의 條約案을 토대로 협상을 개시해야 함.</li> <li>○ 獨逸民族의 單一性은 반대함.</li> <li>○ 東獨은 “하나의 社會主義 獨逸民族國家”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1970. 1.19 「울브리히트」의 國際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right;">(資料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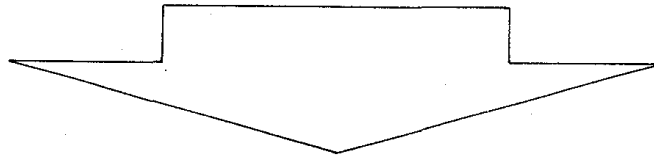
(東獨의 條約案에 對해 代案없이 対応하기로 決定)

“條約은 협상의 結果로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協商開始의 前提條件으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1970. 1.19 西獨政府 聲明) (資料7)

나. 兩獨 首相의 「에어후르트」會談

1) 兩獨首相間의 書翰과 協商提議	
「브란트」西獨首相	「슈토프」東獨首相
<p>(武力拋棄宣言의 意見交換에 관한 각료급 協商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國間에 存在하는 모든問題 特別히 同等關係의 設定問題에 關한 意見交換을 하고자 함.</li> <li>○ 雙方이 옳다고 보는 考慮事項, 提議 原則案들은 자유로이 提出可能 함.</li> <li>○ 分斷된 獨逸에서 人間生活의 便利를 도모할 수 있는 現實的 問題를 包含함.</li> <li>○ 閣僚級의 協商開始를 提議하며 西獨은 「에곤·후랑케」內獨關係 相을 任命함. (1970. 1.22 「슈토프」에 의 서한) (資料 8)</li> </ul>	<p>(兩獨 首相間의 直接協商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에서 兩獨間의 協商準備가 되어 있음을 인지했음.</li> <li>○ 그러나, 兩獨間의 同等關係를 樹立하기 爲한 條約을 締結하자는 「올브리히트」의  제안을 西獨은 받아들이지 않고 同等 權의 要求에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li> <li>○ 1970. 2.19 또는 2.16 午前 11時에 東獨의 수도 백림의 內閣庁舍에서 兩獨首相間의 會 晤를 提議함.</li> <li>○ 時間과 場所는 直接 通話 또 는 「텔레타이프」로 協議할 수 있음.</li> <li>○ 「빈처」外相을 同伴할 것임. (1970. 2.11 「브란트」首相에 의 答信) (資料 9)</li> </ul>



西獨, 東獨의 提議 受諾

2) 西独, 兩独首相會談을 爲한 實務代表會談 提議

- 同一立場의 되풀이에 국한하는 書信交換의 繼續은 有用하지 않으며 前提條件들은 수락할 수 없음.
- 兩独首相會談에 應할 準備가 되어 있으며, 內独關係相 및 諮問官을 同伴할 것임.
- 兩独 首相會談에 必要한 技術的인 事前準備를 論議하기 爲해 1970. 2.23 - 27 間에 양측 官吏들의 會談을 提議함.
- 이 實務會談에서 兩独首相의 會談日字를 결정할 수 있음.  
( 70년 3月의 2週 또는 3週 以前이 좋음 )
- 兩独首相의 2次 會談場所로는 「본」을 提議함.  
( 1970.2.18 「브란트」西独首相의 「슈토프」東独首相에의 書翰 )  
( 資料 10 )

兩側實務代表名單發表

( 1970.2.20 「텔레타이프」로 )

東 独	西 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首相間의 會談을 爲한 技術問題處理를 爲해 東独 內閣事務次長署理 「게르하르트·슛웃슬러」를 委任하였음.</li> <li>○ 1970. 3. 2 10:00 에 東独內閣事務次에서 西独首相室代表들 기다릴 것임. ( 「콜」東独國務相 ) ( 資料 11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首相間의 會談을 準備하는 技術的인問題들을 處理할 權限을 西独內閣事務次長 「울리히·삼」에게 委任하였음.</li> <li>○ 細部事項은 「슛웃슬러」와 直接電話로 連絡할 것임. ( 「엠케」西独首相室長 ) ( 資料 12 )</li> </ul>

3) 実務代表會談과 兩側 立場

- 會談期間：1970. 3. 2 - 3.12
- 爭 點：兩獨首相의 旅行通路 選定과 그에 따르는 政治的 法律的 的意

「브란트」西獨首相	東 獨
<p>( 実務代表會談 膠着狀態打開提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双方 実務代表團의 豫備會談을 通 해 兩首相間의 對話가 有用하고 必要하다는 것을 알았음.</li> <li>○ 双方 実務代表團의 對話過程에서 実務的인 準備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問題에 이견이 있음을 알았음.</li> <li>○ 兩首相間의 첫會談의 「프로그램」과 進行을 위한 새로운 基盤이 發見될 수 있는가를 共同으로 檢討하도록 実務代表團에게 委任할 것을 제의함. ( 必要하다면 首相會談場所의 變更等 )</li> </ul> <p>( 1970. 3. 8 「슈토프」東獨首相에 의 서한 )</p> <p>( 資料 13 )</p>	<p>( 実務代表會談의 立場 表明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獨政府는 「브란트」西獨首相의 東獨 및 東獨訪問에 어떤 事前條件도 제기치 않았음.</li> <li>○ 國際法的 關係에 따라 西獨政府의 首腦로서 應接할 것임.</li> <li>○ 西獨政府는 西獨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自立的인 政治的 單位體임.</li> <li>○ 西獨政府에서 緊張緩和에 이바지할 強大國의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란트」西獨首相의 西獨訪問으로 이 重要한 對話를 방해해서는 안됨.</li> <li>○ 「브란트」西獨首相의 西獨訪問은 수락할 수 없음.</li> </ul>

- 「브란트」西独首相이 東独을 訪問할 경우 東独의 主權을 尊重하고 旅行過程에 있어 國際法의 諸原則에 따라 東独의 統治權을 尊重해야 함.(1970.3.9) (資料 14)

実務代表会談共同声明

東独政府의 提議에 따라 1970.3.19 東独의 「에어후르트」에서 兩独首相의 會談을 갖기로 하였음. (1970.3.12) (資料 15)

西独政府의 声明

- 分断 20 年만에 一種의 全独 「콤뮤니 케」가 發表되었음.
- 西独이 西伯林 때문에 造成되었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해 第3의 場所를 提議한데 대하여 東独政府가 「에어후르트」를 提議하여 西独政府는 이를 受諾하였음.
- 이 協商의 結果는 相互間의 見解差異를 克服하고 兩独 首相間의 會談을 성사시키려는 共同努力의 結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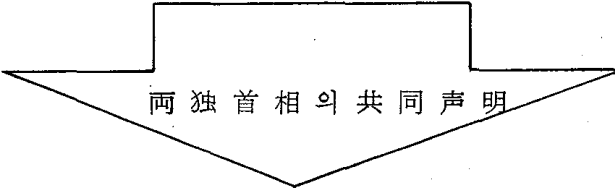
( 1970.3.12 西独政府 代辯人 声明 ) ( 資料 16 )

4) 兩獨首相會談과 雙方의 發言

( 1970.3.19 「에어후르트」 )

「 슈토프 」 東獨首相	「 브란트 」 西獨首相
<p>( 同等關係 設定의 原則 提示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울브리히트 」 東獨國家評議會 議長은 「 하이네만 」 大統領에게 보낸 1969. 12.17 자의 書翰에서 兩獨間에 國際法의 諸原則에 基盤을 둔 同等하고도 差別없는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案을 傳達했음.</li> <li>○ 「 브란트 」 西獨首相은 1970.1.22 자의 書翰에서 同等權과 無差別의 土台위에서 兩獨間의 協商을 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했음.                      이에 따르면, 兩獨이 國際法의 主權的인 主體로서 相互承認한다는 것과는 전혀 對立될 수 없음.</li> <li>○ 「 브란트 」 西獨首相은 兩獨間의 關係를 "內獨關係"라 하고 그 이름을 붙인 部処도 있는데 이것은 兩獨間의 正常的인 同等한 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를 內包한 것임.</li> </ul>	<p>( 獨逸問題解決의 原則 提示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斷을 단순히 그전 상태로 환원시킬수 없으나, 分斷의 諸結果를 緩和시키는데 努力해야 함.</li> <li>○ 獨逸안에 함께 살아야 할 두개의 國家가 成立해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해야 함.</li> <li>○ 緊張대신에 緊張의 緩和, 軍事的 對決 대신에 平和의 確保가 西獨政府의 目標임.</li> <li>○ 存在하고 있는 그대로의 狀況으로부터 出發해야 하며 兩政府가 두 國家의 利益을 위해, 獨逸民族의 利益을 위해 유럽의 安保利益을 위해 밟을 수 있는 길을 試圖해야 함.</li> <li>○ 두 國家間에는 共通性이 있으며 서로 解決해야 할 對決 역시 다른 民族間의 對決과는 상이한 것임.                      그 對決은 민족의 單一性과 關聯되어 있음.</li> </ul>

- “特殊한 内独關係”라는 공식속에는 東独을 “後見관계”에 종속시키려는 意圖가 있는 것이며, “單独代表權”의 變形된 形態로서 東独을 계속 無差別로 대하겠다는 意圖가 있는 것임
- 兩独은 두개의 主權国家들이며 相互 对立的인 社会秩序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는 것임.
- 1969.12.17 東独이 提議한 條約案을 토대로 協議에 들어갈 것을 提議함. (資料 17 )
- 西独은 武力으로 또는 武力의 威脅으로 기본법에 정해있는 目的을 추구할 權利도 可能性도 갖고 있지 않음.
- 西伯林은 事實上 經濟的, 財政的, 法的 文化的인 面에서 西独과 區別되지 않으며 그런 面에서 完全히 西独에 속함.
- 1969.12.18 東独이 提示한 條約案을 傳達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선 意見交換을 먼저해야 함.
- 1970.1.22자의 書翰에서 協商의 對象과 種類에 대한 6個項의 原則을 提示한 바 있음. (資料 18)



西独側의 提議에 의해 1970.5.21 西独의 「캣셀」에서 2次 兩独首相會談을 開催하기로 合意했음. (資料 19 )

( 兩獨首相會談의 隨行代表 )

東 獨 側	西 獨 側
<p>「 오토 · 빈처 」 長官 <i>4/23</i></p> <p>「 미카엘 · 폴 」 國務相 <i>4/23</i></p> <p>「 쾨터 · 콜트 」 國務相 <i>4/23</i></p> <p>「 게르하르트 · 슈투슬러 」 內閣事務處次長</p> <p>「 한스 · 보쓰 」 局長 <i>4/23</i></p> <p>其他 諮問官 및 專門要員</p>	<p>「 에곤 · 후랑케 」 內獨關係相 <i>4/23</i></p> <p>「 볼프람 · 돈 」 議會担当 國務相 <i>4/23</i></p> <p>「 콘라트 · 아홀리스 」 國務相 <i>4/23</i></p> <p>「 울리히 · 샴 」 局長</p> <p>「 귀 르젠 · 바이히어트 」 局長</p> <p>其他 諮問官 및 專門要員</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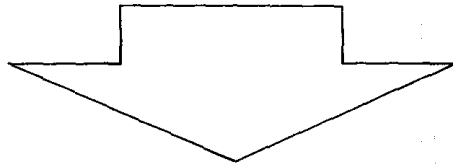
*4/23 (4/23)*

*이리: 4/23 (4/23)*



다. 兩獨首相의 「캣셀」會談

1) 事前連絡과 実務 代表會談	
「슈토프」 東獨 首相	「브란트」 西獨 首相
<p>(東獨代表團의 대우 保障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獨을 差別하는 法律과 法令의 體系를  철폐하기  바람</li> <li>○ 東獨代表團이 西獨에 滯留 하는 동안 다른 主權者들이 同級 代表에  비푸는  동일한  예우를  할  것을  確約해  주기  기대함.</li> </ul> <p>(1970.5.5 「브란트」 西獨 首相에  의  書翰) (資料 20)</p>	<p>(「에어 후르트」 會談時와 同一한  대  우  確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具體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캣셀」 會談의  準備를  위임받은  代表들이  1970.5.6 「본」에서  接觸할  때  論議하게  될것임.</li> <li>○ 「캣셀」에서도 差別없는  同等한  協商을  保障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  있음을  東獨은  疑心할  여  지  없음.</li> <li>○ 「에어 후르트」 訪問時  받은  것과  동일한  權利와  대우를  향유하게  될것임.</li> </ul> <p>(1970.5.6 「슈토프」 東獨首相에  의  書翰) (資料 21)</p>



( 実務 代表 會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時 : 1970.5.6</li> <li>○ 場所 : 西獨의 「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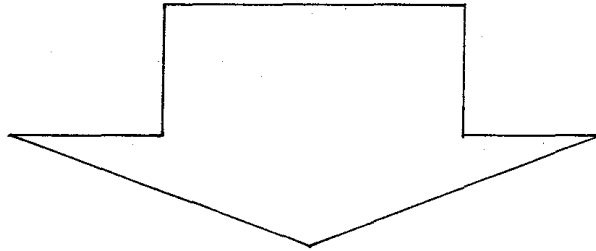
2) 兩獨首相會談과 雙方的 發言

(1970.5.21 「캄셀」)

「브란트」西獨 首相	「슈토프」東獨 首相
<p>(20 個項의 基本關係條約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獨의 立場은 후견이 되거나 弱權하겠다는것은 아니며 獨逸안에 있는 兩國間의 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하자는것임.</li> <li>○ 두 獨逸의 憲法은 民族의  단일성에  입각하고 있음.</li> <li>○ 同等權과 無差別의  기반위에서 兩國關係를 規制하는 條約이 締結되어야 하며 第3國과 締結한 條約과 同等한 拘束力을 가져야 함.</li> <li>○ 「에어후르트」會談에서 兩側의 全權수임자들을 위한 常設 機關의 設置를 提議한 바 있음.</li> <li>○ 兩國關係의 改善을 위한 原則 問題, 實際 착수해야할 問題等 20 個 項目을 提議함. (資料 22)</li> </ul>	<p>( 同等한 대우 要求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法上의 主權 平等 原則의 基반위에서 東獨의 主權을 인정하고 西獨의 弱權행위를 中止할 것.</li> <li>○ 東獨과 東獨市民을 規制하는 西獨의 法令體系를  철폐할 것.</li> <li>○ 「에어후르트」會談에서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할 것 (資料 23)</li> </ul>
<p>(「슈토프」의 發言에  대한  答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差別을  느끼게 하는 法律들이 있으나, 이 問題의 難關을  제거할 수 있는 節次를 作成할 수 있는 機會가  있을  것임.</li> </ul>	<p>( 東獨의 國際法的  승인 要求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해야 함 ( 1969.12.17 자의 條約案 )</li> <li>○ 兩獨間의 關係가 '內獨關係'라 는  것은  수락할  수  없음.</li> </ul>

「브란트」西独 首相	「슈토프」東独 首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權利, 동일한 대우를 향유하는 것은 1970.5.6 자 書翰에서 이미 確約했음. (資料 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백림은 東独안에 있는 自立的 政治團體임.</li> <li>○ 유엔에 의해 確認된 사항들은 兩独間의 關係에도 完全히 적용되어야 함.</li> <li>○ 兩國의 政府 수뇌들간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에 관한 原則的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차적인 問題의 協議를 위한 委員會의 設置나 代表의 任命은 무의미함. (資料 25)</li> </ul>
<p>(西独의 立場 再闡名)</p> <p>— 오후 會議에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변안전보장의 소홀에 대한 비난은 유감임.</li> <li>○ 兩独間의 關係 정상화를 위해 雙方의 提議를 檢討할 用意이 있음.</li> <li>○ 独逸안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사실에서 兩独關係를 規制해야 하며 國際法의 一般原則 적용에는 雙方間에 차이가 없음.</li> <li>○ 東独의 民族 概念(두 民族)에는 동의할 수 없음.</li> <li>○ 東独國民을 規制하거나 差別하고자 하는 意圖는 없음.</li> </ul>	<p>(東独의 立場 再闡明)</p> <p>— 오후 會議에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独이 提示한 條約안이 타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락하기 바람.</li> <li>○ 西独은 兩独間의 國際法的인 關係 樹立을 회피하고 있음.</li> <li>○ 西独憲法은 西方 強大國에 의해 제정된 憲法이며, '民族의 단일성'은 인정할 수 없음.</li> <li>○ 兩独間의 '特殊關係' '內独關係'란 단독 代表權의 變形된 形態이며, 東独에 대한 월권행위를 은폐하여 東独을 '후견'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임.</li> </ul>

「브란트」西独 首相	「슈토프」東独 首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武力拋棄는 平和維持의 기본전제임.</li> <li>○ 兩独政府 所在地에 兩側 全權대표의 常住 可能性에 대한 協商을 提議함. (資料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独間에는 國際法的 主体性을 인정하고 즉시 유엔에 가입해야 하며, 外交關係를 樹立해야 함. (資料 27)</li> </ul>



共 同 声 明 없 이 閉 会

3) 兩獨間의 聲明戰

西 獨	東 獨
<p>○ 1970.5.21 西獨 文公省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獨이 法律的 侵略을 하고 있다는 東獨의 主張을 반박 (資料 28)</li> </ul> <p>○ 1970.5.22 「브란트」首相 記者 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獨의 20個項目이 「캅셀」會談에 서 否定된 것은 아니나 相對方의 立場을 認識하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고 論及(資料 30)</li> </ul> <p>○ 1970.6.3 西獨 文公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武力行使拋棄의 必要性 強調 (資料 31)</li> </ul>	<p>○ 1970.5.21 「슈토프」首相 記者 會見( 동백림에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獨이 東獨에 대한 差別待遇를 持續하고 있고, 西獨의 20個項目中 重要項目이 國際法的 基盤위에서 兩獨關係를 樹立하는데는 論理性이 欠如되어 있다고 指摘</li> <li>- 現實主義的 態度를 認識할 때 對話의 持續이 可能하다고 言及 (資料 29)</li> </ul> <p>○ 1970.6.10 「울브리히트」兩獨 關係에 대해 演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法的 關係 設定을 西獨이 拒否했다고 비난</li> <li>- 第3次 首相會談을 西獨이 기 피한다고 言及(資料 32)</li> </ul>

### 3. 東西獨의 關係 正常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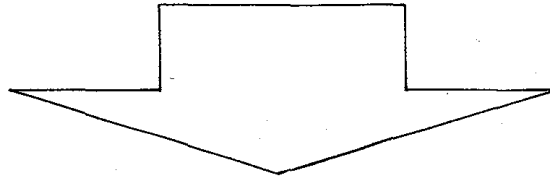
#### 가. 兩獨 國務相 會談과 通行協商

##### 1) 兩獨 國務相會談의 成立

- 2 名의 東獨密使, 西獨首相室 訪問코 事前 協議(1970.10.29-30)
- 公式 接觸을 통한 相互意見에 合意했다고 共同聲明 發表.  
(1970.10.30)
- 유럽의 緊張緩和에 寄與하고 東西獨의 利益이 될 수 있는 諸般 問題  
(1970.10.30 동백림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이 事實을 報道」)
- 西獨 內獨關係相, 兩獨國務相會談에 대한 견해표명(1970.11.12)
- 公式 接觸이란 實務「그룹」會談을 意味할 수 있음.
- 20개 項目에는 變함이 없음. (資料 33)



次 会	日 時	場 所	備 考
1 次	1970.11.27	동백림 東獨內閣庁舍	意見交換 繼續 合意
2 次	1971. 1.15	「본」 西獨 首相室	〃
3 次	1971. 1.27	동백림	〃
4 次	1971. 2.26	「본」	〃
5 次	1971. 3. 8	동백림	〃
6 次	1971. 3.17	「본」	〃
7 次	1971. 3.31	동백림	開催 与否 未詳
∴			(資料 34)



成 果 없 이 流 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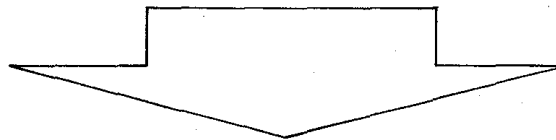
※ 基本條約 締結時까지 2年間 60여회의 會談을 가짐 .

( 東西陣營의 支持表明 )

「 바르샤바 」 條約國  共同聲明	NATO 條約國  共同聲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兩獨間의 關係 正常化는 西獨이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고 兩獨이  유엔에 加入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임.</li><li>○  이 措置는  유럽  平和維持에  寄與할  것임.</li></ul> <p>( 1970.12.2  동백림에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兩獨間 意見交換의  繼續을  歡迎함.</li></ul> <p>( 1970.12.3 「 브뤼셀 」에서 )</p>

2) 兩獨 國務相會談의 再開와 成果

- 4 大國 백립協定 加造인 (1971.9.3) (資料 35)
- 西獨, 東獨과의 協商再開 要求 (1971.9.3)
  - 兩獨間의 相互利害關係에 關한 問題 討議  
(東西獨間의 一般 通行問題 우선 取扱) (資料 36)
- 71.9.6 부터 協商開始
  - 西獨에서 서백림에 이르는 通行問題
  - 서백림에서 東獨에 이르는 通行問題
  - 兩獨間의 通行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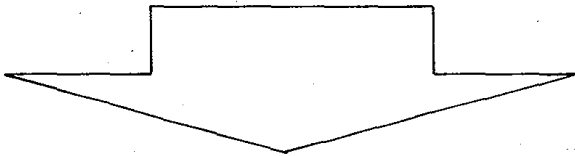


- 兩獨間의 通信, 郵便 및 通信交流 合意書 署名
  - 日 時: 1971.9.30 (1970.4 部分的 塔結)
  - 署名者: 「에크너」西獨 通信厅 代表  
「렘케」東獨 通信厅 代表
  - 主要内容: - 東西獨間의 通信業務의 改善  
- 서백림의 電話電信業務의 改善  
(資料 37)
- 西獨·서백림間 通行協定 조인
  - 日 時: 1971.12.17
  - 場 所: 「본」
  - 조인자: 西獨 - 「바르」國務相  
東獨 - 「콜」國務相
  - 主要内容: 西獨과 서백림間을 往來하는 民間人 및 民間物資의 道路, 鐵道, 水路를 통한 東獨 領土 經유에 대한 通行 施行 細則  
(資料 38)

- 兩獨間 關係正常化의 一步前進
- 1971.9.3 加造인된 4 大國의 백립協定에 依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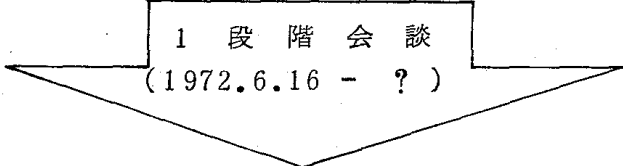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백림 · 東獨間 通行協定調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時 : 1971.12.20</li> <li>- 場 所 : 동백림</li> <li>- 調 印 者 : 西獨 - 「올리히·뮐러」, 東獨 - 「윈터·콜트」</li> <li>- 主要內容 : 서백림市民이 연 1 회 또는 수회에 걸쳐 30 日間의 한도내에서 訪問目的으로 서백림隣接地域과 東獨地域을 旅行할 수 있는 通行施行 세칙 (資料 39)</li> </ul> </li> <li>○ 東獨, 서백림市民의 東獨 및 동백림 訪問許容 發表 (1972.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問期間 : - 부활절期間 (1972. 3.29- 4.5)</li> <li style="padding-left: 40px;">- 성령강임제期間 (1972.5.17-24)</li> <li style="padding-left: 40px;">( 3 日間씩 )</li> <li>- 訪問地域 : 東獨全域</li> <li>- 訪問對象 : 家族, 親知, 親友訪問등을 包含한 文化 觀光施設유람등</li> </ul> </li> <li>○ 兩獨間의 一般通行協定 가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時 : 1972. 5.12(1972.5.26 정식조인, 동백림에서)</li> <li>- 場 所 : 「본」西獨首相室</li> <li>- 調 印 者 : 西獨 - 「바르」國務相, 東獨 - 「콜」國務相</li> <li>- 主要內容 : - 西獨人의 東獨居住 家族친구訪問保障</li> <li style="padding-left: 40px;">- 東獨人의 緊急한 家族問題 發生時 西獨訪問許容</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資料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9.3 가조인된 4 大國의 백림協定에 의거</li> <li>○ 4 大國 백림協定과 서백림東獨간통행協定에 의거</li> <li>○ 東獨全域 訪問은 1952 年以來 最初</li> <li>○ 동백림訪問은 1967 年以來 最初</li> <li>○ 東西獨間 通行에 관한 最初의 공식조약</li> </ul>
---	---



兩獨間 基本關係 設定의 基盤構築

나. 關係正常化 會談

1) 關係正常化 會談의 進行	
目的	兩獨間 關係正常化를 爲한 一般協定 締結
成立	西獨 : 71.9.3 백림協定締結以來 正常關係 設定을 爲한 會談 開催를 反復 主張 東獨 : 72.4 「호네카」 東獨社統黨 제 1 서기 호의적 反應表示
背景	○ 東方條約, 兩獨통행협정의 發效로 主客觀的 條件의 성숙 - 獨蘇條約 (1970.8.7 가조인, 1970.8.12 정식조인, 1972.6.3 비준서交換) (資料 41) - 獨波條約 (1970.11.18 정식조인, 1972.6.3 비준서교환) (資料 42) - 4 大國 백림協定 (71.9.3 가조인, 72.6.3 정식조인) - 兩獨間의 一般通行協定 (1972.5.12 가조인, 1972.5.26 정식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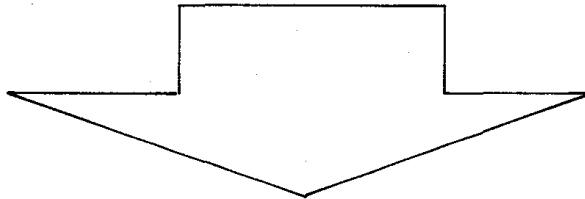


會談經過	1 次 : 1972.6.16 - 17 동백림 2 次 : 1972.6.21 - 22 「본」 3 次 : 1972.6.28 - 동백림 (?)
兩側代表	西獨 : 「바르」 國務相, 東獨 : 「콜」 國務相
討議事項	兩獨의 將來問題를 위요한 重要問題 (西獨의 20 個項目을 中心으로)
쟁 점	○ 兩獨의 유엔同時 加入問題 ○ 兩獨間의 상설외교 대표부 設置問題

2 段 階 会 談

(1972. 8. 6 - 8.16)

東 独	西 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兩独의 유엔同時加入 繼續主張</li><li>○ 本質的問題的 協商以前에 兩独間의 外交關係 수립요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東独의 主張 拒否</li><li>○ 全體独逸에 對한 4 大國責任과 關聯한 關係協定은 仮條約關係가 있음을 強調</li><li>○ 民族의 持續性을 為한 責任을 輕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li><li>○ 各種生活 領域上의 實質的인 正 常化가 우선해야 한다고 主張</li></ul>



東独, 前提條件의 포기 容의 表明

2) 兩獨間의 基本條約締結

( 基本條約締結 協商本格化 ) ( 1972. 8.16 以後 )

- 原則의 合意 -

- 兩獨 同等權의 原則
- 유엔憲章의 目標 및 諸原則에 對한 尊重의 原則
- 무력行使포기의 원칙
- 兩獨의 獨立性의 原則等

\*西獨의 1民族 2國家論과 東獨의 2民族 2國家論의 중간타결

基本條約締結

- 1972.11. 8 兩獨代表間의 尙조인 ( 全文 10 條 ) ( 資料 43 )
- 1972.12.21 兩獨政府間의 정식조인
- 1973. 6.21 相互批准書 交換으로 發效

正常關係의 發展

- 1973.11. 兩獨유엔 同時加入
- 1974. 6.20 兩獨間에 상주代表部 設置  
( 基本條約 8 條에 의거 )

附 錄 1

資

料



資料 1.

## 「브란트」西獨首相의 施政演說

( 1969.10.28 西獨議會 第 5 次會議에서 )

1. 우리 앞에 놓여 있는 現實政治의 課題는 雙方이 現在의 難關을 克服하고 民族의 單一性을 如何히 維持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음. 獨逸사람들은 그들의 言語나 그들의 榮光과 不幸을 가진 歷史에 의해서만 結付되어 있는 것이 아님. 우리는 모두 獨逸안을 집으로 하고 있음. 우리는 아직도 우리自體內 그리고 歐洲內에서의 平和라는 共同的인 課題와 共同的인 責任을 가지고 있음.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지 20年이 지난오늘 獨逸民族은 앞으로의 分離生活를 막아야 하며, 그러므로 規制된 共存을 거쳐 相互體制간에 疏通하는 相存(Miteinander)에 이르도록 試圖해야 함. 이는 歐洲平和와 東西關係를 위해서도 그 意議를 가지기 때문에 獨逸의 利害關係만이 아님. 東獨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 友邦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東伯林의 態度 自體에 달려 있음.
2. 西獨政府는 「키징거」西獨首相의 既存政策을 持續하고 東獨의 內閣에게 政府의 次元에서 協力에 合意하는 條約을 맺게될 差別없는 兩側의 協商을 제의함. 東獨에 對한 西獨政府의 國際法的 承認은 考慮될 수 없음. 비록 獨逸안에 두 개의 國家가 存在하고 있지만, 그 두 國家는 서로간에 外國이 아니며, 그들 相互間의 關係는 다만 特殊한 種類의 것일 따름임. 西獨政府는 前任者의 政策을 繼承하여 東獨에 대해서도 暴力의 行使 또는 暴力의 威脅을 相互間에 拋棄할 것에 관한 拘束的인 協定을 締結할 생각이 있음을 宣言함.
3. 西獨政府는 蘇聯과 이미 始作된 伯林地位의 便利圖謀化와 改善에 관한 對話를 가져야 함을 明白히 美國, 英國 및 仏蘭西에게도 권고할 것임.
- 4 大強國의 特殊한 責任下에 있는 伯林都市의 地位에는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이것이 伯林往來의 便利化 추구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됨. 우리는 伯林的 生存權을 앞으로도 確保할 것임. 西伯林은 兩獨의 政治的, 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의 改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可能性을 얻어야 함.

우리는 兩獨間 經濟交流가 다시 增加하는 것을 환영함. 1968.12.6 日字의 合意에 의해 이루어진 交易擴大도 이를 위해 공헌했음. 西獨政府는 앞으로 이웃과의 通商關係 擴張을 바랐직한 것으로 생각함. 우리는 이제까지의 全獨問題省을 그의 課業에 알맞도록 「內獨關係省」이라고 改稱했음. 獨逸政策을 總體的으로 그의 所管事項으로 할 수는 없음.

獨逸政策은 政府全體의 持續的인 課題이며 外交政策, 安保政策과 歐洲政策은 물론 우리 民族의 結合을 위한 努力과 分斷된 獨逸에 있어서의 關係改善을 위한 努力이라는 局面들을 包括함.

紳士淑女 여러분! 우리 聯邦共和國에서 우리는 包括的인 改革의 必要性에 直面하고 있음. 以下 省略(國內政治)



資料 2

「울브리히트」東獨社統黨 第一書記의 兩獨關係에 대한 演說

( 1969.12.12, 東獨社統黨 中央委 第 12 次會議에서 )

1. 親愛하는 同志여러분!

적지 않은 資本主義國家의 政治家들은 現在 우리들의 20 年에 걸친 成功的인 發展에서 結論을 導出하려고 하고 있음. 그들은 東獨이 다져진 社會主義國家로서 이미 歐洲諸國의 協調협주곡에서 제외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洞察하고 있음. 그 認識은 점점더 全歐洲問題의 解決에의 길 이 東獨을 迂廻할 수 없다는 一般的인 認識으로 되어가고 있음. 그것은 지난 週에 「모스크바」에서 모인 社會主義 兄弟國家들의 指導的 人士들의 重要 會合에서도 表現되었음. 社會主義 兄弟國의 指導人士들의 會合에서 西獨에 대한 戰術的 立場도 밝혀졌음.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決議들은 完全히 올바른 것으로 立証되었고 그의 反響이 西獨에 있어서의 새로운 狀況에서도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 確認되었음. 萬場一致로 採択된 「커뮤니케」에서 그들은 西獨안에 있는 政治勢力에게 결국 歷史로부터 教訓을 導出하라고 呼訴하였음. 그 會合에서 歐洲安保에 대한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要求는 統一的인 全體로서 考察되었음. 나는(울브리히트) 歐洲諸國에게 東獨과 國際法上的 承認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라고 呼訴했음. 會談 參加者들은 모든 歐洲國家들의 政府와 民族들에게 여하한 事前 條件도 없이 모든 歐洲國家의 同等한 參與의 기반 위에서 歐洲安保會議가 開催되는 것이 緊迫한 問題라고 했음.

2. 事實上 70 年代의 문턱에선 狀況은 이미 30 年에로 접어 들고 있는 社會主義國家인 東獨과 独占資本에 의해 支配당하고 있는 國家인 西獨이 歐洲안에 있다는 事實에 의해 特徵지워지고 있음. 그 社會秩序에 있어서는 물론 그 國家政治와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상이한 이 두개의 國家는 이제 이미 30 年에 접어 들고 있음. 自主的이며 國際法上 承認받은 國家로서 國際的 事項에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있는 國際法의 主體로서

서로 獨立해 있음. 兩獨逸 國家는 自己 自身의 體面을 가지고 있음. 兩獨逸 國家는 歐洲事項에 있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歐洲를 超越하는 많은 國際的인 事項에 있어 자기 自身의 比重과 자기 자신의 位置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狀況은 20年 以上에 걸쳐 發展되어 公高해졌음. 그러나 東獨과 西獨 間에는 條約上 合意된 規制가 없음. 그 理由는 獨逸의 分斷을 지속시켰던 西獨의 從來의 政權들이 東獨의 國際法的 存在를 承認하기를 拒否했기 때문임. 東獨은 西獨의 國際法的 存在를 論爭하지 않고 平和共存과 善隣의 基礎위에서 여러번 同等한 資格에서 이러한 國家間의 關係 樹立을 제의했음. 西獨도 歐洲平和秩序와 歐洲安保를 위해 不可欠한 貢獻을 하고 「히틀러」獨逸이 無條件降伏한 후 西獨이 獨逸의 分斷속에서 發展安定되었으면서도 他面에 있어 獨逸民主共和國이 「포츠담」協定の 實踐 속에서 發展하여 安定化된 現實을 承認하는데 너무도 오랜 時間을 흘려보내고 있음. 즉 西獨은 東獨의 境界와 「오데르·나이세」境界를 포함한 歐洲안에 現存하고 있는 境界線들은 물론 「뮌헨」強制命令(條約)의 源泉的 無効를 承認하고 核武器, 生化學武器에 관한 모든 處分權을 포기하고 歐洲에서의 軍縮, 暴力拋棄에 관한 合意에 나서는 準備를 하는데 너무도 많은 時間을 흘려 보냈음.

3. 「본」의 新政府는 참다운 새로운 始作을 決定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고 있음. 특히 「아데나워」와 基民黨에 의한 「히틀러」의 處方에 따라 發展되었던 一 復仇政策은 世界의 勢力均衡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希望없는 窮地속에 빠져 있음. 그러므로 「본」의 新政府는 오직 무리했던 그 政策을 포기할 必要가 있음. 西獨 社會民主主義의 指導層은 民族的 叛逆과 基民黨(CDU)의 擊退를 위한 자신의 民主的인 概念을 完成하는데 오랜 時間을 탕진했음. 「모스크바」 「커뮤니케」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社會主義國家들은 새로운 「본」政府에게 平和와 集團的인 安保를 扞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世界戰略

그리고 國際的인 軍需独占財閥의 關心속에서 復仇政策을 계속 견지하고 軍需幻想을 持續하는 길을 扞할 것인가의 決斷을 要求하고 있음.

4. 「아테나워」와 基民党은 西方側 占領強大國들의 指示에 따라 기만적으로 獨逸을 分斷하여 西獨의 分離國家를 만들었고, 独占資本의 權力地位를 回復시킨 후 西獨을 武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民族的 利益을 「나토」에게 팔아 버렸을 때 그들은 民族의 單一性을 도박에서 탕진해 버렸음. 또한 그들은 결국 獨逸을 「포츠담」協定에 明示되어 있는 非「나치」化와 非軍事化 그리고 独占體의 權力集中化의 除去를 沮止하기 위해 獨逸을 分斷시켰음. 그들의 意圖는 - 「나토」와 이른바 미국의 原子武器独占에 의지하여 - 소련을 위협하고 歐洲에서 社會主義를 「席卷」하고 東獨과 東獨市民을 西獨의 独占資本과 西獨軍國主義의 支配에 屈服시켜 西獨에 併合시켜 버리자는 것이었음.

5. 1952 年에 東獨의 支持를 받은 度量이 넓은 소련 提議에 立脚하여 分斷된 獨逸民族에게 다시 한번 平和를 사랑하는 統一된 民主獨逸의 展望을 가진 歷史的인 講和條約의 기회가 주어졌음. 그러나 基民党和 少數의 右派社會民主主義 指導者들은 이 提議를 거부했고, 그리하여 民族의 統一에 反하여 行動했음. 힘의 幻想속에서 사로잡혀 西獨政府와 帝國主義的인 占領強大國들은 講和條約을 拒否하고, 「파리」條約을 締結하고, 西獨을 「나토」에 加入시킴으로써 끝내 平和를 사랑하는 統一된 民主獨逸의 樹立을 爆破시켜 버렸음.

中間省略( 伯林障壁構築 等 理由, 大聯政의 政策, 「포츠담」協定, 「파리」條約 等 )

6. 1,600 萬 以上の 西獨有權者들은 西獨議會選舉에서 그들의 投票를 통하여 基民党 政府의 反民族的인 政策, 保守主義勢力의 反動的이며 모험적인 復仇政策, 많은 生活領域에서의 保守的인 硬直化 그리고 基民党和 社民党的 聯立政府에 대해 실증이 났음을 표명했음. 따라서 有權者들은 基民党을 政權에서 배제했으며, 社會民主黨 主導下의 聯立政府의 構成을 可能케 했음.

20 年에 걸친 基民党的 支配( 그것은 論議할 餘地가 없다. )는 西独政府와 西独住民 그리고 東西独逸의 国民들에게 많은 損害를 끼쳤음.

7. 独占資本과 基民党은 民族的 利益을 背反했음. 그들은 미국과 其他 帝國主義的인 占領強大國과 함께 過去의 保守的인 國家權力을 復古시켜 独占資本의 支配를 再樹立했으며, 「네오나치즘」의 形態로 「나치즘」을 復活시켰음. 그들은 西独을 일부러 獨逸民族聯盟으로부터 분리시켰음. 그들은 西独을 미국의 独占財閥과 그의 世界戰略에 예속시켰고 西独住民의 意思와는 反대로 侵略的인 「나토」條約기구에 加入시켰음. 그들은 人民의 意思에 反해 教育制度를 희생으로 하여, 近代 經濟構造를 희생으로 하여, 그리고 人間의 많은 社會的 文化的인 熱望을 희생으로 하여 이미 數億 「마르크」를 삼켜 버린 無의미한 軍備擴張의 「히스테리」속에 西独을 轉落시켜 버렸음. 그들은 腐敗한 美國資本主義의 野蠻性과 非文化를 西独에 輸入하여 그곳에 土着化시켰음.

8. 韓國에 있어서의 추잡한 戰爭, 越南人民에 대한 미국의 놀라운만한 侵略戰爭, 그리고 「아랍」諸國에 대한 「이스라엘」侵略者의 帝國主義的인 습격과 같은 美帝國主義者들의 모든 惡行들은 基民党政府와 大聯政의 政府에 의해서도 支持받았음.

결코 이러한 미국의 위험한 影響은 經濟的 領域에서만 表示되고 있는 것이 아님. 反動的인 美帝國主義와의 西独의 同盟, 미국의 侵略政策과의 事實上의 連帶化는 무엇보다도 西独과 新生民族國家間의 矛盾을 尖銳化시켰음. 이것 역시 內的 矛盾의 強化要因임. 드디어 미국式 「文化」의 祝福을 위한 모든 水門의 公開, 모든 生活領域의 漸增的인 美國化는 不安과 抗議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음. 戰爭宣言없이 國際法에 反하여, 倫理와 「휴머니즘」에 反하여, 殺人戰爭을 遂行하는 世界憲兵役割에 알맞는 나라를 模範으로 選擇한 것, 國內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外部에 대해서도 犯罪, 殘忍性, 그리고 非人道性을 實際化시켜 「필립」, 「테레비」 등을 통해 그와 같은 野蠻性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法則

에 따라 嫌惡感을 불러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임.

9. 「브란트」·「셰리」政府에서도 國務相으로 活動하고 있는 所謂 大聯政下에서의 國務相 「도나니이」(Dohnanyi)는 日本 旅行동안에 西獨에는 「指導性的 缺乏」現象이 存在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음. 2次 世界大戰後 西獨보다도 더 어려운 狀況에 있었던 資本主義 日本의 支配階級들은 곧 第1位의 産業成長을 이루어 世界資本主義 國家中에서 第2位를 차지한 西獨을 日本經濟를 미국獨占財閥에 예측시키지 않고서도 第3位에로 밀어 제칠 수 있다고 했음. 그들의 取奪方法이 잘 알려져 있는 日本獨占資本家들은 미국과 軍事條約을 締結했고 軍事基地를 許容했음. 그러나 자신을 미국의 軍需競争에 말려들게 하지는 않았음.

武裝化狂亂에 參與하지 않음으로써 日本獨占資本家들은, 「도나니이」의 見解에 따르면, 20億「마르크」를 節約했고, 그리하여 이러한 돈을 工業 科學技術에 있어서의 構造를 決定짓는 分野의 最高狀態 到達과 教育制度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음.

10. 비록 西獨國務相의 이러한 表現이 正確하지는 않다 해도 西獨의 「指導性的 缺乏」을 말한 것은 옳다고 생각함. 그 理由는 個別的인 그릇된 決斷이 問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年間の 結果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임. 基民黨의 완고한 反動的인 政治가 스스로 科學 技術革命이라는 課題를 解決하려는 一部 獨占「브르조아」까지도 방해했음. 그래서 基民黨과 西獨 獨占財閥의 指導性 缺乏은 第2次 世界大戰의 破局으로까지 이끌었던 「나찌즘」型的 獨逸帝國主義 支配동안에 나타났던 「指導性的 缺乏」과 비교할 수 있음.

11. 基民黨의 反動政治는 西獨의 學問發達도 妨害하고 그 올바른 方向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하여 예컨대 西獨雜誌들의 報告에 의하면 西獨의 未來研究, 소위 未來學을 위한 權力鬭爭이 폭발했음. 大企業의 代表者들과 學者들간에는 날카로운 對立이 생기고 있음. (中間省略)

極端的으로 保守的인 基民黨을 政權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事實은 國內 政治와 外交政策의 作用이 초래한 하나의 要因이었음.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 때 「브란트」의 새로운 東方政策, 그리고 소련과 西獨 및 東獨과 西獨間의 앞으로의 關係의 發展에 관해서도 새로운 問題들을 제기하고 있음.

12. 基民黨과 獨占資本家들의 一部가 社會民主黨과 自民黨의 聯立政府를 可能的한 限 빨리 물러나게 만들고자 努力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政府가 오랜 期間동안 執權할 수 있는 可能性을 고려에 넣어야 함.

基民黨內에 있어서의 分裂對立하는 一定한 傾向과 취약現象들, 野黨의 役割에 轉換되는 경우에 생기는 어려움들은 社會民主黨과 自民黨의 聯政을 安定시키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음. 西獨의 政權交替는 國家獨占主義的인 資本主義의 「權力構造」를 變化시키지는 못했음. 大生産手段은 獨占資本家의 手中에 있음. 帝國主義的인 3個의 大銀行의 勢力은 動搖되지 않고 있음. 그 銀行들은 例컨대 「슈프링거·콘체른」, 資本主義的인 大出版社와 같은 「매스·미디어」, 軍, 司法 및 警察을 自由로이 움직이고 있음. 그러므로 獨占資本家와 軍國主義的이며 復仇主義的인 勢力들은 여전히 決定的인 權力的 地位를 장악하고 있음. 이 「브란트」政府는 極端的으로 保守的이며 復仇主義的인 基民黨勢力의 強力한 壓力下에 있는 「브르조아」적 議會主義政府임. 그런데 西獨의 獨占 「브르조아」의 一部가 새로운 聯立政府 안에서 基民黨이 하고 싶어 했던 것 以上으로 새로운 形態와 새로운 方法으로 葛藤을 덜 일으키도록 國家 獨占主義體制를 安全化시키고 보다 能率的으로 形成할 수 있는 地位에 있었으면 하는 希望을 걸고 있는 것도 事實임.

13. 重要한 經濟管轄官庁인 經濟省과 財務省은 그들의 見解들이 獨占資本家의 利益을 우선적으로 代表함을 保證할 수 있는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음. 中間省略(國防省에 관한 批判)

「브란트」西獨首相은 選舉前에 獨占資本의 重要한 代表者들에게 그의

領導下에 있는 政府가 樹立되는 경우에 扞할 自身の 앞으로의 政治路線을 제시했음. 그는 自身과 앞으로의 自己政府를 西獨의 國家獨占主義的인 資本主義體制에 歸屬시켜 1960.6.30 에 西獨議會에서 「베너」가 公表했던 政策을 持續할 것을 確約했음. 그리하여 그는 獨占資本의 決定的인 勢力에 의한 寬容과 支持를 確保받았음. 獨占資本의 特定한 集團은 社會民主黨과 自民黨의 聯立은 一定한 條件下에서는 國家獨占主義的인 資本主義體制를 위해 一聯의 長點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變體로 보고 있음.

「브란트」의 領導下에 있는 政府의 樹立은 미국의 世界戰略의 現在局面과 부합함. 東歐政策의 從來戰術이 失敗한후 미국의 大部分의 支配階級은 基民黨의 保守主義와 함께 社會主義國家들과 직접 鬪爭할뿐만 아니라 社會民主主義者과 합세하여 그들과 함께 社會主義國家들에 대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 생각하고 있음.

14. 「브란트」·「쉐르」政府의 人的構成을 보면, 특히 몇명의 社會民主黨出身의 長官들과 國務相들이 前에 勞組運動의 指導的인 役割을 했거나 「나찌즘」에 의해 迫害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 事實들이 國內政治的인 霧困氣와 外交政策的인 霧困氣를 改善하고 있고, 그 霧困氣 속에서 새로운 內閣이 活動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도 西獨의 國內政治와 對外政策의 性格에 관한 既存하고 있는 幻想을 促進시키든가 새로운 幻想을 불러 일으키기에 알맞을 것으로 보임. 中間省略(西獨議회의 選舉意識, 새로운 聯立의 기회, 國內政策과 社會政策의 試金石, 勞動組合의 要求, 教育政策, 農業政策, 農業構造 등에 관한 批判等)

15. 물론 우리는 「브란트」·「쉐르」政府가 完全한 民主主義를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음. 우리는 결국 金融資本의 強力한 壓力下에 있고 또한 그 隊列속에 大資本의 利害關係를 代表하는 者들이 끼어 있는 「브르조아」的 議會主義 政府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음. 完全한 民主主義는 원래 발전된 社會主義社會에서 勞動者階

級이 勝利한 然後에야 可能함. 그러나 「브란트」政府의 綱領속에는 몇 가지의 肯定的인 發想들이 있음. 肯定的인 發想들과 좋은 意圖들이 그 대로 死文化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西獨의 市民들 자신, 그중에서도 西獨의 共產主義者와 社会民主主義者, 勞組運動家, 젊은이, 農民, 婦人과 其他 進歩勢力들이 끊임없이 成長하여 有權者의 意思를 尊重하고 基民黨과 다른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의 抵抗이 있더라도 勞動者 大衆의 利益을 實現할 수 있는 效果的인 改革을 관철시키기 위한 緊要한 鬭爭을 전개해야 할 것임.

16. 勞動者들과 進歩的인 「인테리」들은 다른 民主的이고도 進歩的인 勢力들과 힘을 합쳐 그들의 創造的인 能力을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는데 投入해야 할 것임.

公表된 改革들은 그에 必要한 돈이 없기 때문에, 例를 들어 教育改革만 해도 그를 위해 쓸 수 있는 財政手段이 不足하기 때문에 不可能하다고 말하는 保守的인 소리들이 現在 西獨안에 있음. 방대한 軍備支出 때문에 公表된 改革計劃의 實踐이 不可能할 것이라는 것은 勿論 옳음. 말하자면 軍備支出을 50%로 大幅 縮小시키지 않는한, 公表한 그 改革案이 進歩的인 뜻에서 作成되고 計劃되었다 하더라도 大部分 實踐 不可能하고 死文化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西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것으로써 社会民主主義 聯立政府가 결정적으로 平和的이며 民主的인 길을 扞할 생각이 있는가, 또는 그 聯立政府가 軍需財閥과 西獨聯邦軍의 指導層의 壓力下에 軍·産復合體의 지속적인 發展을 促進하여 少数 獨占 集團의 帝國主義的인 利益과 미국의 世界戰略에 이바지할 생각인가 라는 根本的인 問題가 제기되었다고 봄.

17. 예를 들면 「슈트라우스」가 「防衛制度와 自然科学間에 맺은 結婚은 결코 다시 갈라질 수 없다」고 主張했다면, 그는 그러한 表現으로써 軍需를 利潤 追求의 가장 重要한 手段으로 삼고 軍事的인 擴張을 여



전히 追求하고 있는 独占集團을 代辯하는 것임. 그러나 西獨의 社会秩序가 広範한 技術進歩의 刺戟劑로서 軍需를 必要로 한다면, 그 社会秩序가 原子生化学(ABC) 武器時代에 戰爭을 그들이 計算에 넣고 있는 反動勢力의 作用을 許容한다면, 그때에는 이러한 社会秩序는 歴史앞에 스스로 자신이 民族의 平和問題, 社会問題 및 精神的 問題를 解決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判決을 해야 하는 것임.

18. 「브란트」政府는 바로 이러한 決斷앞에 서 있는 것임. 国内改革問題에 있어 「브란트」·「셰르」政府는 複雜한 狀況에 처해 있음. 낡은 支配構造를 復古시키고 西獨을 미국의 世界戰略속에 끌어 넣은 基民党的 20年間に 걸친 支配는 政治的으로나 「이데오로기」상으로도 兩次的 世界大戰의 破局속으로 獨逸을 몰아넣었던 過去의 勢力들과 斷切시키지 못한 結果를 초래했음. 방대한 金額이 전연 무의미한 軍備를 위해 支出되었음. 그로 말미암은 結果는 教育制度 및 科学과 技術의 重要分野에 있어서의 後進성과 앞으로 닥아오는 年代의 要求에 알맞을 農業構造의 創造 및 農民과 農業勞動者의 教育과 訓練의 創造에 있어서의 破局的인 後進性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또한 그 結果는 아직도 同等權을 留保당하고 있는 婦人들은 물론 젊은 世代의 가장 基本的인 要求를 等閑視하고 멸시하는데서도 찾아 볼 수 있음. 우리는 그 結果를 經營에 있어서는 물론 全體로서의 經濟에 民主的인 共同決定制度가 없는데서도 찾아 볼 수 있음.

西獨의 共產主義者, 社会民主主義者, 많은 勞動하는 農民들과 進歩的인 「인텔리」들은 이 問題들이 東獨에는 이미 民主的인 變革과 社会主義建設時期에 解決되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음. 中間省略(東獨 社会主義體制와 兩獨體制의 比較, 西獨에 있어서의 「스트라크」等)

19. 「레닌」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機會主義者에 反對하는 改革綱領의 支持者들이다」라고 말했음. 改革의 民主的 性格은 勞動者階級の 行動

을 그 기반으로 하는 끊임없는 大衆鬪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確保될 수 있음. 이와 같은 發展만이 소위 「改革」이라는 旗幟下에 大資本의 収奪體制와 支配體制의 現代화가 추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음.

「브란트」의 改革提案들의 많은 部分은 一般的인 形態로 제안되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改革의 적지 않은 部分이 社會主義社會에서 비로소 充分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民主的인 改革 특히 教育制度의 領域에 걸친 改革發想에 대해 肯定的임. 그러나 經驗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改革의 實踐이 保守勢力의 무참한 抵抗에 대해서 爭取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 議會主義的 討論으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음.

20. 西獨에는 独占資本主義的인 勢力이 強하기 때문에 改革의 一部가 実証된 模型에 따라 委員會 같은데서 死藏되거나 独占資本의 利益을 위해 操作될 危險이 있음. 그러므로 참다운 民主改革의 實現은 西獨의 모든 民主的이며 進步的인 勢力들의 協力과 共同鬪爭에 달려 있는 것임. 西獨 勞動者들의 利益과 兩獨逸國家間의 平和的 共存의 發展을 위해 우리는 西獨의 勞動하는 사람들과 모든 進步的인 勢力에게 이상의 改革을 實行하는 경우 우리들의 풍부한 經驗을 提供해 줄 용의가 있음. 우리는 그 경우 該當 領域에 걸쳐 이미 實驗된 民主的인 解決方式을 自身의 事項을 위해 利用하도록 西獨의 市民들을 도와 주고자 함.

21. 우리는 그와 같은 友好的인 支援이 바로 多樣한 民主的인 社會改革의 領域에 걸쳐 西獨市民을 위해 매우 有利한 것임을 確信하고 또한 나아가서 東獨과 西獨間의 段階的인 關係改善에 이바지함에 알맞는다고 믿고 있음.

上述한 全體狀況, 即 死活問題를 둘러싼 對決의 增加 — 例를 들면 越南에 있어서의 미국의 侵略戰爭에 대한 反對鬪爭의 抬頭를 보십시오 — 는 물론 基民黨과 「네오나찌즘」政黨인 民族民主黨(NPD)이 합쳐서 거

우 50% 이상의 有權者票를 획득했다는 事實도 「브란트」·「쉐르」政府의 改革의 性格을 말해줌. 그 計劃은 內容에 있어 갈등이 있고 矛盾에 차 있으며, 왕왕 여러가지로 解釈할 수가 있음. 그것은 外交政策에도 해당됨. 그러나 西獨社會의 一部에서 나타나고 있는 變化들은 보다 現實主義的인 政策을 지향하는 傾向의 表現일 수 있음.

22. 그들의 票로써 基民黨을 政權에서 물리치고 새로운 聯立政府의 形成을 可能케 했던 1,600萬以上の 有權者들은 基民黨政府의 20年間に 걸친 反民族的인 政策을 反對하는 그들의 要求를 表現한 것이었음.

그들중의 多數는 「브란트」聯政에 대해 歐洲安保의 保障과 軍縮, 核擴散 禁止條約의 署名과 批准, 그리고 原子武器의 所有와 處分權의 포기를 기대하고 있음. 有權者들은 破産한 復仇政策의 포기를 바라고 있음.

有權者들은 社會主義諸國과의 誠實한 理解와 歐洲에 있는 모든 既存境界의 承認을 기대하고 있음. 有權者들은 單獨代表라는 越權과 모든 變種으로서의 「할슈타인」原則으로 부터의 轉向과 完全한 同等權과 東獨과 西獨의 留保없는 相互間의 承認을 土臺로 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 正常化를 바라고 있음.

23. 「브란트」가 公表한 政策綱領에는 軍縮에의 貢獻, 平和確保와 社會主義諸國과의 理解에 대해 貢獻을 하겠다는 意志가 들어 있음. 그러나 同時에 「브란트」政府도 「나토」條約, 軍備支出額의 增加, 미국과의 特殊한 紐帶, 그리고 미국과의 世界戰略上의 紐帶등을 言及하고 있음.

「브란트」는 一慣性과 改革을 그의 政策宣言에서 約束했음.

「브란트」政府는 1966年의 「에어하르트」政府의 覺書와 1937年의 境界線 要求로부터 單獨代表라는 越權에 이르기까지의 復仇政策의 모든 基本要素들을 固定시켰던 소위 1966年 12月의 大聯政下의 西獨首相의 最初 政策宣言을 기초로 하여 外交政策에 있어서의 一慣性이 保障되어지게 하려는 것임.

24. 그 以後에 있어서의 「브란트」·「쉐르」政府의 實際外交政策은 다양한 形態로 外交政策的 一慣性을 나타내고 있음. 「쉐르」西獨外相은 특히 西獨의 外交代表들에 보낸 그의 訓令에서 그 一慣性을 細密히 明示하였음. 그에 따라 「본」政府는 第3국이 東獨과 通商關係를 制度化함에 反對하고 있음. 그것은 「본」政府가 특히 東獨의 通商代表部設置를 反對한다는 것을 뜻함.

「쉐르」外相은 계속 말하기를 西獨의 態度는 「東柏林이 우리의 勢力과 規制된 協調方法을 받아 드리는가에 달려 있다」했음. 그러나 「본」의 獨逸政策은 그들의 內獨的인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주장에 불과함.

「쉐르」外相은 계속해서 內獨的인 規制를 위한 通商과 文化領域에서의 東獨의 外國代表部の 擴大는 內獨關係設定에 有益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 그것은 「본」政府가 第3국이 東獨과 文化協定을 締結하는 것을 妨害하고자 試圖하고 있음을 말함. 거기에서 「쉐르」는 第3국들이 東獨 首都에 代表部를 設置하는 것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음. 그것은 낡은 「할슈타인」原則 固守에 不過함.

우리는 「改革」의 要素로서——「본」의 모든 留保에도 不拘하고——核擴散禁止條約에의 署名을 들수 있음. 그러나 우리는 공공연하게 以上 署名을 妨害할 수 없게 된 然後에 적어도 議會批准을 지연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西獨의 指導的인 政治家들의 눈초리를 경고함. 그러므로 西獨共產主義者, 새로운 聯立政府의 內外에 있는 勞動運動家와 社会民主主義者, 平和를 사랑하는 民主勢力들은 核戰爭 沮止를 위한 國際的 條約에 西獨이 分明히 加入함을 批准함으로써 國際法上的 効力を 갖게 하는데 警戒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됨.

25. 우리는 새로운 西獨政府가 소련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現實的인 措置를 취하는 것을 환영할 것임. 東獨은 소련과의 兄弟的인 友好와 協同關係를 發展시킴으로써 오래前부터 獨逸歷史에서 올바른 教訓을 배웠음. 그러므로 이제 「본」의 새로운 聯立政府가 西獨에서 半世紀前부터 축적된 소련에 대한 敵對性과 反共產主義라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소련과

의 善隣關係와 協同의 方向을 攄한다면 우리는 全西獨人民을 위해 그와 같은 努力에 기꺼히 支持를 보낼 것임 .

유감스럽게도 「브란트」는 아직도 「체코슬로바키아」의 分割을 인정했던 「문헨」의 수치스러운 強制 命令(條約)이 애당초부터 無効하다는 宣言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 問題에 대한 「브란트」의 表明은 分明히 補充說明을 必要로 하고 있음 . 數百萬西獨有權者가 要求하는 「오데르·나이세」境界와 東獨과 西獨간의 境界를 포함한 歐洲에 있어서의 領土的 現狀의 承認에 관해 그 政策綱領은 하등 直接的인 陳述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6. 西獨·「폴란드」協商에 대한 社会民主党과 自民党政府의 慾求에 관하여 , 나는 「바르샤바」條約國家들과 世界の 多数國家의 共同的인 見解에 따라 「오데르·나이세」境界線은 「포츠담」에서 中극적으로 그리고 國際法上 拘束力있게 確定되었다고 말하고 싶음 . 東獨은 이미 20年前에 「폴란드」와 「괴르릿처」(Gorlitzer)條約을 맺고 「오데르·나이세」境界線을 모든 獨逸사람의 이름으로 平和境界로 署名했음 . 그 理由는 西獨住民은 아직까지 西獨의 特殊한 事情下에서 그들의 平和에 대해 自由로이 그리고 操作당하지 않고서 表現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러나 西獨에 있어서 基民党政權의 20年間에 걸친 復仇政治가 이루어진 以後 1969~70년에라도 「폴란드」西方國境線의 留保없는 國際法的 承認과 不可侵性を 西獨政府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환영할 일임 .

27. 「브란트」首相은 西獨이 歐洲安保會議에 참가한다는데 관해 비록 一定한 留保를 하고 있지만 肯定的으로 表明했음 . 「브란트」와 그의 外相은 그동안 西獨과 東獨간의 關係에 관한 協商問題와 歐洲安保會議에의 西獨聯邦共和國의 參加問題를 일괄처리하려 했음 .

「브란트」는 歐洲安保會議에 反對하는 妨害術策에서 손을 떼어야 함 . 특히 어떠한 나라도 参加与否와 事前條件을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것임 .

28. 「브란트」는 11.9日字의 「인터뷰」에서 「西独政府에 있어서는 實際問題들을 人間과 平和를 위해 規制하는 것이 重要問題」라고 말했다.

그것은 소련과 西独간의 暴力拋棄條約案에 관한 協商의 過程에서 밝혀질 것임. 그와 같은 條約에서 모든 既存하고 있는 境界線들을 承認하는 것이 平和를 위해 좋은 것임. 그러나 「본」政府의 發言을 보면,

✧ 「본」政府는 西独境界의 承認과 그 不可侵性은 바라고 있으나, 東独境界의 承認에 관해서는 沈黙을 지킬 작정인 것 같음.

여러가지 協商과 關係해서 볼때,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현상을 分明히 承認해야 한다는 必要性을 인정하면서도 講和條約을 통한 規制라는 명분으로 이를 피하려는 것이 「브란트」·「셰르」 政權의 戰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9. 이 戰術은 「본」政府에게——25年前부터 이미 存在치 않고 있는 独逸帝國과—— 講和條約을 締結할 때까지 1937年의 境界가 効力を 가진다는 非現實的인 要求를 주장할 수 있는 可能性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음. 그것은 講和條約이 없다는 것을 口実로 西独帝國主義의 復仇政策을 위장하려는데 있는 것임.

언젠가 한번은 있게 될 講和條約을 口実로——또는 暴力拋棄條約이나 暴力拋棄宣言에서 앞으로 있을 講和條約——삼아 西独政府는 事情이 유리하게 될 경우, 모든 잠정적인 境界의 承認, 暴力拋棄宣言等 그러한 條約이나 宣言에 대한 前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國境線 인정과 不可侵宣言을 목살해버릴 속세임인 것 같음.

30. 그 경우 西独政府가 歐洲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歷史的인 變化들을 法律上 有効하게 承認하는 경우에 비로소 西独에서 平和

정책을 말할 수 있음이 분명함.

「브란트」는 스스로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음을 말했음. 그리고 결국 그의 外交政策에 있어서도 이러한 事實로 부터 出發해야 함. 그것은 「브란트」도 獨逸民族이 分斷되어 있다는 것을 正確히 알고 있기 때문임. 歐洲安保會議의 빠른 實施가 歐洲諸國과 兩獨逸國家間의 緊張緩和에 이바지 할 것임. 그것은 東獨은 물론 西獨도 同等한 立場에서 歐洲安保會議에 參加하는 것을 前提로 함. 兩國家相互間의 關係는 그들 자신의 事項임.

31. 社會民主黨과 自民黨政府의 外交政策宣言에 있어서는 물론 外交政策的 實際에 있어서도 東獨과 西獨間의 問題들이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음.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 이러한 主權的인 그리고 서로 獨立한 獨逸國家들간의 關係가 어떻게 잘 發展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우리의 관심사임.

우리는 基民黨이 歐洲에서 社會主義를 席卷할 수 있다는 幻想的인 希望에서 實際行했던 20년동안의 分斷政策과 敵對政策을 겪은 오늘날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正常化 過程에는 善意와 많은 忍耐가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많은 忍耐와 결합된 이러한 善意는 東獨共產黨의 民族戰線 속에 結合된 政黨들과 組織들 그리고 東獨政府에는 이미 存在하고 있음.

「브란트」西獨首相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그의 政策宣言에서 그리고 다른 公式的인 表明속에서 東獨의 國家的 存在事實을 認知했음. 우리는 여기에서 20년 이상이나 늦었음을 말하고자 하지는 않음. 보상할 動機는 아직 있음. 결국 우리는 아직 行動을 기다려야 함. 그 경우 모든 種類의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拋棄만이 西獨과 東獨과의 關係를 正常化 시킬 수 있는 前提라는 것을 明白히 해야 함.

32. 「브란트」는 나아가서 同等權을 基반으로 하여 그리고 모든 差別의 排除下에 西獨과 東獨間에 條約上으로 關係를 規制할 것을 協商하자고 提議했음. 그는 規制된 共存(Nebeneinander)을 통해(서로 體制間에

배우는) 相存(Miteinander)을 試圖할 必要性이 있다고 言及했음. 그러나 同時에 「브란트」는 - 그의 政策宣言을 引用하면- 「西獨政府에 의한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은 고려될 수 없음. 비록 獨逸안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고 있지만 결코 相互間에는 外國이 아님. 相互間的 關係는 다만 特殊한 種類일 수 있다」고 宣言했음.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임. 이러한 글귀들은 - 그것이 새로운 聯立政府의 「독트린」으로 된다면 - 앞서 말한 肯定的인 面을 모두 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그뿐만 아니라 新任 西獨外相「웨이」은 모든 西獨의 外國駐在 代表에게 내린 지시에서 西獨과 東獨間的 「特殊한 關係」가 어떤 것인가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라고 했음. 우리가 公式文書와 宣言書들을 검토해 보면, 相互間에 이른바 外國이 아니라는 兩獨逸國家間的 「特殊한 種類的 關係」의 「모델」은 後見人과 未成年者間的 關係와 같은 것임. 西獨은 물론 東獨도 獨逸國家이기 때문에, 「본」은 主權的인 獨逸民主共和國의 事項과 特別히 外交關係에 參견할 수 있는 權利. —— 물론 바로 이것이 「特殊한 種類的 關係」의 核心임. —— 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함. 다른 主權國家들과 東獨과의 正常的인 關係 수립도 간섭하려고 하고 있음.

33. 西獨의 政策宣言은 물론 「본」外相의 業務指示를 보면, 東獨의 外交關係나 外交活動 또는 東獨에 대한 第3國의 外交關係나 外交活動에 대한 「본」政府의 同意与否는 「본」의 希望과 要求 또는 東獨과 東獨市民의 行動여하에 좌우된다는 것임. 물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음.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東獨은 獨逸聯邦共和國에서 獨立한 主權國家이기 때문임.

單獨代表權에 관해서는 새 聯立政府는 政策宣言에서 아직도 間接的으로만 말하고 있고, 直接的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西獨이 破産된 單獨代表라는 越權을 이제 東獨과 그의 市民의 對外關係에 대한 一種의 後見이라는 越權으로 代置한다면, 그것은 健全한 人間悟性と 現實的인



狀況에 矛盾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同等權의 基盤위에서 그리고 모든 差別의 排除下에 主權的인 兩獨逸國家間의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公式的인 그리고 希望에 찬 協商을 하자는 西獨의 提議와도 矛盾되는 것임. 그 理由는 西獨政府의 後見 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旧式的 单独代表라는 越權 못지않게 차별적이며 同等權의 原則에 違反되기 때문임. 後見이라는 越權은 다만 单独代表라는 越權의 한 變形에 不過함.

34. 나는 西獨에서 政權을 담당하고 있는 政治家들이 그러한 式의 差別的이며 同等하지 않은 條件下에서 協商하여 條約을 締結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음.

西獨은 東獨보다 여하한 種類의 높은 權利도 가지고 있지 않음. 西獨은 自己 自身을 國際法의 主體인 主權國家로 보고 그에 따라서 다른 國家와의 關係를 規制하고 있음.

35. 그러므로 모든 差別이 排除된 完全한 同等權의 基盤위에선 國家間의 關係가 必要하며 可能할 뿐임. 즉 主權的인 國家間에 通用되는 바와 같은 國際法的 關係를 말함. 國際法上 그리고 美際上 意義가 없는 「外國」이라는 單語는 後見이란 越權을 음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貯藏所속에 집어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東獨과 西獨은 國際法上 承認되고 서로 獨立한 主權國家로서 오랫동안 存在하고 있음. 그외에도 우리가 특별한 理由때문에 여기서 詳細히 言及하지 않으려 하는 西伯林이라는 特殊한 占領地域이 아직도 存在하고 있음. 兩獨逸國家間의 關係와 그들間의 條約은 그 事項의 性格上 國際法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본」은 同等한 國家로서가 아니라 「본」의 後見밑에 있고 또한 「본」에 대해서 特別한 善行의 義務를

지고 있는, 적게 權利를 가진 國家로 전락시켜 協商을 하자는 것임.  
이것은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과 그 絶對的인 原則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

36. 西獨과 「나토」軍事條約에 加盟하고 있는 國家들이 「본」의 基民 党  
政府들의 권유에 따라 行動하고, 東獨과 東獨住民의 差別待遇를 그 內容  
으로 한 決議들을 實踐에 옮긴다면, 그것도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에  
矛盾되는 것임.

이 機會에 우리는 「본」의 새로운 政府에게 ——유감스럽게도 政策宣  
言에서 이러한 原則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20年 동안의 基民 党  
支配의 유산으로서 數 많은 效力을 가지고 있는 西獨의 法律命令 및 其  
他の 公式 規定에는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를 毒殺시키는 소위 西獨政府  
의 单独代表라는 越權이 오늘날도 아직 法的 效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留意시킴. 예를 들면 西獨의 司法은 이에 따라 아직도 「1937.  
12.31日字의 境界안에서의 獨逸」이라는 허구적 생각을 말하  
고 있음. 西獨에 있는 公式的인 地圖에 그린 線과 表記線에 의하면,  
1937年의 狀況에 따른 허구적인 獨逸帝國의 境界가 變化되지 않은 채  
表示되어 있음. 여러가지의 法律과 命令을 통해 東獨의 國民이 獨逸聯  
邦共和國의 國民이라 宣布되어 있음. 다른 國家들의 國民들 특히 獨逸  
民主共和國의 市民에게도 西獨의 処罰統治權을 適用시키고자 하는 數 많은  
立法的 試圖가 있음. 西獨은 오늘날도 아직 不法的으로 「內國」에 그  
리고 外國에 있는 옛날의 獨逸帝國의 財産과 「프러시아」의 옛날 땅을  
西獨의 所有라고 주장하고 있음.——아주 度外視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몇개의  
例에 不過한. 우리들에게 緊急히 必要한 것은 兩獨逸國家間의 關係의  
緩和와 正常化를 위해서 이러한 法的 侵略行爲, 또는 立法的으로나 다  
른 方法으로 規程하고 있는 单独代表라는 越權의 要素들을 除去하  
는 것이라 생각함. 우리는 ——나는 풍자 없이 진지하게 말

함. — 이를 위해 西独政府에게 善隣의인 法律上의 支援을 할 용의가 있음.

나는 분명히 東独은 西独政府와 法秩序 等に 있어 여하한 方法으로도 内國이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는 바임. 그 理由는 東独은 예를들면 「바이에른」, 「바아덴·뷰르텐베르크」州와 같은 西独의 州가 결코 아니며, 独逸聯邦共和國과 같이 同等하고 獨立한 主體的이고도 國際法上 承認된 國家이며, 그의 市民에 대해서는 오직 東独의 憲法과 法秩序가 効力을 가지고 있는 國家이기 때문임.

37. 무엇 보다도 兩獨逸國家의 人民들은 그 國家中 어떤 國家도 核武器의 共同処分權을 가지지 않으며, 兩獨逸國家에서는 生化學武器를 生産하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못한다는데 비상한 關心을 가지고 있음. 兩獨逸國家의 人民들은 國際法的 기반 위에서의 暴力拋棄에 관한 條約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 그 人民들은 이 以外에 兩獨逸國家間에 平和를 確保함에 관한 協商을 저해하는 「파리」條約의 廢棄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 例를들어 兩獨逸國家의 政府들은 이 獨逸 땅위에서 戰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戰爭使賊와 民族의 使賊를 禁止하는 法的 規制를 만들어 내고, 広汎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지고 있음. 西獨의 많은 市民들은 兩獨逸國家間의 關係가 無條件 國際法上의 關係일 必要가 없고 國法上의 關係면 充分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國法上의 關係는 統一된 國家나 聯邦國家內에서만 存在함. 그런데 實際로는 그 關係가 國際法的 性格이어야 하는 서로 完全히 獨立한 主權的이고도 同等한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음.

38. 國法上의 關係나 그렇지 않으면 國際法上의 關係나하는 問題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1969. 5 에 열렸던 東獨社統黨中央委員會의 第10次會議에서 原則上 상세히 진술했음. 나는 모든 關心을 이 陳述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이 「테마」에 관해 이 以上 陳述하지 않기로 하겠음.

西獨의 政策宣言에서 여러번 言及되고 있는 自決의 問題에 관해서, 우

리는 社会民主党과 自民党的의 聯立政府에게 西独勞動組合들과 西独의 其他 民主組織들의 決議와 要求에 따라 西独住民의 自決에 마음을 쓰고, 이 問題를 迂廻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만을 권고하고자 함. 여기에서 分明히 社会政策, 国内政策 및 經濟政策은 물론 对外政策과 武装化政策에 대해 만회해야할 점이 많음을 말해 둠. 그경우 平和의 길을 扞하느냐 戰爭의 길을 扞하느냐의 問題가 核心問題임.

39. 나는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西独에서는 사람들의 意見과 意思가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풀이하고 싶지않음. 어쨌든 西独人民은 自決의 過程에서 아직 결코 사소한 共同決定權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反해, 東独의 人民은 자신의 自決을 實現하여 自己歷史의 主人으로 提高되었음. 東独의 人民은 自身の 自決權을 行使함에 있어 어느 곳에서나, 어느 職場에서나, 어느 共同體에서나 그리고 어느 家族에 있어서나 모두 自主的이고 民主的 討議에 따라 自由로운 民主的인 人民投票로 社会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을, 社会主義的 社会秩序를 그리고 社会主義憲法을 破棄할 수 없도록 決定했음. 바로 이점을 社会民主党領導下에 있는 새로운 西独政府는 認識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그 政府는 스스로 그릇된 決斷에 到達하여 自身을 괴롭힐 것임.

40. 親愛하는 同志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脈絡에서 그토록 찬란한 「獨逸」이라는 概念속에 짧은 旅行을 기도해 보는 것이 有益할지 모르겠음. 그 問題는 물론 아주 複雜化되어있음. 오늘날의 狀況에로 이끌었던 歷史的인 關聯이나 歷史的인 与件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複雜함.

예를 들면, 마치 아직도 하나의 統一된 國家組織이 存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獨逸」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음. 西独에서는 다만 獨逸聯邦共和國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獨逸(도이취란드)」이라 말하고 있음.

「獨逸」이란 -歷史的으로 보면- 아주 變할 수 있는 政治的이며 地理

的인 概念임. 나는 여기에서 전혀 独逸民族의 神聖「로마」帝國的 時期 또는 「나폴레옹」戰爭 時期에로까지 独逸地圖를 소급하고자 하지 않음. 다만 이미 1914年以後에도 独逸은 그의 모습을 여러가지로 상당히 變化시켰음.

周知하는 바와 같이 1871年이래 「나찌」型的 独逸帝國主義에 의해 「大独逸帝國」에로 擴大되었던 独逸帝國이 있었음. 이 独逸帝國은 「히틀러」軍隊와 함께 第2次 世界大戰의 戰火속에서 沒落당했음. 그후에 戰勝強大國들은 상이한 占領地域을 形成했음. 그리고 美帝國主義者와 西獨의 反動勢力들은 1949年에 独逸民族을 分裂시켰고, 또한 占領地域에 일시적으로 아직 存在하고 있던 - 또는 「포츠담」協定에 따라 存在해야 할- 連結部分마저 分裂시켰음. 그리고 그들이 예측화시킨 地域에 帝國主義的인 西獨分離國家인 「独逸聯邦共和國」을 樹立시켰음.

41. 西獨은 적어도 西方側 占領地域에서 独占資本, 國家独占主義的인 資本主義 및 軍國主義의 權力을 回復하기위해 또한 社會主義와 社會主義國家들에 대한 打撃力을 構築하기 위해 樹立되었음. 西獨國家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役割을 하고 있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方法, 저러한 方法이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鬭爭에 使用되고 있음.

이제 20年前부터 東獨과 西獨이 서로 獨立한 國際法上 承認된 主權國家로서 存在하고 있음. 그들 相互間的 關係는 基本的인 相違性, 더우기 그들 社會秩序의 對立性때문에 결코 「內獨關係」로서 看做될 수 없거나 表記될 수 없음. 「본」은 이러한 表現을 自身の 單獨代表라는 越權과 東獨의 屈從에 대한 自身の 要求를 展示하기 위해 利用하고 있음. 두 獨逸國家가 아주 상이하게 發展하였기 때문에, 第1의 獨逸平和國家인 東獨과 軍國主義的이며 独占資本主義的인 勢力들이 支配하고 있는 西獨을 人道的, 共通的인 하나의 지붕밑에 - 그리하여 거의 獨逸民族의 神聖「로마」帝國이라는 뜻에서 - 設計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의 幻想이기도 함.

\* 42. 그리하여 오늘날 「獨逸問題의 解決」은, 歐洲平和政策과 安保政策의 火急한 當面 課題라는 面에서, 完全한 同等權과 相互間의 國際法上의 承認의 基盤 위에서 東獨과 西獨間의 規制된 平和 共存生活의 確立만을 意味할 수 있음. 그것이 오늘날 「獨逸問題의 解決」의 內容임.

兩獨逸國家의 人民들의 경우 모두 獨逸語를 사용하는 人民이라는 事實과 血緣關係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은 西獨이 美國과 「나토」의 世界戰略에 연결되어 있고, 위험한 復仇主義的인 政策위에 얽매어 있다는 事實을 조금도 變化 시킬 수 없음. 따라서 東獨과 西獨間의 善隣關係의 發展은 決定的으로 西獨에 있는 平和勢力의 成長 여하에 달려 있음. 西獨에 있어서의 原子武裝化와 復仇政策 그리고 「네오나찌」黨의 法的, 存在, 現西獨政府에 의한 美國의 流血的인 越南侵略의 支持, 「아랍」諸國에 대한 「이스라엘」侵略의 支持 等等을 볼 때, 우선 善隣關係를 위한 가장 基本的인 前提들이 마련되어야 함.

43. 그 경우는 물론 西獨이 表明한 不吉한 役割을 없애 버리고 西獨안에 現存하고 있는 民主勢力의 支持를 받아 軍國主義와 復仇主義의 影響을 구축하는 것이 社會民主主義의 領導下에 있는 西獨政府의 課題이어야 함. 어쨌든 「브란트」·「셰르」政府가 이러한 方向으로 나아가는 모든 措置를 取하게 될 때, 東獨은 환영하고 이를 支持할 것임. 어떤 秘密에찬 方法으로 社會主義와 帝國主義가 하나의 共同的인 「지붕」 밑에 統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自己欺瞞인 것임. 나는 아무도 두 獨逸國家間의 關係 正常化問題에 대한 우리 의 立場을 誤解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總括的으로 다음과 같이 確實히 해 두 고자 하는 것임.

\* 即 아직도 獨占資本의 支配下에 있는 西獨國家와 社會主義的인 獨逸國家의 統一은 不可能함.

44. 可能하고 心要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번 提議한 것은 主權 國家間에 通用되는 것과 같은 同等權과 無差別 基盤 위에서의 <正常的인 關係>임.

그것은 우리가 拘束力있는 國際法的 條約에 의해 保障되는 平和共存과 善隣關係의 段階的인 形成을 원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

45. 兩獨逸國家間의 <關係의 正常化는 ① 國家境界의 承認, ② 同等하고도 主權的인 獨逸國家로서의 東獨의 承認, ③ 東獨과 그의 市民에 反하는 目標을 가진 西獨에 있는 모든 差別的인 法律과 命令의 除去, ④ 兩 獨逸國家의 原子武器의 拋棄, ⑤ 生化學武器의 生産, 設置 및 使用의 拋棄를 말함,

東獨과 西獨間의 國家的 關係의 正常化는 「本」의 政府가 第3國과 國際組織에 있어서의 東獨에 대한 그의 差別的인 政策을 拋棄하고, 20年 間에 걸친 基民黨 支配의 冷戰이라는 無益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要求하고 있음.

46. 한편 이른바 「할슈타인」原則은 이미 存在치 않고 있다는 「브란트」와 「쉐르」外相의 非拘束的인 表明이 있음. 他面 우리는 每日마다 우리의 外國代表들을 통해 그리고 西獨政治家의 公式的인 宣言에서 「브란트」- 「쉐르」政府가 事實은 東獨 不承認이라는 方向에서 資本主義諸國에 대한 그의 壓力을 상당히 強化시키고 또한 大量的인 報復 措置 威脅까지 하고 있음을 듣고 있음. 거기다 東獨과 第3國間의 經濟關係의 連結, 通商使節의 交換, 個別 通商事務所의 設置까지도 反對하기 위해 西獨의 海外公館들은 「브란트」- 「쉐르」政府의 指示에 따라 妨害工作을 하고 있음. 資本主義諸國과 東獨과의 通商에 反對하는 式的 干涉으로 부터 「브란트」· 「쉐르」政府는 脫皮해야 하며, 通商業務에 대한 「友好的인 許可」는 東獨이 西獨帝國主義者의 條件下에 屈服하는가 안하는가의 與否에 따라 可能하다는 結果가 밝혀질 것임. 「本」의 新政府는 물론 이러한 어리석은 잇발을 撇버려야 하는 것임.

몇가지 기술적인 領域에서의 兩國家間의 關係에 관해서는 協商이 始作 되었음.

47. 西獨政府가 同等權과 無差別의 기반위에서 相互 關係의 規制에 관한 兩獨逸國家間의 協商을 원한다면, 그와 같은 協商을 始作할 수 있음.

48. 어떤 경우든 우리는 東獨과 西獨간의 國際法的 承認은 制限없는 相互間的 國家的 承認, 國境의 承認, 完全한 同等權과 無差別의 基盤 위에 立脚해야 함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49. 나는 西獨政府가 자신의 立場을 검토하여 분명 簡單하지 않은 一定한 兩國家 關係를 規制함에 있어서 進展을 바란다면, 그들의 立場을 現實에 適應시키기를 要望하고 있음.

이제 東獨社統黨은 — 西獨 新政府의 計劃이나 綱領에 있어서는 물론 몇가지의 政府活動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많은 모순점에 直面하여 — 西獨社會民主主義者들과 새로운 西獨政府의 現政策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社會民主黨과 自民黨聯立政府의 行動을 특히 慎重히 검토해야 할 것임. 그 理由는 결국 行爲이 문제이지 말이 問題가 아니기 때문임.

우리는 西獨內에 成立된 狀況과 現在의 發展條件들이 우리로 하여금 西獨에서의 議會民主主義의 公高화와 發展에, 歐洲平和의 確保에, 社會的 進步의 確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促進시키도록 해야 할 動機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50. 우리는 事態를 이렇게 보고 있음. 즉 西獨안에는 現在 反軍國主義的이며 「네오나찌즘」의 대두에 反對하려는 性格을 가진 議會民主主義를 위한 鬪爭이 議事日程으로 되어 있음. 그와 같은 議會民主主義는 軍需資本과 3個의 軍國主義的인 大銀行의 勢力에 대한 決定的인 反對鬪爭속에서만이 觀測될 수 있음. 이러한 鬪爭은 勞動組合이 公式化하고 있는 民主的인 改革과 社會的인 改革 그리고 軍縮要求의 實踐을 위한 決定的인 介入을 통해서 効率的으로 支援됨. 그 경우 民主的인 進步를 위한 이러한 鬪爭에서의 모든 成功은 規制된 共存과 善隣關係를 통하여 兩獨逸國家들의 理解過程을 促進시키는 結果도 초래함.

51. 우리는 極端的으로 保守的인 勢力과 가지가지의 紐앙스를 가진 復仇政治家들의 民族主義的인 射擊下에 이루어졌던 20년에 걸친 支配동안에



基民党政府에 의해 兩獨逸國家간의 理解의 길을 제기하여 konkreit화시켰던 저 스페인식 騎士를 숙청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본」의 새로운 聯立政府에게는 몹시 不安한 일일것임에 대해서는 理解를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西獨政府대신에 이 作業을 도말을 수도 없고 덜어줄 수도 없음. 우리가 共同的으로 平和共存의 테두리속에서 훌륭한 共存을 指向하고자 한다면, 冷戰의 障礙는 除去되어야 함. 「본」에 있는 새로운 聯立政府는 그에 대한 代價로 東獨政府로 부터 여하한 變種된 特殊한 報酬도 바랄 수는 없음. 그 理由는 그 障礙들은 바로 그것들을 쌓아 올린 사람들에 의해 결국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復仇政策, 单独代表라는 越權의 政策, 또는 核武装의 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님. 그점은 元來 明白히해야 함.

52. 「브란트」가 그의 政策宣言에서 獨逸의 統一實現에 관해 言及하지 않았음은 充分히 現實主義的이었음. 그도 独占資本의 支配下에 있고, 軍國主義的이며, 帝國主義的인 精神으로 教育받아 領導되고 있는 聯邦軍을 가지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이 「나토」와 美國의 世界戰略에 얽매어 있는 狀況下에서는 獨逸統一을 위한 前提들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을 分明히 理解하고 있는것 같음.

그러나 東獨의 憲法은 東獨의 人民과 西獨 人民에게 脫出口를 가르켜 주고 있음. 同等權의 기반 위에서 兩獨逸國家의 正常的인 關係를 設定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憲法속에 確定되어 있음. 東獨과 그의 市民은 우리의 憲法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帝國主義가 獨逸民族에게 強要하고 있는 獨逸分斷을 克服,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기반 위에서 結合(統一)될 때까지 兩獨逸國家의 段階的인 接近을 추구하고 있음. 바로 이점을 우리는 이미 東獨 共產黨 第7次黨大會에서 決議했음.

53. 親愛하는 同志여러분! 바로 이점이 우리의 明白한 民族的 展望이며 階級의 展望임.

그 實現은 高度의 우리 日常勞動의 成果, 즉 發達한 社會主義體制를

形成함에 있어서, 人間을 위한 科学技術革命을 完成함에 있어서, 우리의 社会主義的 民主主義와 우리의 社会主義的 人間共同體의 構築과 持續的 發展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모든 勞動者의 作業 여하에 의해 달려 있음.

우리는 올바른 길위에 있음. 우리는 우리의 目的을 達成할 것임.

「올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議長이 「하이네만」

西獨大統領에게 보낸 書翰과 條約案 (1969.12.17)

獨逸聯邦共和國大統領「하이네만」에게,

歐洲에서 平和를 確保함에 이바지하고 또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에 平和共存의 諸原則에 따라 同等한 關係樹立을 가능케 하려는 意志에 이끌려 나는 당신에게 書翰을 쓰고 있음.

平和적인 共存과 兩獨逸國家간의 善隣 關係의 形成은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고 効力있는 國際法的 規範을 基반으로 하여 그 關係를 形成하는 것을 要求하고 있음. 그것은 歐洲心臟部에의 緊張緩和를 위해, 東獨과 西獨을 위해, 自己自身の 市民과 歐洲의 人民들앞에 特殊한 높은 責任을 担当할 수 있고 利得만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東獨의 國家評議會가 同意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同等한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의 案을 傳達함.

協商과 條約 署名의 代表로서 나는 「슈토프」 東獨首相과 「빈체」 東獨外務相에게 全權을 委任합니다. 東獨과 西獨의 平和的 共存이 갖는 重要性에 비추어 나는 가능한 限 1970.10月 안에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함.

나는 西獨大統領인 당신이 곧 兩獨逸國家간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도달할 수 있는 實質的인 協商에 들어감에 贊成해 주셨으면 하는 期待를 말씀 드리겠음.

1969. 12. 17 伯林에서

格別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議長 「올브리히트」

<附 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同等한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案: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評議會議長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大統領은 歐洲에 있

어서의 緊張緩和와 平和確保를 위해 效果的인 큰 貢獻을 遂行하고, 兩獨逸 國家間의 緊張을 段階的으로 解消시키고, 兩獨逸 國家間에 同等한 主權國家로 서 規制된 共存生活와 善隣關係를 초래하며, 歐洲安保體制의 創造를 促進시 키려는 努力에서 出發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關係를 樹立함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兩 國家의 全權 委任者 로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評議會議長은 東獨首相「빌리·슈토프」氏와 東獨外相 「오토·빈처」氏를, 獨逸聯邦共和國의 大統領은 西獨首相「빌리·브란트」氏와 西獨外相「발터·셸」氏를 任命하여 適切한 形式의 全權委任狀을 交換한 후 다음 規定들에 合意했다.

### 第 1 條

條約을 締結하는 兩側은 모든 差別없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과 規範을 基반으로 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正常的인 同等한 關係를 樹立함에 合意한다. 雙方의 相互間의 關係는 특히 主權平等原則, 領土保全과 國境의 不可侵性の 原則, 國內事項과 相互間의 利害의 不干涉原則들에 立脚하고 있다.

### 第 2 條

條約을 締結하는 兩側은 서로 既存하고 있는 境界와 그의 不可侵性에서 現在의 領土狀態를 承認한다. 兩側은 第 2 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成立한 歐洲에 있는 境界를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境界는 勿論 獨逸民主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간의 「오데르·나이세」境界를 承認한다.

### 第 3 條

條約을 締結하는 兩側은 그들 相互間의 關係에서 暴力의 威脅과 暴力의 行使를 拋棄하고 相互間의 모든 紛爭을 平和的 方法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兩側은 第 1 條에 明示된 內容에 對立되고 그리고 條約相對方을 差別하고 있는 모든 措置들과 本條約에 對立되는 法律과 其他法令을

廢止함은 勿論 그에 該當하는 裁判判例들의 修正措置를 취할 義務를 진다.

#### 第 4 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核武器를 所有하든가 또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를 処分함을 拋棄한다. 兩 國家는 軍縮에 관한 協商을 할 義務를 진다. 兩 獨逸國家의 땅 위에서 生化學武器가 生産되어서도 아니 되고 所有 또는 設置되서도 안된다.

#### 第 5 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서로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兩 國家는 서로 首都인 伯林과 「본」에서 大使에 의해 代表될 수 있다. 大使들은 1961.4.18日字의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會議에 따르는 모든 外交特權을 享有한다.

#### 第 6 條

部分的인 地域들에 관한 關係는 別途로 條約上 規制한다.

#### 第 7 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的 地位를 自主的인 政治單位體로서 尊重하고 이러한 地位의 고려하에 西伯林과의 關係를 規制할 義務를 진다.

#### 第 8 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지체없이 「유엔」機構의 普遍性的의 原則에 따라 「유엔」機構에의 完全한 會員國으로서 加入을 申請한다. 兩 國家는 다른 國家들이 「유엔」機構에 兩獨逸國家가 加入함을 支持할 것을 保證한다.

#### 第 9 條

本條約은 10年期間 豫定으로 締結된다. 本條約은 批准을 받아 批准書를 交換한지 一箇月後에 効力を 發生한다.

本條約은 「유엔」憲章 第102條에 따라 「유엔」事務局에 登錄된다.

獨逸民主共和國 을 대표하여

獨逸聯邦共和國 을 대표하여

資料 4

「하이네만」西獨大統領이 「올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

議長에게 보낸 書翰

( 1969.12.19 )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議長 「올브리히트」에게 ,

매우 尊敬하는 國家評議會 議長 :

나는 1969.12.17 字의 당신書翰을 받았음을 確認함. 나는 우리가 歐洲에 있어서의 緊張緩和에 대한 崇高한 責任을 진다는 點에서 당신에 同意하는바임. 나 역시 獨逸聯邦政府와 더불어 平和의 確保와 緊張緩和에 協調할 義務를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는 것이 우리의 共同的인 갈망임. 따라서 나는 당신이 表明한 協商을 시작할 準備를 환영함.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規定에 따라서 나는 당신의 書翰과 그 附錄을 獨逸聯邦政府에 이송했음. 당신이 傳達한 提議들을 檢討하는 것은 聯邦政府의 責任이며 聯邦政府가 그 問題를 위해 要求되고 있듯이 迅速히 立場을 취할 義務를 지고 있음.

1969.12.19 「본」에서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聯邦共和國大統領 「하이네만」

## 「브란트」西獨首相의 施政演說

( 1970.1.14 . 西獨議會 第 22 次 會議에서 )

1. 이미 20年 以上이나 獨逸땅 위에 存在하고 있는 兩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안에는 獨逸의 統一이 어떻게 展望되며 共同的인 未來가 어떻게 展望되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關係 完全히 상이한 그리고 合意할 수 없는 觀念들을 表現하고 있음. 獨逸이 바로 國家的으로 分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위에는 完全히 상이한 社會體制가 對立하고 있기 때문에 不可避한 對決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希望은 누구나 甘受할 수 없음. 이 點에서 우리는 「울브리히트」와 見解를 같이 할. 즉 우리의 體制와 東獨의 秩序로 되어 있는 體制간에는 여하한 混合도 여하한 쓸모없는 妥協도 있을 수 없음.
2. 나는 10.28日의 施政演說에서 다음 事項을 確認했음.
  - 가. 누구도 獨逸사람들이 모든 다른 民族들과 마찬가지로 自決權을 가진 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음.
  - 나. 2次大戰과 「히틀러」政權에 의해 民族的 叛逆으로부터 생긴 모든 問題들이 窮極적으로 歐洲平和秩序속에서만 解決될 수 있음.
  - 다. 앞으로의 ( 70年代 ) 政治의 實際課題는 可能한 限 그리고 우리힘이 미치는 限 兩獨간의 關係가 現在의 硬直化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는데 있음.
  - 라. 規制된 共存을 통하여 相存 ( Miteinander )에 이룬다는 것은 獨逸의 利害와 一致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歐洲平和와 東西關係에 대해서도 그 意義를 가지기 때문임.
  - 마. 暴力의 行使 또는 暴力의 威脅을 拋棄함에 관한 拘束的인 協定에 대한 우리의 準備는 東獨에 대해서도 해당함.그 外에도 西獨과 東獨은 決코 서로 外國이 아니라는 事實임. 그리



고 또한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은 우리에게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東獨을 「本」의 內國으로 만들고자 하거나 東獨에 植民的인 地位를 강요하고자 한다고 主張하는 東伯林의 抗議는 不合理함.

3. 그런데 紳士淑女 여러분, 소위 相互理解할 準備가 되어 있다든가 東獨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西獨內的 平和를 사랑하는 勢力들에게 그들의 영향을 強化시키라고 促求하는 바와 같은 일은 계속되지 않을 것임. 事態가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가 東伯林이나 東獨에 있는 相互理解할 準備가 되어 있는 勢力들에게 從來에 있어서 보다도 強力히 자신의 權力地位를 歐洲民族들의 平和보다도 重要視하는 獨斷論者와 左派反動들에 對抗하여 貫徹시키라고 促求하는 것도 지속하지 않을 것임.

西獨政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단순한 反對抗議에 빠지도록 힘쓰지는 않을 것임. 西獨政府는 客觀的으로 歐洲의 兩部分, 東西와 獨逸의 兩部分, 兩獨간의 關係改善을 위한 可能的인 歷史的인 發展을 能動的으로 促進할 것임. 東과 西에는 分斷의 利益을 보는자가 東과 西에 있는 사람들은 그속에서 苦痛을 느끼고 있음. 우리의 陣營속에서 지당한 經營性을 證明하려고 努力하는 가운데 最近 東伯林으로부터 東獨宣伝家들을 통해 그중에서도 東獨國家元首 「울브리히트」가 우리의 西獨大統領 「하이네만」에게 보낸 條約案을 西獨에서 國民投票에 붙일 것을 要求했음. 勿論 이 文書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우선 「案」이라고 表記한 案제임. 나는 스스로 당신들에게 해야 할 나의 報告를 宣伝에 利用하고 싶지는 않음.

4. 우리는 注目할만한 價值있는 發展을 이루어야 함.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은 ——東獨을 除外하면——많은 制限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西獨의 善意를 理解했음. 그 國家들은 言行이 一致해야 한다는 것에 注目했음. 그것은 우리의 確信과 부합함. 즉 이는 어느곳에서나 留意되어야 함.

東獨에는 언제나 새로운 要求에 분노하는 指導的인 勢力이 最近 存在하고 있음. 그 경우 그들의 高度의 頑固性을 認定해야 할 것임. 나는 세가지 例를 들고자 함.

첫째, 東獨政府는 우리가 國際法上 承認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은 우리에게 東獨과의 條約을 기대하고 있음. 그것은 勿論 그렇게 말할 수 있음. 「바르샤바」條約國家들과 締結한 條約과 마찬가지로 拘束力을 가져야 되는 條約을 기대하고 있음.

둘째, 東獨은 西獨政府가 「파리」條約을 檢討하여 大西洋同盟에서의 자신의 義務를 감소시키거나 清算해야 한다는 것을 갈망하고 있음. 소련과 다른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期에 있어서의 歐洲安保會議가 既存하고 있는 同盟體들의 解體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封鎖되어 있다고 強調하고 있음. 同等한 減軍問題 자체도 現在 어느곳에서나 時期에 알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있는것 같지가 않음. 紳士淑女 여러분, 나는 이곳 本議會에서 西獨政府를 위해 「파리」條約이나 大西洋同盟에 있어서의 우리의 義務를 討論하지 않아야 한다고 強調할 必要는 없음.

셋째, 東獨政府는 자신이 이미 20年前에 「오데르·나이세」線을 平和의 境界로 承認했고, 그것도 모든 獨逸사람과 西獨住民의 이름으로 承認했다고 宣言하고 있음. 이제 나는 이러한 宣言이 「폴란드」政府에 편안하게 들렸던 것인지 알 수 없음. 이러한 宣言의 論理는 「폴란드」의 西方境界가 우리들에 대한 「테마」가 될 수 없다는 結果가 될 것임. 내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폴란드」人民共和國의 見解는 이러한 것이 아님.

5. 나는 最近에 다시 言及했던 「眞實의 時間」을 위해 存在함. 내가 本會議에서 한 말은 國外에서 한 말과 같으며, 實現될 수가 없는 希望을 國民들에게 불러 일으키지는 않겠음. 政治는 언제나 近視眼的으로 볼 수 있는 成果를 가져와야 한다는 印象을 매개해 준다는 것은 잠시 의면하는 것과 같음. 成年의 國民들로부터 尊敬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難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함. 나는 이러한 背景을 意識하여 「本」과 東伯林간에 協商을 해야 하고, 協商을 할 수 있고, 결국 協商될 것

\*

이라고 말할 수 있음. 東伯林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論爭的인 주먹질의 交換은 하지 않겠음. 그러나 우리側에도 拋棄할 수 없는 指向點들이 있음.

첫째, 民族自決權

둘째, 歐洲平和秩序의 테두리 속에서 民族的 單一性和 自由에 대한 努力.

셋째, 全伯林을 위한 4大強國의 責任을 損傷시키지 않는 西伯林과의 共屬性.

넷째, 西獨政府의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관하여 西方 3大國이 가지고 있는 權利와 責任에 대한 尊重.

우리는 3大強國의 權利와 責任을 뒤흔들거나 뒤흔들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음. 그 속에는 西方3大國의 政府는 勿論 西獨政府에 대한 拘束들도 包含되어 있음. 紳士淑女 여러분, 나는 우리의 힘에 겨우며 西獨이 無制限한 主權을 추구할 關心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事項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伯林에서 活動해보았음.

6. 즉, 우리가 東獨과의 關係에서 意圖하고 있는 모든 것은 西方 3大強國의 權利를 저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勿論 同盟國과 友邦國간의 慣例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러한 問題性 때문에 3大國政府와 協議하기 시작했음.

紳士淑女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書類들은 西獨이 西方과, 東獨이 東歐와 얼마나 굳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認識할 수 있게함.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리고 누가 그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한다고 告發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非生産的인 討論을 하려는 몇사람을 위해 힘을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음. 우리들 중의 大部分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對答을 가지고 있고, 나는 本會議에서 그것에 관해 널리 合意한 對答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 몇 사

람만이 아직도 歷史의 研究를 다룰 것임. 政府들은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出發해야 함.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오늘로부터 보다 나은 來日을 위해 무엇을 發展시킬 수 있는가를 把握해야 함.

7. 그 경우 우리는 이 世上에서 우리 民族밖에는 6,000萬(西獨)과 1,600萬(東獨)이 結合하고, 各 相異한 經濟潛在力이 結合한다는 뜻밖의 일<sub>에</sub> 直面하여 感慨할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함. 그러나 이제 그에 관해서 論爭할만한 價值는 거의 없음. 나는 이러한 點에서 眞實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명백히 하고자 할뿐임. 즉 어쨌든 아직도 民族의 單一性이 存在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獨逸人들의 單一性은 무엇보다도 첫째,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만에 달려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行하는 바에 달려 있으며, 둘째로, 오직 條約에 規定되어 있는 것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友邦으로서 얻게 되며, 1945年의 「포츠담」協定보다는 오히려 70年代, 80年代에 그리고 必要하다면 70年代에 歐洲分斷을 克服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8. 「헤르만·하임펠」教授는 이미 1955年에 歷史家의 眼目에서 그는 우리 獨逸社會에 永遠히 부여된 統一의 權利는 存在치 않으며, 또한 우리가 그 統一의 기회를 도박으로 상실시키는 過程과 對立할 것을 留意시켰던 切實한 目標를 設定했음. 獨逸人의 統一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하나의 기회임. 우리가 그것을 도박으로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眼目에서 볼 때 制限된 힘을 가진 西獨을 위해, 4大強國의 權利를 위해, 모든 우리 歐洲 이웃들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政治的 責任을 지고 있는 우리 全體에 달려 있음. 우리의 目的은 「헤르베르트·베너」가 公式化했던 것처럼 固有한 主權者인 獨逸人民의 意思를 有効化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

9. 紳士淑女 여러분, 그 경우 이미 한가지 獨逸問題만이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獨逸이라고 말하는 경우 個別問題性으로서 考察하고 또한 이미

1950年代에 試圖했던 바와 같이 단순히 總括해서 對答할 수 없는 많은 獨逸問題들에 關係 말해야 함.

오늘날 獨逸問題들은 비록 서로 分離시킨다든가 특히 孤立化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이하게 考察되어야 함.

내가 「獨逸問題들, 보다 많은 獨逸問題들」이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 모두가 이와 關係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임. 즉 東歐地方과 그곳 사람들, 그곳에 避難한 사람들, 그곳에 移住한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그곳에서 탄생한 사람들의 運命, 소련의 占領地帶에서 東獨이, 그리고 西方 3 大國 占領地帶에서 西獨이 생기고, 이 兩者는 이미 臨時政府들이 아니고 兩者는 經濟的인 地位에 있어서도 그렇고 兩超強大國의 가장 緊密한 「파트너」로 되었다는 點, 그리고 西方 3 大國의 無制限한 主權下에 있는 4 大強國都市의 部分인 西伯林의 現實들, 거기에다 3 大國의 委任에서 이루어진 西伯林의 西獨에의 經濟秩序, 財政秩序 및 法秩序의 연결들과 西獨政府를 통한 對外에 대한 代表 等を 생각하고 있음.

10. 獨逸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各問題들은 어느때든 그以上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여러해 前부터 우리를 동반하고 있는 이러한 狀況에 直面하여 獨逸政策이 이와 \* 關係해서 指向해야 할 目標은 무엇인가하는 問題가 제기됨.

첫째, 우리가 오늘날 自由主義的으로 秩序지워져 있는 獨逸의 部分을 自由롭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獨逸聯邦共和國은 스스로 자신을 認定해야 한다는 것임. 둘째, 우리는 모든 問題를 平和속에서만 해결하고자 하고 또한 解決해야 한다는 것임. 셋째, 더 많은 人權을 認定하고 實際化시키기 위해 우리가 공헌해야 한다는 것임. 바로 이것이 우리가 指向하고 對答할 點들임.

여기에 論理的으로 獨逸政策은 어떻게 이러한 目的을 觀測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抬頭됨. 그것은 이미 民族國家라는 傳統的 手段으로써가 아니라 다만 다른 國家와의 同盟에서만이 可能함. 나는 도시 未來

에 있어 여하한 重要性을 지닌 政治的 解決은 同盟體, 安保體制, 또는 共同體 이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앞으로는 重要性을 지닌 獨逸問題들은 民族國家的으로나 傳統的인 뜻에서 取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歐洲平和秩序를 위한 段階的인 努力에서만 取扱될 수 있을 것임.

11. 그러므로 現實을 認識하고 尊重하는 것이 問題임. 이것은 既存하고 있는 不法을 斷念하면서 甘受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남에 따라 現實과 관련되어서 分斷되어 있는 性格을 가진 歐洲에 있는 境界를 다루는데 이바지하는 것임.

西獨政府는 1969.10.28 本議會에서 다음과 같이 宣言했음. 즉 우리의 民族的 利害關係는 西와 東 사이에 두다리를 걸치는 것을 許容하고 있지 않음. 우리 나라는 西方과의 協力과 調整 그리고 東方과의 理解를 必要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 自體 속에 完結된 獨逸對外政策이 있고 東方政策과 西方政策간에는 對立은 없음. 施政演說을 發表한지 2個月半이 지난 오늘날 先入觀없이 回顧해보는 者는 이 政府가 極히 自然的인 우리의 与件에 부합하는 바대로 東方側을 향해서 보다는 더욱 西方側을 향해 많은 活動을 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을 것임. 나는 西方側이 歐洲가 다시 展望을 얻게된 「나토」理事會의 會議를, 「워싱턴」에서의 國防相의 對話를, 「덴·하그」에서의 頂上會談을 기억하고 있음. 나는 政府代表로 온 나의 同僚들이 「브뤼셀」에서 共同市場의 終局的 段階에 도달함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時間을 빼앗고 힘을 소모한 協商을 기억하고 있음. 나는 西歐同盟의 테두리속에서 이루어졌던 지난 會合時에 外相活動에 이르기까지 本政府에 의해서 歐洲原子機構인 「유라툼」(Euratom)을 確保했음도 생각하고 있음.

12. 紳士淑女 여러분, 어느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東方을 향한 緊張緩和를 위해 努力하는 경우, 우리 友邦과 盟邦과의 信賴와 協議가 위에서 유발될 수 있음은 明白할 것임. 그런데 그 경우 다른 곳에서 特

別히 留意하여 우리 西獨政府는 政府가 지니고 있는 制限된 行動領域을 최대한 채우는 경우, 事態가 어떻게 發展할 것인가를 추종해 본다면 아무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임.

나는 勿論 西獨에 있는 우리들 中에 진심으로 근심하고 의아심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에 유의하고 있음. 그러나 나는 實際政治에 있어서 어제까지 또 엇그제까지 올바를 수 있었던 一定한 方法들이 오늘날 이미 合目的일 수 없거나 그릇된 것일 수 없는 領域들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再三 理解하여 주기를 바람.

나는 그러한 方法으로 西獨을 害치려고 하는 경우 우리 西獨政府도 害치거나, 害치고자 애쓰는 者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없음.

13. 우리 政府는 그에 의해서 誤導당하여 그 方向을 離脱하지도 않을 것이고 誤導당해서 그 方向에서 離脱해서도 아니됨. 西獨은 두 世界 사이에서 방황하는 者가 아님. 保證된 友誼와 保障된 同盟의 背景과 安保 없이는 도시 獨逸이 緊張緩和政策에 能動的으로 이바지할 수는 없음.

우리 政策의 核心은 暴力拋棄임. 이러한 暴力拋棄는 모든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基盤이 될 것임. 全體獨逸民族이 가까운 期日 안에 講和條約을 希求할 수 없기 때문에 暴力拋棄-講和條約은 적어도 暴力을 拋棄할 수 있음-는 東歐의 여러 나라들과 오늘날 解決할 수 있는 個別的인 政治的 問題의 規制를 위한 基盤이 될 수 있음. 그런 限에서 우리는 暴力拋棄 속에서 獨逸民族을 위해서는-그리고 나는 大西洋同盟에 있어서의 우리의 安保貢獻도 생각함-아직 平和政策만이 存在할 수 있기 때문에 持續性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基民黨院內總務는 1.12日字의 自己 院內勢力을 위한 聲明에서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음. 즉 우리는 暴力拋棄, 「폴란드」와 東獨의 事項에 있어 大聯政의 政策을 支持하고 이러한 獨逸政策의 內容을 다시 再確認했음.

14. 전혀 다른 뜻의 陳述들을 한 後에 나는 「바르텔」同志의 이러한 宣言을 어떤기간에 目的에 있어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는 希望과 方法

과 길에 관한 意見의 相違性이 實質上 그리고 一問題의 性格이 제시되는 경우—信賴할 수 있게 서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希望에서 환영함.

따라서 紳士淑女 여러분, 나는 이곳에서 다만 소련과의 意見交換이 暴力拋棄에 이르는 目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持續되고, 더우기 問題의 性質上 信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 說明할 수 있음. 우리 西獨政府는 그 다음에 「폴란드」 人民共和國政府와 그에 適合한 意見交換을 할 생각임. 우리 政府는 그 意見交換들이 事實上 進展하는 경우 本議회의 院內總務團들과 이 政策에 關係 包括的인 것은 아니나 어제—처음은 아니지만—院內總務들과의 對話에서 이루어졌던 바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對話할 것임.

西獨政府와 同盟國들과의 協議는 日常 現實性을 超越하는 「테마」들로 다루었음.

나는 이달末에 「파리」에서 仏蘭西 大統領을 訪問하고, 3月初에 「런던」에서 英國外相과 會晤할 것이며, 4月에는 美國大統領을 만날 것임. 이러한 3回의 相逢時에 우리는 특히 이미 이달에 「파리」에서 西獨政府가 原則上 肯定的으로 대하고 있는 提議된 歐洲安保會議에 關係 對話할 것임. 西獨政府는 根本적으로 歐洲를 위해서 確實한 成功을 約束하기 위해 充分히 準備해야 함. 歐洲安保會議는 安保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파트너」가 拘束的인 義務를 받아 들이는 경우에만 成功할 수 있음.

15. 紳士淑女 여러분, 우리는 大西洋同盟의 테두리속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歐洲安保問題에 대한 意見形成에—또한 거기에는 同等한 在來式 武器와 原子武器와 關連된 軍縮도 屬함——能動的으로 그리고 建設的으로 參加할 것을 周知시킬 수 있음. 우리의 見解에 依하면 經濟的 協力과 科學技術的인 協力問題도 善意의 宣言을 넘어(구체적으로) 對答되어야 함. 西獨政府는 그에 關心을 가진 모든 國家와 意見交換을 하거나 持續할 것임. 그 경우 雙務的인 暴力拋棄가 그와 같은 歐洲會議와 그의



作業은 勿論 여러가지로 双務인 協力이 促進되는 경우 특히 만족할 수 있을 것임. 勿論 그때까지 兩獨間의 領域에서 하등 肯定的인 徵兆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會談에의 우리 西獨政府의 參加意義도 없게 될 것이라는 點도 明白해짐. 나는 바로 그것을 이곳에서 條件으로서가 아니라 解明으로서 分明히 말하고자 함.

그 밖에 西獨政府는 西方3大國이 伯林의 地位確認과 그 都市의 地位를 위한 改善等 伯林에 關係 소련과 對話하려는 생각을 환영함. 나는 이러한 協商이 成功的으로 進行되기를 바라고 있음. 그 協商은——적어도 現時點과 관련시켜 볼 때 大國中 어떤 나라의 妨害宣傳도 받지 않고——우리가 認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따라 그 都市의 地位를 變化시키고자 하는 限 有利한 出發點이 될 수 있음.

16. 紳士淑女 여러분, 바로 이 時期의 現實과 이 世上의 現實에는 우리의 共通인 經濟體制와 貨幣制度에서 그 都市가 차지하고 있는 地位, 西伯林과 西獨政府간의 結合이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도 包含되어 있음. 나는 東獨이 越權하여 西獨政府에게, 전혀 東獨의 管轄權에 속할 수 없는 것이지만, 例컨대 伯林에서 西獨逸議會의 全院會議나 委員會들의 會議를 여는 것을 中止하라는 要求는 앞서 말한 國際的 對話를 妨害하는 行動으로 봄. 우리는 東獨人民會議가 그곳(東伯林)에서 規則的으로 會議를 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도 西伯林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權利를 가지고 있음. 우리가 西獨議會의 議員으로서 또는 다른 資格으로 伯林에서도 集會할 수 있다는 우리 權利는 蘇聯의 見解에 의하면 그곳에서 至上權을 가지고 있는 西方3大國에 의해서도 언제나 承認되었음.

그리고 伯林協商에 關係 말한다면 나는 勿論 同協商을 惡化시켜서는 아니되며, 이 都市를 中心으로한 緊張緩和가 伯林에서 살고 있는 人間을 위한 改善을 초래해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음.

17. 紳士淑女 여러분,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人民共和國의

政府들도 西獨과의 關係改善에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關心깊게 認識했음. 나는 이로부터 一定한 時期에 實務的인 連結點이 結果되기를 바라고 있음. 「야노스·페터」(Janos Peter) 「헝가리」外相은 「도이취」 「텔레비」와의 「인터뷰」에서 西獨政府에 전적으로 同意한다는 생각을 전개했음. 歐洲에서 우세하고 있는 것이 歷史的인 共通性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이데올로기」적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質問에 대해서 「헝가리」外相은 이러한 두가지 要因이 現存하고 있음을 確認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세계 要因을 添加했음. 즉 그는 이 세계 要因을 共同責任性이라 불렀음. 그는 歐洲에서 가장 오래된 이러한 用語를 받아들인다면 資本主義國家들과 가장 오래된 社會主義國家들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戰爭危險을 轉向시키기 위해 우리의 對立을 脫皮하여 우리에게 대한 共同責任을 받아 들일 것을 世上에 表示해야 한다고 부언했음. 우리는 對立을 否定하지 않음. 우리는 社會體制들간의 對立性을 無視하지 않음. 동시에 우리는 共通性和 歷史的인 結束들을 봄. 이것은 東과 西에 있는 歐洲民族들의 關係에 대해서도 해당함. 이는 自己民族이 두 部分으로(兩獨으로) 分斷되고 두개로 組織化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만들고 實際 緊張緩和를 시작해야 할 責任性을 지고 있는 民族에 대해서도 해당함. 이러한 責任은 客觀的으로 兩側이 同一하게 부담함. 卽 이 責任은 「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東伯林에도 있음. 그리고 이쪽만의 行動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의 行動도 必要로 하고 있음.

18. 西獨은 그 拘束과 信念에 있어 西方側의 한 國家임. 東獨은 拘束과 그 指導層의 意思에 의하면 東方側의 한 國家임. 이것은 事實들임. 이 事實들이 可能的인 경우 共存을 組織化하고 (體制간에 배우는) 相存을 試圖함으로써 對決로부터 協同으로 넘어 가는 것을 妨害해서는 아니 됨. 이러한 國際的인 目的 設定에 있어—그리고 그와같은 것이 問題되는 경우—이곳은 勿論 저쪽(東獨)의 獨逸人들을 위한 重大한 하나

의 課題가 있음. 西独政府는 그로부터 생기고 있는 結果들에 대한 責任分擔을 받아 들이기로 決定했음. 西独政府는 이러한 생각에 의해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妨害들이나 비방이나 의혹에 의해 妨害받지 않을 것임. 西独政府는 이러한 「테스트」에 順應하고 있음. 西独政府는 적어도 그 「테스트」를 試圖하기 위해 이제 可能한 것을 해 보겠다는 眞摯性, 事實性 및 理性의 試驗台위에 자신과 다른 國家들도 세워 놓고 있음. 安保에 대한 視野를 가지고 이 試驗을 한다는 것이 西独首相으로서 前의 伯林市長으로서 오래 걸렸던 나의 課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나의 課題인 것임. 나의 信念에 의하면 原則적인 對立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내가 1962年 가을에 「하바드」大學에서 「모험에의 強制」라고 말했던 協同生活의 形態들, 그러므로 共存形態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試圖해야 한다는 것임.

19. 東伯林에서는 우리가 兩 獨逸國家는 서로 外國일 수 없다는 表現을 사용했다는 것에 抗議했음. 이것은 國際法的 意義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異議를 제기한다는 것임. 나는 그에 관해서 이미 앞서 말했음. 나는 그것을 이제 深化시키고자 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重要的 實際적인 意義를 갖는다고 말함. 그것은 무엇보다도 相對方 東獨이 그토록 즐겨 말하고 있으나 왕왕 偏派的으로만 보고 있는 現實들과 부합함. 「라이프찌히」와 「메일랜드」 또는 「바르샤바」에 있는 사람들간의 關係보다도 「라이프찌히」와 「함부르크」에 있는 사람들간에 보다 強한 血緣上的 關係들이 存在하고 있음. 오솔길에서 살고 있는 자와 등불이 켜져있는 산에 살고 있는 자와의 關係는 바로 등불이 켜져 있는 산에 살고 있는 자와 「파리」의 6街간의 關係와는 다름. 「파리」, 「프라하」, 「런던」 또는 「바르샤바」사이에 障壁이 있는가? 이 獨逸民族에게 數 많은 殺生과 아직도 끝맺지 못한 死亡者의 名單을 強要당하고 있는 바와 같은 内部에 流血的인 境界線이 있는가?

우리가 特殊한 種類의 關係라 말한 理由는 무엇인가?

20. 만일 東独共産党的 指導層이 이러한 特殊性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完全히 한가지 생각을 가질 것임. 앞으로는 이러한 特殊性들이 이 이상 있어서는 안됨. 즉 關係를 맺지 않고 있다는 特殊性들이 있거나 否定的인 關係들이 있음.

獨逸 땅위에 있는 두개의 國家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數많은 共通性을 가지고 있는 한 民族의 部分들임. 兩 國家가 實際問題들을 可能한 限 理性的으로 서로 規制하는 것 以外에 무엇이 더 接近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準備가 되어있음. 우리는 經濟, 科學, 交通制度, 通信, 文化, 「스포츠」, 情報交換 等等의 領域에 걸쳐 兩側이 受諾할 수 있는 規制들을 초래할 수 있는 合意들을 創造해 념에 있어 도와줄 생각임. 이러한 方法으로 우선 우리는 兩 國家의 第3國과의 關係와 비등한 關係를 우리가 가짐에 必要한 補充을 實現시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補充의 必要는 <한 民族 그 自體의 두개의 國家的 秩序> 속해야 하는 바와 같은 特히 密接한 關係를 초래하기 以前에 이행되어야 함.

21. 東伯林政府에 있어서는 政治的인 同等權이 問題되고 있고 또한 一定한 抽象的인 形式들이 問題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음. 그러나 西独政府가 그 경우 同時에 分断된 獨逸內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生活의 便利化를 초래시키는 경우에만 많은 要求들에 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理解를 해야함.

國家의 福祉란 그것이 同時에 國民의 福祉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價値가 없음.

現在 東独政府는 協商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음. 우리는 그것을 認知했음. 우리도 「바르샤바」條約의 다른 會員國들과 마찬가지로 協商할 準備가 되어 있음. 西独政府는 東独政府에게 暴力拋棄宣言의 交換에 관하여 同等權과 無差別의 土台 위에서 協商할 것을 제의함. 蘇聯과 이에 관한 意見交換이 進行된 후——勿論 肯定的인 出發點에 關하여 이미 아무것도 언급됨이 없이——우리는 東独政府와도 그에 해당하

는 協商을 시작하는 것이 實際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暴力拋棄宣言들은 이미 시작된 意見交換 속에서 兩側의 規制된 關係를 위해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 모든 問題들을 論議함에 훌륭한 테두리를 제공해줄 것임. 그 경우 勿論 그 一方이 「이것이 나의 條約案이다. 이것만이 受諾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問題되지 않음. 만일 그것이 東獨의 態度라면 拒否만이 있음.

22. 우리의 見解에 따르면 細目の 公式化를 確定하기 以前에 兩側의 利害에 서로 關聯되고 있는 모든 問題들에 關係 直接的인 意見交換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合意할 關心이 있음. 예를 들어 現在 西獨과 蘇聯간에는 바로 이러한 方法으로 意見交換이 이루어지고 있음. 언제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意見交換이나 이러한 協商들은 곧 시작할 수 있음. 各側은 그 경우 自由로이 論議하고자 원하는 모든 點을 제의할 수 있어야 함. 나는 어떤 條約이든 協商의 初期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協商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음.

23. 나는 東獨首相에게 이에 따라서 該當 提議를 하자는 것임. \*

이 경우에 西獨政府의 主導原則은 다음과 같음.

첫째,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유지할 義務를 짐. 兩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님.

둘째,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國家間의 法の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待遇의 배제,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争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義務 및 兩側境界를 尊重할 義務와 効力을 가져야 함.

셋째, 다른 條約 當事國의 領域에 있는 社會의 構造를 暴力으로 變化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義務도 包含됨.

넷째, 兩 政府와 그의 全權代表는 善隣的인 協力を 그중에서도 專門技術的인 協力, 그리고 그 경우 政府間의 協定에서 共通的인 生活의 便利化를 確定할 수 있는 協力の 規制를 추구해야 함.

다섯째,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關係한 強大國의 既存하고 있는 權利

와 責任은 尊重되어야 함.

여섯째, 伯林內에 그리고 伯林을 에워싼 地位의 改善에 관하여 合意를 하려는 大國의 努力을 支持해야 함. 그 以上의 點에 관해서도 理解할 수 있음. 그 경우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는 時期的으로 制限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함. 그 規制는 이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는 時間동안 改善의 展望을 가지고 効力을 가져야 함.

24. 나는 끝으로 政府를 대신하여 우리의 行態가 冷靜하고도 現實主義的인 狀況의 評價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을 宣言할 수 있음. 이것은 西獨政府가 진지한 意思를 가지고 可能한限 肯定的인 發展에 대한 慾求로 蘇聯, 「폴란드」, 東獨 및 其他 國家들과 진지한 協商을 하고, 이러한 協商의 難關들에 관해 여하한 그릇된 希望도 걸지 않으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가지게 될 確固한 立場들에 관여하지 않음을 意味함.

25. 그러나 나는 西獨政府가 스스로 그리고 위에 언급한 다른 政府들이 緊張緩和와 平和를 위한 努力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試驗에 応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함.

그 외에도 나는 公的 討論에서 때때로 途中에 急轉하여 말을 건네는 事前行爲에 대해 한마디 말하고 싶음. 西獨 안에서는 西方에 대한 西獨의 注目할만한 事前行爲에서 特殊한 政治家다운 伶俐性과 賢明性을 立証했던 時期가 있었음. 事實上 이에 대한 代價로 西獨은 오랫동안 얻었던 우리의 信賴同等權 그리고 無差別을 支払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26. 우리가——西獨의 前政府와 本政府는 몇가지 다른 力點을 가지고 있고 몇가지의 다른 方法論的 觀念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말함——戰爭의 恐怖에 따라 東方에서도 信賴를 얻기 始作했다면 그것은 어렵고도 重大한 課業임. 사람들은 이러한 課業에 直面하여 도시 그에 대한 代價로 무엇을 얻는가? 平和를 보다 確保하는 것 그것은 우리 全民族을

위해서는 無用한 것이 아닌가라고 質問한 사람들을 겁이 많고 根本的으로 充分히 愛國的인 義務에 결부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자 試圖할 것임.

27. 西方의 國民들, 北方과 南方의 國民들과의 友誼에 대한 信賴, 調整 그리고 결국엔 어느날엔가는 東方의 人民들과의 友誼를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가? 그리고 그 후에 獨逸은 스스로 더 많은 安全과 보다 나은 平和를 가지지 못할 것인가? 獨逸의 人民들, 各個人은 그로부터 利益을 얻을 것이 아닐까? 그 對答은 恐怖가 더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負擔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해 볼 수 없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非人間的인 強制가 分離시키고 있는 獨逸안의 두 國家로부터 온 두 人間이 結婚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써 對答할 수 있음. 이것들은 크든 작든 그러나 항상 本政府가 제기하고 있는바 人間과 관련된 尺度들임. 그것도 勿論 고려에 넣어야 할 모든 現實性 속에서, 難關들에 대한 明白한 意識 속에서, 오래 걸릴 길에서, 위험속에서 제기하고 있는 人間과 관련된 尺度들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意識하고 있고 좋은 友邦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課題임.

資料 6 .

## 「울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議長의 國際記者會見

( 1970.1.19 )

質疑 ( 카를 에두아르트 폰 쉬니츠라 ] : 도이체 웨른제퐁크紙 )

議長, 나의 質問은 「본」이 提起한 “外國이나 內國이나”의 論難에 관한 것입니다. 「브란트」首相은 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즉 西獨이 東獨을 「본」의 內國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東獨의 論評이 떠드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고 합니다. 貴下가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 없습니까?

答辯 ( 「월터 울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議長 )

그런 어처구니없는 것들은 西獨의 諸法律, 規則 및 憲法裁判所判決등에서 明文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브란트」氏가 이들 西獨의 一聯의 立法, 憲法判決 및 기타 여러 國家規範, 거기다 「본」이 20年内 지녀온 獨逸政策 그 自体를 어처구니없다고 말한 것은 나로서 極히 興味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事實에 立脚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記錄들을 잘 보았는가? 立法이나 여러 判決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政策이 어떻게 決定되어 갔는가 하는 過程을 이들 記錄이 너무나 잘 証明하고 있지 않는가? 고-

質疑 ( 케틀츠샤博士 :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 )

「울브리히트」同志에게 묻겠습니다. 貴下는 (獨逸)民族에 관한 西獨政府의 態度란 것을 낱낱이 說明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關한 東獨政府의 立場에 대해서도 좀 說明해 주실수 있을지요? 또 하나 質問이 있습니다. 東獨이 提示한 條約草案에 대하여 西獨에서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答辯 = 國民投票에 대하여 -.

이것을 實施하라는 提案은 西獨內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우리의 條約草案에 대해 西獨市民이 國民投票를 實施하는가 않는가의 與否는 그들 스스로가 決定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決定에 대해 우리가 曰可曰否할 생각은 없습니다. 民族問題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여러번 言及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우연히 <프랑크푸르타·룬트샤우>紙의 記事 하나를 入手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內容을 引用하면 "정말 冷靜히 認定해야 할일은 그 진절머리나는 2次大戰終結이래 우리나라가 西方戰勝大國들의 衛星國化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우리나라는 戰爭에 이긴 西方強大勢力들의 3個地域을 合해 「부르조아·데모크라시」의 衛星國이 되고 말았다".

東獨憲法은 우리나라를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로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分明합니다. 우리는 歷史的現實에서 出發하고 있습니다. 獨逸民族의 一體性은 이미 20年以上이나 전에 西方帝國主義大國 및 西獨獨占資本의 反動勢力들 손으로 西獨分裂國家가 創設되었을 때부터 破壞되어 버렸습니다. 20年이나 存在한 일이 없는 一體性을 擁護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입니다. 미래속에 고개를 파묻고 虛構위에 東西兩獨間의 關係를 樹立하려해도 實際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民族의 一體性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虛構는 「본」政府가 兩獨國家間에 아무런 差別없이 正常的이며 對等한 國際法的인 關係를 認定하지 않으려는 遁辭로서 利用하고 있는데 不過합니다.

CDU/CSU와 또는 SPD의 指導者마저 分割을 推進하여 永久化하려 할때 우리는 獨逸의 一體性을 爲하여 鬪爭해왔습니다. 根元을 따진다면 美國과 「본」의 反民族勢力이 NATO下에서 西獨이란 分斷國家를 만들고 나섰을 때 西獨스스로 <外國>이란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西獨聯邦共和國의 諸立法, 判例, 政治的 慣行이 東獨은 西獨聯邦共和國과의 關係에서 <內國>이며, 어떻게 하든, 西獨보다는 낮은 地位에 있는듯이 不遜한 主張을 頑強히 固執하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完全

無缺한 條約에 依한 對等한 國際法的關係의 創設을 바라는 要求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族은—이제도 말했듯이— 20年以上이나 전에 西方帝國主義諸國과 西獨 獨占資本勢力에 依해서 分割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我國憲法에도 明示되어 있지만—帝國主義손에 依해 分割된 이 民族, 兩獨國家와 그 國民이 언젠가는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基礎로하여 서로 接近하고 다시 한데 어울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긴 時間을 要할 것입니다. 時間이 걸린다면 將來의 接近은 可能하며 西獨의 進步的 그리고 民主的 勢力이 政界·財界의 極右勢力 그리고 軍國主義와 「네오·나치즘」, 獨占資本家들의 權力을 排除하고야 말 것입니다.

質疑 (「마이·보도크류추니코프」: 「모스크바」·「프라우다」紙)

다음 問題를 質問하겠습니다.

西獨首相은 聯邦議會에서의 演說을 통해 東西兩獨間에는 武力不行使에 대해 交渉이 行해져야 한다고 指摘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氏는 그때 유럽의 國境承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分明히 矛盾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矛盾을 풀수 있는 方法이 있다고 보시는지, 貴下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答辯

내 생각에는 이런 矛盾을 푸는 것은 極히 簡單한것 같습니다. 「브란트」氏는 武力不行使條約에 關連하여 現存유럽의 諸國境 즉 「오데르·나이세」國境 및 東西兩獨間의 國境을 承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가 이런 國境을 認定하려하지 않는다면 武力不行使에 關한 그의 言明은 한갓 「에드발」론에 不過하며 그 以上の 아무것도 아닙니다.

質疑(「알베르트·놀든」教授(司會))

「쿠르트·브롬로프」同志의 質問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武力不行使, 其他問題에 관한 「브란트」의 交渉提議은 拒否되는 것인가, 그 理由는 무엇인가.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할 것을 要求한 條約草案을 西獨이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交渉의 先行條件인가? 하는 것입니다.

質疑(「쿠르트·브롬로프」: 「게벨크샤프츠포스트」紙)

한마디 補充하겠습니다. 「브란트」가 反對提議을 내어놓지않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交渉을 可能하게 만들려고 眞摯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내가 보기에 民主主義國家인 西獨에서는 右派에 속하는 反對勢力이 政府를 크게 괴롭히고 있고 「슈트라우스」의 演劇을 꾸미고 있는것 같습니다.

答辯

그 質問에 答辯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하이네만」大統領에게 條約草案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草案을 首相에게 回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文書 즉 交渉提議에 대해 「문」의 公式回答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것이 實情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文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西獨政府의 公式回答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聯邦議會에서, 行한 「브란트」氏의 演說은 回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演說은 矛盾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演說중의 무엇이 不當하고 不合理한가하는 點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CDU나 CSU도 이것을 찾아 내었습니다. 이런式의 炉辺閑談따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은 謝絶하겠습니다. 우리는 公式回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質疑(「로랑·텔쿠르」:「파리」·「르·몽드」紙)

條約草案은 東西獨間의 交渉을 可能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基礎에 不過한 것인가의 与否에 대해 質問합니다. 이 質問에 하나 더 補充합니다. 즉 「브란트」首相은 聯邦議會에서 만일 貴下의 條約草案이 앞으로 있을 交渉을 하는데 唯一한 出發點이 되는 것이라면 그로서는 拒絶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져 하는 것은 이 條約草案이 絶對的인 出發點인지, 아닌지 하는 點입니다.

答辯

이 條約草案은 交渉을 하는데 훌륭한 基礎가 됩니다. 따라서 이 基礎 위에 다시 <草案>이 쌓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相對方이 自己見解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公式으로 어떤 見解를 밝혀오는가를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브란트」氏의 議會演說에는 실로 여러가지 見解들이 羅列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大聯政時代의 지꺼기도 其他 별의 별것이 다 包含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明確한 見解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을성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西獨政府에서 書翰이 오기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質疑(「레오니드·스테파노프」:「모스크바」·「이즈베스치」紙)

議長, 「브란트」氏가 東獨의 條約草案속에서 武力不行使의 提案을 選別한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兩獨間에 武力不行使條約에만 調印한다는것은 東獨으로서 可能한 일입니까?

答辯

이미 말한바와 같이 現在 蘇聯政府和 西獨政府는 武力不行使條約의 準備를 위해 接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蘇聯政府와의 協議를 통해 이 問題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武力不行使에 관

하여 西獨과 蘇聯間에 開始될 것으로 보이는 交渉에서 무엇이 生産되어 나올 것인가 注視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蘇聯政府와 〔本〕政府間的 武力不行使條約과 같은 基礎위에 서는 武力不行使條約에는 贊成합니다. 東獨으로서 무슨 特別한 條件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란트」氏가 武力不行使條約의 가장 基礎的인 基本條件 즉 國境의 承認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聯邦議회의 演說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치 않았읍니다. 우리는 우리 立場을 定하기에 앞서 먼저 「브란트」氏가 現狀維持( status quo )와 武力不行使라고 하는 基本問題에 어떤 態度를 取하는가를 두고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들 問題에 대해 前進的姿勢로서 回答해올 것을 우리는 期待하고 있습니다.

武力不行使條約은 社會主義諸國의 共通問題이며 個個國家의 問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協議해 나갈 것입니다.

質疑(「버틴즈」女史：「뉴욕·타임즈」紙)

西獨과 對等한 交渉에 들어갔을때 東獨은 西獨側 提案을 檢討하고 또 考慮할 用意가 있습니까? 아니면 貴側의 條約草案만을 交渉對象으로 하겠습니까?

答辯

거기 대해서는 지금 對答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西獨政府로부터 回答을 받지 못하고 있고 西獨政府가 어떤 提案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勿論 우리가 西獨에 하나의 草案을 提示한 것은 이 草案을 놓고 交渉이 行해질 것과 또 提案權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습니다. 一部側에서는 어느곳의 電話線回路가 不通이된 問題까지도 이 交渉의 對象이 되는것처럼 보고 있지만 勿論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는 다만 이 말만 해두고 싶

습니다. -이런 種類의 問題는 閣僚間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程度로. 이 얘기에서는 무엇보다도 西獨이 滯納하고 있는 郵便料金を 언제 東獨에 支 払할 것인가를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은 우리가 正 당한 郵便料金を 받지않고도 郵便配達業務를 円滑히 進行하리라고 期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年間이나 이 郵便料金を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滯納은 賚아야지요.

貴下의 質問이 우리가 자질구레한 問題까지 다룰 것인가를 意味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읍니다. 그러나 東獨國家評議會議長과 西獨首相과의 交渉은 거기서 다루어져야 할 問題가 基本的인 政治問題가 되어야 하겠지 요. 其他問題는 이 交渉의 對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滯納料金を 물 어야 한다는 것은 A B C에 속하는 問題입니다. 우리도 「비즈니스·멘」으로 서는 西獨의 「비즈니스·멘」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크」 및 「푸웨니히」로써 表示한 請求明細書를 「본」에 이미 보냈읍니다. 이 債務는 「마르크」 및 「푸웨니히」로써 支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一部 電話 의 接統不良을 補修하는데의 秘密의 全部입니다.

質疑(「롤프·레벨트」: 「베르리나·차이퉁」紙)

西獨政府는 그 施政속에서 獨逸全体에 관한 모든 問題에 대해서는 4大 國管理라는 것을 考慮하며 또 考慮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해 東獨政府는 이런 種類의 4大國의 責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貴下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答辯

聯合國管理委員會가 消滅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미 40年代後半 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아무튼 우리로서는- 4大國의 責任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西獨政府가 合法的節次도 밟지않고 國民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떠맡은 「파리」 諸條約의 여러가지 義務는 애초부터 우리와는 아무

關係도 없습니다. 「포츠담」協定の 諸決定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이를 다 했습니다. 勿論 西獨은 이를 다 履行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西獨은 아직 清算을 다하지 못했지요.

마찬가지로 東獨의 首都인 「베르린」에 관해서도 勿論 어떠한 意味에서든 4大國의 管理下에는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한테는 4大國管理委員會의 代表를 派遣한다라고 하는 通知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4大國과는 어떠한 問題에도 關係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主權國家이며, 主權國家인 우리나라,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가 「베르린」입니다. 이렇게 憲法은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核心이며 다른 論議들은 다 빗나간 것입니다.

西「베르린」에 관해서는 다른 問題가 있습니다. 西「베르린」은 占領法規 및 占領統治下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占領統治에 관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質疑(「게오르크·디트리히」:「웨스트도이처」·「알게마이네·차이퉁」紙)

나의 첫質問에 대해서는 벌써 答辯을 받았습니다. 다만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모스크바」聲明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유럽諸國이 東獨과의 사이에 國際法的인 決定을 基礎로하여 同等한 關係를 가져야한다고 한것이 유럽諸國이 어떻게라도 國際法的으로 完全히 東獨을 承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나라는 그以外的 形態로 國家的 關係를 樹立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質問입니다만 議長, 貴下의 條約草案속에 들어있는 東西兩獨間의 軍縮 및 其他의 軍事的諸問題에 관한 交渉을 貴下는 意味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交渉이 實際的인 成果를 가져오리라고 期待하시는지. 왜냐하면 兩國 다 各己 別個의 軍事「블록」에 所屬하고 있고 이들 軍事「블록」의 一部-결코 적지 않은 一部입니다만-에 不過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一體性이라든지, 軍事上의 最高主權은 이러한 「블록」에 있는 것이지 兩國에

는 없는게 아닙니까?

答辯

먼저 社會主義諸國의 首腦들의 聲明에 對해—, 이 聲明에서는 모든 國家가 東獨과 國際法上의 關係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兩獨國家間에는 國際法上의 條約이 締結되어야 함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가장 進展된 段階에서는 모든 유럽諸國이 서로 國際法上의 關係로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當然한 일입니다. 이것은 즉 東獨과 N A T O에 所屬하는 西유럽諸國과는 相互 國際法上의 關係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東西兩獨間에 國際法上의 關係를 樹立한다는 것은 西獨이 다른 「바르샤바」條約諸國과의 사이에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데서도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샤바」條約諸國을 差別的으로 取扱하려고 하는 「本」政府의 企圖는 이 聲明에 依해 沮止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質問에 대한 答辯입니다.

둘째번 質問인 軍縮에 對해—, 東西兩獨은 平和維持란 問題에 特別히 重大한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 獨逸땅에서 두번이나 大戰이 勃發하였고, 또

(나) 西獨이 다시 報復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西獨政府는 이것으로써 유럽諸國民을 커다란 危險속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國際的인 水準에서 行해지고 있는 (軍縮) 交渉과는 相關없이—兩獨國家間的 交渉에서는 軍縮에 관한 特別한 決定이 있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兩獨이 軍備를 縮少하더라도 「바르샤바」條約諸國의 同盟이 軍발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西獨이 그 軍事費를 50% 削減하거나 核武器의 共同使用權을 拋棄한 경우 우리도 西獨과의 條約에 따라 같은 寄與를 할 義務를 자신에게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바르샤바」條約諸國은 여기에 異議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兩獨國家의 國民의 平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同盟에 대해서는 何等 念慮를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들은 뭣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緊要한 것은 兩獨國家가 平和의 確保를 爲해 努力하는 일입니다. 이 兩國이 特別한 責任을 지고 있기 때문에, 獨逸땅에서 두번이나 戰爭이 일어났기 때문에 平和의 確保를 爲해 特別한 「이니셔티브」를 發揮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質疑(「프리즈노르」 및 「아돌프·브로흐」: 「뫼셀도르프, 獨逸共産党中央機關紙「운제레·차이트」)

「브란트」首相은 聯邦議會에서 유럽安全保障 및 獨逸問題에 관하여 蘇聯, 「폴란드」와 東獨과의 사이에 差異가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

지난번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黨 및 政府首腦會議에서 우리는 유럽安全保障問題와 나아가 國際法上的 承認을 基礎로한 東西兩獨間의 條約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情報를 전하고 우리의 措置에 對해 理解를 얻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見解의 對立이 없었습니다. 그 以上에 대해서는 言及할 수 없습니다. 유럽安全保障會議의 早期開催를 爲하여 우리가 共同으로 무엇을 하려하는가에 對해서는 聲明에 分明히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意見의 完全一致가 이뤄져 있습니다.

個個의 社會主義國家가 資本主義諸國과 어떤 經濟關係를 가질 것인가 하는것은 그나라 個個의 問題입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西「유럽」의 資本主義諸國과 經濟關係에 對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政治的 關係에 관한 問題와 商易上的 關係 즉 通商問題와를 뚜렷이 區別하고 있습니다. 이 兩者는 전혀 相異한 問題들입니다.

質疑(「쿠르트·볼터슈테트」:「베·체트·암·아벤트」紙)

「브란트」氏는 西獨이 西方國家이며 東獨이 東方의 나라라고 規定하였읍니다. 이 区分에 異議는 없읍니까?

答辯

地理的인 東西의 對立이란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資本主義·帝國主義를 一方으로 하고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의 進歩를 他方으로하는 相互間의 對立은 存在합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諸國의 内部에 있어서는 進歩的 및 民主主義的勢力과 末期資本主義支配層間에는 對立이 있습니다. 「브란트」氏가 西獨은 末期資本主義·帝國主義의 나라라고 規定하고 있다면 이것은 西獨内部의 末期資本主義制度에 反對하는 勢力의 強度에 대해서 아무것도 言及치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資本主義나 帝國主義政黨이 이제와서 歷史上의 그들의 位置를 뚜렷이 할것을 꺼리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 합니다.

質疑(「크라우스·프리드리히」:「트리뷴」紙)

「브란트」氏는 兩獨間의 條約에 依한 秩序確定은 期限을 定해놓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東獨의 條約草案은 有効期間을 10年間으로 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貴下의 생각은?

答辯

우리의 草案에서는 有効期間을 10年間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보다 期間이 긴것보다는 이편이 西獨政府로도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할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란트」氏가 원한다면 期限 20年의 條約을 締結할 用意도 勿論 우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質疑(「레온하르트·헬름쉬르트」:「바우에른·에호」紙)

「브란트」는 <國家間의 法>의 關係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이것을 國際法的關係와는 別個의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러한 關係는 東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答辯

國家間の 關係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國家間の 關係란 同等權을 基礎로한 主權國家間の 關係를 말합니다. 主權國家間の 關係는 어떤 경우에도 國際法的인 關係입니다. 새로운 用語가 使用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關係의 國際法的 性格을 낮게 評價하려는 것입니다. 「브란트」氏는 이 國家的인 關係라는 것을 定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引用해 보면—“여기서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家間の 法の 原則, 특히 모든 形態의 差別의 排斥, 領土의 不可侵性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며 相互의 國境을 尊重하는데 대한 義務附与가 緊要”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部分에서는 東獨條約草案의 用語가 盜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브란트」氏가—우리의 理解에 틀림이 없었다면—境界線 (Demarkationslinie)이라고 부르지 않고 國境을 그대로 솔직히 國境 (Grenze)이라고 부른데 興味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事實들은 좀더 明確히 表明되어야 마땅합니다.

質疑 (「더터·에발레」博士 : 「노이에·차이트」紙)

議長, 貴下는 西獨의 몇몇 그룹들이 말하는 兩獨國家間の 秩序있는 暫定協定 (Modus vivendi)을 確立해라하는 要求를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

그것은 暫定協定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東西兩獨間的 平和的 및 對等의 併存의 秩序를 確立하는 것 즉 兩者間的 平和的共存을 招來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습니다. 勿論 이런 秩序를 세운다는 것은 國際法的으로 完全한 것이어야 합니다.

「브란트」氏는 지난번 어떤 美國의 外交記者와의 會見에서 이이상(獨逸) 再統一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너」氏(西獨社民 黨副黨首)도 “獨逸政策에서 한가지 確實한 것이 있다. 그것은 再統一에 의 可能性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西獨勞動總同盟의 中央機關 紙도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에 마지막 告別人事 를 할때가 왔다. 왜냐하면 “再統一에의 길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파리」諸條約이 破棄되지 않는限 實地로 再統一에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 다면 東西兩獨政府는 兩獨逸國民에 대해 그들의 平和的이고 對等하며 無差 別한 併存을 國際法的條約에 依해서 保障된 暫定協定으로 實現시켜야할 義務 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모든國民과 國家의 平和와 安全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兩獨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所望인 것입니다.

質疑(「크리스타·룬게」:「호리촌트」紙)

議長, 國際法은 사실 複雜한 것입니다. 西獨의 많은 사람들은 東獨이 要求하고 있는 國際法的關係와 「본」이 應할 것으로 보이는 國家間的 法的關 係乃至<內獨關係>와의 差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東獨政府 의 見解를 좀 더 詳細히 說明해 주십시오.

答辯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좀 昭詳히 法的論拠를 考察토록 하겠습니다. 어 떤 나라가 그 나라에 依存하고있지 않는 다른 어떤 나라와 條約을 締結하 려하면서도 同時에 後者인 나라에 대해 國際法的 主体로서 存在하고 있음 을 否認한다는 것은 現行國際法을 侵害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前者의 나라는—

(가) 相對方을 主權이 없는, 對等하지 않은, 그리하여 自國의 國家 權力에 從屬하는 性質의 國家形態—여기에는 國內法的關係만이 可能할 것이다 —로

보고있는 것인가, 或은

(나) 実効性있는 法的關係를 締結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의 어느 하나일 것입니다.

「본」政府의 具體的인 行動에 關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 兩者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東獨에 대한 「본」政府의 態度는 一般的 拘束力을 가지는 現行國際法の 根本的基礎를 侵害하고 있습니다. 東獨을 그의 從屬下에 두려고하는 西獨聯邦共和國의 合併要求가 얼마나 끈질긴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歴代的 「본」政府가 왜 이렇게까지 國際法的條約을 排斥하려고 했는가는 1967年에 만들어진 西獨의 한 覺書가 무엇보다도 잘 說明하고 있습니다. 覺書의 起草者는 「빌헬름·볼프강·슈츠」氏였습니다. 거기에는 兩獨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 소위 內獨의特殊事情이란 것에 대한 理論構成을 하면서 東獨을 먼저 從屬化하고 最後에 武力으로써 抹殺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그의 말을 그대로 引用하면—“內戰 或은 內戰에 類似한 事件은 國內事件으로서 外交政治上の 事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國際法은 모든 國家에 다음과 같은 諸義務를 지우고 있습니다.

- 國家主權의 對等性和 地位를 尊重한다.
- 他國의 內政問題에 干涉하지 않는다.
- 國家의 平等性을 基礎로 한 關係를 發展시킨다.
- 一國의 領土의 不可侵性乃至 政治的獨立性에 對해 武力의 行使 乃至 武力에 依한 威脅을 抑止한다.

國際法の 諸原則은 國聯憲章에도 明文化되어 있듯이 다 한가지며, 그 모두가 諸國家의 平和的併存의 確保를 指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東獨은 報復政策과 獨逸帝國主義의 侵略에 合法的인 口實을 주는데 不過한 이들 所謂 內獨의要求를 斷乎한 決意로써 排擊할 義務를 自身의 國民에 對해서뿐 아니라 유럽의 諸國民에 對해서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資料 7.

「올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議長의 國際記者會見에  
대한 西獨政府의 聲明

( 1970.1.19 )

1. 西獨政府는, 「올브리히트」의 宣言에 관한 歷史的인 政治的 輿論에도 不拘하고, 그가 東獨 內閣이 西獨政府와 協商할 準備가 되어 있다는 것을 確言했음을 確認했음. 따라서 「브란트」 西獨首相은 그가 이미 그의 民族의 地位에 관한 報告에서 公表한 바대로 가장 가까운 時日內에 東獨에 協商을 開始하자고 提議할 것임.

2. 西獨政府는 東獨이 소련이나 「폴란드」와 똑같은 協商의 行動을 取할 것이라는 前提로부터 출발함. 즉 條約은 協商의 結果일 뿐이지 事前條件으로서 初期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通例임.

西獨政府는 獨逸 兩國家間의 往來에 있어서도 緊張을 解消시키고자 努力하고 있고, 또한 東獨으로부터도 이를 기대하고 있음. 「올브리히트」는 西獨과 소련간의 暴力拋棄協商이 優先的으로 이루어질것을 主張하고, 그 結果가 미리 어떻게 되느냐에 神經을 썼음. 西獨政府는 何等 그와 같은 優先的인 序列을 提起치 않고 있음. 分明히 「올브리히트」는 時間을 얻고자 努力하고 있고, 西獨政府와의 協商의 進行을 지연하고자 하고 있음. 西獨政府는 歐洲에 있어서의 平和安全 및 協力の 增進을 反對하려는 「올브리히트」의 行動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兩獨間의 關係에 있어서의 進展이 公開的인 論爭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함. 西獨은 「올브리히트」와 論爭하는 것을 拋棄함. 그의 過程에 관하여 아주 有用하게 論議할 수 있는 獨逸戰後史의 進行에 관한 그의 論述은 緊張緩和에 이바지하지 못함. 예를 들어 獨逸共產黨 ( KPD ) 과 獨逸社會民主黨 ( SPD ) 을 東獨共產黨 ( SED ) 에로 強制統合시킨 過程을 보더라도 그의 主張은 스스로 自身을 否定하고 있는 것임.

3. 西独政府는 独逸의 領域에 걸친 現在의 領土의 地位의 事實에 관한 論爭을 하려하지 않음. 西独政府는 「울브리히트」처럼 留保없는 承認에 대한 要求와 留保없는 拋棄에 대한 要求를 제기하고 있지 않음. 西独政府는 独逸사람들의 共同生活을 拘束的인 協定에 의해 改善하고자 함.

資料 8.

「브란트」西獨首相이 「슈토프」東獨首相에게 보낸 書翰

( 1970.1.22 )

獨逸民主共和國 「슈토프」首相에게,

매우 尊敬하는 首相 :

獨逸聯邦政府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의 政府들이 暴力拋棄宣言의 交換에 관하여 協商할 것을 제의함. 無差別의 原則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이 協商은 이미 企圖된 우리의 두 國家間에 存在하고 있는 모든 問題, 그中에서도 同等한 關係의 問題들의 規制에 관한 意見交換을 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할 것임.

雙方이 올바르다고 보는 고려, 提議, 原則과 案들을 自由로이 提出할 수 있어야 함. 그에 관한 討論과 協商들은 時間에 拘碍됨이 없이 可能해야 함. 參考로 1970.1.14 내가 우리 黨을 代表하여 聯邦議會에서 행한 나의 施政演說에 提示했던 것을 同封함.

그 경우 實際問題의 協商을 통해 分斷된 獨逸에 있어서의 人間의 生活을 便利하게 해 줄 수 있는 規制를 합의보자는 것이 西獨政府가 바라는 바임.

西獨政府는 어느때든지 協商할 準備가 되어 있음. 協商의 經過와 進行節次에 관해 合意할 수 있는 첫 對話를 위해 「후랑케」를 指名함.

1970.1.22 「본」에서

格外한 敬意를 표하며

獨逸聯邦共和國首相 「브란트」



資料 9.

「슈토프」東獨首相이 「브란트」西獨首相에게 보낸 書翰

( 1970.2.11 )

獨逸聯邦共和國 「브란트」首相에게,

매우 尊敬하는 首相 :

나는 1970.1.22日字의 당신 書翰이 도착했음을 確認함.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은 이 書翰은 勿論 1969.10.28과 1970.1.14日字의 「본」의 獨逸聯邦議會에서 행한 당신의 施政演說文도 검토했음.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1970.1.22日字의 당신 書翰에서 言及한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 위에서 이루어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協商開催準備를 認知하고 있음.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은 東獨과 西獨이 相互間에 그들 國家들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 즉 同等한 國際法의 主權的인 主體로서 承認하고 尊重함을 要求한다는 것은 分明함.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이 당신의 書翰에서 該當條約 案과 함께 1969.12.18에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구스타브·하이네만」博士에게 제시되었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關係를 수립하는데 관한 條約을 締結하자는 「울브리히트」 國家評議會議長의 提議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음을 確認했음. 東獨國家評議會議長의 書信에 대한 回答에서 「하이네만」氏는 西獨政府가 東獨의 國家評議會議長이 전달한 提議를 檢討하고, 그 事項의 緊急性에 비추어 빨리 西獨의 立場을 取할 것이라고 聲明했음.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案은 이제 거의 2個月前부터 西獨政府에게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에 대하여 西獨大統領이 確約했던 西獨政府의 立場은 아직도 表明되지 않고 있음.

그 위에 西獨政府는 東獨의 同等權要求에 反對하는 措置들을 取했음. 同等한 關係의 樹立과 暴力拋棄에 관한 協商들은 相互間의 國際法的 承認의 基盤위에서만 肯定的인 結果를 초래할 수 있음.

東獨의 條約案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東獨과 西獨이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國際法의 原則과 規範들을 基반으로 하여 모든 差別없이 同等한 正常的인 關係의 樹立에 合意할 것을 내다보고 있음. 이러한 關係는 特히 主權平等의 原則, 領土의 保全의 尊重, 國境의 不可侵性, 國內事項에의 不干涉, 互惠性의 原則들에 立脚해야 함. 그것은 歐洲에 있어서의 平和를 確保하고 規制된 共存生活을 招來하며 또한 主權國家로서 善隣關係를 초래함에 效果的인 貢獻이 될 것임.

東獨條約案의 모든 規定은 東獨과 西獨間의 境界를 包含해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歐洲에 成立된 境界이든, 東獨과 西獨의 「유엔」機構에의 加入에 대한 要求이든, 東獨의 利害關係는 勿論 西獨의 利害關係를 잘 理解하고 있고, 또한 歐洲安保의 利害도 잘 理解하고 있음.

나는 전달한 條約案이 完全한 同等權과 無差別, 兩 獨逸國家의 同等한 權利와 義務에서 출발하고 있고, 東獨을 優先視한다든가 西獨을 等閑視할 規定을 전혀 包含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西獨이 留意하도록 하고 싶음.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國際法의 規範을 토대로 한 東獨과 西獨間의 平和共存과 正常的 關係의 條約上의 規制를 초래하기 위해 나는 東獨首相과 西獨首相이 直接協商을 위해 만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함. 窮極적으로 平和나 戰爭이나 하는 問題들이 問題되고 있고, 東獨과 西獨에 있는 사람들의 創造的인 作業을 위한 安全의 保障이 問題되고 있음. 緊迫性과 基本的인 意義라는 關心에서 우리의 會晤은 可能한한 곧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나는 감히 西獨首相인 당신에게 1970.2.19 또는 2.26 午前11時에 東獨의 首都 伯林에 있는 內閣庁舍에서 이러한 會晤을 열기를 제의함. 時間과 場所에 관해서는 나는 당신과 直接 電話를 通해서든 또는 「텔레타이프」로 양해할 수 있음.

東獨側에서는 그 會晤에 「빈처」外相도 參加할 것임.

1970.2.11 伯林에서  
格外한 尊敬을 표하며  
獨逸民主共和國首相「슈토프」

資料 10.

「브란트」西獨首相이 「슈토프」東獨首相에게 보낸 書翰

( 1970.2.18 )

西獨首相室室長인 「호르스트·엠케」博士는 1970.2.18 東獨首相에게 西獨首相의 回信을 「텔레타이프」로 다음과 같이 전달했음.

東獨國務相「콜」博士에게

매우 尊敬하는 國務相 :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1970.2.11日字 東獨首相의 書翰에 대한 西獨首相의 回答을 伝함을 榮光으로 생각함.

獨逸民主共和國 「슈토프」首相에게

매우 尊敬하는 首相 :

1. 나는 1970.2.11日字의 당신 書翰과 그속에 包含된 對話에의 招待를 감사하면서 認知했음. 당신 書翰은 細目에 걸쳐 다루고 있고, 自身の 立場들을 되풀이하여 提示함에 局限되는 書信交換을 持續한다는 것은 나는 이 순간에 有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나는 事前條件들을 受諾할 수 없음.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의 關係에 있어서 시작되고 있는 正常化는 歐洲에 있어서의 緊張緩和와 安保에 대한 兩側의 貢獻을 意味할 것임.

2. 나는 分斷시키고 있는 것을 뒤에 제쳐놓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試圖를 감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이것이 成功하는 경우 條約上의 協商에 이르는 것도 可能할 것임. 그와 같은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나는 당신과의 會合에 応할 準備가 되어 있으며, 그 경우 나는 「프랑케」內獨關係相과 其他 諮問官을 同伴하게 될 것임.

당신이 제의한 期日은 勿論 내가 없어서는 아니될 議會의 豫算審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義務와 重複되어 있음.

나는 兩側의 官吏들이 2.23 ~ 2.27 간에 必要한 技術的인 事前準備를

論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때의 이러한 會  
合時에 우리들의 첫 會合日字도 決定될 수 있음. 나는 3月の 第2週  
나 第3週보다 늦지 않은 日字가 좋다고 생각함. 이 경우 나는  
우리의 두번째 相逢이 「본」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立場에서 출발하고  
있음.

1970.2.18 「본」에서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聯邦共和國首相 「브란트」

나는 당신이 東獨首相의 回信을 보내주시면 感謝하겠음.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聯邦共和國首相室長 「엠케」

資料 11.

「콜」東獨國務相이 「엠케」西獨首相室長에게 보낸 書翰

( 1970.2.20 )

獨逸聯邦共和國首相室室長

「호르스트·엠케」博士에게,

매우 尊敬하는 室長 :

1970.2.18 日字의 당신의 「텔레타이프」와 관련하여, 나는 당신에게 東獨內閣事務處 處長署理인 「게르하르트·쉴러」博士가 東獨首相과 西獨首相간의 會合을 準備하기 위한 技術問題들을 協議하도록 委任받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쉴러」博士는 東獨과 西獨의 政府首腦의 會合時日을 最終적으로 決定함은 勿論, 其他의 技術的인 問題와 儀典 問題들을 討議하기 위해 1970.3.2. 10時에 伯林에 있는 東獨內閣事務處에서 西獨首相室代表를 기다릴 것입니다. 빠른 時期에 당신 代表의 姓名과 職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70.2.20 伯林에서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東獨國務相「콜」

資料 12.

「엠키」西獨首相室長이 「콜」東獨國務相에게 보낸 書翰

( 1970.2.20 )

東獨國務相 「콜」博士에게,

매우 尊敬하는 國務相 :

오늘의 당신 「텔레타이프」에 대한 回答으로 나는 당신에게 內閣事務處長 「삼」博士가 兩獨首相간의 會晤을 準備하는 技術的 問題들을 解決지을 權限을 委任받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삼」博士는 細部事項 때문에 「슈윳슬러」博士와 電話로 連絡할 것임.

1970.2.20 「본」에서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聯邦共和國首相室室長「엠키」

資料 13.

「브란트」西獨首相이 「슈토프」東獨首相에게 보낸 書翰

( 1970.3.8 )

獨逸民主共和國 「슈토프」首相에게

매우 尊敬하는 首相 :

우리의 書信交換과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團團長이 豫備會談을 위해 당신의 代表團團長에게 手交했던 宣言에서 당신은 내가 당신과의 對話를 有用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실 것임. 「삼」氏가 나에게 報告한 바와 같이 그는 「슈윳슬러」博士와의 對話에서 당신도 우리들 兩者간에 會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음. 實務的인 準備를 委任받은 兩 代表團간의 對話의 經過에서 實務的인 準備와 첫 對話 그 自體의 進行과 아무 관계가 없는 問題들에 대해 見解의 差異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음. 이러한 對立은 우리들 雙方이 원하고 있는 意見交換의 成立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나는 우리의 첫 會晤의 「프로그램」과 進行을 위한 새로운 基盤이——必要한 경우에는 다른 會合場所로——발견될 수 있는가를 共同的으로 檢討하도록 우리의 代表團에게 委任할 것을 제의함.

1970.3.8 「본」에서

格外한 敬意를 表하며

獨逸聯邦共和國首相 「브란트」

資料 14.

## 兩獨首相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會談에 대한 東獨內閣의 立場

( 1970.3.9 )

東獨內閣은 東獨과 西獨의 政府首腦會談準備를 위한 實務會談에 關係 協議했음. 東獨內閣은 주어진 狀況에 비추어 西獨政府에게 다음 立場을 전달함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1. 實務會談에서 이미 報告된 바와 같이 우리側이 東獨의 首都인 東伯林에서 東獨首相과 西獨首相間의 會談을 위한 모든 準備를 했음. 이를 위한 根拠는 「브란트」西獨首相이 1970.2.18日字의 書翰에서 受諾했던 1970.2.12日字의 「슈토프」東獨首相의 招待임.

우리側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함. 「슈토프」東獨首相과 「빌리·브란트」西獨首相간의 會談은 어느때든 이루어질 수 있음. 東獨內閣은 東獨과 西獨간의 平和共存을 이룩하기 위하여 即刻會談을 開催할 것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 東獨政府는 「브란트」西獨首相의 東獨과 그의 首都 伯林 訪問을 위한 여하한 事前條件도 제기치 않았으며 또한 제기치 않고 있음. 「브란트」首相은 國際法的 慣例에 따라서 西獨의 政府首腦로서 應接받을 것임. 兩獨首相會談의 進行에 관한 儀典이나 組織에 관한 우리의 細部的 提案은 위에 말씀드린 것에 準함. 이 提案은 西獨側의 希望事項과도 一致함. 우리는 兩側이 相互間에 主權的인 國際法的 主體로서 承認되는 경우에만 同等한 資格에서의 協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西獨政府의 態度를 理解하지 못하고 있음.

2. 西伯林은 西獨에 속하지 않았고 속하고 있는 것도 아님. 西伯林은 하나의 自治的인 政治單位體임. 그곳에서 最近에 緊張緩和에 이바지할 強大國의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진된 사실임. 우리는 平和와 緊張緩和를 위해 그와 같이 重要한 強大國의 對話가 「브란트」西獨首相의 西伯林訪問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西伯



林的 「브란트」西独首相의 訪問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고 또한 받아드리고자 하지 않는 挑戰이 될 것임.

西伯林問題를 提起함으로써 紛爭의 素地를 만들어 내려는 試圖를 우리는 거부함. 그 理由는 그것이 東独과 西独間에 모든 差別없이 同等한 關係를 樹立하는 것에 관한 對話의 「테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임.

3. 우리는 西伯林的 地位를 評價함에 있어 東独政府와 西独政府間에는 見解의 差異, 더우기 對立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바로 그 때문에 「슈토프」 東独首相은 「브란트」西独首相에게 1970.2.18 字의 그의 書翰에서 分斷시키는 要素를 除外하고, 연결시키는 要素를 찾아야 할 때에 처했다고 表現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 그것이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브란트」西独首相이 그가 同等한 關係의 樹立에 관한 協商을 시작하고자 하는 東独에 대해 政治的 示威를 포기함이 必要함. 同等權의 原則은 政府首腦로서의 「브란트」가 協商「파트너」인 東独을 訪問하는 경우 東独의 主權을 尊重하고 旅行路程에 있어 國際法의 諸原則에 따라 東独의 統治權을 尊重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

우리 兩國家들이 政府間의 協商을 하게 된다면 政府庁舎가 있는 該當 首都의 駅 또는 飛行場에 도착하는 것이 아주 正常的임.

4. 이런 뜻에서 東独內閣事務次官의 次長署理인 「게르하르트·슈윳슬러」博士에게 豫定대로 政府首腦의 會談이 開催될 수 있도록 成功的인 豫備會談을 終結하라고 委任했음.

資料 15.

東西獨首相會談準備를 위한 實務代表團의 共同聲明

( 1970.3.12 )

《 「에어후르트」로 意見이 合意됨 》( Einigung für Erfurt ) 獨逸民主主義共和國의 「빌리 슈토프」( Willi Stoph )首相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빌리 브란트」( Willi Brandt )首相間的 會談을 위한 技術的, 的見적 問題에 關係되는 準備를 委任받은 兩國의 代表團은 獨逸 民主主義共和國政府의 제안에 따라서 1970.3.19日에 에어후르트( Erfurt )에서 ( 첫 )會談( 만남 : Das Treffen )을 開催한다는 點에 오늘 意見의 一致를 보았음.

이 聲明은 「베를린」과 「본」에서 同時에 發表됨.

資料 16.

西獨政府代辦人 「콘라드·아흘저」國務次官의 聲明

( 1970.3.12 )

20 余年以來 처음으로 오늘 一種의 全獨「콤무니케」가 發表되었음. 西獨首相과 東獨首相間의 會談을 準備할 것을 委任받은 代表團長인 西獨首相室의 「삼」局長과 「슈윳슬러」博士는 그 會談이 3.19에 「에어후르트」에서 開催된 다는데 合意했음. 西獨首相이 「삼」博士를 통해 「슈토프」에게 보낸 書翰에서 西伯林 때문에 생겼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해 第3의場所를 提議한 後 東獨政府는 오늘 「에어후르트」를 提議했음. 西獨政府는 이를 곧 受諾했음.

이러한 協商結果는 準備會談에서 생겼던 見解差異를 克服하고 또한 이러한 相逢을 成立시키려는 兩側의 共同努力의 結果임. 이 會談은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間의 緊張을 緩和시키고 또한 可能한 限 獨逸住民을 위한 便利한 立場에 도달하려는 目的에 이바지할 것임.

西獨政府는 이러한 發展을 환영함. 西獨政府는 이러한 發展이 獨逸안에서 의 狀況의 보다 나은 局面의 始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西獨政府首相은 「에어후르트」에 的 旅行을 準備함에 있어 內閣閣僚들과 西獨議會內의 院內總務들, 그리고 基民黨院內總務의 조언을 들을 것임.

「에어후르트」兩獨首相會談에서의 「슈토프」東獨首相의 演說

( 1970. 3.19 )

遵敬 하는 首相 :

1. 나는 本會合을 開催함에 있어 貴下는 물론 貴下の 隨行員이 獨逸民主 共和國에 오셨음을 환영함. 貴下가 나의 招請에 응하셨음에 대하여 滿足 함을 表現하고 싶으며,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合意했었지만 우리의 會合 이 東獨의 首都인 伯林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임. 貴下는 그 原因들을 아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立場도 아시고 계실 것 임.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政治的 重要性을 가졌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음. 東獨과 西獨政府가 수립된 以來 처음으로 獨立한 主權的 인 兩國家間 關係正常化의 基本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리 를 함께 했음. 東獨과 西獨의 住民들과 歐洲의 모든 人民들은 이 會合 을 理解心을 갖고 注視하고 있음. 歐洲의 緊張에 直面한 그들은 우리 大陸의 心臟部에 平和를 保障하는데 建設的인 貢獻을 할 것 을 기대하고 있음.
2. 西獨首相, 우리는 問題의 核心을 위해 優越한척 한다든가 沈默을 지킴이 없이 서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할 것에 合意했음. 貴下와 제 가 이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國家政府들은 결코 다시는 獨逸땅위에서 戰 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重大한 責任을 지고 있음. 今 世紀에 있 어서의 그 무서운 兩次 世界大戰은 帝國主義獨逸의 政府들이 저지른 것 이었음.
3. 數週日이 지나면 獨逸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造되었다가 피와 鐵 속 에로 沒落」한 날인 5月25日이 됨.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즘」의 支 配者들은 數百萬의 人間生命과 그 방대한 物質的인 價值를 희생으로 하 여 諸人民들을 파괴하는 戰爭을 수행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 戰爭을 자 기 自身の 나라안에 끌여 들였음. 終局에는 「히틀러·파시즘」의 분쇄,

獨逸軍國主義 將星의 無條件 降伏, 帝國主義獨逸帝國의 沒落 그리고 占領地域으로의 獨逸의 分割이 라는 結果를 招來하였음.

4. 獨逸帝國主義의 不幸한 政治로부터 教訓을 받아 平和를 持續적으로 確保한다는 것, 이것은 東獨과 西獨의 政府首腦가 이를 위해 努力해야 할 가장 人間的인 關心事인 것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나는 우리가 이러한 崇高한 責任을 充分히 意識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目標을 平和確保에 두겠다는 것을 保障할 수 있음.
5. 이러한 責任에서 東獨의 國家元首이신 「올브리히트」는 西獨大統領「구스타프·하이네만」博士에게 1969.12.17 東獨과 西獨間에 國際法의 諸原則에 立脚하는 同等하고도 差別없는 關係수립에 관한 條約案을 전달했었음. 이 條約은 궁극적으로 純粹한 同等權과 平和共存의 關係를 수립할 수 있는 可能性을 제공함.
6. 지난 20년 동안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위한 東獨의「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 졌었음.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政策이 從來의 모든 獨逸 聯邦共和國政府들에게서 肯定的인 反響을 볼 수 없었고, 거기에다 그 政府들에 의해 爽爽하게 拒否당하였던 것을 유감스럽게 여겨왔음. 獨逸 聯邦共和國이 軍事的 武裝化를 加速化하고 東獨을 전복함으로써 兩次世界大戰의 諸結果를 解消시키려는 目的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임. 이러한 政策이 挫折된 以後 우리는 오늘날 東獨과 西獨間에 國際法의 기반위에서의 平和共存關係를 수립할 수 있는 남아있는 唯一한 可能性을 利用하고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7. 西獨首相, 모든 사람은 우리가 二次的 또는 三次的 問題들을 規制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음을 알고 있음. 歐洲安保나 兩獨 人民들의 平和로운 生活을 위하여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서 轉換을 일으키는 모든 決定的인 問題를 다루는 것임. 現在 우리國家들간의 關係는 完全히 非正常的이며 그로부터 중대한 위협

이 결과되고 있으므로 東獨과 西獨간 關係의 持續的인 原則規制가 議事日程으로 올라 있음. 그 規制는 完全한 同等權의 기반위에 國際法的關係의 수립에서 있을수 있을 뿐임.

8. 東獨側에는 그를 위한 모든 前提가 이루어져 있음. 우리는 - 우리의 條約案이 立証하고 있는 바- 西獨政府로부터 이미 우리 스스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것 以上の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음. 그것은 純粹한 同等權과 無差別의 態度이므로 雙方中의 어느 一方의 降伏이 문제되고 있다는 소문은 事實內容의 完全한 歪曲이며 威信이란 것도 문제되고 있지 않음. 가장 人間的인 渴望은 平和의 確保가 문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強調하며, 이러한 基本問題는 會談의 對象에서 除外시키자는 말로는 그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임.

9. 現狀과 歐洲境界를 變化시키고자 하고 第二次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하고자 하는 政策을 위해 세운 障壁들은 除去되어야 하며, 그것은 의심할餘地가 없이 20年以上이나 基民黨 指導下에 이루어진 復古勢力과 復仇勢力에 의해 推進되었던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인 것임. 基民黨의 축출을 초래한 政權交替를 우리는 이러한 政治路線을 排除하고 東獨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해 過去 20 년에 걸쳐 平和를 위협한 非現實主義的인 政策으로부터 離脫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廣範한 階層들의 意見表現으로 보고 있음.

10. 西獨首相, 貴政府가 이러한 意思를 고려하여 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西獨이 東獨에 대하여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를 거부함에서 結果되고 있는 우리 國家들간의 緊張된 關係를 지속할 것인가? 「아테나워」下에서 힘의 政策과 「롤백」(席卷) 政策에 立脚하여 거의 17年동안이나 東獨과 東柏林의 國際法的 承認에 反對鬪爭했던 政治狀態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를 위해 쓸모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東獨과 西獨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에게는 有用하지도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平和와 保障된 生活條件을 바라는 歐洲人民들에게도 有用하지 않을

것임. 그와 같은 復仇와 征服을 목표로 하는 政策은 成功할 展望이 전혀 없는 것임.

11. 東獨과 그의 社會主義 秩序를 暴力으로 除去하려는 「아테나워」의 變型이나, 같은 目的을 노리는 其他의 變型도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立証되었음.

現代 社會主義國家에로의 東獨의 發展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中斷될 수도 없으며, 反共主義는 눈가리개 없이 그리고 幻想없이 事物을 觀察하는 사람들은 勞働者 農民國家인 東獨이 人民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음을 알고 있음. 東獨은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공고한 友誼속에 結合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獨逸 땅위에서 없애 버리려는 모든 希望은 幻想的인 것으로 立証되었음. 그러나 50年代와 60年代에 失敗할 것이라 했던것이 오늘날 비로소 그 結果가 證明되었음.

12. 西獨首相, 貴下는 獨逸聯邦議會에서 注目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였는데 東獨과도 同等權과 無差別의 土台위에서 規制에 도달하려는 必然性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 「바르샤바」條約 國家들과도 規制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천명했음. 이제 西獨과 東獨간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즉 外交關係를 수립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認識과 부합할 것이며, 그것은 東獨은 勿論 西獨과 歐洲利害와도 부합할 것임. 그 理由는 兩國家들이 그에 의해 모든 歐洲國家와의 關係를 正常化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열게 되기 때문임.

13. 나는 貴下가 오직 緊張強化를 초래했던 그리고 歐洲平和에 대한 妨害要因으로 만들었던 政策을 지속 하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극단적으로 위험한 政策은 바로 首相職에 있었던 모든 貴下의 先任者들이 成功하지 못하고 失敗했던 政策이었음. 낡은 目的을 다만 새로운 公式들로 계속 추구한다면, 물론 그것을 아무도 進歩로서 볼 수는 없을 것임. 오히려 獨逸聯邦共和國은 우리 大陸에서 神經痛에 걸린 地帶로 남을 것임. 그 경우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正常化는

封鎖되고 中歐에 있어서의 平和는 恒久的으로 위협당할 것임.

14.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貴下와 西獨政府의 代表들이 東·西獨은 두개의 主權的인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물론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導出되는 論理的인 結果는 물론 東獨과 西獨間에 相異한 社會秩序를 가지고 있는 이 두國家의 平和共存을 可能케 하는 國際法의 土台위에서 이루어지는 同等한 關係를 수립하는 경우에만 그러할수 있다는 것임.

15. 1970. 1.22日字의 貴下의 書翰에서 貴下는 同等權과 無差別의 土台위에서 東獨과 西獨間에 協商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으며, 이에 따르면 東獨과 西獨이 相互關係에 있어 存在하고 있는 그대로 즉 國際法의 主權的인 主體로서 承認한다는 것을 反對할 要因은 없는 것임.

16. 西獨首相, 貴下가 스스로 國際法의 諸原則을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그로인한 必然的인 結論을 도출하여 國際法上 效力을 가지는 條約을 통해 東獨의 主權的 平等을 承認할 것이 要求됨. 그렇게 함으로써 貴下의 政府는 西獨의 옛날 政府들과는 달리 참으로 過去의 쓸모없는 것으로부터 解放되어 現實의 토대위에서 있다는 것을 文書化되는 것이 될 것임.

17. 貴政府의 저명한 代表者들의 表現을 보면, 「東獨의 國際法上的 承認을 궁극적으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見解를 分明히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며, 물론 그에는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한 東獨의 一方的인 事前行爲에 관한 해괴한 發言과도 결부되어 있음. 그것은 東獨의 社會主義秩序의 變化를 예상하여 發言하고 있음.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의 不可避性에 관한 洞察은 당연한 것이지만 - 나는 그것을 아주 뚜렷이 밝혀야 함. - 그 承認을 어떤 反革命的인 意圖들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無意味함. 自明한 것은 國際法의 基本原則들의 承認에 대한 代價를 오늘날 支払할 수 없음.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을 回避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者는 그 承認을 즉각 相當한 形態로 表明할 수 있는 政治的인 先見之明을 가져야 함. 따라서 나는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름으로 이러한 措置를 받아드려 貴下에게 提示되어 있는 東獨과 西獨間



의 同等한 關係의 수립에 관한 條約締結에 관하여 그와 같은 條約에 가능한限 곧 署名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東獨首相의 이름으로 묻고 싶음.

18. 西獨에서는 빈번히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東獨과의 關係에 있어 「파리」條約에 의해 制限이 加해지고 있다는 主張을 들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그 獨逸聯邦共和國의 主權問題들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고 있는가에 관한 質問은 삼가하고자 함. 東獨政府가 重要視하고 있는것은 社会民主主義的으로 영도되고 있는 西獨政府가 自主的인 政治를 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있어 自身의 主權을 제한 받음이 없이 代表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質問임.

19. 兩側이 善意에 따라 行動하고 平和와 兩國市民들을 위한 어떤 結果들을 얻으려 한다면 言行간에 矛盾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유감스럽게도 나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政策에 숨어 있는 그와같은 矛盾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西獨의 代表者들이 公的으로는 緊張緩和와 規制된 共存에 관해 言及하면서도 同時에 東獨과 其他 社会主義 諸國에 대한 위험한 軍事計劃들을 繼續發展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無關心할 수 없고 또한 크게 우려하고 있고, 社会主義諸國 특히 東獨의 都市, 村落 및 市民들을 目標로 하여 作成된 前進戰略計劃이 - 어떠한 名稱下에 그 計劃이 이루어졌든 - 西獨聯邦軍將星들과 貴國防相의 철갑으로된 결합 속에 準備되어 있음.

이것은 分明히 侵略的인 計劃을 위해 國防豫算이 西獨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前보다 急增되고 있고, 反對하는 輿論에도 不拘하고 原子武装化가 계속 推進되고 있음.

20. 그와같은 事實들이 平和的인 意圖와 東獨과의 同等한 關係에 관한 公式的인 宣言과 어떻게 合致할수 있을까? 언제나 노골적으로 勢力關係를 그릇 評價했던 西獨内の 影響力있는 集團은 오늘도 위험한 불안난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計劃과 行爲들은 끊임없이 導火線들을 쌓고

있고 軍事的인 紛爭狀況의 危險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西獨軍을 統帥하는 長官인 「슈미트」氏가 武裝化를 加速化시킨다면, 東獨과 그의 盟邦들은 이러한 事態를 無關心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음.

21. 그러므로 제가 西獨首相인 貴下에게 보낸서신에서 明白히 陳述한 바와 같이, 가장 진실한 뜻의 平和나 戰爭이냐가 問題되고 있으며, 貴下는 公開的으로 平和만이 問題된다고 말했음. 그러나 領土的인 現狀과 歐洲境界의 變更을 노리고 있는 모든 目的 設定을 포기하지 않는 限 平和의 確保는 있을 수 없으며, 平和를 確保하고자 하는 者 라면 모든 導火線과 紛爭의 火山들을 世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東獨政府의 立場임.

22. 政治的 領土的인 地位를 分明히 그리고 留保없이 承認하지 않는 限 그에 관해서 말할 수 없고, 獨逸聯邦共和國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들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講和條約이 締結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거부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 講和條約의 成立을 언제나 이루어 온 것은 바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였음. 意識的으로 妨害했던 講和條約을 구실로 하여 오늘날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者는 오직 이러한 境界를 變更하기 위한 길을 열어두고자 하고 있으며, 「히틀러」가 歐洲의 諸人民을 습격하고, 獨逸帝國主義와 「파시즘」이 犯罪를 犯하고 無條件降伏을 한 것인데, 습격을 받았던 諸民族들에 대해서 「法律的 請求를 어떻게 提起할 수 있는가?

23. 「로카르노」條約에 있어서와 같이 一方的으로 西方強大國들과 同盟을 굳히고 西方에 있는 境界는 認定하면서도, 東方에 있는 境界는 保留하려는 「슈트레제만」의 政策을 反覆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獨逸帝國主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後에도 그러했고 그들과 함께 「히틀러」가 戰爭을 일으켰던 것인데, 다시 境界의 要求를 提起한다면 어떻게 過去를 克服하여 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24. 歐洲 人民들은 西獨政府가 歐洲에 있는 境界들을 國際法上 拘束力있

는 것으로 承認하고 또한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도 그 境界들을 變更시키려 試圖하지 않는 獨逸聯邦共和國의 義務를 表明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境界를 變更하는 경우 暴力을 전혀 使用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는 者는 平和的 手段으로써 境界의 變更을 위해 鬪爭할 것을 - 이미 「히틀러」가 그의 侵略에 사용했던 戰術 - 絶叫하고 있었던 「슈트라우스」氏와 「슈뢰더」氏의 命題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임.

25. 重大한 結果없이 歷史의 經驗을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境界의 修正을 目標로한 帝國的인 強大國政策이 今世紀에 두번이나 獨逸人民을 流血的 戰爭과 破局에 몰아 넣었음.

26. 기습을 받았던 人民들의 苦痛은 말할수 없이 컸음.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的 集團의 「파시즘」에 反對하는 사람들과 共同으로 언제나 「파시즘」戰爭에 대해 반대하여 鬪爭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反「파시즘」勢力들은 兩次 世界大戰의 勃發을 막을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았음. 그러나 「히틀러 파시즘」이 敗北하고 獨逸帝國이 沒落한 후 오늘날의 東獨의 領域에 있는 統一된 勞動者階級과 그의 階級同盟者들은 그 기회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秩序의 수립을 위해 이용했음.

27. 이곳에서는 「포스담」協定에서 모든 人民들의 利害와 一致시켜 法的으로 記述되어 있는 것이 실현되었음. 즉 軍國主義「나찌즘」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戰爭利得者로서 戰爭에 대한 主要責任者에 屬한 「콘체른」의 無力化로 獨逸「파시즘」의 기습을 받은 이웃 民族들을 위한 올바른 境界의 確定이 이루어졌음.

28. 大資本을 除去한 후 東獨에서는 軍需와 戰爭에서 利得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存在치 않고 있으며, 戰爭宣傳, 人民들의 拍害와 民族 증오는 法的으로 禁止되고 있음. 이미 1950년에 東獨의 人民會議는 侵略行爲, 侵略戰爭의 宣傳化와 準備를 処罰하는 平和守護法을 議決했음.

29.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階級이 勞動하는 農民, 知識層, 企業經營하는 者들과 同盟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하고 있음. 大獨逸農民戰爭 以後

하나의 課業으로서 1848年의 「부르조아」革命에서도 實現되지 않고 있는 民主的인 改革들을 우리는 東獨에서 實現했으며, 그後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으로 移行했음. 民主的인 土地改革을 통해 農民과 農業勞動者에 얽혀 있는 數百年간의 不法을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용귀」(Junker) 層을 無力化시킴으로써 軍國主義의 發生地가 除去되었음. 옛 支配階級들의 不當한 教育特權들은 中斷되었고, 편협한 愛國主義와 民族主義의 不健全한 精神은 永遠히 學校와 大學에서 추방되었으며, 그것은 現代社會主義的인 教育體制를 위한 決定的인 前提였음.

30. 우리의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勞動하는 人民은 自由로운 自己決定 속에서 進步的 社會主義社會를 形成하고 있으며, 自由로운 自決 속에 民主的인 人民投票에서 壓倒的인 多數로 自由의 社會主義憲法을 決定했음. 國際法主體로서 모든 條件을 갖추고 있는 우리 國家는 確固해진 平和秩序위에 存立하고 있음.

31.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 우리는 蘇聯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確固한 友誼와 利害의 共通에 立脚하고 있는 持續的인 同盟을 맺었고, 東獨은 平和的인 對外政策을 追求하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國際적으로 尊重을 받는 하나의 平和愛護國 發展했음.

32. 물론 西獨 안의 內的인 發展을 評價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의 事項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獨逸聯邦共和國의 境界 밖에서도 아무도 無關心할 수 없는 지난 25年동안에 걸친 이러한 內的 發展의 局面과 作用들이 存在하고 있음. 貴國 자체 내에서는 1945年 以後 그 기회들을 利用하지 않고 버려두었으며, 「포스담」協定을 意識的으로 履行치 않았으며, 過去를 克服하지 않고 낡은 權力關係가 계속 存続하고 있음이 確認되고 있음. 이러한 過去의 復古는 直接的으로 分裂과 緊張을 초래했음. 그 당시 獨逸聯邦共和國議會議長은 「全獨逸로 半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半의 獨逸로 全體(獨逸)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로 표현했음. 낡은 所有構造를 규제하거나 再樹立하기 위해 그

- 리고 힘의 政治의 도움을 받아서 第2次世界 大戰의 結果들을 修正하기 위해, 西獨大資本은 西方強大國들과 同盟하여 獨逸을 分斷시켰음.
33. 一般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西獨首相이었던 「아데나워」氏에게는 民族의 統一보다도 西歐統合이 더 優位를 차지한다고 솔직히 承認했으며, 民族을 破壞하기 위한 모든 것을 그 스스로가 行한 後에 그렇게 承認했었음. 이미 1945.10.5 「아데나워」氏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論人代表들 앞에서 곧 「3個의 西方占領地域에서 하나의 聯邦國家를 形成」할 意圖를 公表했었고, 그후 1948年 分離된 通貨改革을 통해 經濟的 分斷을 結果 했으며, 西方占領地域들은 單獨의 西獨「마르크」를 導入함으로써 계획적으로 「外換의 外國」으로 만들었음. 1年後 獨逸聯邦共和國 수립으로 分離國家의 수립을 結果했으며, 그에 의해 民族의 分裂이 完成되었음.
34.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事態를 中止시키고자 試圖했음. 50年代에 東獨과 蘇聯도 再三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목표로 하고 또한 恒久的인 分斷「코오스」를 中斷시킴에 알맞았던 建設的인 提議들을 제시했었고, 특히 1952年3月의 蘇聯의 講和條約案은 큰 기회를 제공했었음.
35. 나는 오늘 貴下에게 西獨大統領 「하이네만」博士가 1958. 3.25 「본」의 聯邦議會에서 아주 뚜렷히 이러한 蘇聯의 「이니셔티브」로 부터 結果될 수 있었던 可能性들을 示唆했음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이러한 기회 역시 그 당시의 西獨政府에 의해 허사가 되었던 것임.
36.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말로 表現되는 西獨內的 우리하는 輿論들에 대한 挑戰과 蔑시에 대한 우리들의 警告를 無視했었으며, 分斷과 西獨分離國家의 수립에 反對하고 나섰던 西獨의 唯一한 政黨인 共產黨은 後에 違法이라하여 活動을 禁止했음.
37. 民族의 分斷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再武裝에 의해, 1954年의 「파리」條約에 의해, 그리고 1955年 西獨의 「나토」加入에 의해 굳혀졌으며, 「파리」條約 署名과 모든 우리 提議의 거부를 통해 「아데나워」가 이

끝었던 「본」政府는 独逸聯邦共和国 자체를 궁극적으로 東獨에 대한 外國으로 만들었음.

38. 여기에 당시의 社会民主黨黨首「에릿히·올렌하우어」가 1955.1.29「프랑크푸르트」의 「파울」教会에서 言及했던 말을 상기해 보겠음. “「파리」條約의 署名으로 우리는 独逸聯邦共和国에서는 처음으로 決定的이며 広範圍한 自由로운 決定下에 独逸의 分斷을 굳혀버리게 될 커다란 危險을 自體속에 內包하고 있는 外交政策에 대한 責任을 感受하고 있음.”
39. 「에릿히·올렌하우어」가 適切하게 특징지었던 外交政策의 遺産을 西獨首相이신 貴下는 오늘날에도 關係하고 있으며, 歴史的인 眞實을 잊게 할 수는 없음. 우리는 独逸을 分斷시키지 않았으며, 그 責任은 오직 西獨과 西方強大國들에 있음.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의 支配集團들의 利己心에 의해 희생당했고 20年前부터 이미 存在치 않고있는 「民族의 單一性」을 말한다면 「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고자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일임.
40. 西獨首相, 貴下는 빈번히 당신이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를 생각하는 경우「內獨關係」라고 말하고 있음. 貴下 部処中の 하나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있음. 西獨政府가 独逸을 分斷시키고「파리」條約을 署名한 以上은 그러한 表現은 不合理하며, 또한 우리 國家들간에 正常的인 同等한 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들을 갖고 있음.
41. 独逸聯邦共和国이 -모든 경고에 反하여- 「파리」條約으로 「나토」體制에 結合되고 그리하여 東獨에 대해서 스스로 外國으로 宣言한 以後에는 「內獨的 独逸關係」는 存在할 수 없으며, 「파리」條約에 대한 独逸聯邦共和国 政府의 同意는 反民族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侵略的인 帝國主義的 性格을 갖었었음.
42. 「独逸條約」第2條를 볼 것 같으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西方強大國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全體로서의 独逸에 대해 行使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음.
43. 第7條는 특히 더함. 同 條文에서는 東獨을 独逸聯邦共和国의 独占

資本主義的인 社会體制에 併合시키고 또한 西獨 帝國主義的인 條約體系속  
에 統合시킨다는 것임.

44. 貴下 자신의 宣言들에 따라 이러한 條約들이 現 西獨政府의 政治기반  
을 이루는 경우 「內獨關係」라는 公式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帝國主義的의 支配體制를 東獨에 擴大시켜 東獨을 「나토」條約속에 併合시킨다는 뜻을  
意味하는 것임. 西獨에서 通하는 4大強國의 責任이라는 命題는 東獨과  
東獨의 首都 伯林에서는 통할 수 없는 論理이며, 東獨에 關한限-  
우리의 憲法과 이와 關連되고 있는 東獨이 締結한 國際法的 條約  
들을 보더라도 쉽게 確信할 수 있는 일임.

-東獨은 4大強國의 責任에 소속되지도 않고 3大強國의 管轄權에 소속  
되고 있지도 않음. 獨逸民主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主義  
國家임.

45. 「特殊한 內獨關係」라는 公式 속에는 東獨을 後見關係에 종속시키려는  
넓은 要求가 內包되어 있으며, 現實들과 矛盾하고 있는 그와 같은 構想  
들은 오직 넓은 單獨代表라는 越權을 變型된 形態로 유지하고 또한 다  
른 方法으로 東獨의 無差別을 持續함에만 이바지할 것임. 貴下는 우리  
가 그것을 완전히 수락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協商對象이 아니라  
는 것을 理解할 것임.

우리는 貴下에게 그와 같은 식의 取扱을 要求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  
와같은 試圖를 우리들에 대하여도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을 것임.

46. 그 밖에 나는 다음 事項을 상기시키고 싶으며, 獨逸聯邦共和國이 아지  
도 「나토」에 結合되지 않고 再武裝을 하지않고 있었던 동안에 우리는  
講和條約과 民主的인 統一獨逸을 위한 提議들을 했었음. 우리는 그 당  
시 西獨안에 東獨에 대한 現實主義的인 政策을 淸성하고 또한 充分  
히 멀리 내다보는 政治家가 있을 것이라는 希望에서 境界線問題는 保留  
해두었으나, 西獨의 指導的인 政治集團들은 東獨에 대한 끊임없는 鬭爭을  
위해 保留된 境界線을 利用할대로 利用했으며, 同時에 그 集團들은 社會

主義에 대한 攻勢的인 힘으로 西獨軍을 擴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企圖했음.

47. 「特殊한 內獨關係」 그리고 「人間的인 便利化」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들에 있어서는 유난히 불쾌했던 經驗에 대한 어떤 記憶들이 떠오름. 1961.8.13에 이르기까지 境界를 開放했던 기간에 우리는 당시의 「本」 政府의 敵對的인 干涉政策으로 말미암아 매우 비싼 代價를 支払해야 했으며, 東獨市民을 피어 1,000 億 「마르크」以上을 사취했음.

48. 나는 위 金額이 1956年과 1957年의 東獨의 國民所得을 合친것과 거의 같은 規模라는 것을 言及하고 싶으며, 또하나의 比較를 한다면 위에 든 損害額은 주로 1950年부터 1961年까지에 걸친 東獨에 있어서의 總投資를 위한 支出보다도 더 많은 金額임.

49. 「本」은 「東方에 있는 빈한한 兄弟姉妹」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정말로 빈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西獨 政府가 東獨에 대한 負債의 支払과 모든 補償義務의 規制가 不可避하다는 우리의 立場에 好意를 보이리라 믿음.

東獨은 모든 損害에도 不拘하고 그의 社會主義的인 計劃經濟에 힘입어 世界産業國家들 中에서 注目할 만한 자리를 차지했음. 우리의 共和國과 그 市民들은 물론 오늘날 그와 같은 類의 「特殊한 內獨關係」, 그와 같은 類의 「人間的 便利化」가 없었더라면 더욱 잘 살수 있는 형편에 있을 것임.

50. 1961年에 우리 國境을 強化한 것은 人道的 措置이었으며, 이는 우리 住民의 死活利害와 歐洲平和의 유지에 이바지했음. 우리 市民은 자신의 經驗으로부터 우리가 1961.8.13 夕선 손가락이 우리 호주머니를 뒤질 수 없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後( 伯林障壁구축후) 最大의 經濟的인 비약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東獨에는 그와 같은式의 「特殊한 內獨」 狀態를 再確立하는 것을 許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

51. 그밖에 물론 特定한 두 國家間의 關係는 언제나 其他 國家들과의



關係에 比해서 特殊한 關係임. 가령 例를들면 獨逸聯邦共和國의 「오스트리아」共和國이나 瑞西와의 關係는 그 特殊한 特徵들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예를 들면 佛蘭西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는 구별되며 그것은 모든 國家間의 關係에도 해당함.

52. 그러나 主權을 갖는 서로 獨立한 國家間關係의 基礎은 언제나 國際法이 普遍的으로 妥當하는 規範이며, 그것은 東獨과 西獨이라는 獨立的이며 主權的인 兩國家間의 關係에 대해서도 完全한 效力을 가지고 있음. 國際法的 關係의 拒否를 우리는 물론 「모두 獨逸人」이라는 公式으로 탈을 씌우고자 한다는 것은 不必要한 일이며 問題는 그토록 單純하지가 않음.

53. 19世紀初부터 尙상 進歩의 側, 勞動者階級과 勞動하는 人民의 側에 서있는 獨逸人과 反動의 側, 資本主義의 側에 서있는 獨逸人이 있었음. 오늘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占資本主義的인 獨逸聯邦共和國은 서로 獨立한 두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市民들은 完全히 對立的인 條件下에서 살고 있고 勞動하고 있음. 東獨의 市民들은 자신의 勞動으로 자신의 福祉와 社會主義社會의 福祉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와 反對로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少數 階層의 財閥들이 勞動하는 人民의 勞動에서 利潤을 얻고 있고 武裝에 이바지하고, 그들의 擴張的인 權力追求로 平和를 威脅하고 있는 것도 同一한 獨占集團임. 그러므로 東獨에 있는 人民과 西獨에 있는 人民間에는 基本的인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임.

54. 歷史가 가르키고 있는 바와 같이, 大「브르조아지」의 利己的인 階級 利害는 尙상 國家利益으로서 사칭되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現實의 歪曲이 었음. 그러나 大「브르조아지」에게 有益했던 것은 결국 언제나 創造的인 人民에게는 害롭고도 不幸한 것으로 立證되었고, 勞動者階級과 全人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會的 利害인 社會主義의 利害는 모든 이른바 民族的 共通性보다 優先함.

55. 西獨首相, 貴下는 스스로 東獨과 西獨에 있는 對立的인 社會體制들간에는 여하한 混合도 여하한 失敗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表明했으며, 事實上 東獨과 西獨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들은 對立的인 社會秩序가 統合될 수 없기 때문에 統合될 수가 없음. 나는 外形上으로도 이러한 狀況判斷이 現實主義的인 政策, 즉 東獨과 西獨간에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를 수립하겠다는 合理的 政策의 基礎가 되어 진다면 이를 환영할 것임. 물론-누가 그에 관해 沈黙을 지키고자 했는가-우리는 社會主義者로서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기반 위에서 후에 統合(統一)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獨逸聯邦共和國에서도 社會主義가 勝利할 것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 人民投票에 의해 大多數住民이 同意했던 우리의 憲法에서는 이점을 分明하게 確定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에 이루어질 問題가 아님은 自明함. 이 問題는 서로 獨立한 主權國家들로서의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에 관한 協商對象도 아니며, 그것은 獨逸聯邦共和國에 있는 勞動者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層들의 事項임. 서로 獨立하고 社會秩序에 있어 對立的인 두개의 國家의 存在로부터 結果되고 있는 分明한 問題狀況과 法的 地位에 비추어, 平和의 確保를 위해서는 國際法的인 토대 위에서 平和共存關係를 수립하는 以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음.

56. 西獨首相, 貴下는 外國에서의 演說에서 최근에 우리 두 國家간의 暫定協定을 模索해야 한다는데 관해 發言하였으나, 國際法的인 概念으로서의 暫定協定은 既存하고 있는 狀況-社會主義諸國과 帝國主義諸國간의 現存勢力關係로 말할 수 있음-이 廣範한 目的과 意圖들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前提에서 出發하는 하나의 一時的인 合意에 不過한 것임.

貴下에 의해서도 確實히 評價받고 있는 「빌헬름·리브키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友好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國家들의 「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合意形態로서 보았으며, 솔직히 말해서 그 경우 「아메나워」가 考案해 냈던 非平和的인 共存을 위

한 解決方法은 다만 一時的으로 社会主義的인 独逸国家의 存立을 위한 協定을 하여, 「大氣象狀況」의 變化時에 承認하지 않은 境界를 侵犯하고 東獨에 대한 敵對的인 政策을 계속 追求하겠다는 解決方式임. 그것은 現實的인 政策이 아니며 또한 이미 平和를 向한 政策도 아니어서 부득이 狀況을 尖銳化시킬 것임. 그러나 問題되고 있는 것은 國際法의 기반 위에서 이른바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관한 持續的인 拘束的 規制임.

東獨側에서는 平和共存關係를 전혀 저해하고 있지 않으며, 東獨과 西獨은 國際法의 主體임. 우리는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独逸聯邦共和国의 国家的 存在를 결코 疑心치 않았고, 우리는 關係規制에 관한 國際法的 條約을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음. 그러나 独逸聯邦共和国은 여전히 우리가 國際法的 承認 즉 主權国家로서의 完全한 同等權을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事前條件을 제기하고 있음. 그런데 「포츠담」協定の 基本規程들을 실제로 이행한 것은 東獨이었음.

57. 西獨首相, 問題는 貴下의 政府가 東獨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를 變化시킬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이며, 國際的인 次元에서 東獨을 계속 差別하여 손해를 끼치는 것이 貴政府의 實際的인 政策인 限에는 正常的인 關係라는 말을할수 없음. 貴政府의 外相이 다른 國家들의 東獨과의 正常的인 關係 수립을 방해하고 通商代表部의 設置까지도 방해하기 위해 公式的인 業務指示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진지하게 同等權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独逸聯邦共和国의 政府代表가 東獨과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第三國의 모든 措置에 反對함에 얼마나 맹렬한 手段을 쓰고 있는가를 正確히 알고 있음. 그것은 東獨을 國際組織에서의 同等한 協力에서 멀리 하게 하려는 變함없는 試圖인 것이며, 그것은 특히 偉大한 人道的 要請에 이바지 하고 있는 世界保健 機構에의 東獨의 參加를 저지할 정도임. 貴下의 政府가 스스로 천명한 의구심과 다른 「나토」諸國의 抵抗에도 불구하고 西伯林에서 國際法을 違反하여 세운 官庁인 이른바 旅行局

(Travel-Board)을 유지하기 위하여 展開하고 있는 活動들도 마찬가지로 差別的인 行動임. 占領時期로 부터 오래동안 지속되어 내려온 이 措置는 體面을 상하게 할 程度로 東獨市民을 差別하고 있으며, 다른 國家統治權을 干涉하는 越權을 하고 있는 것임. 저는 貴下에게 東獨과 東獨市民을 계속 差別하는 政策을 細目에 이르기까지 証明하는 방대한 証拠資料를 제시할 수 있는 位置에 있으며, 이 기회에 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여러 機關들이 여러해 前부터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있는 東獨에 대한 財政的인 義務를 履行하고 많은 負債를 清算해야 한다는것을 상 기시키고 싶음.

58. 西獨首相, 单独代表라는 越權과 「할슈타인」 原則의 持續的인 適用은 完全히 東獨을 이 以上 差別하고자 하지 않겠다는 貴下가 反復하여 申明하고 있는 意圖와는 相反하고 있어서 여기 言行間에 깊은 矛盾이 나타나 있는 것임. 그와같은 方法으로는 어떤 경우든 規制된 共存은 생각할 수 없음. 國際法違反인 单独代表의 主張은 이에 立脚하고 있는 「할슈타인」 原則과 함께 궁극적으로 여지없이 포기되어야 하며, 東獨과 東獨의 盟邦들은 東獨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을 妨害하고 계속 第3國에 壓力을 가하려는 西獨政府의 試圖를 放置해 둘 수 없다는 事實을 알아 두기 바람. 第3國은 東獨과의 關係正常化에 의해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부담을 加한다는 主張은 事實과 다르며 第3國의 東獨과의 外交關係의 수립은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正常化를 促進시킴.

59. 1969年以來 周知하는 바와같이 亞細亞와 「아프리카」의 8個國이 東獨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했으며, 같은 해에 처음으로 西獨政府는 두개의 主權國家인 東獨과 西獨이 存在한다고 宣言했음. 이들 國家의 國家元首들과 政府首腦들간에는 國際的 慣例에 따라 公式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음.

60. 西獨首相, 貴下의 政府가 참으로 東獨과의 關係正常化를 원한다면, 同一한 方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國家들의 모든 措置를 기뻐

해야 하며, 그것은 貴下의 政府가 冷戰의 渦中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貴下의 同盟者를 만들어 낼 것임.

61. 西獨首相, 그밖에 貴下는 물론 社会民主黨 黨首인. 貴下는 원래 東獨에서 勞働者農民이 政治權力을 가지고 있고, 모든 國家機關에서 「파시스트」들을 숙청했고, 또한 大企業이 人民所有化되었다는 것을 환영했어야 함. 1891년에 이곳 「에어후르트」綱領에서 滿場一致로 決議했던 대로 獨逸社会民主主義가 東獨에서 실현되었음. 바로 그 때문에 貴下로부터 必然의 結果들을 수반할 東獨에 대한 現實主義的인 態度를 기대할 수 있음.

62. 尊敬하는 西獨首相!

나는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의 立場을 말했으며, 國際法的 기반 위에서 우리의 두 國家間에 同等한 關係에 관한 條約이 必要한 理由를 論證했음. 우리는 그와같은 條約의 締結에 의해서 지난 20年동안의 終止符를 찍을 時點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우리 國家間關係의 規制를 빼앗을 수는 없음. 새로운 始作을 하자. 그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것은 疑心할 필요가 없음.

이를 위해서는 純粹한 平和措置를 위한 善意와 준비가 必要하며, 우리는 平和, 歐洲安保,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關係수립에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다할 생각임. 歷史의 모든 무참한 經驗에 의하면 復仇政策을 維持하겠다는 努力이 許容 될수 없음은 이미 自明함.

63. 東獨側에서는 主問題의 解決인 國際法的 기반 위에서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關係의 樹立을 可能케 하는 條約案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의 政府는 西獨政府와 이러한 條約을 協議하여 締結할 생각임.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수립에 관한 그와 같은 條約의 締結은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史에 새로운 側面을 열게될 것이며,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國際法的 原則에 따라서 形成된 이러한 條約의 存在는 그로써 平和의 作品以上の 것을, 安保의 作品以上の 것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 獨逸聯邦共和國과 東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歐洲의 모든 國家

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便利化를 초래할 것임.

正常的인 關係의 수립 만으로써는 아직도 西獨에서의 軍需財閥「네오나찌스트」들, 復仇主義的인 結社들의 活動과 隆昇하는 威勢로부터, 그리고 復仇思想과 十字軍思想이 나날이 만연하는데서 생기는 위험들을 제거할 수 없기때문에 국제법적 관계가 필요함. 그러나 그것은 25年 前부터 貨幣改革과 獨逸聯邦共和国의 단독 수립으로부터 시작하여 再武裝과 「파리」條約을 거쳐 「나토」에의 合併에 이르기까지 그릇된 方向에서 이루어졌던 數百가지의 措置들을 취한 후 처음으로 올바른 方向에서 이루어지는 實際的인 措施가 될 것임.

64. 우리의 條約案은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以外에 東獨과 西獨間의 暴力拋棄에 合意하자는 提議를 包含하고 있으며, 그 경우 그 暴力拋棄는 條約 當事國과 相互間境界의 國際法的 承認위에서 可能하다는 見解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勿論임. 그러므로 國際法上 效力있는 暴力拋棄協定은 相互간의 實體, 즉 國際法的 主體로서 承認하는 國家間에만 締結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 없이는 暴力拋棄는 對象을 상실한 속이 빈 열매와 같은 것임. 拘束力이 없는 단순한 國境의 尊重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國境의 留保없는 國際法的 承認과 領土保全이 問題되고 있음을 나는 強調함.

65. 東獨의 條約案은 東獨과 西獨이 지체없이 「유엔」기구에의 加入을 申請하자는 意味심장한 規定도 包含하고 있으며, 팔목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的인 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東獨과 西獨이 同等하게 「유엔」의 世界的인 活動에 참가하고 또한 이러한 方法으로도 諸人民들의 全面的인 平和的 協力에 이바지 한다면, 그것이 兩國家와 그 市民의 利益을 위해서는 勿論 世界機構의 普遍性이라는 利益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66. 東獨의 條約案은 끝으로 兩國家가 모든 形態의 核武器를 포기하고 自己領土 위에서 生化學武器를 生産한다는가 所有裝置하지 않는다는 것, 兩

國家의 軍縮協商을 規定하고 있음. 東獨政府는 西獨과 國際法上 拘束力  
을 가지는 軍縮을 위한 措置들에 合意하자는 提議를 하는 것임. 나는  
西獨首相인 貴下에게 가장 무섭고도 가장 危險한 武器에 대한 恐怖로부  
터, 毒「가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恐怖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키는  
것이 가장 人道的인 行爲가 아닌가를 묻고자 함.

우리의 對話는 東獨의 條約案에서 論及되고 建設的으로 解答되고 있는  
歐洲 心臟部의 平和 確保에 관한 決定的인 問題에 대하여 直接 말할 수 있  
는 機會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東獨과 西獨이 平和共存의 實踐過程에서  
東獨에 대한 모든 敵對的인 政策을 포기한다면, 서로 國際法的인 正常  
的 關係를 수립한 後에 다른 問題들도 다룰 수 있을 것임. 그리고  
平和共存의 基本問題 解決은 모든 다른 問題들을 위한 前提條件이 되는  
것임.

67. 나는 貴下에게 東獨이 提示한 條約案의 協議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  
며, 우리 對話의 目的은 東獨과 西獨이 서로 國際法上 同等한 關係를 수  
립하기 위한 合意를 하자는 데에 있는 것임.

이 점에서 東獨政府는 協議進行에 있어서 貴下에게 提示된 條約案으로  
부터 출발하여 그 條約案을 根拠로 다음과 같은 原則的인 問題들을 다  
루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함.

가. 國際法의 原則에 입각한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正常的인 關係의  
樹立, 모든 形態의 西獨政府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拋棄

나. 다른 國家의 對外關係에의 不干涉, 「할슈타인」原則의 궁극적이고도  
明白한 拋棄

다. 「유엔」憲章 第2條 4項에 따라 制限없는 國際法上的 主體의 相互承  
認, 領土保存과 既存 國境線 不可侵性的 相互承認下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간의 暴力拋棄

라. 東獨과 西獨의 「유엔」機構에의 加入申請.

마. 核武器 所有의 拋棄 또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 処分權의 拋棄

生化学武器의 生産, 使用 및 貯藏의 포기, 軍費支出의 50% 削減

바. 第2次世界大戰의 모든 殘滓의 除去와 이와 관련된 問題들의 討議  
사. 東獨에 대한 西獨의 모든 負債의 清算과 西獨에 의한 賠償의 規制  
68. 西獨首相, 끝으로 나는 다시 한번 建設的인 解決에 이르러는 東獨政府의  
決意를 確認하고 싶으며, 이는 雙方首相 자신들이 계속 協議를 위해 만  
나는 것이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必要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출  
발하고 있음. 이러한 立場에서 나는 境界線 近方의 西獨 地域에  
서 貴下와의 對話를 持續하기 위해 다시 만날 생각이 있음을 천명하며,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가 앞을 내다보고 勇氣와 決意를 보인다면,  
平和와 歐洲安保를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關係  
를 規制할 수 있는 前提들이 마련될 것임. 傾聽을 感謝함.



「에어후르트」兩獨首相會談에서의 「브란트」西獨首相의 演說

( 1970.3.19 )

1. 首相, 그리고 여러분! 東獨政府의 觀點에서 말한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른 말을 내가 한다 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임.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생각을 均一化하고자 하지는 않음. 물론 우리가 相互間에 지나온 20年 또는 25年 동안에 겪은 일을 다 論及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임. 狀況은 오히려 우리에게 平和와 人間을 위한 進歩를 成就할 수 있는 兩側의 共同努力의 摸索을 要請하고 있음.
2. 나는 이 問題에 관한 見解를 表明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곳「에어후르트」에 올 수 있게 해준 당신의 友好的인 款待에 感謝드리고 싶음. 우리의 実務者를 통한 慎重한 準備는 우리가 相逢함에 있어 正確한 過程을 保障해 주고 있음. 당신이 당신政府에 있는 그리고「에어후르트」地區와 「에어후르트」都市에 있는 모든 參加者와 協助者들에게 내가 그분들의 努力을 크게 評價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음. 數週만 지나가면 民族社會主義 暴力支配가 獨逸帝國의 破滅 속에서 끝장난지 25年이나 됨. 1945年 以後 國家的 統一에로 이르지 못하고 獨逸民族의 길이 갈라져야 했던 것을 獨逸民族은 悲劇으로 느끼고 있으며, 많은 民族들도 悲劇으로 느끼고 있음. 즉 우리는 그 前 狀態로 되돌아갈 수가 없음. 따라서 나는 첫머리에서 狀況은 平和와 獨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進歩에 도달할 수 있는 領域의 摸索을 要請 하고 있다고 말했음.
3. 3. 19은 西獨의 住民은 勿論 東獨의 住民들과 모든 獨逸人들에게 있어서 重要的인 날임. 兩國家가 樹立된지 처음으로 政府首腦들이 共同的인 關心事를 協議하기 위해 만났음.

그러므로 理性만이 要求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마주

않게 되니 感情도 함께 뛰고 있음. 우리는 우리의 會合이 獨逸의 境界를 훨씬 넘어 世界의 耳目을 끌고 있다는 것도 確實히 意識하고 있음.

우리의 共同의 歷史가 지난날 「에어후르트」가 獨逸人들을 위해 어떤 중요한 役割을 했던가를 묻고 있음.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1808. 10.2 「케에테」에게 「政治는 運命이다」라고 말했던적이 있었음. 이곳 「에어후르트」에서 1850.3.20 그 당시 獨逸을 平和的이면서도 民主的인 方法으로 統一하려는 마지막 試圖가 이루어졌었음.

4. 그 밖에 社会民主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上昇하고 있던 獨逸勞動者運動을 위해 1891년의 「에어후르트」綱領이 발휘했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음. 이 綱領을 理念史에서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民主主義에의 意志, 보다 重大한 社会的 正義에의 意志, 그리고 平和에의 意志가 때에 맞게貫徹되었다면, 獨逸人民과 歐洲와 全世界가 많은 不幸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獨逸의 두 部分(兩獨)에 새로운 都市들이 破壞에서 소생되었으며 經濟와 科學이 刮目할만 한 水準에 도달했음.

5. 1945年 以後의 獨逸政治는 궁극적으로는 - 東西獨의 建設的 業績에도 不拘하고 - 獨逸을 占領했던 強大國들의 政治의 한 機能이었음. 그 후 東西間의 勢力對決이 獨逸狀況을 支配하고 있으며, 또한 歐洲를 分斷하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分斷을 단순히 此前 狀態로 還元시킬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分斷의 諸結果를 緩和시키고, 또한 能動的으로 歐洲에서 우리를 分斷시키는, 동시에 獨逸을 分斷시키고 있는 무덤을 메꾸도록 노력할 수 있음.

그 경우 나는 獨逸民族의 持續的이고도 生命力 있는 現實로부터 출발함. 나는 지난 時代의 國粹主義的인 思想을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그러나 나는 民族的인 構成要素들이 스스로 歐洲聯合과 國際的인 聯合

過程에서 그 效力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確信하고 있음. 共同體驗과 共同責任에 의한 歷史的 紐帶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우리의 共屬性을 느끼게 하는 家族, 言語, 文化 및 모든 測量할 수 없는 것들의 유대들이 오늘날 하나의 現實로 되어 있음. 나의 確信에 依하면 이러한 基底를 否定하거나 무시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련임. 獨逸안에 70年 現在 事實上的 境界 안에 서로 함께 살아야 할 두개의 國家가 成立해 있다는 現實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各其 다른 社會秩序를 評價함에 있어 우리 사이에는 심각한 意見差異가 在存하고 있음.

7. 그러나 이러한 見解의 差異가 歐洲平和를 더 確保하고 우리의 兩國家間에 - 歐洲平和秩序의 側面에서 - 規制된 平和共存의 形態를 추구할 우리의 課題를 免除시켜 주는 것은 아님.

우리가 이러한 使命을 直觀할 때에만 우리의 會晤은 正當한 뜻을 가짐. 우리가 이 使命을 다할 경우에만 우리는 歷史앞에 存続할 수 있음.

問題解決에 가로놓인 難關들에 대해 그릇된 희망을 걸어서는 안됨. 兩政府首腦가 오늘날 國家的 統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充分히 서로 現實主義的인 同一한 意思가 兩側에 存在하고 있음.

世界狀況은 危險한 不安을 야기치 않고서는 이것을 許容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現實을 초월하여 우리들 國家의 利益과 우리國家들이 同盟을 맺고 있는 強大國들의 利益을 平和와 人間에게 利롭도록 調和시키는 努力을 共同으로 試圖해야 할 것임.

8. 緊張 代身에 緊張緩和, 軍事的 對決 代身에 平和의 確保, 이것이 나의 政府의 目標임. 그리고 나는 그 경우 내가 獨逸聯邦共和國 안의 責任性 있는 勢力에 의해 支持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음. 우리의 오늘 對話는 國家들 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實務者들에 의해 마련되지 않고, 우리들의 頂上의 對話로 始作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일임. 그것은 우리關係의 特殊性을 특징 지우고 있음.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問

題들은 政府 次元에서의 直接的인 接觸없이는 始作될 수 없을 程度로 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分断은 점점더 深化되어 왔던 것임.

바로 이 點에 우리의 責任이 있는바 우리가 오늘날 兩國家의 關係를 서로 規制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과 또는 하고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責任을 一般的으로 歷史에 또는 特別히 「히틀러」에게 지울 수는 없음. 우리 스스로가 現在 責任을 지고있음.

9. 나는 나의 協調者와 幻想을 가지지 않고 이곳에 왔음. 우리는 友好的인 說得을 통해 또는 우리가 도사 相違하고 있다는 단순한 事實을 통해 見解들을 合意시킬 수 있음. 우리는 原則적인 差異들을 알고 있음.

\* 그리고 그 差異를 冷靜하게 確認하고 있음. 그럼에도 不拘하고 나는 우리들中의 어느쪽도 相對方의 見解를 自己 自身の 政治속에서 올바르게 評價할 수 있을 程度로 相對方의 見解를 알고자 하는 試圖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믿고 있음.

우리는 存在하고 있는 그대로의 狀況으로 부터 出發해야 함. 歐洲의 心臟部에 있는 關係가 沮壞되고 있는 경우 東과 西간의 關係는 本質적으로 改善될 수 없음은 分明함. 그것은 兩政府가 우리 두國家의 利益을 위해 獨逸民族의 利益을 위해, 우리大陸에 걸친 安保의 利益을 위해, 밟아야 하는 그리고 밟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엄숙한 試圖를 기도해야 함을 뜻하고 있음.

\* 그 경우 우리가 어두운 過去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앞을 내다 보는 東獨政府의 誠意表示가 있기를 바라고 있음.

¥ 10. 우리의 두 國家間에는 서로 友好的인 또는 同盟한 其他 國家들의 住民間에는 存在하고 있지 않은 特殊한 種類의 關係가 있음은 論議의 餘地가 없음.

¥ 그러므로 다른 國家들간에는 存在하고 있지 않은 共通性들이 있음. 우리가 서로 해결할 對決 역시 다른 民族들간의 對決과는 상이한 種類의 것임. 그 對決들은 民族의 單一성과 관련되어 있음. 다른 共通性도 存

在하고 있음.

\* 西独과 東独은 高度로 武装하여 独逸領土위에서 서로 對峙하고 있는 條約體制들의 構成員들임. 兩國家는 지난 여러해에 걸쳐 戰爭을 防止했고 또한 오늘날 相對的인 安全을 保障하고 있는 歐洲에서 勢力의 均衡을 支配함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참다운 平和와 安全은 「블록」의 對決과 함께 獨逸안에 있는 두개의 國家의 敵對關係 역시 終結시킬 歐洲 平和秩序 안에서만 持續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西独政府는 平和를 最高의 善으로 보고 있음. 우리는 確實히 獨逸땅으로부터 이 以上 戰爭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見解의 一致를 보고 있음.

11. 兩獨은 暴力으로 또는 暴力의 威脅으로 憲法에 定해 있는 目的을 追求할 權利도 可能性도 가지고 있지 않음. 決코 平和를 사랑하는 民主的인 統一獨逸은 戰爭이나 市民戰爭에 의해 이룩될 수는 없음.

이러한 목적은 문구상으로는 兩獨에 共通된 目標로 設定되어 있음. 그러나 그 內容에 의하면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거리가 있음.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記述되어 있는바와 같이 自由主義的인 法治國家를 信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歷史만이 對答해 줄 수 있는 「테마」를 놓고 이곳에서 論爭해야할 것인가. 우리는 물론 歐洲의 國家들은 오늘날 分斷시키고 있는 무덤들을 덮어버리는 歷史的인 發展을 不可能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됨. 獨逸民族이 自由로운 自決 原則에 따라 함께 살기를 決定하는 것을 不可能하게 만들어서는 안됨. 우리 두 政府에 대해서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그 外의 問題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하겠음.

12. 1944年 以後 이루어진 獨逸에 관한 4大國協定에 直面하여, 우리 두 國家間의 合意는 4大強國의 既存權利를 저촉할 수도 없고 代置할 수도 없음. 이는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條約은 勿論 蘇聯과 東獨과의 條約에도 해당됨. 이것은 도시 우리들이 받아들인 雙務條約 또는 多邊

的、條約에도 해당됨. 이러한 協定은 必要하나 우리간의 障壁을 解消시키는데 방해해서는 안됨. 내가 4大強國協定과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協定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伯林 問題와도 關聯이 있는것임. 나는 당신이 이러한 事實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바임. 우리는 獨逸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伯林的 地立를 變化시킬 수 없음. 나는 一面으로는 現實들의 承認을 他面으로는 주어진 現狀의 一方的인 變化를 要求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西伯林이 西獨에 의해 管轄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은 西獨政府가 西方 大國으로부터 一定한 委任을 받아, 예를 들면 外部에 대해 西伯林을 代表하거나 또는 伯林的 經濟的 生活能力을 돌본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 事實上 西伯林은 經濟的인, 財政的인, 法的인 그리고 文化的인 면에서 西獨과 구별되지 않고 있음. 西伯林은 그런 限에서 完全히 우리에게 屬하고 있음. 西方 3大國도 西獨도 直接 該當伯林人도 大強國이 確정한 伯林的 地位를 變化시키는데 同意하지 않을 것임.

13.4 大強國이 伯林에 있어서의 그들의 統轄權을 어떻게 行使할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은 4大強國의 事項임. 現地位의 改善에 관한 強大國간의 理解가 成立한다면 西獨政府는 이를 歡迎할 것임.

나와 西獨政府로 볼 때는, 歐洲 中央에서의 正常화와 緊張緩和의 努力이 伯林内の 그리고 伯林을 둘러싼 狀況의 緊張緩和와 正常화와 關聯되어 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음. 나는 이제 東獨의 國家元首가 지난해 12.18 우리의 大統領에게 우리 國家들간에 同等한 關係의 수립에 관한 條約案을 전달했다는 事實을 회피하고 싶지 않음. 西獨政府는 그후 條約案의 對象들을 검토했음. 물론 우리는 그 條約案속에 포함된 點들을 도시 對話하기 前에는 거의 公表하지 않을 생각임. 西獨政府의 態度는 우선 意見交換에 들어가는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西獨政府는 反對條案을 제기치 않았음.

14. 이러한 意見交換의 目的은 우리가 西獨과 東獨간의 關係를 條約上

規制 可能한가의 協商을 시작할 수 있는가를 確認하는데 있음. 그 경우 나의 政府로서는 우리들간의 條約 또는 協定도 우리들의 政府가 第 3 國家들과 締結하는 모든 協定과 同一한 拘束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15. 우리들의 政府간에 이루어질 協商의 種類와 対象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나는 首相이신 당신에게 이미 1970. 1. 22日字의 나의 書翰에서 傳達했음. 西獨政府의 基本立場과 내가 당신에게 그당시 傳達했던 原則들을 다시 한번 確認하겠음. 즉

- ①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兩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님.
- ② 그 밖에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배제,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義務 및 兩側 境界의 尊重 義務등은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함.
- ③ 거기에는 條約 相對方의 領域안에 있는 社會構造를 暴力으로 變化시키고자 하지 않을 義務도 包含됨.
- ④ 兩政府는 이웃간의 協力. 특히 政府間合意에서 共同的인 便利化에 基礎를 둘 수 있는 專門的인 技術協力の 規制를 追求해야 함.
- ⑤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관한 強大國의 現存하고 있는 權利와 責任들은 尊重되어야 함.
- ⑥ 伯林안의 그리고 伯林을 에워싼 地位의 改善에 關係 合意하려는 強 大國의 努力을 支持해야 함.

16. 首相님, 1. 22日에 나는 당신에게 相互間的 暴力拋棄를 서로 理解할 것을 제의했음. 그러므로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의 두 國家가 歐洲 安保와 國際的 安全의 保障問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相互間的 關係에 있어서 「유엔」憲章 條文의 一般的인 原則과 目的에 따를 것이라는 共同的인 宣言이어야 함.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紛爭問題를 오직 平和的 手段으로서 解決하고자 해야 함. 우리는 우리 兩側의 關係에 있

어서는 물론 歐洲安保問題에 있어서 유엔憲章 第4條에 따라 暴力的 威脅 또는 暴力的 行使를 拋棄할 義務도 받아들여야 함. 우리의 兩 國家間의 關係를 條約上의 基盤위에서 세우려는 것은 歐洲를 위한 重大한 事項이며 歐洲를 위한 安保와 協力の 強化에 이바지할 會談의 成立을 促進할 것임이 確實함.

17. 東獨國家元首의 條約案안에는 國際組織에 있어서의 우리 두 國家의 地位를 다루자는 點이 內包되어 있음. 나는 1969. 10. 28日字의 施政演說에서 이미 西獨政府는「유엔」과 其他 國際機構에서 協力を 強化할 意圖를 가지고 있음을 確定했음. 나는 나아가서 東獨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 友邦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東獨政府 自體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나는 우리 對話의 進行속에서 그리고 우리對話의 進展에 따라서 이 問題에 관해서도 對話를 하게되기를 提議함.

18. 이 點에서의 進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經濟와 科學의 能力을 從來에 있어서 보다도 더 平和, 開發, 世界의 많은 곳에서의 굶주림에 대한 鬭爭에 利用함에 이바지할 것임. 이러한 뜻에서 効率的으로 도와줄 수 있기 위해 우리는 東과 西에 있는 兵力과 軍備의 均衡잡힌 制限도 추구해야함. 우리 獨逸사람들은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는 경우 모범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同盟體들에 대한 完全한 忠誠을 바치는 경우에도 建設的인 競爭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함.

世界에서 平和的 關係를 促進시키려는 모든 努力은 우리가 우리 市民들을 위해 平和를 창조하는 경우에만 믿을 수 있고 確信하게 됨.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形式的인 文書만으로는 充分치가 不충분함. 東西獨 市民들은 正常化에 의해 무엇인가 얻어야 함. 여기에 나는 다만 暗示的으로 境界를 긋고자 하는 廣範한 分野가 나타나고 있음. 細目들은 앞으로의 會合에서 그리고 確實히 다른 次元에서의 상세한 協議에서 다루도록 留保되어야 함.



19.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限 우리가 도와야 하는 人間的  
인 괴로움을 생각함. 두가지 例를 들면 子息들이 自己兩親과 結合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들을 再結合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  
겠음. 愛人들이 境界線의 저쪽과 이쪽에서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우  
리는 그들의 結婚을 可能케 해야 함.

우리는 우리의 관할 官庁들에게 지난 1年半에 걸친 보다 肯定的인 資  
料에 滿足하지 말도록 權限을 委任해야 함. 또한 우리들은 經濟와 技  
術의 領域에 걸쳐 本質的으로 더욱 強力한 交流를 追求해야 할 것임.

이것은 다른 領域에도 해당함. 道路往來에 있어 우리는 西獨과  
東獨의 計劃으로 長距離街道建設의 뜻있는 調整을 企圖하고 또한 広範  
한 境界通過의 開放과 다른「콤뮤니케이션」의 容易化를 圖謀해야 함.  
汽車往來의 促進, 普通料金表에 의한 統一的인 運送法의 마련 및 鐵道行  
政間의 技術的 接觸의 改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內海의 航海分  
野에서도 改善이 可能함. 個人間의 연결을 그리고 兩獨相互間의 「파트  
너」와 商社들간의 연결들을 改善하기 위해 우리는 電話通信, 電報  
通信 및 「텔레타이프」通信을 強化하고 送信制度의 다른 施設들도 더 잘  
利用하고 清算去來에 있어서의 難關들을 克服하기 위해 合意를 해야 함.  
끝으로 나는 境界線을 그음으로부터 결과된 그리고 地方的인 問題들을 解  
決해야 할 곳에서 생기는 數 많은 實際的인 問題와 行政的인 問題들을 생  
각하고 있음.

20. 우리가 獨逸과 伯林안에 있는 두 國家間에 어떤 경우든 例를 들어 西獨과 東  
歐의 여러 國家間에 오늘날 이미 存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토록 많  
은 訪問可能性, 文化交流, 「스포츠」交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確實히 하나의 進展일 것임. 물론 이것은 사소한 始作인 것임. 다만  
우리가 正常化를 진정 생각한다면 그리고 條約이 빈 접시로 남아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하리라고 봄. 나아가서 나는 아주 솔  
직히 말하자면 나의 생각으로는 참다운 正常化는 內獨의 境界障礙物과 障

벽의 克服에 이바지해야 함. 그것들은 우리狀況의 한탄스런 特殊性을 상징하고 있음. 오늘 내일중으로 그것들을 쉽게 變化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더 많은 移動의 自由를 초래하고 人權의 餘地를 창조하는 進歩를 달성하려는 것이 우리 努力의 目的이며 뜻임에 틀림없음.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계속 주장할 것임.

21. 나는 우리들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權의 기반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음. 우리들중의 누구도 다른 사람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으며 우리들중의 누구도 獨逸의 다른 部分(兩獨 相互間)을 外部에서 代表할 수 없음. 이것은 우리가 - 어떤 感情을 가지고도 언제나 - 알고 있는 發展의 結果임.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는 相互 關係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선 이미 하나의 進展이라 하더라도 特別히 密接한 關係를 위해 努力해야 함을 目標로 해야 함. 그리고 그 경우 나는 내가 今年1.14 西獨議會에서 行한 나의 演說에서 列挙했던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들을 뜻하고 싶음.

22. 兩獨逸國家中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後見하고자 해서는 아니됨. 나는 東獨의 어떠한 紐帶나 어떤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 마찬가지로 나는 西獨에 대한 그에 해당하 는 要求들을 수락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음.

首相님, 나는 당신이 이곳에서 東獨政府의 立場提示에서 말씀한바 - 聯의 重要한 個別問題들에 관하여 우리의 오늘의 對話와 차후의 對話의 進行속에서 즐겁히 말해 보고 싶음은 물론 내가 말한바를 注意깊이 검토해 주기를 당신께 간청해야 하겠음.

23. 나는 이 機會에 다만 한가지만은 말해 두고자 함. 즉 내가 細目에 있어 反駁않는 경우, 당신은 確實히 내가 西獨에 있어서의 國內政治的 發展의 여러가지 상이한 局面에 관한 당신의 評價, 個別政治集團들과 政治的 人物들에 관한 당신의 評價에 同意치 않는다는 생각에서 出發해야 하며, 당신이 西獨의 發展과 獨逸안에서 두개의 國家가 成立한데 관해 제시

한 分析에 대해서도 主로 同意치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바람. 나는 당신이 방금 大西洋同盟의 테두리안에서의 西獨의 역할에 관해 상술한 바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당신이 그 경우 西獨의 國防相이며 社会民主党 副党首로서 나의 代理者의 한 사람인 나의 親旧「헬무트·슈미트」에게 責任을 전가시키거나 추리하고 있는 特殊役割과 個人的인 역할에 관해서 당신이 陳述한 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음.

24. 우리는 여하한 侵略의 軍事政策도 추구하고 있지 않음. 당신은 당신側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屬하고 있는 同盟의 忠實한 「파트너」임. 그리고 그런 限에서 兩側에 있어 西와 東間에 同盟體들간에 歐洲에 影響을 주는變化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變化가 생김.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變化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首相님, 당신은 내가 당신의 視野에서 一般的인 問題와 原則的인 問題에 集中하고 1次的인 또는 2次的인 問題들속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理解하라고 말 했었음. 나는 - 나는 몇 가지 補充 陳述을 해야 할 것임 - 나의 視野에서 一般的이며 原則的인 問題와 各個別 問題가 原則的인 問題와 마찬가지로의 比重을 確實히 가지고 있지는 않음 實際問題들을 併立시켰음. 그러나 그와 같은 연결은 兩部分을 위해 많은것을 결과시키며 그것은 내가 바로 言及하고 強調한 바이며 즉 우리의 關係는 無差別과 同等權의 기반위에 立脚해야 한다는 것, 어떤側도 다른 側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 우리중의 어느 側도 밖에서 獨逸의 다른 部分(西獨과 東獨)을 代表할 수 없다는 것과 矛盾할 內獨的인 뜻에서가 아님. 그런 限에서 당신은 獨逸안에 있는 두 國家間의 關係를 內獨的 關係 대신에 獨逸間(Zwischendeutschland) 關係라고 말할 수 있음.

25. 당신은 具體的으로 두번째 句節에서 내가 協商할 생각이 있는가고 물었음. 우리는 協商할 時期가 도래했는가 - 나는 時期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음 - 를 確定할 생각임. 그리고 나는 이제 意識的으로 協商을 위해 어느 側이든 제시하는 모든것 또는 아직도 우리 對話의 進行에 제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에 添加한다고 나는 말했음. 나는 統一獨逸

에 대한 展望속에 구상된 우리 兩國家들의 憲法에 關係 言及했음. 이것은 西獨은 勿論 東獨이 締結한 條約들에게도 해당함.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條約에서는 蘇聯과의 東獨과의 友好條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國家的 統一(性)을 可能性으로서 포함하고 있음. 거기에 다 兩側에는 이와 關係하여 하나의 目的을 言及하고 있는 一聯의 表明들이 있음. 그 경우 條約에 있어서는 勿論 民族自決權과 關係되고 있는 이러한 展望들의 意圖와 目的에 있어 어느것도 變化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明白히 해야 함.

26. 이미 이러한 理由에서 나는 國際法的 承認이라는 概念은 勿論 國內 事項에의 不干涉이라는 概念도 獨逸聯邦共和國과 東獨간에 同等한 關係를 수립하는 경우 問題가 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確信하고 있음. 오히려 兩國家의 各者는 各政府가 自己 權限에서 自己領土 위에서 規制하는 바를 尊重해야 할 同一한 義務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임. 그때 거기에는 西獨과 그의 指導的인 人物들에 대한 名譽를 훼손하는 攻擊을 中斷하는 것도 속함. 이것 역시 우리들 國家間的 無差別의 一部를 이룸. 無差別과 同等權의 原則이 固有한 主權者인 獨逸人民을 도와 어느날엔가는 效力을 가지게 해야 할 우리의 目的을 저축해서는 안됨.

首相님, 당신의 陳述과 나의 表明으로 보아 우리는 어느경우든 길고도 심히 고통스러운 路의 出發點에 서 있다는 것을 結論지을 수 있음. 그러나 過去에 있었던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러한 路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結論으로 도출되고 있음.

우리는 分斷시키고 있는 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음. 그러나 우리는 合意가 可能할 수 있는 問題들을 前面에 내세우고자 함.

우리가 오늘 우선 준비된 宣言을 했다는 것은 獨逸안에 있는 두國家의 政府首腦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는 特殊한 事情에 비추어 理解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는 모든 經驗에 따라 問題에 關心을 갖고

마치 窓 밖을 向해서만 말하려는 그러한 걸치레를 피하는 보다 信賴할 수 있는 形式으로 우리의 意見交換을 할 것임. 나는 우리가 오늘 <午後에 이러한 方法으로 討議>에 임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임. 그 밖에 우리는 그로써 蘇聯政府와 「폴란드」 政府가 獨逸聯邦共和國과 意見交換을 할때의 스타일(方式)에도 適應하는 것이됨.

27. 首相님, 끝을 맺기 前에 나는 오늘의 對話를 持續하기 위해 오래지 않아 당신을 獨逸聯邦共和國에 오시라고 초대하고 싶음.

우리가 오늘 演說을 마친 후에 우리는 몇 協助者의 支持를 받아 우리의 第2次會合때까지 - 나는 5月初라 생각함 - 兩側에서 提議로 제기한 바를 評價整理할 全權受任者를 任命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겠음. 그들은 우리의 第2次會合時에 검토 報告하게 될 問題들의 目錄을 作成해야 할 것임. 그때에 이러한 目錄에 근거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節次를 論議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代表團 또는 委員會들의 앞으로의 課題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임. 그 경우 우리는 그들(代表團, 또는 委員會들)에게 우리 政府가 있는 곳에서 (兩側의 首都) 適當한 恒久的인 作業可能性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이 合目的의 일 수 있을 것임. (상설기구의 설치를 의미함)

28. 이것은 나의 節次에 관한 提議이며, 이 提議들은 아주 알맞는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우리는 첫째 措処에 앞서 둘째 措処를 할 수는 없음.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現實主義的으로 일을 해나아가는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아가서 東과 西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부터 기대하고 있는 바를 公正하게 처리해갈 수 있을 것임.

## 「에어후르트」會談에 관한 共同 聲明

( 1970.3.19 )

獨逸 民主主義 共和國 內閣委員會 議長 (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즉 수상 ) 빌리 슈토프 ( Willi Stoph ) 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日에 獨逸 民主主義 共和國의 內閣議長 ( 수상 ) 은 獨逸 聯邦共和國 首相 빌리 브란트 ( Willi Brandt ) 를 만나 第1次 會談을 가졌습니다.

獨逸 民主主義 共和國의 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토 빈처 ( Otto Winzer ) 장관과 미카엘 코울 ( Michael Kohl ) 國務相 귄터 코오콜트 ( Günter Kohrt ) 國務相 事務處 ( Büro des Ministerrates ) 次長 게르하르트 쉬슬러 ( Gerhard Schüßler ) 博士와 그리고 한스 보스 ( Hans Voss ) 局長 ( 博士 ) 을 수행원으로 대동하였습니다.

獨逸 聯邦共和國 首相의 수행원으로는 에곤 후랑케 ( Egon Franke ) 長官 볼프람돈 ( Wolfram Dorn ) 國務相 , 콘라드 아홀러스 ( Conrad Ahlers ) 國務相 울리히삼 ( Ulrich Sahm ) 국장 ( 博士 ) 과 귀르겐 바이히어트 ( Gürgen Weichert ) 국장이 동행하였습니다. 이 會談에는 이밖에도 兩側으로 부터 고문 ( Berater ) 과 專門家들 ( Experten ) 이 參席하였습니다.

《 [카셀]로의 초대 》 ( Einladung nach Kassel ) 獨逸 民主主義 共和國 首相은 1970年 5月 21日에 카셀 ( Kassel ) 에서 第2次 會談을 開催하는데 대하여 獨逸 聯邦共和國 首相의 招請을 수락하였습니다.

獨逸 聯邦共和國 首相 「브란트」는 「부헨발트」 ( Buchenwald ) 의 景고 및 기념관 ( Mahn-und Gedenkstätte ) 에 회환을 헌화함으로써 나치의 獨裁政治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冥福을 빌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오토 빈처 長官의 대동을 받았습니다.

「슈토프」東獨首相이 「브란트」西獨首相에게 보낸  
書翰에 대한 西獨文公省의 聲明

( 1970 . 5 . 5 )

1. 「슈토프」東獨首相은 1970.5.5 西獨首相에게 書翰을 전달하고 그 속  
에서 그는 東獨을 差別하고 있는 法律과 다른 規範的인 法令의 體系  
를 없애라는 要求들을 반복하고 있음. 이와 關係해서 東獨首相에 대한  
告訴에도 抗議했고 西獨의 司法機關과 西獨聯邦政府에 의한 告訴의 取扱  
을 신랄하게 批判하고 있음.
2. 그 밖에 同 書翰에서 東獨의 參加와 關係하여 유엔 歐洲委員會會議時  
와 「제네바」에 있는 世界保健機構에서의 獨逸聯邦政府의 態度를 비난하  
고 있음. 東獨首相은 이러한 「에어 후르트」에 있어서의 宣言과 事實上結  
果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간의 矛盾들은 「캇셀」에서의 協議를  
促進시키기 위해서 行해 지지는 않았다고 申明하고 있음. 그는 西獨政府  
가 모든 差別없이 「캇셀」會談의 正常的인 實踐을 可能케 함에 必要한  
措置들을 取하라는 期待를 말하고 있음. 東獨首相은 東獨代表團의 西獨  
滯留時에 다른 主權國家들의 同級代表와 同一한 待遇를 받는다는 確約을  
기대하고 있음.
3. 西獨首相은 東獨首相의 書信에 回答할 것임. 個別問題에 關係해서는 「캇  
셀」會談의 實務的인 準備를 委任받은 兩側代表團들이 1970.5.6 水曜  
일에 「본」에서 相逢할 때에 對話할 것임. 그 밖에 西獨首相은 이미  
第1次의 「에어 후르트」에서와 第2次 「캇셀」에서 差別없는 同等한 協  
商을 保障하기 위한 모든 前提가 되어 있음에 關係 하등 東獨이 疑心  
할 餘地가 없도록 했음.

「브란트」西獨首相이 「슈토프」東獨首相에게  
보낸 書翰에 대한 西獨文公省의 報告

( 1970.5.7 )

「쉴슬러」東獨內閣事務次長은 1970.5.6 東獨首相에게 보낸 西獨首相의 回信을 전달했음. 西獨首相은 1970.5.5日字의 東獨首相書信에 대한 回答에서 다음 會合時에도 모든 差別없는 同等한 協商을 保障하기 위한 該當 前提들을 마련한다는 「에어후르트」에서 한 그의 確約을 確認하고 있음. 西獨首相은 自身の 發起로 獨逸裁判管轄權의 期限附 自由通行權에 관한 法律의 止揚을 초래하기 위한 措置들을 取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東獨首相이 差別로서 느껴진다는 兩側의 法律의 앞으로의 取扱問題들과 國際組織에 있어서의 協力問題는 「캇셀」에서 계속되는 對話에서 取扱될 것임.

西獨首相은 끝으로 東獨首相과 東獨代表團員들이 「에어후르트」訪問時 東獨政府로부터 自身과 그의 隨行員들이 保障받은 것과 同一한 權利와 待遇를 享有할 것임을 保障함.



「캣셀」 兩獨首相會談 에서의 「브란트」 西獨首相의 演說

( 1970. 5. 21 오전회의 )

尊敬하는 「슈토프」 首相

紳士 여러분!

나는 尊敬하는 首相과 수행하신 분들이 이곳 「캣셀」에 와서 우리와 第2次會晤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原則적인 問題들과 實際적인 問題들에 대한 모든 見解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本會談이 진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함.

「에어후르트」에서의 우리의 會晤는 疑心할 것도 없이 「슈토프」首相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政治적인 重要性을 지닌 事件임. 우리 住民의 환호는 獨逸안에서 이루어지거나 獨逸이 관련되어 있는 일에 특히 關心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關心과 마찬가지로 컸던 것임.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義務와 責任을 과하고 있음. 우리는 내가 「에어후르트」에서 宣言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獨逸의 平和와 獨逸人을 위해 進展을 이룩할 수 있게될 領域을 추구함으로써만 이에 副應할 수 있을 것임.

나는 「에어후르트」에서의 우리의 會晤後에 通信分野에서 部分的인 協定 締結에 成功한 것을 고무적인 徵表로서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 앞에 제기되어 있는 課業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可能性들을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의 조그만 始作에 不過한 것임. 우리 두 사람은 우리의 關係를 規制하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우리는 그 길을 - 「에어후르트」 會談 以來 여러모로 나타난 바와 같이 - 옮지 못한 비난들과 告發들을 제기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안될 것임. 우리가 이곳에 나란히 서 있다는 事實 바로 그것이 우리 兩者가 똑같이 이에 公認하고 있음을 말하며 緊張을 緩和하려는 意志가 缺하여 있지 않다는 充分한 証拠가 될 것임.

우리의 會晤이 여러 爭論으로 인해 負擔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나는 이제 나의 政府가 거의 매일 같이 직면하고 있는 疑惑과 의구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음.

나의 政府는 결코 東獨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西獨關係의 發達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두지 않고 있음.

「유엔」 歐洲經濟委員會에서의 東獨에 대한 實際的 協力提議가 差別 대우라는 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것임. 東獨이 이러한 理由로 이에 不參하는 것은 西獨의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님.

우리는 後見的이거나 越權的 態度는 취하고 있지 않음. 우리의 態度는 獨逸에 있는 兩國家間의 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하려는 努力의 發現임.

우리가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첫 合意들에 도달했다면 좋았을 것임. 그러나 아직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님.

나는 首相인 당신에게 되풀이하여 우리 두 國家間의 同等한 關係의 條約상의 規制에 관한 協商을 하자고 제의하였음. 그리고 그 경우 나는 그와 같은 規制를 통해서 모든 相互間의 差別이 배제될 것이라는 意見을 피력했음. 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準備를 이곳에서 적절히 強調하고자 함.

東獨이 差別에 관해 言及할 경우 우리는 東獨이 西獨에 대해 많은 分野에서 -예를 들면 經濟交流分野에서- 취득한 그리고 취득하고 있는 利得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東獨政府가 西獨의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努力하는 것을 妨害하고 있는데 대해서 言及해야 하겠음.

내가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強調했듯이 兩獨逸 國家의 憲法은 民族의 單一性위에 立脚하고 있음. 그 憲法들은 둘 다 分斷은 永久化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나는 우리가 이러한 憲法 原則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關係를 서로 뜻있게 規制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나는 第2段階 措置를 先行 措置보다 앞서서 할 수가 없다는 忠告 내지는 도시 第1의 措置가 이루어지기도 前에 第2措置나 第3措置가 무엇 일 것인가에 관해 論爭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나에게 있어서 그때그때 實現性 있는 後続 措置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이것은 오직 우리 兩政府間에 實質的問題와 나아가 政治的 問題에 대한 協商을 開始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그와 같은 協商의 目的은 人道와 平和, 그리고 동시에 民族의 未來를 위해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間의 關係를 條約上의 協定에 의해 規定하는 것이어야 함. 西獨政府는 그 準備가 되어 있음.

그러한 종류의 條約 또는 보다 많은 그러한 數의 條約들은 同等權과 無差別의 基반 위에서만 締結될 수 있음은 自明한 것임. 그러나 條約上의 規制가 우리 關係와 獨逸人을 위해 一步 前進을 이룩할 具體的 內容을 包含해야 할 것임. 條約이 단순한 煩文辱禮에 그쳐서는 안됨.

「에어후르트」에서 나는 調整되어야 할 問題들에 관해 상세히 言及한바 있음. 나는 條約上의 規制가 우리 兩國家間에 存在하는 特殊한 事情들에 부합해야 하며, 法的으로 兩側이 第3國家와 締結한 모든 條約과 同一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음. 나는 同時에 우리가 4大強國의 權限을 벗어 날 수도 없고 獨逸의 分斷을 國際法上 承認하지도 않는 것임을 分明히 하였음.

東獨이 비난이나 要求, 條件附등으로 일관한다면 이 會晤의 의의와 이에 대한 人類의 期待, 그리고 우리의 막중한 任務에 충실치 못한 것이 될 것임. 그렇지 않으리라는 希望과 假定에서 나는 당신에게 오늘 協商節次問題에 對해서 協議를 갖코자 함. 내가 생각하고 있는 措置에는 우리 國家間의 關係 正常化 基반을 이룰 條約이 包含돼야 함. 西獨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을 위해 一聯의 原則을 提示해 왔음.

우리는 1969. 12. 18 東獨國家元首가 西獨大統領에게 전달했던 條約案에 대해서도 立場을 밝힌바 있음. 내가 首相이신 당신에게 1970. 1. 22

日字의 書翰으로써 알렸던 이러한 原則들중의 몇가지 原則들을 나는 「에어후르트」에서 상기시키바 있음.

나는 우리가 우리의 짧은 時間을 참다운 協商을 시작하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해야할 責任이 있음. 우리 參謀들의 任務는 그와 같은 決定을 準備하는 것임. 豫備的 水準의 協商을 개시하는 것은 우리가 合意할 경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임. 나는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兩側 政府庁舎가 있는 곳에 우리 兩側의 全權受任者들을 위한 作業을 可能케 해줄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

西獨과 東獨間의 同等한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原則과 條約構成要素들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음.

1. 자신의 憲法에서 民族의 統一(單一性)을 目標로 삼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와 民族의 未來 및 共存을 위해 獨逸안에 있는 兩國家間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住民과 兩國家間의 連繫를 強化하며 既存하고 있는 장애들을 除去함에 이바지 할 條約에 合意함.
2. 그 條約은 憲法에 부합하는 形態로 兩國 立法機關들의 批准에 회부될 것임.
3. 兩國은 國際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共存 및 無差別의 기반위에서 關係를 樹立할 意思를 宣布함.
4. 兩側은 暴力의 어떠한 威脅이나 行使를 포기하고 그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들을 平和的인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짐. 이것은 領土保全과 境界의 尊重을 包含함.
5. 兩國은 그들의 內的인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있어 兩國家의 獨立性과 自主性を 尊重함.
6. 兩國家中 어느 一方도 他方을 代身하여 行動하거나 대표할 수 없음.
7. 條約締結當事國은 독일 땅에서 결코 戰爭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宣言함.

8. 兩側은 諸民族의 平和共存을 교란하는 모든 行爲를 포기함.
9. 兩側은 歐洲安保를 強化시킴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한다는 자신의 意思를 確認함.
10. 이 條約은 두개의 國家안에서 살고 있으나 한 民族의 所屬員인 獨逸人과 獨逸의 特殊狀況 및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출발해야 함.
11. 伯林과 全體로서의 獨逸에 관한 占領國의 特權과 諸協定에 立脚하는 仏蘭西, 英國, 北에이레, 美國 및 蘇聯에 대한 諸般 義務는 준수됨.
12. 伯林과 獨逸에 관한 4大國 協定은 尊重됨.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紐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  
兩側은 伯林地位의 正常化를 위한 4大強國의 努力을 支持함.
13. 兩側은 兩國家의 立法(機關)間에 어느 領域에서 충돌이 발생하는가를 檢査하고 충돌요소들의 除去를 위해 努力해야 함.
14. 이 條約은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킬 措置들을 강구해야 함.
15. 家族 離散에 기인하는 問題들에 대해 解決策이 강구되어야 함.
16. 共同境界에 接한 郡과 面들은 그곳에 現存하고 있는 問題들을 이웃끼리 解決함을 可能케 해야 함.
17. 兩側은 특히 交通, 遞信, 情報交換, 科學, 敎育, 文化, 環境問題들 및 「스포츠」分野에 걸쳐 相互間의 利益增進이란 關心에서 協同을 強化 擴大하며 細部問題에 관한 協商을 開始한다는 意思를 確認해야 함.
18. 兩獨間의 經濟交流를 위해 既存의 協定과 合意들은 繼續해서 效力을 가짐. 通商關係는 더욱 增進되어야 함.
19. 兩側의 政府들은 長官級의 全權代表者를 任命하고 常駐 全權代表를 위한 事務所를 設置함. 全權代表者와 그의 受任者의 課業은 詳細히 確定되며, 그들에게는 各己 政府庁舍가 있는 곳에서 業務執行이 可能케 하고 또한 그에 必要한 便宜와 特權들이 保障됨.
20.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간에 合意될 條約을 基반으로 하여 國際組織에 加入과 協力을 正常化함에 必要한 手段을 강구할 것임.

首相님 !

이것들이 내가 文書上으로도 전달했던 原則들과 要件들의 全部인 것임. 이러한 提議들은 우리들에게 제시된 또는 앞으로도 제시될 東獨의 條約案과 其他의 宣言, 提議와 함께 앞으로의 意見交換의 対象들임. 이 경우 어떤 問題들이 現實적으로 즉각 착수하여 解決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問題들이 兩國家間의 關係의 原則적인 規制와 관련해서만 處理될 수 있는가 檢討되어야 할 것임.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앞으로의 協商이 진척되는데 따라 具體적인 提議를 하게 될 것임.

「에어후르트」에서 나는 仔細히 伯林에 관해서도 見解를 表明하였음. 나는 그에 대해 이제 다음 事項만을 부연하고자 함. 西獨政府는 시작된 4大國 會談을 환영함. 西獨政府는 伯林의 正常化를 위한 努力에 있어서의 進展이 우리들 兩政府間의 協商을 持續함에 있어서도 重要性을 지닐것이라 確信하고 있음.

「캣셀」 兩獨首相會談에서의 「슈토프」 東獨首相의 演說

( 1970. 5. 21 오전회의 )

(「슈토프」 東獨首相은 「브란트」 西獨首相에 이어 「東獨의 主權을 認定하고 西獨의 越權行爲를 禁止해 달라」는 다음과 같은 內容의 演說을 하였음.)

首相님 !

〈우리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에〉내가 이미 獨逸聯邦共和國에 到着時 表明한 다음 問題들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음.

如前히 西獨에는 西獨의 政府機關들과 裁判所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線을 넘어 東獨과 東獨市民들에 대한 權利와 管轄權을 侵害하고 있는 法律, 判決, 其他의 國家的 行爲 體系가 그대로 存在하고 있음.

이것은 國際法 一般原則에 대한 恒久的인 違反임. 즉 내가 言及한 西獨의 立法과 司法은 完全히 國家間의 主權의인 平等, 不干涉 및 無差別의 原則에 부합하지 않음. 모든 國家가 빠짐없이 適用하고 있는 바와 같이 西獨의 法律과 裁判所의 權限도 國內의인 拘束力만 가질 수 있음.

그의 效力範圍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西獨의 國境을 넘어 擴大適用된 西獨의 法律, 其他 法令, 判決들 또는 其外의 國家機關의 行爲들은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는 전혀 法的 效力을 가질수 없는 것이었으며 가지고 있지 않음. 그것들은 東獨과 東獨市民에 대해서는 無效임.

1970. 3. 19 獨逸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아무런 差別없이 두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였음. 그것은 東獨의 立法뿐만 아니라 政治 역시, 主權國家로서 代表者들간에 關係 形成을 하는데 國際法的인 規範과 完全히 合致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的인 것임.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들은 西獨에서 소집된 오늘 會합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1970.5.5 日字의 나의 書翰에서 나는 당신에게 西獨에서 西獨政府代表團이 滯留할 동안 差別을 받지 않도록 要求했었음. 나는 西獨首相인 당신에게 反復하여 뚜렷이 東獨의 代表들에 대해 「파시즘」적인 策動과 直接的인 殺人使噓을 禁해 줄것을 強力히 要求했음. 나는 西獨의 政府가 「네오나치」勢力들을 制止하지 않고 自進해 公公然한 殺害威脅을 禁止시키지 않고 있음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東獨政府의 代表團은 당신이 이끌었던 代表團이 「에어후르트」를 訪問했던 때와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享有할 것이라는 당신의 確約과 이것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묻고 싶은 것임. 어떻든 世界輿論은 이에 對해 적절한 結論을 내리게 될 것임. 나는 그러한 식의 策動이 오늘 우리의 會晤에서 負擔을 지우고 있음에 關係 유감의 뜻을 表明하는 바임.

西獨의 差別的인 立法措施에 關係한 한 나는 首相인 당신에게 당신이 「에어후르트」에서 우리가 會晤한 때에 公式적으로 各者는 自身만을 代表할 수 있음이 分明하다고 申明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 西獨政府는 東獨을 代表할 權利를 越權하여 要求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당신은 東獨과의 同等한 無差別的 關係를 樹立할 意思를 宣言하였음. 그러나 貴下의 言行은 一致되고 있지 못함.

西獨의 基本法에 의하면 西獨首相인 당신은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을 決定할 權限을 갖고 있음.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閣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에어후르트」에서 한 당신의 確約에 따라서 西獨政府가 西獨의 法律과 其他 法令, 判決文, 西獨國家機關의 決定들 또는 行爲들이 그의 既存境界안에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만 效力을 가질 수 있고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게 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됨은 無效임을 宣言할 것을 要求하는 바임.

이러한 解明은 우리의 對話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가지는 것임.



「캣셀」兩獨首相會談에서의 「슈토프」東獨首相의  
演說에 대한 「브란트」西獨首相의 答辯

( 1970.5.21 오전회의 )

첫째로 나는 언제나 論難되고 있는 「테마」에 관하여, 즉 「에어후르트」에서 이미 言及된 法律上 抵触問題에 관하여 立場을 밝히고자 했었음. 그밖에도 5月6日字 나의 書信에서 두 獨逸國家内에는 다른 한쪽에 對해 差別을 느끼게 하는 法律들이 있다는 것을 申한바 있음. 나는 우리가 「캣셀」에서 相逢하는 경우 이러한 問題들을 解明하고 難關들을 除去하기 위한 機會를 가지게 될 것이라 부언한 바 있음. 나는 당신이 오늘 이 「테마」에 관해 이미 言及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른바 西獨의 對東獨 法律上 侵害라는 「테마」에 관해 우리는 우리의 立場을 說明하고자 하는 바임. 여기 이 論文을 읽어 보시기를 建議하는 바임.

둘째로 당신의 「캣셀」 訪問과 滯留의 條件에 관해 말하겠음. 5月6日字의 書信에서 이미 本人이 말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캣셀」訪問과 또한 그 隨行員에 西獨政府는 우리들이 「에어후르트」를 訪問했을 때 받은 것과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享有한다는 것을 確約하였음. 이것은 언제나 兩國家에 있어서의 與件이 다르다는 點에서 出發하고 있음. 당신들은 우리의 손님으로서 내가 이미 5月6日字의 書信에서 言及한 바로 그대로 西獨内에서 保護와 尊重을 享有한다는 立場에 서있는 것임.

「캣셀」兩獨首相會談에서의 「슈토프」東獨首相의 演說

(1970.5.21 오전회의)

尊敬하는 首相!

먼저 核心問題부터 말하고자 함. 즉 우리는 東獨과 西獨간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를 樹立하고 이로써 歐洲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뜻깊은 貢獻을 하기 위해 西獨에 왔음.

首首相님, 今年 3월에 당신과相逢한 후 東獨의 立場을 새롭고도 持續的인인 支支持를 얻고 있음. 分明히 우리는 우리 兩國家간의 關係를 規制하는 정경우 어떤 枝葉的인 問題들이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歐洲平和를 위해 國際法的인 留保없는 適用이 要求되는 바로 그런 核心問題가 提起된다는 것을 더더욱더 理解하게 되었음. 많은 國家들이 東獨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었음. 일컬어진 바와 같이 一部の 公算 협박적인 政策을 繼續 끈질기게 適用하려는 「할슈타인」原則 옹호자들의 妥当性은 없어지고 있음.

西西獨에서도 西獨과 東獨간의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을 지지하는 者의 數가 增加하고 있음. 東獨을 差別하는 政策을 마침내 終結시키고 참다운 同等權의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점점 크게 제기되고 있음. 分明히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는 바임. 특히 西獨市民 自身の 平和追求에 부합하는 것이지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임. 西獨首相님, 당신 자신은 그와같은 理性性과 現實主義的인 見解들이 西獨住民 大多數에서 특히 젊은 世代에서, 広範하게 普及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

우워라는 西獨政府가 지난 數週동안에 우리의 具體的이고도 建設的인 提議들말을 根本的으로 熟考하여 이제 東獨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의향이 있는 가에 대해 明確한 對答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캣셀」에 온 것임. 東獨의 條約案은 1969.12.17 以來 이미 「본」에 제시되어 있고 우리의 明確한 說明이 없는 것도 아

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적절한措置를 취할 充分한 時間이 있었음.

東独內閣의 이름으로 우리는 國際法上的 關係에 관한 條約을 즉각 成案하여 署名할 準備가 되어 있음을 宣言하는 것임. 그것은 東独과 西独間의 平和共存關係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國家들간의 關係를 可能케 하기 위해 밝아야 할 眞理인 것임.

나는 西独首相인 당신에게 우리의 代表團이 「主權的인 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고 平和의 保障을 위해 不可缺한 問題로서 東独과 西独間에 國際法的인 基盤위에서 條約上 保障된 同等한 平和共存關係를 達成할 수 있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明白하고도 拘束力 있는 委任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져 하는 바임. 이것은 70.3.21 東独人民會議의 該當決議에서 表明되고 있음.

\* 國會議의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西独側에서 發表한 關係 正常化, 緊張緩和와 平和에 관한 宣言들의 진지성 여부를 東独側 條約案에 대한 西独側의 態度와 관련하여 評價하고 있음. 西独政府는 數個月前부터 제시한 東独의 條約案에 公式的으로 回答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間的 國際法的 關係에 대해 貴側 政府가 否定的 態度를 변함없이 持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임.

우리 大陸 心臟部에 있는 어떤 國家가 어떤 이웃 國家를 承認하지 않고 그의 主權的 平等을 무시하고 또한 그 國家가 境界를 日可日否 하고 領土의 現狀을 修正하려는 경우 그것은 歐洲平和의 基礎的인 利害와 矛盾되는 것임.

西独이 東独의 現狀態를 國際法的으로 承認해야 한다고 強調하는 理由는 그것이 하나의 法律問題 일뿐 아니라 東独 또는 다른 國家의 特權問題이며 同時에 歐洲에 있어 平和와 安保를 維持하는데 基本的 要請이 되기 때문임.

社會主義國家의 政府로서 우리의 行爲는 人類의 利益에 奉仕하고 있음. 平和의 基本前提, 즉 우리 兩國間的 關係 正常化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소한 措施를 통해 既存의 諸 問題를 解決하려 든다면 이는 人道에 배  
치된 行為인 것임. 单独貨幣改革과 分断, 西獨의 對東獨 冷戰에 이르기까  
지 20年 以上이나 많은 사람들이 西獨의 이러한 政策으로 苦痛을 겪어  
왔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음. 그러나 人間性과 가장 矛盾  
되고 또한 狀況을 惡化시킬 目標 追求를 위해 그릇된 希望을 일으키거나  
人間性이라는 말을 남용할 것인가? 나는 西獨首相인 당신에게 우리가 이  
러한 點에서 特別히 1961.8.13에 이르기까지 무참한 經驗을 겪어야 했었  
다는 것을 말한바 있음. 이러한 것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임.

오늘날 人類는 중대한 政治的 決斷을 要求하고 있음. 人類는 바로 歐  
洲의 심장부에서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을 嚴格히 遵守 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 나는 여기에서 數百萬의 歐洲人들이 國際法이 무시  
되고 파괴되었던 때문에 生命과 財産을 잃어야 했던 例로 들고 싶지 않  
음. 나아가 東獨에 대하여 西獨政府가 「파리」條約과 反革命的인 灰色的  
計劃을 통해 敵對的인 目的을 추구하는 限 人類의 苦痛을 던다는등의 언  
사는 터무니 없는 主張임. 다른 主權的인 國家와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  
法을 거부하는 者는 공공연하게 國際法과 人間性의 基本的 命命을 逆行하  
려는 意圖들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겠음. 東獨과 그의 國境을  
國際法上 承認하기를 拒否하는 者는 東獨의 境界에 대한 侵略的인 行為,  
東獨의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에 대한 侵略的인 行為를 國際法上 侵略者로서  
責任을 지지 않는 가운데 감행할 意圖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  
에 없을 것임. 西獨首相님, 당신은 그와같은 計劃들이 砂上樓閣이 된다는  
것을 分明히 알고 있을 것임. 東獨과의 그의 社會主義人民의 境界는 正  
確히 守護되고 있음.

東獨人民은 自決을 통해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뿌리채 뽑  
아 버리고 「프즈담」協定の 基本要求를 實現하였음. 東獨人民은 歷史로부  
터 教訓을 받아 禍로 가득찬 過去로부터 解放되어 社會主義의 길을 밟게  
되었음. 西獨內에서 이러한 社會的이고도 政治的인 事實을 修正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者는 그 希望을 버려야 할 것임. 이미 「아데나워」時代에서 成功하지 못한 바로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成就되지 못할 것임. <變化를 말할 경우> 復仇主義的인 目的을 가지고 歐洲 平和를 위협하고 있는 西獨의 政策이 變化되어야 함. 「포츠담」 協定이 履行되지 않은채 남아 있는 곳, 過去의 罪를 지고 있는 勢力들이 再復活하고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變化가 이루어져야 함.

東獨人民은 자신의 社會主義的인 獨逸國家의 完全한 同等權, 國際法的 主體로서의 條件없는 承認이라는 基本的이며 양도할 수 없는 權利와 道德的 權限을 갖고 있음.

東獨政府가 우리들 兩國家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的 留保없는 效力을 옹호하는 것은 東獨內 모든 市民의 安保利害關係 및 社會主義 建設이라는 利害關係와 부합하는 것임. 이러한 基本的인 利害關係는 東獨과 굳게 結付되어 있는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의 利害와 一致하는 것임.

首相님!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지 25年이 흘러 갔음. 그러나 現 西獨政府조차 「히틀러파시즘」의 敗北 結果를 分明히 承認하고, 歷史로부터 教訓을 받아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들을 변경해 보려는 基民黨의 復仇主義的인 政策을 포기하려 하고 있지 않음.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歐洲에서 成立된 東獨과 西獨間의 境界는 물론 「오데르·나이세」境界를 包含한 境界들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留保없이 承認해야 한다는 無條件的인 必要性은 西獨政府에 의해 여전히 否定되고 있음. 마찬가지로 西獨政府는 이제까지 「뉘른」協定을 처음부터 無效라고 宣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는 西獨議會, 社會民主黨의 黨大會 및 다른 機會에 行한 당신의 演說을 매우 注意깊게 추적하고 있음. 우리는 그 속에서 現實的인 變化를 위한 徵表, 純粹한 根本的인 革新, 극히 새로운 過去의 窮極的인 克服을 目標로 하고 있는 징후를 전혀 발견치 못하고 있음. 貴 政府가 最近 數週 그리고 數個月동안에 내린 決定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東獨政府는 그 政策에 있어 이러한 事實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음.

\* 우리는 그밖에도 基民党 ( CDU ) 政治人들이 말했던 占領地帶 ( 東獨 ) 의 解放이라는 用語를 아직도 들을 수 있음. 따라서 20年 동안의 西獨의 對東獨敵對的인 政治가 있는 後 理解와 同等權이라는 말들과 平和的인 意圖의 宣稱들만으로 正常的인 關係에 이르기에는 充分치 못함. 西獨首相님, 당신은 貴 政府의 다른 主要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여러가지 理由로 西獨은 낡은 基本立場들을 固守한다고 公式的으로 公表하였음. 궁극적으로 東獨과 西獨間의 國境의 存在를 부정하였음.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은 問題밖이라고 累次 宣稱되었음. 나아가서 東獨의 國家性까지도 「아데나워」 時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西獨의 公式的인 代表들에 의해 이미 再論難 되고 있음. 이는 大西洋同盟에 대한 西獨의 忠誠과 美國의 政策과의 連帶性에 基因되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 西伯林에 관해서 한마디 言及해야 하겠음. 西獨政府는 지난 數週 동안에 西伯林에 관한 그의 違法的인 要求를 제기하였음. 東獨안에 그리고 東獨의 領土위에 位置하고 있는 西伯林이라는 自立的인 政治的 單位체가 결코 앞으로도 西獨의 構成要素가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構成要素일 수도 없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진 事實임.

西方 3 大國 政府들 역시 西伯林이 西獨의 한 州가 아니며 西獨政府에 의해 支配될 수도 없다는 것을 反復하여 確認하였음. 首相님, 貴政府가 西伯林에 관해 흥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물론 西獨政府가 西伯林 안에 서 그리고 西伯林을 위해 여하한 權利나 管轄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西伯林을 대신하여 도시 아무런 措置나 協商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西獨外相이 최근에 西伯林問題와 그의 通行路問題에 관한 公式的인 宣稱에서 東獨과의 西獨의 條約上의 協定問題와 연결시키고자 試圖했으나 그것은 西伯林問題의 規制와 東·西獨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은 서로 아무 關係가 없기 때문에 決斷코 거부될 것임. 西伯林에 대한 西獨政府의 越權들은 다만 必要없는 마찰과 緊張을 초래하고 또한 그 都市 ( 西伯

林)의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西伯林 市民의 負擔으로 되는 것임. 따라서 나는 西獨政府의 西伯林事項에 干涉하려는 모든 試圖를 다시 단호히 거부할 것임.

우리는 基民黨指導者들이 여전히 東獨과의 平和 共存은 不可能하다고 宣稱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바임. 確實히 그것은 基民黨의 말이며, 「슈트라우스」와 「바르첼」氏의 말인 것임. 그러나 우리들은 西獨政府가 이러한 말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음. 그 代身에 5.27 西獨議會에서 取扱될 「基民黨의 大質疑」와 有關한 貴 政府의 聲明은 西獨政府의 새로운 이니시어티브가 西獨의 從來의 政策的 目標를 전혀 修正하지 않았다고 強調하고 있음. 변한 것은 오직 강경한 態度가 누그러진 것뿐 임.

西獨軍의 武裝化도 역시 強化되었음. 復仇主義的인 精神속에서 教育을 받은 高度로 武裝된 軍隊가 「히틀러」式의 侵攻을 準備하여 歐洲人民들과 東獨人民들에게 所謂 西獨의 統一政策을 適用하여 軍事的으로 解決하려는 將星과 將校들의 指揮下에 있음. 나는 바로 이와 有關해서 다시 한번 貴 政府內에서 그에 대한 管轄權을 가지고 있는 「슈미트」長官에 有關 言及해야 하겠음. 留意해야 할 點은 「슈미트」氏가 힘의 政府 즉, 緊張緩和의 目的보다 힘의 政策이 우선한다고 說明하기 위한 動機에서 美國에 滯留했다는 事實임. 「슈미트」氏는 「나토」條約의 테두리안에의 軍備 強化를 所謂 「東方政策」의 前提라 말했음. 우리와 우리의 盟邦들은 이에 유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비하여 安保措置를 강구한다는 것을 당신이 理解하기를 바람. 당신 政府의 방계조직인 統一問題研究諮問委員會의 「灰色的인 計劃들」 - 명확히 東獨에의 反革命的인 侵入의 概念임 - 은 변함없이 效力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告에 의하면 더욱 擴大될 것이라 함. 資本主義 利益集團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매스·매디어」들은 東獨과 東獨의 社會主義 體制에 대해 적대감을 說教하고 있음.

強要당한 武装化와 境界의 不承認은 西獨에서 不斷히 「1937年度의 境界에서의 獨逸」을 再樹立한다는 目標을 표방하고 있다는 事實과 分離될 수 없음. 西獨에는 合法的으로 「네오나치」黨이 存在하고 있음. 東獨首相의 殺害威脅에 分明히 그리고 效果的으로 反對하여 干涉하지 않고서 그 威脅을 내버려 두는 것이 1970年의 西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바로 그에 대한 責任은 全的으로 당신이 져야 함.

西獨首相님,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西獨이 國際法 위반이 아닌 따라서, 処罰될 수 없는 國內問題라는 口實下에 東獨에 대한 侵略行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東獨과 西獨間에 國際法的인 關係 樹立에 合意하는 것이 얼마나 必要한가가 더욱 分明한 것으로 될 것임.

이곳 西獨의 땅위에서 나는 東獨과 西獨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결국 西獨市民自身에게 중요한 利益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平和, 緊張緩和 및 安全을 원하고 있음. 따라서 西獨 市民들도 東獨에 대한 冷戰의 負擔에서 解放되는 경우 그것은 그들을 위해 크게 有用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당신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할슈타인」原則을 유지하기 위해 使用되고 있는 그 방 대한 金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러한 金額을 有用한 目的 을 위해 使用할 수는 없는가? 우리 兩國家間에 軍縮措置들에 관한 合意 에 이르는 경우 그것은 西獨市民의 社会的 要求를 위해, 西獨市民들이 원 하는 民主的인 改革들을 위해 크게 利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西獨의 市民들은 이제까지 東獨에 대한 復仇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왔음. 그들은 이러한 西獨獨占資本의 무모하고도 절망적인 政策을 위해 財政的인 負擔과 많은 다른 고난을 겪어야 했음. 그밖에 이러한 政策은 西獨을 歐洲안에 있는 紛爭의 中心으로, 平和의 妨害者로 만드는 結果를 초래했었 음. 그것은 -우리가 잘 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안한 狀況은 아 니었음. 東獨이 제시한 條約案을 先入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받아 드린 西獨의 모든 市民은 西獨과 東獨間의 國際法的 關係 樹立이 바로 西獨住



민,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利로울 것이라고 確言할 것임.

西独首相인 당신은 東独과 西独間의 正常的인 國際法的關係의 拒否를「内独關係」라든가 「兩独關係」라는 概念과 결부시켰음. 따라서 나는 다시 「特殊한 内独關係」라는 公式이 -또는 어떠한 表現이 그에 대신하여 發見될 수 있든- 우리의 兩國家間의 關係를 위해 絶對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단호히 宣言할 必要를 느낌.

東独과 西独의 경우 서로 獨立한 두개의 國家가 問題되고 있음. 그것만으로도 内独이라는 公式을 배제하는 것임. 더 나아가 兩独間에는 相異하고도 적대적인 社會秩序를 가지고 있는 國家가 問題되고 있음. 勞動하는 人民이 生産手段의 所有者이며 모든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東独과 軍需資本과 金融資本이 支配하고 있으며, 大独占企業들이 社會의 모든 富를 処分하고 또한 政治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西独間에는 하등 「国内的」인 關係가 있을 수 없음.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에 -社會生活의 어떤 分野를 보든- 混合은 不可能한 것임.

우리가 이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개의 國家라고 말하는 경우 客觀的인 狀況은 우리가 그때그때의 国内狀況에 해당하는 것은 勿論 世界의 事件들에 대한 우리의 立場에 해당하는 것도 完全히 相異한 基本的 利害關係로부터 출발한다는 事實을 받아들일 必要가 있음. 우리는 現實을 重視함.

1945年 以後, 美帝國主義者와의 同盟속에서 西独帝國主義勢力들이 罪를 저질러 招來한 民族單一性の 破壞는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擬制的인 存在>을 사칭하고 있는 여하한 概念에 의해서도 原狀復歸될 수는 없는 것임. 그것이 이미 独逸歷史에서 자주 나타났던 바와 같이 民族的 感情을 非平和的인 目的들을 위해 惡用하려는 試圖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음. 우리는 한때 「汎独」이라는 概念 밑에 얼마나 과렬적인 힘의 政策이 추구되어 왔던가를 알고 있음. 「大独逸」이라는 概念 밑에 全歐洲를 戰火속에 빠트리 고 諸人民들에게 무서운 苦痛을 가져왔던 權力과 征服政策이 추구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歷史上 周知되어 있는 事實인 것임. 그와 유사한 概念 밑에서 이러한 政策의 持續이 허용된다면 이는 아주 不幸한 일이 될 것임.

「파리」條約에서의 署名과 西獨住民의 広範한 勢力들의 意思에 反하여 이루어진 그 條約의 批准과 「나토」條約에 의한 西獨의 「나토」服屬으로 分斷은 굳어졌고 또한 西獨은 스스로 자신을 東獨에 대해 外國으로 만들었던 것임. 西獨이 스스로 責任을 져야 할 이러한 發展의 諸 結果로부터 이 이상 회피하고자 試圖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東獨이 하나의 主權國家이고 西獨의 內國이 아니라는 것은 確實함. 東獨이 그렇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이에 관련하여 나는 西獨首相이신 당신에게 「파리」條約들 중 소위 「本 協約」第7條에 대한 당신의 立場에 관한 명백한 說明을 要求하는 바임. 이 第7條는 우리가 이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關係가 問題되는 경우 省略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함. 「本 協約」第7條에서는 東獨을 西獨의 社會秩序와 國家秩序에 合併하고 東獨을 帝國主義的인 「나토」條約體에 歸屬시키는 目的이 아주 分明히 公表되어 있음. 이제까지 西獨首相인 당신은 여러차례 「파리」條約들은 無制限效力을 갖는다고 申明했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들에게 오늘 다른 것을 알리고자 하는가?

要約해서 말하면 「內獨間 關係」라는 公式의 경우 問題되고 있는 것은 「아데나워」와 「덜레스」以後 實際化된, 그러나 展望없는 東獨에 대한 西獨의 單獨代表라는 越權政策의 새로운 表現方式임. 그러나 東獨과 東獨의 市民에 대한 單獨代表의 要求는 — 그 要求가 어떤 形態를 취하든 관계없이 — 敗北하게 마련인 것임. 앞으로 單獨代表라는 越權의 「카아드」를 가지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 있어 進展을 이루는 것을 阻害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함.

나는 西獨首相인 당신에게 國際法과 不干涉의 原則을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適用시키지 않으려는 破壞的인 立場을 포기할 것을 要求하고자 함.

그와같은 立場은 우리의 對話를 저해하고 나아가 교착상태에 몰아 넣을 것이 틀림없음. 貴 政府側에서의 이러한 事前條件은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한 關係에 이르는 길을 沮止시키고 있음.

당신이 최근 美國을 訪問하였을 때 당신은 美國大統領 「닉슨」과 完全한 合意를 보았다고 強調했음. 現在 越南, 「캄보디아」, 近東 또는 기타 다른 곳에서 이러한 政策의 표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全世界가 알고 있음. 諸人民의 平和意志와 自由意志에 矛盾하고 있는 이러한 侵略政策이 폭로되고 있음을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또한 首相님, 貴政府가 이러한 政策에 同意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닉슨」氏와 당신간의 政治的 合意에는 -당신이 分明히 說明했던 바와 같이- 歐洲의 社會主義諸國, 그 中에서도 西獨과 東獨간의 關係라는 「테마」도 포함되고 있음. 우리는 東獨에 대한 이와 같은 西獨의 政策을 美國의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의 世界戰略的인 目的設定안에 配列시킨 것으로 評價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파리」條約 및 「特殊」한 關係와 「內獨的」關係라는 公式을 수단으로 하여 東獨을 歐洲안에서 美國의 世界戰略속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希望을 갖는다는 것은 狀況을 完全히 誤判하는 것이될 것임. 西獨이 經濟的 潛在力을 利用하여 「새로운 東方政策」의 도움을 받아 달성할 수 있는 社會主義諸國에의 「乘車」를 再三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주 明白하게 「나토」가 社會主義諸國의 共同체에 「乘車」할 수 있는 「內獨이라는 지붕」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겠음. 그리고 그와같은 侵略的인 目的을 위해 아직도 그들의 손이 東獨에 미친다고 믿고 있는 者에게는 現實的인 생각을 缺하고 있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시작된 麗史的인 轉換에 대한 모든 理解를 缺하고 있는 것임.

우리들의 첫 會合時에 그리고 그 以後의 時期에 西獨首相인 당신은 再三 同等權과 無差別이라는 말을 使用했음. 그러나 그 말들은 그에 일차하는 行爲들이 따를 때만이 의의를 지닌다는 것은 周知된 사실임.

물론 당신 政府의 實際를 다만 「에어후르트」와 「카셀」會談間의 數週 동안의 당신 政府의 처사를 볼 때 言行이 一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거기에서 생긴 것, 특히 國際關係 分野에서 생긴 것을 우리는 다만 東獨의 不平等과 差別을 위한 活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음.

몇가지 事實을 지적하겠음. 즉 이른바 우리에게 好意를 表한다는 口實下에 「유엔」 歐洲經濟委員會에서 당신 政府의 代表者들은 우리가 正會員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데 同意한다고 稱명하는 경우 東獨이라는 假말을 가진 「카아드」를 卓子위에 세워 놓는 것을 「좋다」고 하고자 했음. 그러므로 「유엔」 歐洲經濟委員會에서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를 享有하고 있는 西獨은 占領地帶(東獨)의 낮은 그리고 差別的인 地位로 이러한 國際的인 委員會의 「결 冊床」에 票決權없이 出席할 수 있다는 것을 기묘한 종류의 度量으로 東獨에게 許容하고자 했음. 首相님, 당신은 「에어후르트」에서 西獨이 東獨에게 여하한 낮은 地位를 돌리고자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후 겨우 4週뒤 「제네바」에서 西獨의 代表者들은 正確히 그와 反對되는 指示를 받았음. 그것은 差別이지 同等權이 아닌 것임.

다른 例를 들면, 당신의 政府는 体系的으로 高度로 發達한 保健制度를 가지고 있는 東獨이 同等한 正會員으로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배후에서 막기위해 조종하고 있음. 그러한 公갈첩박적인 方法으로 당신 政府의 代表者들은 「제네바」에서 東獨을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막는데 一役을 담당했음. 「본」 政府 聲明들은 「內獨的」인 後見 關係의 條件에 東獨이 屈服하는 경우에만 西獨은 그의 行態를 變化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示唆를 하고 있음.

그밖에 西獨政府의 行動에 관한 國際的인 反響은 分明함.

나는 당신에게 仔細히 우리의 住民, 특히 醫師들과 醫學者들 중에서 이러한 反人道的인 行動方式에 관해 어떠한 분노가 支配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임. 西獨의 이러한 行動方式이 差別이지 同等權이 아니라는

것은 白明한 일임.

당신 政府의 外相은 최근에 「아프리카」諸國의 大使들과의 特別 會議에서 第3國이 東獨과의 外交的 關係를 맺지 말도록 하는 越權的인 要求를 反復했는데, 그것은 당신 外相의 「業務指示」를 -당신 政府가 就任하기 시작한후 곧 發令되었음- 이 비록 修正을 했다고 하였지만 -完全히 效力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음.- 그보다 더한 것으로는 당신은 지난번 우리의 對話時에 東獨과 西獨은 밖으로는 오직 자기 自身만을 代表한다 하였고 어느 側도 다른 側을 代身하여 말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言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甚히 對立하고 있음. 同等權에 관한 이러한 言明은 差別的 行爲에 의해 상쇄되고 있음.

당신이 이끄는 西獨政府가 同等權에 관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가 제기되고 있음. 西獨政府가 東獨에 同等한 權利를 거부하고자 하는 限 東獨은 西獨政府가 앞으로도 自己 自身만을 國際法의 主體로서 考察하는 것으로 看做하겠으며, 西獨政府는 東獨의 國際的關係의 樹立을 干涉하고 또한 單獨代表라는 越權에 執着하고 있는 것을 同等權으로 이해하고 있음. 西獨首相인 당신은 우리가 單獨代表要求의 完全한 포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西獨政府가 오직 同等權이란 <말만>하고, 그의 <實際政略>를 東獨의 不同等權化와 差別化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하한 同意도 기대할 수 없음은 自明함.

당신은 여러번 東獨의 對外關係에 대한 西獨 政府의 태도는 東獨의 西獨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음. 西獨首相님, 東獨은 이미 西獨의 越權的인 要求들에 복종할 것이라는 希望은 完全히 砂上樓閣이 됨은 論議할 必要조차 없음. 그러한 類의 事前條件은 絶대로 受諾할 수 없음.

國際法에 의하면 同等權을 무엇으로 理解하고 있는가? 「유엔」憲章 第2條에 規定되어 있는 <主權的 平等의 原則은 모든 國家들이 따라야 할 모든 原則들중의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임. 이러한 뜻에서 國家들이 主權 平等의 原則은 다음과 같은 <規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함.
- 모든 國家는 完全한 主權에 內在하고 있는 權利들을 享有함.
- 모든 國家는 다른 國家들의 最主을 尊重할 義務를 가지고 있음.
- 한 國家의 領土的 保全과 政治的 獨立은 不可侵한 것임.
-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自身の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인 體制들을 選擇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음.
- 모든 國家는 자신의 國際的인 義務를 嚴格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履行하고 또한 다른 國家들과 平和로이 살아야 할 義務를 지고 있음.

「유엔」에 의해 確認된 이 모든 要素들은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서도 完全히 適用되어야 함. 그러므로 同等權은 西獨이 國際的 關係에 있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고 있는 것을 東獨도 國際法과 一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 이 機會에 나는 東獨과 西獨間의 對外經濟關係에 關係 한 마디 言及하고자 함.

지난 時期에 西獨과 其他 官庁의 代表者들을 통해 이른바 西獨과의 對外貿易에 있어 東獨의 利得에 關係한 主張들이 퍼져 있는데 兪上 이러한 왜곡된 報도가 무엇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가? 나는 이곳에서 상세한 언급보다는 原則的인 言明만 하고자 함. 즉 西獨은 물론 許可節次 割當制, 價值制限을 하는 通商規定의 體系와 東獨에 대한 數 많은 特殊規定들을 創造하였음. 지난 20年以上에 걸친 東獨과 西獨間의 對外貿易을 分析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하였음- 바로 西獨이 刮目할 만한 利得을 얻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음. 거기에다 第3國과의 東獨의 經濟關係에 西獨이 干涉함으로써 東獨이 입게된 損害를 立證할 수 있음. 바로 그것이 現實的인 事實인 것임.

首相님, 당신이 도시 당신의 政策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가, 당신은 어떠한 戰略的인 目的을 追求하는가라는 나의 質問에 대해서 對答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는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으로 다시 환원하고 싶

은 것임. 우리는 당신의 입을 통해 적절한 對答을 듣고자 하는 것임. 아마도 나의 質問을 좀더 擴大함이 도움이 될 것임.

당신은 歐洲의 現狀, 歐洲의 境界를 留保없이 窮極적으로 承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당신의 外交政策目的을 추구할 것인가?

당신은 歐洲平和를 위해 우리大陸의 모든 國家가 同等權위에서 參加하는 歐洲安保會議의 準備를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당신은 分明히 侵略的인 目的으로 充滿되어 있는 모든 形態의 单独代表權要求를 西獨政府의 政治의 手段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그 代身에 同等權의 原則으로 代置하여 이러한 原則에 따라 行動할 생각이 있는가?

당신은 歐洲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을 軍縮에 대한 合意措施들을 통해 促進시킬 생각이 있는가?

당신은 무엇보다도 東獨과 西獨間에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생각이 있는가?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的 效力 「拒否」와 1969. 12 東獨이 제의했던 條約 「拒否」는 歐洲安保의 建設的인 措置와,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正常化와, 平和스런 未來의 確保에 대한 人間 本來의 關心에 反對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強調하겠음.

獨逸民主共和國은 여전히 建設的인 立場을 지키고 있음. 우리의 提議들은 바로 여기 있음. 나는 東獨人民會議의 委任에 立脚하여 그리고, 東獨政府의 이름으로 宣言하는바 임. 즉 우리는 곧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수립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準備가 되어 있음. 이미 처음에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條約案에 관한 協商에 들어갈 準備가 되어 있음.

지금의 事情으로는 政府首腦들간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수립에 관한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기도 前에 그곳에서 副次的인 問題나 三次的인 問題들의 協議를 始作하기 위해 어떤 委員會나 代表자들을 任命하는

것은 거의 뜻이 없을 것이고 이는 또한 問題의 核心을 벗어나는 것임.

우리는 兩獨間의 正常的인 關係를 위한 確固한 土台를 創造하는 純粹한 解決을 希望하고 있음.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을 主權的인 國家들간의 同等한 關係를 위한 基本法으로서 간주하고 있음. 東獨이 수립된 첫 날부터 東獨은 「유엔」憲章의 精神속에서 그의 政策을 形成했음.

이미 오래 前부터 東獨이 「유엔」加入申請을 내고 있는 것은 그와 부합하는 것임. 東獨과 西獨은 平和와 諸民族의 理解를 위한 「유엔」의 原則과 目的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 「유엔」에 加入하는 것이 時期에 알맞는 것이 아닌가?

그 경우 西獨側에서 어떠한 留保나 或은 負擔을 부과할 수 없는 主權國家로서의 東獨과 西獨이 完全히 同等한 會員資格만이 問題될 수 있음은 自明한 것임. 東獨이 「유엔」機構의 會員國이 되어도 좋은가에 관하여 決定하고자 하는 西獨의 越權的인 態度는 「유엔」憲章과 矛盾하고 世界組織 「유엔」의 普遍성과 矛盾하는 것임. 東獨政府의 見解에 의하면 東獨과 西獨의 加入은 議程에 올라 있음. 西獨首相인 당신이 당신 政府에게 그에 부합하는 準備를 오늘 이 곳에서 命令해 주시면 우리는 환영할 것임.

東獨은 歐洲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確認하고 있음. 西獨政府의 변함없는 拒否로 지금 東獨과 西獨間의 國際法的인 關係 수립이 不可能하게 될 경우 東獨은 이를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確實히 歐洲의 人民들도 이에 대해 理解를 할 수 없을 것임.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時代의 必要性들을 고려하고, 歐洲中心部에서 平和를 위한 確固한 기반을 創造하는 데 協力하자고 呼訴하는 바임. 나는 당신이 끝까지 留意하여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리는 바임.



「캣셀」兩獨首相會談에서의 「브란트」西獨首相의 演說

( 1970. 5. 21 午後會談 )

1. 首相, 紳士 여러분!

나는 會談에 들어가기전에 정식으로 오늘 일어난 事件과 성가신 일들에 관해 유감을 表明하고 싶음.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여기고 있는 花環奉呈이 身辺安全 때문에 허용되지 못한것은 특히 유감임.

首相님, 당신은 오늘 午前에 殺害使囑託의에 대해 설명 했음.

나는 西獨法務相에게 코멘트 해줄것을 요청했던바, 그는 개인의 顯示的 表現을 정부의 견해로 전가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음.

法務相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刑法의 濫用을 막고 그의 管轄權 범 위 내에서만 모든일을 처리해 왔다고 말했음.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그리고 그 경우 司法相(西獨)은 모든 州의 司法相들의 完全한 支持를 받고 있음. 그는 그의 계획을 詳細히 記述했고 또한 나는 우리의 會議에 이어 당신에게 그 경우 무엇이 問題 되고 있는가를 당신께 提示하고 싶음.

2. 首相님, 나는 당신이 오늘 午前에 당신의 陳述에서 격양된 음성과 태도로 그토록 強力하게 抗議하고 個人的인 非難과 告發들을 당신의 그 陳述 속에 포함시켰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함.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퍼부었던 攻撃에 관해 이제 言及하지는 않겠음. 그러나 나는 西獨政府에 살고 있는 다른 人物들에 대한 攻撃은 반발하지 않을수 없음. 그것은 「바르첵」과 「슈트라우스」와 같은 聯邦議會議員에 대해서는 勿論 「쉐르」과 「슈밋트」氏와 같은 內閣構成員들에 대해서도 해당함.

그럼에도 不拘하고 나는 우리의 陳述들을 对照해 보는 경우 일관성이

결여 되고 상호 모순되어 있을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진술했음. 당신은 지난해의 12.17日字의 당신의 條約案에 대해 구체적인 回答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비난했음. 東獨의 國家 元首는 5月7日 西獨政府는 이제까지 그에 反對하는 主張을 하등 제의하지 않았다고 宣言했음.

3.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東獨의 條約案에 反對하는 主張들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님.

우리는 兩側이 相互關係正常化 및 關係諸調整을 위해 서로 提議하는 바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임.

이때문에 나는 協商을 통해서만 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나는 오늘 兩側이 제시한 書類들을 기반으로 하여 協商할 것에 合意하고 또한 同等한 關係로 調整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兩側의 利益을 위해 미리 調整될 수 있었던 問題들에 관해 協商할 것을 合意해야할 時期라는 것을 나의 意見으로 내놓았음.

4. 그와 같은 協商의 始作이 아직도 可能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一定한 時期에 意見 交換을 계속 하도록 하게끔 해야함. 그동안에 實際的인 點에서 緊張의 解消와 소망하는 正常化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

西獨과 東獨間의 關係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써 그리고 그에 따른 분단 2개국으로서 이뤄진 상황으로 정의됨.

이러한 基盤위에서 獨逸에 있는 兩國家는 그들의 相互間의 關係를 條約上規制함에 合意해야 함. 獨逸안의 兩國家間에 一定한 領域의 行爲에 대해서는 特別 規制가 조약상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主權的 平等의 原則, 同等權의 原則, 領土的 保全의 原則, 不干涉의 原則이 適用됨. 이 경우에 우리가 主權的 平等, 同等權, 等等을 말하는 경우 우리가 「유엔」憲章 第2條에 規

定되어 있는 原則들에 對立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自明함.

5. 東獨條約案의 核心은 — 그리고 首相님, 당신은 오늘 午前에 다시한번 仔細히 說明했음 — 國際的 承認임. 그러나 그 條約案은 우리가 알다시피 過去에 行한 당신側의 많은 다른 示唆와 거의 마찬가지로 비록 民族이 두개의 國家 안에서 살고 있다해도 第2次世界大戰 以後 獨逸 안에서 成立된 民族의 關係와 민족의 未來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한 논점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觀点들은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觀点은 條約上의 規制問題에 우리가 제시한 사항들 속에 包含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條約案과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함께 대조하여 協商에서 그로부터 狀況에 부합하고 또한 一定한 경우에 우리國家相互間의 關係를 위해 國際法的 原則의 適用을 形式上 表現할 수 있는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함.

6. 나는 앞으로도 당신이 民族이라는 概念에 관해 言及한 바에 동의하지 않음. 나는 우리가 이 순간에 서로 確信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음. 따라서 나는 다시한번 간단히 그에 대한 나의 見解를 要約하겠음.

그러나 우리는 民族이라는 概念이 다만 過去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民族이란 共通的인 言語와 文化 以上の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國家秩序와 社會秩序 以上の 것이기도 함.

民族이란 사람들의 共屬感에 立脚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뜻에서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民族의 單一性이 있음. 民族의 單一性은 당신이나 우리들에 의해서도 廢棄될 수 없음.

7. 당신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에 각각 속해있는 두국가의 통합을 아무리 어렵다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국가가 처한 입장만을 얘기한 것이지, 민족의 계속성을 부정하지는 못함.

한편 民族의 兩部分의 實際生活이 정치적 發達과 사회적 發達에 의해 많은 領域에서 矛盾되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論爭할 사람은 우리들

중에는 한사람도 없음. 그럼에도 不拘하고 独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共通的인 言語, 共通的인 歷史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持統的인 共屬感뿐만 아니라, 第2次世界大戰과 그의 結果에 의한 分斷이라는 共同的인 運命으로 연결되어 있음. 他面에 있어 내가 희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期를 위해 점점 더 이를 바라고 있음 — 平和의 確保와 維持에 대한 責任意識과 特殊한 發達意識을 그리고 諸民族들의 自決權違反을 막아야 한다는 意識으로 우리는 결부되어 있음. 兩政府는「에어후르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속에 独逸땅으로부터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된다는데 合意했음. 그것은 끊임없이 解決을 要하는 重要한 많은 다른 問題들의 한 局面임.

8. 相對方 独逸國家의 法律이나 法令이 이론상으로는 我側 独逸 國家와 住民에게도 관련이 있었음을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신의 첫 發言에서 주장했음. 다른 國家의 市民에 그중 한 國家의 統治權限을 확대하고자 試圖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言及했음.

西獨政府를 代身하여 나는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宣言할 수 있음. 그런 式으로 제기된 비난들은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은 勿論 西獨의 善意에 正当性을 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西獨의 立法을 歪曲하고 있음.

9. 우리는 東獨을 냉대할 意圖는 가지고 있지 않음. 事實上 一聯의 우리 立法은 東獨住民에게 결코 해롭지 않을 것임. 나는 다만 兩獨間 經濟交流를 分明히 關稅에서 免除시켜 놓고 있는 1961.7의 關稅法을 지적해 둠.

그러나 모든 법령상의 충돌 — 다시 말해서 여러 형태의 차별과 냉대 — 에 대해 토론하고 명백한 결론을 얻기 위한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음.

그러나 差別이라는 非難과 관련하여 나의 見解에 따르면 完全히 正当化될 수 없는 西獨에 대한 演說에서 노리고 있는 復仇主義라는 비난에서도 전번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소위 統一問題研究諮問 委員會에 관해 言及했음. 물론 그것은 独逸의 國家的 統一이 強大國政策의 한 要素이

기도 했던 時期에 무엇보다도 全獨의 經濟的 條件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調査委員會가 熟考했음. 나는 이것을 侵略的인 計劃이라 말하고 또한 強大國의 政策과 對立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임. 그리고 그 당시 熟考했던 「모델」들이 廣範하게 西獨안의 輿論과 부합했었음은 分明함. 그러나 나는 東獨首相인 당신이 알고 있다시피—만약 모른다면 나의 陳述을 통해 당신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음.— 根本的으로 誤認하고 있는 學術委員會의 作業이 全體狀況의 變化와 함께 弱化되고, 그에 의해 우리의 政策을 방금 言及된 이러한 思考「모델」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 委員會는 오늘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같이 우리 協力狀態를 눈에 뵈는 程度로 앞질러 解決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兩獨逸國家의 科學的인 體制比較를 위한 매우 重要한 貢獻을 現在 제공해주고자 試圖하고 있음. 그럼에도 不拘하고 당신이 어느 때든 즉 一定한 時期에 당신側의 大學이나 研究所들의 專門家들 또는 그밖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 研究者의 作業들에 관해 確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招待하겠다는 示唆를 하도록 許容하여 주시오.

10. 나는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모든 差異性에도 不拘하고 共同的인 信念으로서 獨逸 땅 위에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明白히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비록 당신이 部分的으로는 우리와 상이한 前提들로부터 出發하고 우리 역시 당신과는 다른 前提로 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平和의 確固한 保障이 必要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음.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決定的인 것은 平和를 確保하는 것이 두 獨逸國家의 特殊한 義務라는 것임. 그리고 나는 對話를 이곳에서 持續하는 경우 그와 연결시켜 東獨과 마찬가지로 西獨도 相互間에 歐洲 平和體制를 創造하기 위해 能動的인 政策을 추구하겠다는 意志를 保障할 것에 合意함.

11. 우리 兩側은 「에어후르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條約에서는 暴力의 威脅과 暴力의 行使를 拋棄함에 관한 規制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을 천

명 했음.

首相님! 당신은 國際法的인 承認과 不干涉形態들의 價値에 관한 우리 意見의 差異가 暴力拋棄를 沮害할 수 있다고 異議를 제기했으나 나에게 는 納得되지 않음. 暴力拋棄는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基本前提임. 그리고 그것은 條約締結하는 國家들간의 政治的인 相異성과 社会的인 相異性이 問題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함. 소련도 西獨과의 意見交換에서 언제나 다른 要因들과는 달리 暴力拋棄가 우리 兩國家간의 條約上 規制의 一部分임에 틀림없다는 데에 最大의 역점을 두었음.

만일 보다 큰 信賴의 霧困氣 속에서 條約上의 規制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을 程度로 既存 意見의 差異들을 克服하기 위한 持續的인 發展이 이루어 진다면 暴力拋棄와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해야 할 義務가 이러한 規制의 部分임은 疑心할 필요가 없음.

12. 歐洲의 安保를 높이기 위한 問題에 있어 西獨政府의 積極的인 態度는 周知하고 있을 것임. 西獨政府는 이를 위한 적절한 모든 努力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거기에는 우리들간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의 除去도 포함되어 있음. 緊張狀態의 外形的인 現象만을 다른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는 歐洲安保에 이바지 한다고 볼수 없음. 무엇보다도 現實的으로 모든 歐洲人民들을 위한 安保의 보다 強한 保障을 할수 있는 形態들을 찾아 내기 위해 緊張의 原因들을 除去해야 함. 相互對話의 出發은 歐洲에 있어서의 安保를 높이기 위한 努力을 成功시키는데 主로 影響을 끼칠 것임. 그 경우 한 國家의 安保가 다른 國家의 不安定을 意味해서도 아니 됨.

13. 首相님! 이와 관련해서 東獨側은 西獨聯邦軍 戰車의 鉄柵 속에 東獨에 대한 侵略計劃들이 있으며 당신 側이 이러한 計劃案을 入手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음. 東獨의 國家元首는 東獨이 이러한 計劃을 公表할 수 있다고 發表했음. 우리는 그에 反對할만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가 屬하고 있는 同盟體와 테두리안에서 우리의 軍事的인

計劃은 西獨의 防衛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東獨이나 其他 여하한 나라들에 대한 侵略目的을 추구하고 있는것은 아님.

오늘 아침에 한 나의 陳述 序頭에서 나는 이미 兩側이 領土保全과 境界의 尊重 위에서 關係를 수립하자는 意思를 宣言해야 한다고 말했음.

나는 國家間에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있는 이러한 原則이 西獨과 東獨間의 關係에 대해서도 拘束力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14. 우리들의 두 國家間的 境界 以外的 다른 境界問題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싶음. 즉 「폴란드」人民共和國과의 우리 關係는 당신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다룰 必要가 없고 또한 내가 繼續 잘 進行되어 肯定的인 結末에 이를 것을 희망하고 있는 現在 進行中인 對話의 對象임.

1938년에 유래된 「문헨」協定の 問題는 그 問題自体의 性格上 西獨과 東獨間的 協商 課題일 수가 없음.

이러한 問題는 우리의 確信에 의하면 西獨과 그 이웃인「체코슬로바키아」간의 協商에 의해서만 兩側이 滿足할 수 있는 方法으로 規定될 수 있고 또한 西獨政府는 그를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음.

15. 首相님! 당신은 오늘 午前에 伯林에 관해서 西獨政府는 아무것도 協商할 것이 없다고 말했음. 西獨政府와 西獨의 경우 이미 同一한 貨幣制度와 同一한 經濟體制라면 단면적으로만 보자면 事實上 이러한 問題와의 關聯도 있음.

그 밖에도 西獨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討議 對象이 되었음. 現在 伯林에 대해서 特殊한 權利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強國은 이 都市의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길을 찾고 있음. 이러한 協商을 방해해서는 아니됨. 그러나 이 協商들은 4大國協商이 一定한 目的을 달성시키자 곧 兩獨逸政府가 豫防手段을 강구하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임. 그러나 現在로 보아서는 이러한 對象을 더 深化시킬 길로 이끌 것으로 보임.

우리가 어떠한 歐洲平和秩序와 歐洲安保體制가 要求하고 있는 原則적인 것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그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간에 疑心할 여지가 없을 것임. 그에 이르기까지 歐洲의 安保는 — 우리가 그것을 재미있어 하든 않든간에 — 西獨과 東獨이 「파트너」로 되어 있는 防衛同盟體들의 均衡잡힌 關係에 있는 것임.

16. 우리 相互間的 關係의 規制도 歐洲安保를 위해 아주 重要하기는 하지만 우리 單獨으로 歐洲平和 秩序를 創造할 수는 없음. 따라서 우리는 既存 防衛同盟體를 희생함으로써 兩獨關係 調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음. 4대열강국 책임론에 反對하는 당신의 主張 속에서 나의 見解에 의하면 重要한 <한가지 사실을 빠트렸음. 즉 伯林問題와 獨逸問題를 4大國의 責任에 歸屬시키는 것은 지난 25年동안에 적어도 그로써 훌륭한 結果가 얻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平和를 유지함에 이바지 했음.

獨逸에 있는 兩國家는 자신의 安保必要에 대한 利害때문에 각기 東과 西에 있는 戰勝國들의 盟邦으로 되어 있음. 우리가 歐洲의 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하려한다면 우리는 그 土台에서만 출발할 수 있음. 그것이 바로 4大國의 立場이라는 사실을 나는 받아 들이고 있음.

당신은 獨逸條約 第7條에 대해 날카로운 批判을 加했고 나에게 質問을 던졌음. <당신은 그 條文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 나는 第7條의 第1項1에 留意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 즉 <署名國家는 共通된 政策目標가 全獨의 平和定着이며> 이는 독일과 그 적국들간에 자유로이 협정된 것인바, 지속적인 平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함의함.

결코 다시는 歐洲平和와 世界平和에 대한 危險으로 되지 않을 平和스런 獨逸이 이 條文의 主內容임. 그 條約의 모든 다른 規制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예속되어 있음. 이제 第3國과 國際的인 組織과의 關係에 관해서 우리들은 두 國家 關係에 있어서 알맞은 形態들을 발견했거나 또는 發見할 경우 東獨의 第3國과의 關係에서 생기는 難關들도 점점 더 적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바임.

우리는 우리의 友邦國家가 이러한 試圖를 더욱 어렵게 만들 行동을



삼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關係를 平和的 기초 위에 확립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貢獻으로 생각함. 당신도 당신의 友邦들이 당신政策을 支持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임. 우리 兩側의 努力이 相互理解를 가  
\*  
능케 한다면 우리 周辺國家들과의 關係도 궁극적으로 밝아질 것임.

나는 그밖에 獨逸안의 兩國家가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음. 그런 점에서 西獨과 東獨이 이제까지 「유엔」會員國이 아니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그것은 결국 종래의 양국관계 때문이었으나, 우리가 앞으로 條約에 의해 재조정하도록 試圖해야 함. 우리의 努力이 成功한다면 우리는 다른 領域에서도 보다 큰 成功의 展望을 가지고 國際기구내에서 우리의 상호협조를 규제할 필요한 조차를 할수 있을 것임.  
4

우리는 두번째에 「유엔」歐洲經濟委員會에 관해 한 마디 言及할 수가 있었는데, 이 問題는 演說의 對象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 관해 뒤늦게 한마디 말하고자 함. 4월에 있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會議에서 東獨의 協力問題에 관해 西獨政府가 취했던 態度는 — 나는 「제네바」에서 있었던 어떤 文章 또는 切取된 文章 또는 其他의 口頭表明에 집착하지 않고 問題의 實體로 부터 出發하고 있음 — 國際的인 영역에서도 兩獨 相互理解 증진을 위한 하나의 徵表를 設定하려는 慾求에 의해 決定되었던 것임. 그 경우 西獨政府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事務局의 通告와 「제네바」에 있었던 東獨代表의 聲明에서 당신의 政府도 地位의 問題를 벗어난 實際的인 解決策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믿었던 것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오해에 빠져> 결국 그 試圖만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임.

「유엔」歐洲經濟委員會會議에서의 經驗에 비추어 볼때, 國際分野에 있어서의 임시적 해결방안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나는 그로부터 우리가 <第3國과의 우리의 關係>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우리의 關係>를 合意하여 規制할 수 있는 입장에 이르기 前에 우선 우리 <兩國家

간의 <政治的 關係를 조정>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렸음. 이러한 認識은 世界保健機構會議席上에서의 西独政府의 態度로 나타났음. 즉 일단 <임시적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保留>를 扞하기로 했던것임.

西独의 代表들이 東独의 通商利得에 관한 稾소문을 펴뜨리고 있다는 當신의 非難에 나는 當황 하였음. 어쨌든 그것은 西独政府에 관계되는 일은 아님.

西独政府는 <聲明内容에서 엄격하게 客觀性을 유지>하였고,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음> 西独政府는 <「파트너」의 利益뿐만 아니라 <自己 自身の 利益에도 부합>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行動하고 있다고 確信하고 있음>.

利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論爭은 나의 생각으로는 이곳에서는 別所得이 없음. 兩側에 有益한 經濟交流의 發達을 擴大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함.

兩独間經濟交流의 現在 基盤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問題는 解決되지 않을 것임. 西独政府는 앞으로 東独과 西独間의 特別經濟關係를 促進시키고자 노력을 계속할 것임. 그리고 兩國家間 <條約上의 規制는 現存하고 있는 協定, 委任事項 및 合意를 確認해야 함>.

나는 西独政府가 條約을 위해 예상하고 있는 要素들이 同等權, 無差別, 第3國에 대한 侵害당하지 않는 主權的 行爲, 暴力拋棄의 모든 確約을 一條約 締結 當事國의 政治的, 社会的 體制에 관해서도 — 내포하고 있고, 그것도 <國際法의 規制에 따라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約束드리는 바임. 西独政府의 意思로서는 相互協商하는 과정에서 國際機構 加入과 協力에 관해서도 함께 協議할 생각임.

이때문에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이익에 명백히 부합되는 我側 提議의 核心 — 당신이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 에 반대할 무슨 명분이 있을수 있겠는가?

둘째로 「에어후르트」會談 以來 당신側이 의심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우리가 反革命的 意圖를 가지고 第2次大戦結果로 야기된 현실 상황을 변경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 제시되어 있는 文書속에 명백히 表明되어 있는 西獨政府의 準備는 모든 (暴力의 公式的인 拋棄나, (自由로운 協力意思의 公式的 宣言뿐만 아니라 (領土的 保全과 境界의 尊重도 포함되어 있음. 이것이 條約上 拘束的인 要素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의한바 있음.

第2次 世界大戦 後에 成立된 獨逸과 獨逸人이 處한 現狀況들로 부터 出發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質問을 제기하겠음. 즉 매우 尊敬하는 首相인 당신은 우리의 狀況속에서 兩國家間의 條約締結이 可能하며, 또한 그 條約이 獨逸과 伯林에 관한 4大強國의 合意를 尊重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同盟國以外의 國家나 歐洲同盟國에 의해 同意될 수 있고 수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또한 주어진 狀況속에서 예상되는 合意가 우리가 佛蘭西, 英國, 美國 및 소련과 關係해서 好意的으로 義務規定에 기초를 두지 않고 또한 獨逸과 伯林에 대한 이들 強大國들의 特殊한 權利나 合意事項에 立脚한다는 것을 保障못한다면 그 條約이 무슨 價值가 있겠는가? 兩國家는 戰後史의 政治的, 社會的 目標設定에 따라, 그리고 자기 安保利益에 따라 兩戰勝國의 盟邦이 되었음. 우리가 歐洲平和를 좀더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몇가지 기초위에서만 가능한 것임.

나는 결코 그 理由 때문에만 우리들 關係의 規制가 오직 당신의 條約案을 기초로하여 成立될 수 있다는 당신 立場을 계속 고집하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그것은 우리도 당신을 理解하고자 하고 또한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 關係의 諸形態의 法的拘束力을 지닌 證明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닌것임. 그러나 首相님! 나는 당신의 條約案에서 兩國家의 市民들의 相互利益을 위하여 實際的인 協力과 關係의 形成을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는가에 대해 質問해야 하겠음.

우리는 獨逸인들이 이제 國家的인 分斷에도 不拘하고 條約으로 共同生活를 어느 程度 規制하고 이것이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國民에게 認識시키지 않고서 條約協商에 合意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신側의 條約案에서는 거의 認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를 不安케하고 있음.

✓ 第6條의 背景에는 과연 어떠한 具體的인 理念이 깔려있는지 國民들은 質問하고 있음. 第6條는 너무 모호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 문제논의가 이뤄질 경우 合意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임.

그 質問은 歐洲平和의 確保를 위한 우리의 貢獻을 度外視하면 우리 두 國家市民들은 보다 많은 結束을 초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임. 따라서 나는 東獨首相이신 당신도 우리 國家간의 條約이 一般的인 目的을 公布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간에만 存在하고 있는 問題들을 除去하기 위해 拘束力 있는 措置들을 예상하는 경우에만 關係의 어려운 狀況이 改善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은 것임. 예를 들어 우리가 國家간의 條約에서 오늘 午前에 要約했던 바와달리 아직도 다른 많은 問題들을 들면 離散家族에 관계되는 問題, 共同境界線에 沿한 郡面의 問題들을 度外視하고 相互間的 旅行往來를 擴大시키는 具體的인 措置들을 예상한다면 얼버무려버릴 수 없는 政治的인 對立, 社會的인 對立 그리고「이데오로기」的인 對立을 고려할 것입니까?

首相님! 나는 우리가 一般的 問題들을 저버리므로서 우리들의 市民들을 失望시키는데 대한 責任을 질수 있는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임.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午前에 言及한 分野에 있어서 <協力の 實際的 可能性들을 發展>시키거나 或은 協力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에서 이를 <強化>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義務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임. 우리는 條約이, <이 問題에 관한 個別協商>에 들어가기로 <合意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兩側國民)에 共同으로 同時報告해야 한다고 생각함.

兩國家間의 條約이 어떠한 要素들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提議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것임.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을 제시하였음. 우리의 見解가 많은 點에서 一致하지 않고 있음은 分명한 것임. 그러나 이미 意見一致를 確定할 수 있는 몇가지 點들도 있음. 이제 兩側이 言及한 原則的인 問題들의 論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임.

아마도 東獨首相인 당신은 내가 제시한 各 條約要素들에 대해 환영할 수 있는 形편은 못되는 모양임. 아마도 당신은 <더 검토하고 相議함이 尤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듯이 보임. 나는 물론 만일 당신이 어쨌든 오늘 兩側이 제시한 原則的 問題들에 관한 協商을 시작한다는 決定을 내릴 수 없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 그리고 協商의 形態에 관해서도 우리는 양해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경우 나는 이러한 式의 事前對話가 물론 우리의 決斷을 전혀 뺏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임. 나는 見解와 判斷의 差異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어느날엔가는 이루어져야 할 意見形成과 決定들을 위한 基반으로서 解決可能性들을 事前에 說明하고 그와 같은 形態로 事實上의 矛盾들을 解決하는 것이 建設的인 길인 것으로 알고 있음.

끝으로 말하고자 함. 즉 내가 序頭에서 言及했던바 오늘날 兪해있는 환경에 수차 失望을 거듭했음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우리의 見解差異들이 아주 크고도 原則的인 問題이기 조차 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不拘하고> 물론 나는 우리가 <對話의 실마리를 斷絶해서는 아니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음. 나는 이것을 歐洲와 우리 兩國家住民의 平和와 安保에 대한 關心의 덕택이라고 믿고 싶은 것임.

또한 나는 對話를 통해 많은 진전을 가져 올수 있는 問題가 많이 있다고 믿고 있음. 우리 兩側은 모두 兩國家 關係調整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對話가 始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言及했음. 나는 그러한 協商이

〈事前条件〉에 의해 負擔을 느끼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兩側의 提議들이 그와 같은 協商의 土臺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서로 合意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음. 그러한 協商課程에서 兩國家의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協力과 會員資格은 勿論 兩國의 國際的關係를 定立시키고 試圖도 可能的 것임. 그것이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 그러므로 國際法의 기반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나는 反復하여 이미 強調했기 때문에 더 陳述할 必要가 없는 것임. 나는 우리가 「에어후르트」에서 全權受任者를 任明할 것에 合意했던들 우리는 이점에 있어 確實히 進展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이미 오늘 아침에 示唆한바 있음.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條約上의 規制에 관한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우리 兩政府間의 接觸을 어떻게 進行시킬것인지에 대해 熟考해야 한다는 見解임. 어쨌든, 나는 우리 兩側의 論争속에 〈相互共通利益을 찾아 볼수 있는 몇가지 要素가 있다는 事實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있음. 暴力 拋棄, 領土 및 國境保全의 問題, 不干渉과 兩國家의 統治權의 尊重과 같은 〈原則들이 바로 그에 屬하고 있음〉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努力도 그에 屬하고 있고 또한 당신이 특별히 강조한 兩國家의 立法問題에 있어 내가 이미 暗示하였음 — 法의 抵触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方式으로 差別規定 또는 差別한다고 느끼는 規定을 無效化시킴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點등도 역시 그에 속해야 할 것임. 당신은 이와같은 모든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당신의 많은 政治的 疑問에 肯定的인 答辯이 나올수 있음을 알고 있음.

\* 이와 關聯해서 西獨政府는 얼마 前부터 論議되고 있는 歐洲安保會議의 慎重한 準備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西獨政府는 歐洲境界를 尊重하는 편에서 있고 歐洲平和와 安保에 대한 努力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음. 〈어떠한 批難의 表明도 이러한 事實을 전혀 바꿔 놓을수는 없는 것임.〉 나는 당신이 本質的인 問題를 論議함에 있

어서 계속해서 兩者折一의 경직된 立場을 固守하고 있기 때문에 兩獨  
間에 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좋은 결과가 兩國民을 위해 나오리라는 전  
망을 흐려놓고 있다는 인상만. 받았음.

당신은 東獨政府가 國民의 利益의 方向에 따라 主導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兩國間의 條約上 規制와 關係해서 이것  
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首相님! 우리의 質問에 대한 對答을 하는 것은 우리들도 可能  
한 것으로 생각됨.

우리가 그와 같은 對答을 얻는 경우, 나는 차차로 당신이 말하고 있  
는 東獨의 國際的 承認問題도 解決이 되리라고 확신함. 역시 해결될 수  
있음을 確信할 것임. 나는 다시 한번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一般的인  
關係와 關係시켜서만 볼 수 있고 그 條約을 純 公式的인 法律行爲로 생  
각할 수는 없다고 強調함.

나는 東獨에서 이를 달리 보려한다면 놀랄 것임. 나는 우리의 國民  
이 眞情한 關係改善이라면 어떤 협정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함. 우리政  
府 역시 마찬가지임. ↘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立場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한 우리  
가 一定한 時期에 우리 兩政府간의 對話의 持續을 可能케 하기 위해  
서로 接觸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 그동안 우리는 가능한 어느 장소에  
서든지 問題의 解決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할 것임. 비록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課題에 공헌하는 것  
임.

「캣셀」兩獨首相會談에서의 「슈토프」東獨首相의 演說

(1970.5.21 午後會議)

首相님 !

나는 당신이 序頭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質問과 방금 發言한 質問들이 根本적으로 내가 앞에서 사실상 對答했던 것이었음을 말하고 싶음. 따라서 나는 이제 時間이 許諾하는 限,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조사해 볼 작정임. 그런데 이 質問中 答辯하는 것과 答辯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答辯하지 않는것이 우리가 그에 合意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答辯하는 것과 관련시켜 보기를 바라는 바임.

그러므로 나는 다만 다시 한번 總괄적으로 이곳에서 몇가지 基本的인 생각을 要約하겠음. 그 中の 몇가지는 이미 나의 演說에 포함되어 있었음.

東獨은 主權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는것과 같이 東獨과 西獨間에서도 平等의 原則에 基礎한 國際關係를 수립하고 歐洲平和와 安全을 수립하려는 「이니셔티브」를 장악하였음.

東獨은 모든 基本問題에 關係 具體적인 確定을 내다 보고 東獨과 西獨간의 同等한 關係의 수립에 關係한 條約案을 제시한바 있음. 東獨은 兩獨이 곧장 「유엔」회원국이 될 것을 주장해왔음. 兩獨首腦會談提議案은 東獨이 提議했던 것이며, 또한 會談을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는가 하면 會談場所등 기타 많은 問題에 커다란 忍耐力을 보여 왔음. 그것은 오늘날 이곳 「캣셀」本會談에도 해당되는 바임. 「캣셀」에로의 東獨政府代表團의 旅行이 「네오나치즘」적인 挑戰과 殺害狂 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問題의 關心과 本會談을 爲해 西獨으로 온 것임.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에 적절한 評價를 해주기를 간청하고 싶은 것임.

西獨政府조차도 反對하지 못하는 社會체제의 基本적 모순 대립과 적대현상을 고려하여 東獨은 社會主義 東獨과 後期資本主義 西獨間에 平和的



共存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自主的인 시도를 해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든 根本的인 問題들에 있어 西獨政府의 拒否的인 態度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確定해야 함. 여러가지의 異議들, 留保들 그리고 條件들으로써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國際的인 關係수립을 위한 길이 이제까지 차단당했었음.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이 오늘 行한 發言에서 西獨政府가 公公然하게 앞으로도 이러한 破壞的인 態度를 堅持할 것이라는 것을 看取하였음.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再調整을 위해 당신이 제의한 原則들은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수립에 대한 分명한 拒絶로서 解釈될 수 밖에 없음. 당신은 여러가지 많은 項目들을 열거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東西獨間의 國際關係 設定이라는 絶對的 要素는 回避하고 있음. 人類와 平和를 위하여 歐洲安保를 위하여 東西獨間의 國際關係 設定은 切實히 必要한 것임.

우리는 西獨政府가 아직도 변함없이 國際法的 기반위에서 東獨과 關係를 맺는것을 拒否하는데 집착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그때문에 歐洲平和라는 緊急한 問題는 그에 의해 未解決로 남기 때문인 것임.

西獨政府의 聲明中에 어떤것은 現實性에 立脚하기를 所望하는듯 한데, 예를들면, 東西獨間의 두개의 相反되는 體制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것이 그것인데,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이 그런문제는 깨끗이 해결해 줄 것임.

그러나 「에어후르트」會談이나 今日「캣셀」會談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西獨側이 現實狀況에서 유일하게 可能的한 結論인 兩獨間의 國際關係設定을 <準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今日 당신은 수락할 수 없는 <「內獨關係」를 論證하기 위해 東獨과 西獨間에 必要한 國際法的 關係 대신에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을 사용하였음. 당신도 나도, "민족의 단일성"을 社会的 政治的 現實과 同一線上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 나는 이 問題와 관련하여 前에 이미 政治的 現實을 여러차례 立証했던 나의 發言을 지적해 두고자 함.

首相님, 당신은 東獨이 마치 西獨이 憲法上 「民族의 單一性」에 拘束 당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上 拘束되어 있다고 천명하였는데 西獨基本法과 東獨憲法을 이처럼 비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西獨의 基本法>은 周知한 바와 같이 <西獨人民代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憲法이 아니라 西方強大國들, 특히 <西國의 代表者>에 의해 作成되어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強要했던 것임.

그리하여 西獨은 <民族聯盟>에서 떨어져 나와 分離 되었고, 「나토」의 構成員으로서 分離國으로 定着되어 버렸음. 東獨은 저주에 찬 獨逸歷史로부터 教訓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츠담」協定の 根本的인 規定들이 決定的으로 實現되었기 때문에, 또한 人民이 政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 獨逸民族國家인 것임.

東獨의 實存과 政治는 戰爭의 뿌리가 除去되어 있고 또한 獨逸平和國家이기 때문에 國際法과 一致하고 있음. 強盜的인 獨逸「파시즘」에 對한 反「히틀러」聯合의 勝利結果로 나타난 歷史的 變化와 帝國主義로부터 東獨人民의 解放을 取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임.

東獨과 西獨間에 소위 內獨特殊關係를 구성하려는 모든 試圖는 오직 單獨代表라는 越權行爲를 유지하여 東獨을 後見하려 함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公式은 모든 差別을 떠난 東·西獨 同等關係의 基礎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受諾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한번 明白히 確信해 두고자 함.

西獨首相님, 당신은 당신의 오늘 陳述에서 결코 다시는 독일 땅에서 戰爭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1945年以來反「파시즘」勢力에 의해 추구된 原則을 다시 引用하였고, 바로 그에 대한 保證을 마련한다는 것이 「포츠담」協定에서 國際法上 拘束力있게 규정되어 東獨에 대해서는 물론 西獨에 대해서도 效力있고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反「히틀러」聯合에 속했던 主要強大國들의 提議의 主目的인 것임.

東獨에서는 그와 같은 保障들이 「파시즘」과 軍國主義를 帝國主義的인 뿌

리와 함께 완전히 뽑아 버리고 社会生活的 基本的인 民主化를 기하여 明白히 確立했음. 따라서 東独은 歐洲에서 平和와 安保의 要因國家가 되었고, 따라서 主權的인 獨立國家로서 (1955年9月20日字의 東独, 소련 條約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完全히 自由로이 西独을 포함한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形成하고 있음. 東独과의 國際法的 關係를 거부함에 있어 4大強國을 방패로 삼는다는 것은 誤導이며 그릇된 處事인 것임. 한편, 西独에서는 「포츠담」協定の 根本的 規定들이 오늘날까지 履行되고 있지 않음. 「나찌즘」이나 軍國主義도 뿌리채 뽑혀 있지 않고 오히려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임. 바로 오늘 會合과 관련하여 우리는 더 많은 「네오 나찌즘」的인 策動을 目擊해야 했음. 그것은 <결코 枝葉的 現象이 아니며, <克服되지 않은 過去를 政治的으로 表現했던 것임.

그런 限에서 反「히틀러」聯合의 主要 強大國들은 여전히 西独에서 「포츠담」協定の 實現을 위한 權利와 義務를 지고 있음. 그러나 西独首相인 당신은 오늘 4大強國의 權利와 責任을 말했을 때 分明히 바로 그 점을 意味하지 않았음. 당신 表現에는 오히려 東独과 分斷시키고 西独을 「나토」에 統合하고 東独의 合併을 초래했던 「파리」條約에 東独을 놓으려는 目的이 숨어 있었음.

당신은 오늘 午前 이곳에서 「파리」條約 第7條를 引用하였으나 그 <第7條 1項은 <원래 問題되고 있는 項目이> 아니며 問題되고 있는 項目은 引用치 않았다는 것을 부언해둠. 나는 <第2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2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講和條約締結時까지 署名國家들은 平和的인 手段으로 그의 共同的인 自的을 실현하기 위해 協力할 것임. 즉 獨逸聯邦共和國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自由民主主義憲法을 가지고 또한 歐洲共同體에 統合된 統一된 獨逸이라는 共同目的을 실현시키기 위해 協力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政治的 目的인 것임.

第7條 2項은 나의 見解에 의하면 一條約을 올바르게 읽고 理解한다면

一本 第7条1項과 同一한 意義를 지니고 있음. 이 条文은 아직 完全히 效力이 있는 것임. 그렇지 않다면 現在에 이르는 동안 그 課業은 이 미 旧式이 되어 버렸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取消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생각을 정정 하겠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제까지 그에 관해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어 나는 本 第2項이 아직도 存在하고 있고, 앞으로도 署名國家들은 그 条文은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믿어야 함.

首相님, 東獨이 이 條項에 同意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不合理한 要求라고 나는 생각함. 결코 그렇게 될수는 없는 것임.

首相님, 당신은 오늘 東獨이 西獨의 다른 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방해하고 있다고 主張하였음. 누가 西獨의 對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를 妨害 하는가? 우리의 見解로서 그 問題는 바로 당신의 政府자신 이라고 솔직히 말하겠음. 第2次世界大戰의 諸結果를 制限 없이 承認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西獨政府인 것임. 西獨政府는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우리對話의 對象이 아니거나 또는 우리가 規制해야 하는 事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를 말하였지만 西獨政府는 「오데르·나이세」境界의 承認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언해야 하겠음. 당신 政府는 오늘날까지 <1938년의「뮌헨」協定の 無効를 拒否하여 왔음. 그러므로 東獨이 西獨의 對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를 妨害하고 있다고 不平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하고 싶음> 우리는 모든 國家가 同等한 기반 위에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모든 差別을 떠나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다는데 찬성하고 있음. 勿論 그것은 1970년 현재 우리가 歐洲에서 살고 있는 環境 條件이 世界第2次大戰의 結果라는 사실을 認定해야 한다는 前提가 따름. 그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며, <세계제2차대전은 終了된지 25年이 지난 오늘날> 關係正常化 歐洲平和 및 緊張緩和 등의 단어가 진지하고 <순수한 政治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認識은 <이제 實踐의 段階로

들어가야 할 問題가 남아 있는 것임.

首相님, 당신은 당신 演說에서 東獨에 대한 당신 政府의 態度에는 後見도 越權도 숨어 있지 않다고 主張하였고, 나아가서 당신 자신은 모든 相互間의 差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注意 깊게 最近에 있는 <西獨政府의 態度를 추종해 보았는데, 당신 政府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東獨과 東獨市民의 後見과 差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深化시켜 왔음을 재확인 하였음.

西獨이 東獨의 主權的인 權利들을 侵害하므로써 東獨 市民을 後見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政策이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를 몹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해야 하겠음. 東獨과 西獨이 서로 獨立 國家로서 存在하고 있으므로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兩 國家는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同等權과 無差別의 原則을 <無制限 適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음.

主權國家간의 關係에 있어 이러한 基礎的인 規範의 무시는 이미 言及한 東獨의 「유엔」 歐洲經濟委員會와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加入에 대한 당신 政府의 態度에서 表現되고 있음. 나는 西獨 首相, 당신이 오전 演說에서 東獨側이 이미 西獨政府側의 態度를 差別的인 것으로 定義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음.

東獨을 主權國家로서가 아니라 西獨側의 「제네바」代表가 말했듯이 「占領地域」으로 取扱되어야 한다고 期待하는 것은 無理한 要求가 아닐까? 그에 대한 証拠는 文書로 제시되어 있는 바임. 東獨의 出席과 發表에 대한 事前條件으로 당신 政府가 제시한 目錄은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한 國家의 差別을 위한 典型的인 한 例인 것임. 西獨首相님, 나는 당신이 유감스럽게도 東獨과 東獨市民을 差別하는 西獨의 法律과 法令을 止揚하려는 東獨의 正當한 要求에 대한 <對答을 아직껏 留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임. 그 대신 당신은 나에게 西獨政府文公省이 發

\* 行한 資料를 전해 주었으나, 그 資料는 <東獨의 法律에 관한 知識이 欠  
乏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誤解투성이었음.>

이 文書는 東獨 및 其他 國家領域에서까지 國際法에 反하여 西獨立法  
司法을 擴大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司法的 侵略을 <「正義에 基礎한 平和  
와 安全」이라는 表現을 빌어 오만한 태도로 宣布하려는 시도를 確認하고  
있음. 그것은 現西獨政府가 20年前부터 基民黨에 의해 추구된 <西獨立  
法과 司法의 效力圈을 東獨과 其他 國家들에게 까지 <擴大시키려는 復仇  
主義的인 政策에 執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表現하고 있음.  
여기 나에게는 5.27 부터 6.6 에 이르기까지 西獨에서 實施될 센서스  
調査에 使用되는 質疑書가 놓여있음. 이 質疑書는 오늘 會議의 하루前인  
5月20日에 住民들에게 배부된것임.

\* 나는 특히 그 質疑書의 第19項과 第20項을 유의하여 여기에 引用하겠음.  
第19項: 本面은 獨逸國籍을 가진 사람들만 記入하시오. 즉 1939.9.1  
(戰爭勃發)以後의 住所가 西伯林,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 獨逸 東方  
地域들,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슈데텐란트」東南歐洲와 기타 地域  
에 있는 東方이웃 나라들을 포함해서 西獨地域에 있는者.

第20項: 당신은 終戰後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에서 넘어 왔는가?  
그러한 樣式의 記入內容을 보면 어떤 條件이 이뤄져 왔나를 알 수  
있음. 즉 例를 들면 蘇聯占領地帶에서 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首相님,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당부해두는 바임. 나는 내가 5월 19일 그 質疑書를 얻었을 때, 「브란  
트」西獨首相이 10월에 그의 施政演說에서는 東獨과 西獨을 두개의 獨  
逸國家라고 言及했고, 反對로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質疑書를 公式 發行  
한다면, 5월 21일의 會談에서 과연 東西獨關係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당황했었음. <결국 이것은 個人的 行動이 아닌것임> <나는 그것을 낚은  
政策의 持續이라고 밖에는 달리 表現할 수가 없음> 아까 당신의 陳述  
에서 내 態度가 攻擊的이거나 挑戰的이라고 表現했다면, 나는 당신이 <原

인과 結果를 혼돈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겠음. (原因은 물론 쉽게 終結하지 못하고 있는 이곳 西獨의 事情에 있음)

例로 西獨法律紙 1970. 1月号 第2面に, 있는 1969.12.22日字의 草稿로된 <貨物自動車運送法을 들어보겠음. 즉 境界를 通過하는 道路貨物運送에 있어 1937.12.31을 기준으로한 獨逸帝國이 外國 또는 外國行政下에 있는 領域에서 許容되어 있는 貨物車의 경우 境界通過地點의 市邑面의 所在地로서 効力を 가짐. 境界通過地點의 自治團體(市·邑·面)는어느 곳에서든 定住하고 獨逸聯邦共和國에는 屬하고 있지 않으나, 1937年의 境界에서의 獨逸帝國의 領域에 屬했던 어떤 곳에서도 定住하는 自動車의 所在地로서 効力を 가짐. 通行하는 경우 獨逸境界를 여러번 넘게 되면 첫번의 境界通過地點의 自治團體(市·邑·面)가 所在地로서 効력을 가짐. 企業이 國內에 所在地를 갖지 않으면 境界關稅庁이 있는 州交通官庁이 外國으로 부터의 첫 通行時에 決定함……等等.

그리하여 西獨에는 아직도 一聯의 아주 多樣한 法律들이 있음. 例를 들면 「內國獨逸航空機」라는 概念을 一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1969.11.6에 制定된 轉移法, 1969.11.16日字의 航空往來法이 있음. 그런데 그곳에서 再三 言及되고 있는 <內國>이란 무엇인가? 이들 立法에 의하면 <內國>이란 1937年 境界線안의 獨逸帝國을 말함. 그것은 물론 모두 옳바른 것이 아님. 西獨이 말하는 <內獨>이란 東獨을 포함한 隣接국가들과의 境界線內에 있는 <西獨의 領土>만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므로 나는 오늘 당신 政府의 代表者가 새삼스럽게 <(休戰의) 境界線>이라는 表現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言及했던 것임. 그것은 상호 독립된 두개의 국가간의 경제 問題임. 그것이 누구에게 적합한가 아닌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 問題는 이러한 境界線임. 이제 이러한 시도가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에어후르트」와 「캣셀」회담에서 우리는 分界線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불렀으나, 여기에서는 「에어후르트-캣셀」기념메달조차도 東西獨 境界

線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에어후르트」에서 내가 당신에게 또하나의 俗物이 나타났다는 보도를 放送을 통해 들었다고 말한 후로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고 말해야 하겠음. 이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야 하겠음. 그전 메달의 경우에는 아직도 一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그려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全히 없어졌음.

나는 그것이 霧困氣를 改善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치 않음.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점을 考慮해 달라고 진심으로 요청함. <語調에 있어 攻撃的인 것은> (우리 側이 아니며 또한 당신이 그렇다는 것은 아님). 이곳에서 우리는 主要 基本的인 問題가 提起되고 있는데, 모든 復古的 現象 — 우리는 이를 慎重히 記錄할 것이고 또한 記錄해야 함 — 과 그와 유사한 行爲들은 不信을 부득이 야기할 것임에 틀림없는 것임.

東獨은 그의 立法과 司法에 있어 엄격히 國際法의 一般原則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고, 이는 西獨과의 關係에도 해당하고 있음. 東獨은 어떤 方法으로든 決코 西獨의 主權의인 權利를 要求할 정도로 越權한 적이 없음. 東獨은 國家의 最高權이 根本적으로 自己領土의 境界에서 끝난다는 原則을 決定的으로 固守하고 있는 바임. 西獨이 이러한 原則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同等權의 표시가 아닌 것임.

당신의 연설에서는, 分명한 <反革命的 “灰色の計劃”이 지속되고 이러한 計劃을 擴大시키기 위한 強力한 準備節次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 西獨側 關係들의 公式 聲明에서도 확인되듯이 — 問題의 核心을 다루지 않고 있음.

당신은 오늘 이곳에서, 我側의 專門家 科學者들에게 이 資料를 熟知시키기 위해 招請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러한 招請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이들 資料에 대해 熟知하고 있고, <계속 研究 調查해오고 있기 때문에 必要가 없는것임>. 我側이 이러한 結論을 내리게 된것은 보다 <最新 資料에 대한 細部分析에 依拠한 것임>.

報復 그룹들, 심지어는 「후프카」氏 같은 社民黨員 까지도 公公然히



〈歐洲平和를 威脅하는 目標을 宣言하고 있음. 우리가 알고 있기에 는 이러한 것들이 (政府로 부터의 支持와 財政支援)을 받고 있음. 「네오나찌즘」은 계속 拮据되고 있고 그의 指導者가 東獨과의 平和共存을 決定的으로 拒否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다시 그것을 強調하면서 基民黨周邇에 점점 많이 雲集하고 있음. 西獨의 統治勢力들은 反「파사즘」적인 民主的인 길을 公公然하게 걸고자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西獨의 統治勢力들은 「네오나찌즘」을 寬容하고 또한 促進시키고 있음. 「캇셀」會談과 關係해서 我側이 오늘 여러번 証言한 바와 같이 公公然한 파쇼의 殺人 캠페인이 벌어졌음에도 西獨政府는 이를 中斷시키지 않았음.

나는 그동안에 당신으로 부터 당신의 政府가 法務相에 보낸 指示를 통해 몇가지 措置들을 取했다는 것을 들었음.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물론 社會에도 그리고 我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하겠음. 反對로, 社會에서는 방대한 經費를 들여 新聞, 특히 어떤 新聞「콘체른」에서 殺人 캠페인을 벌여 왔고 또한 지금도 벌이고 있는 것임.

西獨의 支出은 — 나는 이미 한번 言及했음 — 예전에 없던 최고 수준의 金額에 이르렀음. (社會民主黨員의 領導下에 있는 西獨軍은 東獨과 其他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前進戰略의 精神으로 教育받고 있음. 당신은 당신의 軍隊를 防衛目的을 위해 所有하고 있다고 천명하였음. 그러나 우리는 西獨軍隊가 (前進戰略을 拋棄)하였다는 말은 찾아 볼수 없는 公表된 「나토」 文書와 決議文들, 「콤뮤니케」 및 其他의 文書資料들을 상기 할 수 있음.

우리는 최근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侵略에 對해 西獨의 外相이 贊成한 것을 상기시키는 바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言行은 甚한 矛盾에 빠져 있음. 만약에 西獨의 平和公約이 드디어는 行動으로 옮겨진다면 歐洲人民의 平和에 利益이 될 것임. 東獨政府는 西獨政府에게 이러한 言行一致를 보여주고자 여러번 招請하였던 것임.

이러한 이유로 해서 東獨政府는 가능한 限 곧 東獨과 西獨간에 同等한 國際法的關係 수립에 關한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바임. 그와 같은 條約은 兩國家의 人民들에 對해서는 勿論 歐洲安保를 위

해서도 대단히 有益할 것이며, <現在의 國境 承認과 <歐洲의 領土構造의 現狀維持>로 부터 出發하여 <完全한 同等權과 不干渉의 土台 위에서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한 <基本前提를 創造한다면 東獨에 관한 한 條約은 지체 없이 締結 可能할 것임. 이로써 나는 당신이 오늘 午後에 條約內容에 관해 제기했던 質問에도 對答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임. 東獨과 西獨이라는 兩 國家間의 關係調整을 위해 基本前提의 創造가 問題되고 있음.

大多數 西獨 市民들의 利益을 고려한다면, 東獨·西獨間의 國際關係樹立을 거부해야 할 하등의 理由가 없을 것임.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關係수립을 爲한 條約 締結에 대한 <西獨政府의 從來의 否定的인 생각>은 결국 <西獨人民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基民黨과 미국의 支配集團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 하는 問題로 귀결 되고 있음.

東獨政府는 東獨과 西獨이 即刻적으로 「유엔」에 加入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음. 東獨은 이것을 條約案 第8條에서도 強調하였음. 東獨政府는 — 그리고 나는 특히 이를 強調하고 있음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考慮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유엔」憲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엔」創立者들은 앞으로의 새 世代들을 戰爭의 災禍에서 保護하려는 各國의 意志에 따라 統治를 받겠다는 것임. 獨逸帝國主義의 侵略政策에 의해 兩次世界大戰이 일어 났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東獨과 西獨은 —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음 — 「유엔」憲章과 「포츠담」協定의 崇高한 目的을 가지고 獨逸땅에서 결코 다시는 世界平和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義務를 지고 있음. 東獨政府는 東獨과 西獨의 「유엔」加入이 歐洲 및 世界協力과 平和를 위해서도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보는 것임. 「유엔」은 이제 4半世紀동안 機能을 다하고 있음. <거의 世界 모든 國家를 그 會員國으로 하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世界機構의 일에 參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問題가 아닌 것임. 東獨은 이미 1966 年에 「유엔」加入申請을 낸바 있는데, 西獨政府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東獨의 會員資格에 대한 非法的 反對立場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유엔」憲章의

뜻에 따라 建設的인 協力을 할 생각이 있다고 宣言해야 함.

首相님, 西獨이 主權國家라고 主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엔」機構에 兩獨이 同時加入하여야 한다는 內容의 共同聲明 發表 提議를 거부해 왔음. 이런 점에서 볼 때 西獨의 政策에 決定的으로 作用하는 要因은 西獨 人民의 利益이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됨. 西獨은 同盟國들의 反對때문에 東西獨「유엔」同時 加入同意를 宣言하지도 못하고, 또한 아무런 措置도 못 취하면서, 富의 偏在 問題를 강조하고 있음.

아직도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關係 樹立을 反對하고 있는 保守的 反動的 勢力이 「유엔」機構의 會員國으로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東獨人民은 믿고 있음. 또한 東西獨間의 外交關係가 樹立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으로 確信하고 있음.

首相님, 우리는 西獨政府가 오늘 「캄셀」에서 行하여지고 있는 協商에서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수립에 同意하여, 條約을 締結할 準備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이러한 非現實主義的인 態度는 東獨人民의 利益에는 勿論 西獨人民의 利益에 矛盾하는 것이며, 그 態度는 歐洲의 心臟部에서의 緊張緩和와 安保에 대한 모든 歐洲人民들의 努力과 相反되는 것임. 歐洲 平和의 確保는 西獨이 數十年동안에 걸친 東獨에 대한 敵對的인 立場으로 부터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境界들 — 東獨과 西獨間의 境界 그리고 「오데르·나이세」 境界를 포함해서 — 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條件없이 承認하는 등 理性的이고 現實承認政策에로 移行함으로서 實現되는 것임.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東獨內閣의 이름으로 나는 끝으로 다음 事項을 재 陳명하는 바임.

東獨政府는 〈西獨과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하는데 관한 條約을 即刻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음. 東獨國家元首는 그에 적절한 案을 제출했으며, 그 案은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關係規制를 위해 必要한 모든 要素들을 包含하고 있음.

兩獨政府는 東獨과 西獨이 「유엔」機構의 同等한 會員國으로서 즉각 加入하기 위해 힘써야 함.

무엇보다도「에어후르트」와 「캣셀」에서의 우리對話의 經過를 考察해보  
건데 유감스럽게도 西独政府는 東独과 西独間에 〈國際法的인 關係〉를 아직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結論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關係 規制어하에〉〈一聯의 다른 問題들의 規制가 종속〉되고 있  
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음. 西独政府는〈 그의  
態度를 熟考할 수 있는 一定한 時間을 必要로 하고 있음이 分明함〉

首相님,〈東独의 提議〉가 兩國家間의 平和共存을 達成하기 위한 〈最善의  
길을 제공해 준다는 認識에 到達할 수 있으면 하는〉〈希望을 表明해 두  
는 바임. 東独政府는 〈西独政府가 이러한 基本問題에 있어〉〈現實主意的인  
態度를 認識할 수 있게 할 때에는〉〈언제든지 곧 政府首腦들의 對話를 지  
속할 생각임〉. 어떤 경우에든 즉각적으로 東独과 西独은 同等한「유엔」  
加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東独市民과 西独市民의 利益에 속함은  
勿論, 모든 國家의 普偏的인 平和的 協力을 추구하고 있는 〈世界機構(유  
엔)의 關心에도 속하는 것임. 東独政府는 「유엔」憲章의 崇高한 目的과  
精神에서 〈民族相互間의 理解에 貢獻할 생각〉이 마련되어 있음을 다시 公  
表하는 바임.

獨逸民主共和國은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한 人間的인 關心을 가지고  
活動하기 위해 20年間에 걸친 그의 決定的인 平和政策을 持續하여 앞  
으로도 모든 힘을 다할 것임.

## 西獨이 「法律的 侵略」을 하고 있다는 東獨主張에 대한 西獨文公省의 反駁聲明

( 1970.5.21 )

1. 東獨은 西獨 立法에 있어 「内國」이라는 用語를 1937.12.31 以前 境界線안의 帝國領域으로 理解하는데 對해 批判하고 있음. 東獨은 國籍法的인 問題와 刑法的 問題의 規制가 西獨의 住民에게만 關聯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음.

東獨의 見解에 의하면 西獨은 이로써 다른 國家와 그 國家의 市民들에 對해 最高權限을 行使하고자 試圖한다는 것임. 즉, 「國際法에 對하여 單獨 代表權을 僭稱하는 問題로서, 새로운 東方政策과 歐洲平和秩序를 爲해 西獨政府가 애쓰고 있는 背後에는 事實상 侵略的인, 努力이 숨어있음을 分明히하고, 이는 「法律的인 侵略」 또는 「計劃된 合併에 關한 法的 先行措置」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立法은 또한 國際法의 基礎的 規範들을 侵害하고, 특히 「유엔」憲章과 「포츠담」協定을 違反하는 것으로서 國際法에 反하여 東獨을 差別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음.

2. 이러한 非難들은 이 分野의 西獨法의 歷史的 改善이나 西獨의 對東獨 善意에 正当性を 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歪曲하고 있음.

西獨政府는 東獨을 差別할 意圖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西獨政府는 東獨에 對해 「法律的인 侵略」을 할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

獨逸語로 差別이라고 할 때 그 말은 明白히 不公正, 不法的 區別을 하거나 諸權利에서 차등을 둠을 뜻함. 東獨에 對한 그러한 傾向은 例外 없이 우리 立法의 어느 法令을 보더라도 찾을 수가 없음. 오히려 一聯의 우리 法律들은 東獨住民에게 明白히 利로운 結果로 되고 있음. 여기서 한가지 內獨間(兩獨) 經濟交流時 關稅를 免除시키고, 그리하여 東獨에게 상당한 財政的인 利得을 안겨다 주고 있는 1961.6.21 日字의

關稅法을 들 수가 있고 또 歐洲經濟共同體內에서 西獨의 權유에 의하여 獨逸內의 兩國家間的 通商에서는 歐洲經濟共同體의 共通的인 貿易政策의 規制들을 歐洲經濟共同體의 條約에서 除外시킴으로써, 東獨에 해마다 數億「마르크」씩이나 利得을 제공해 주도록 規制를 關切시킨 1957.3.25日字의 兩獨間 通商에 關한 「議定書」를 例示할 수 있음.

「法律的인 侵略」이라는 비난 역시 根拠가 없으며 國際法에는 도저히 그러한 種類의 概念이 없음. 「유엔」의 政治委員會와 法律委員會에서 제시된 侵略이라는 定義는 東獨公法學에서 發展시키고 있는 이러한 法律的인 侵略이라는 概念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함. 이것은 소련과 東歐 人民民主主義들이 제시하고 있는 侵略의 定義에도 해당됨. 國際法의 學說들은 侵略을 한 國家가 外部世界에 대해 暴力行使를 包含하는 諸手段의 先使用 혹은 先使用에 대해 威脅함으로써 適法性 有無와 상관없이 目的達成을 위해 狀況에 變化를 초래할 意圖에서 취하는 行動으로서 定義하고 있음. 異議가 提起되고 있는 西獨 立法은 이러한 범주에 들어있지 않음.

3. 西獨政府의 獨逸政策은 獨逸땅 위에서 獨逸民族이 1970年 이래 存在하는 境界안에 두개의 國家로 나누어져 있다는 認識으로 부터 出發하고 있음. 이러한 認識의 強化로서 西獨은 그의 立法 實務에 있어 基本法의 諸規定이 基本法의 效力範圍內의 事項에만 立法權限을 부여하고 있다는 確信에서 이행되게 하고 있음.

이모 저모로 東獨이 異議를 제기하고 있는 西獨의 法律로 말하면 그 〈形式的인 效力〉이 1937.12.31日 現在의 領域에 해당하는 옛날의 〈獨逸帝國의 境界內〉에는 다 미친다 하겠으나, 〈西獨의 法律〉은 〈그의 實際的인 適用〉을 〈基本法의 效力圈에 局限〉시키고 있음. 그래서 例를 들면 內國으로서 公式으론 「1937.12.31日字의 境界에 있던 獨逸帝國의 領域」을 規定하고 있는 1967.5.29日字의 〈売上稅法〉의 〈適用〉(稅務官廳 管轄權에 關한 規定)들에 의해 오직 獨逸聯邦共和國의 領域에 있는 企業을 經營하

고 있는 企業에 局限시키고 있음.

4. 더구나 東獨이 攻撃을 퍼붓는 立法分野에서 西獨은 다른나라도 問題의 성질상 마찬가지로 教條的法律規定들은 通常的 政治發展에 맞추어 適用하는데서 問題를 안게 됨.

歴史的으로 獨逸은 <1945.5.8>無條件 降伏을 함으로써 「나치」政權에 의해 不當하게 歪曲되지 않는 한 <舊獨逸帝國의 法律秩序를 존속>시키는 것이 <獨逸共同體(社會)의 一定한 最小限의 秩序維持>라는 觀點에서 必要했던 狀況에 있었음. <1945.9.20>日字의 <聯合國管理委員會法令 第1号>는 이러한 必要性을 第2條에 고려했음. 이 時期에 獨逸 占領地帶들간에는 完全한 法의 平等이 있었음. 이로써 個別 占領地帶에서는 聯合國 獨逸管理委員會에 의해 폐기되었거나, 一時 無效化되었거나, 또는 修正되지 않은 限 獨逸法은 계속 效力을 유지했음. (例를 들면 1945.9.19 日字의 美軍政當局的 布告令 第2号, 第2條).

漸次的으로 <中部東獨>과 <西獨>에서 <法律體系>가 <각기 別途로 分化>하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蘇聯占領 當局的 獨自의 立法措置에 기인했음. 1949 年에도 獨逸의 兩 部分(兩獨)은 傳統的 獨逸法의 持續的인 效力을 받아들이고 있었음. 正義에 立脚한 平和와 安全이라는 關點에서 西獨은 <당시 發效中인 諸般法規>를 받아 들였음. (基本法 第1章 第123條). 東獨도 1896.8.18 日字의 民法典, 1871.5.15 日字의 刑法典, 1877.1.27 日字의 法院組織法, 1877.2.10 日字의 破産法의 效力 持續등 1949 年에 들어 1965.12.20 日字의 東獨의 親族法典의 施行法 第27條, 1968.1.12 日字의 東獨의 刑法典과 刑事訴訟法의 施行法 第1條, 1953.10.2 日字의 法院組織法 69條 參照) <비슷한 措置를 취했음.> 오늘날까지도 東獨안의 私經濟 部分에 있어서는 1934.10.16 에 制限된 <舊獨逸売上稅法>의 效力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境에서 獨逸에서 内地는 「1945.5.8 日字의 境界에 따르는 獨逸의 領域」으로 定義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東獨도 西獨의 領域을 그 管轄圈안에 包含시키고 있음.

1949년 以後 東獨에서는 전해 오는 獨逸法을 새로운 立法에 의해 部分的으로 修正하거나 完全히 폐기하려는 傾向이 明白해지기 始作했음.

東獨의 政治秩序와 社会秩序를 指向하는 이러한 새로운 立法은 勿論 빈번히 그의 效力을 西獨에 까지 미치려고 하였음. 그에 대한 좋은 例는 所謂 <1950.12.15 日字의 平和保護法>을 들수 있음.

獨逸聯邦共和國이 樹立된 후에 公布된 法律들이 그의 效力을 1937.12.31日字의 境界안의 옛 獨逸帝國의 領域에 미치고자 하였고, 그 法律들은 <獨逸國家의 持續이라는 命題>의 <民族單一性이라는 表現>이 있었던 것임. 그러나 어떠한 方法으로도 이들 法律은 東獨의 最高 權威에 대한 干涉을 내다 본것도 아니고, 東獨市民의 地位를 惡化시키려고 한것도 아니며, 法律의 效果的인 效力을 東獨 領域에 미치지도 않았음.

\* 5. 抗議를 받고 있는 西獨의 國籍規制基本法 第1章 第116條는 東獨에서 살고 있는 獨逸人에 관한 國家權力行使權을 전혀 <유추>할수 없음.

<基本法 第116條>는 그의 實際的인 <運當>에 있어 <基本法의 效力圈> 안에 自己 住所 또는 一時的인 滯留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거나, 自身에 의해 西獨의 國家機關들로부터 要求하는 사람들만에 해당함.

<國家保衛 犯行時>의 刑法條文들은 廣範한 範圍에서 이 法에 效力圈內에서 犯해지던가 또는 이러한 效力圈 안에 自身의 生活基盤을 가지고 있는 獨逸人에 의해 犯해지는 行爲에 대해서만 效力을 가짐. 效力圈 밖에서 다른 사람이 犯한 犯行도 西獨의 刑法에 의해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規制는 <國際法에서도 承認>되고 있는 <保衛原則의 結果>인 것임. 비슷한 規制는 <東獨의 刑法典 第4号> <第3編 第80條에 記載되어> 있음.

\* 6. 西獨에 대해서 東獨이 제기하고 있는 非難은 東獨이 逆으로 이러한 節次의 合法性和 合目的性에 관한 討論을 하지않고 西獨과 西獨의 住民에게 그의 立法權과 그의 司法權을 擴大시키고자 試圖하고자 하는것이 그의 背景에서 볼 수 있는 것임.



그래서 例를 들어 東獨의 刑法典 第3章 第80條에 의하면, 「다른 國家의 市民들 및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東獨의 主權에 대한 犯罪을 또는 東獨에 대한 犯罪을 비록 東獨 밖에서 犯한 경우에도 責任을 묻게 될 수 있음. 이것은 西獨의 모든 住民이 西獨聯邦地域에서 東獨에 不利한 「政治的 犯罪行爲」를 저질렀을 때 東獨에서 處罰받을 수 있음을 意味함.

이미 1960.12.15 日字의 平和保護法 第3章 第10條는 「獨逸國民이 東獨領土 밖에서 犯罪行爲를 저질렀을 경우, 그 行爲者가 獨逸民主共和國의 領域 안에 여하한 住所나 通常的인 滯留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東獨의 最高裁判所가 이를 管轄한다고 申明하고 있음.

1966.10.13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 市民權 및 人權保護法律 第1條에서 「國際法에 相馳하여 東獨市民의 市民으로서의 憲法上 權利行使를 이유로 西獨의 單獨代表라는 越權과 西獨主權의 연장이라는 西獨側 論拠를 토대로 이들을 박해하는 者」는 處罰된다고 規定되어 있음.

平和保護法과 國民保護法은 東獨의 새로운 刑法典과 더불어 계속 效力을 가지고 있음.

「獨逸民主共和國 樹立時에 獨逸市民權을 갖고, 獨逸民主共和國 안에 그의 住所나 常任 滯留地를 가졌으며, 그후 獨逸民主共和國의 市民資格을 상실하지 않은」사람을 東獨의 國民이라 規定하는등 東獨側의 主權擴大措置가 尙存함. 刑法典 第5條에 따라 어린이는 兩獨中の 한쪽만이라도 東獨의 國民이면 出生과 더불어 東獨의 國民資格을 具有한다고 申明함으로써 東獨避難民은 勿論 그의 後孫들도 東獨의 國民임을 강변하고 있음.

1965.12.20 日字 東獨親族法 施行法 第1章 第15條 第2項을 根拠로 東獨市民과 다른 國家의 市民間의 結婚은 「비록 그 結婚이 獨逸民主共

和国 밖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戶籍制度問題를 管掌하고 있는 國家機關의 許可」를 必要로 함. 이것은 西獨聯邦地域 안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住民과 結婚하고자 하는 모든 옛날의 東獨避難民들은 勿論 그들의 後孫들도 東獨의 管轄官庁들의 許可를 必要로 한다는 것을 意味함. 이러한 規制로써 東獨은 상당한 程度로 그의 立法과 司法權의 領域을 西獨市民에게 까지 擴大시킴으로써 東獨이 西獨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범하고 있음.

「캣셀」兩獨首相會談後 「슈토프」東獨首相과  
東獨 TV 解説部長과의 會見

( 1970.5.21. 東伯林에서 )

質疑 1.: ( 東獨 TV 解説部長 「카알·에두아르트·폰·슈넷츨러」 )

首相님, 나는 貴下가 無事히 다시 東獨 땅으로 돌아오셨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나는 貴下에게 3.19 「에어후르트」에서 당신과 당신이 이끈 代表團의 基本立場, 「캣셀」에서도 修正하지 않은 이러한 立場에 대해서 質疑했었음.

貴下는 「브란트」政府의 立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答辯: ( 「슈토프」東獨首相 )

우리의 立場은 여전히 歐洲 平和確保를 위한 努力에 기초하고 있음. 나는 이미 「에어후르트」에서 지난해 12.17 以來 제시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西獨政府와의 모든 合意의 唯一한 基盤이 될 우리 條約案에 우리의 原則的 立場이 表現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음.

우리의 條約案은 歐洲安保에 必要한 모든것을 갖추고 있음. 즉 同等權, 國際法, 無差別, 不干涉, 領土保全의 尊重과 國境의 不可侵性, 暴力拋棄, 모든 差別的이며 越權인 法律들의 止揚, 軍縮 모든 形態의 核武器의 拋棄, 獨立的인 政治單位體로서의 西伯林的 地位의 尊重 그리고 「유엔」機構에의 加入申請 等임. 그것이 東獨, 西獨市民 그리고 全 歐洲의 利益을 위한 우리의 立場임.

質疑 2 :

그런데 「에어후르트」와 오늘의 「캣셀」에서의 西獨政府의 立場은?

答辯:

「에어후르트」以後 見解差는 「브란트」政府에 의해 解消되고 있지 않음. 「에어후르트」에서의 「브란트」의 確約 및 發言과는 反對로 西独政府는 東独 差別措置를 持續하고 있음. 나는 다만 世界保健機構와 歐洲經濟委員會에서의 妨害行動과 「셀」外相의 舉動을 상기시킴.

質疑 3 :

그러나 西独首相은 現實을 尊重하는 데 보이려 애쓰고 있음. 그는 두개의 國家를 주장하고 있으며 兩體制는 混合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그리고 「본」으로부터 緊張緩和와 平和에 관한 많은 表明들을 듣고 있는데 ?

答辯 :

듣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내가 방금 言及한 바와 같이 많은 行爲들이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이미 지난 數週에 걸쳐 우리가 基本的인 問題에 있어 西独政府의 否定的인 態度에 부딪치고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수 없었음.

質疑 4 :

首相同志, 당신은 「캄셀」頂上會談 場所에서 公式會談에 들어가기 전에 聲明書를 發表한 것을 보았음.

어제 있었던 「네오나찌」당의 「데모」, 당신 個人에 대한 殺害陰謀, 오늘 아침의 강패集團, 東独國旗의 모독, 「네오나찌」들의 反 「파시스트」 추모좌절기도 등의 모든 것을 당신은 西独首相의 態度와 關係해서 어떻게 評價하는가 ?

答辯 :

당신 생각이 옳으며 密接한 關聯이 있음. 「포츠담」協定이 實現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不和가 싹트고 젊은 사람들은 「네오나찌」와 復仇主義者로 되고 있으며, 다른 國家들, 그 國家들의 境界, 權利와 國旗를 蔑視하도록 教育되고 있음.

그리고 그와 같은 國家의 政府首腦가 20 個項目 또는 많은 項目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가장 重要한 項目인, 相互 獨立의인 두 國家間에 國  
際法的 基盤 위에서 同等한 關係(樹立)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  
한 일은 아닐것임.

首相同志, 「본」의 態度 即 지난 數週에 걸친 이러한 매우 불유쾌  
한 序曲, 그리고 「캄셀」에서 있는 오늘의 事件들에 비추어 貴下는 아  
주 놀랄만한 인내로써 對話에 임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答辯:

忍耐力이 아니라 一貫性임. 問題되고 있는 것은 歐洲의 모든 人民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도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에 도달하고 그리하여 歐洲安保를  
높이려는 試圖를 했음. 우리는 西獨도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들을 承認  
하고 歷史로부터 教訓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

質疑 6 :

「브란트」는 오늘 獨逸民主共和國의 憲法과 「본」의 基本法을 서로  
對照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도시 이러한 두가지 憲法을 서로  
比較할 수 있는가?

答辯:

아님. 西獨의 基本法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西獨人民의  
代表者들에 의해 作成되어 議決되었던 憲法이 아니라, 西方  
強大國, 특히 美國의 命令과 편집에 따라 成立했고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強要되었던 것임. 그로써 西獨은 당시 民族共同體에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의 分離된 「나토」國家로 變했음. 그와 反對로 獨逸民主共  
和國의 憲法은 東獨의 人民에 의해 決定되었음. 그 憲法은 禍로 가득

찬 獨逸歷史에서 敎訓을 받았고 「포츠담」協定の 基本的 規定들이 實現되  
되어 있는 社會主義 獨逸民族國家의 基本法임. 우리의 憲法은 獨逸平和  
國家의 憲法임.

質疑 7 :

首相同志, 당신에 대한 接待에 관한 또 하나의 質問을 하겠음.

「베오나찌」들과 復仇主義者들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아침에 「캇셀」  
에 到着하기 前 「베브라」都市와 그 밖에 到處에서 당신을 歡迎했던  
數 많은 西獨市民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答辯 :

그러한 歡迎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했음.  
東獨과 西獨의 對決은 階級對決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으며 西獨의  
數百萬 勞働者들의 緊張, 不和, 戰爭威脅이 收奪, 價格操作 및 暴利 等은  
帝國主義的인 體制의 結果임을 주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 당  
신은 東獨에서 勞働者와 農民이, 그들의 同盟體者들과 共同으로 自由로운  
人民이 自由로운 土台위에 있고, 自身の 福祉와 平和確保를 위해 그의  
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社會主義國家를 어떻게 建設했는가를 알고 있음.  
그와 같은 國家를 差別 또는 威脅하는것은 동시에 西獨勞働者들에 대한  
差別, 威脅 및 損害와 동일한 것임. 그들은 權力交替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이러한 獨占財閥의 國家와는 분명히 아무런 연계가 없음. 우  
리는 安息과 平和 속에서 사는 것만을 慾求하고 있는 西獨의 勞働者,  
知識人, 그리고 다른 階層들과 連帶하여 있음을 알고 있음. 우리가 아  
는바와 같이 그들도 이것이 國際法에 기초한 共存을 必要로 함을 熟知  
하고 있음.

質疑 8 :

그러나 首相同志, 「에어후르트」와 오늘의 「캇셀」에서의 對話의 進行  
을 지켜볼때 유감스럽게도 西獨政府가 아직도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答辯 :

그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임. 나는 이번 會談을 끝맺음에 있어서 「브란트」政府가 충분히 숙고한 뒤 東獨의 提案이 平和的 共存에의 길을 제공해 준다는 認識에 이르렀으면 하는 希望을 表明했음. 東獨에 있는 우리는 西獨에서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이 驅逐될 時期가 올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음. 東獨政府는 西獨政府가 이러한 基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的인 態度를 認識할 수 있게되면 곧 政府首腦間의 對話를 지속할 準備가 되어있음.

「 폰·슈넷츨러 」 :

首相同志, 나는 당신의 이번 對話에 대해서 感謝하며, 당신이 우리 社會主義 故鄉의 首都에 無事히 到着하였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임.

「 슈토프 」 :

대단히 感謝함.

「캣셀」兩獨首相會談後 「브란트」西獨首相의 記者會見

(1970.5.22)

西獨政策은 어제 있었던「캣셀」會談에 의해 잘못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으며, 우리는 從來와 마찬가지로 幻想없이 그리고 꾸준히 緊張을 解消시키고 協力の 可能性을 추구하기 위해 努力할 것임. 우리는 진지한 試圖를 벌였고 이 試圖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것임.

「캣셀」會談에 대한 評價는 分離시켜 그것만으로 評價해서는 아니되고 보다 더 큰 關係속에서 보아야 함. 그 會談은 첫째로 勿論 「에어후르트」會晤와 關係되어 있음. 그러나 그 會談은 全般的인 緊張緩和를 지향하는 西獨政府의 政策속에서 기초하고 있음. 즉 會談은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에 있어서의 우리 對話와 分離시켜서 - 어느 程度까지는 그 自體 하나의 事件으로서 - 고찰될 수는 없음.

실제로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한지 처음으로 2個月內에 그토록 詳細하고도 集約的인 意見의 開陳이 이루어진 것은 非상적인 考察을 하는 경우에 간주될 수 있는것 以上の 意義를 가지고 있음.

「에어후르트」와 「캣셀」會談은 相對方의 立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政府의 行爲들을 보다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努力에 대한 重要的 貢獻이었음. 「캣셀」은 나에게 이외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우리는 東獨의 代表團에게 一聯의 具體的인 提議들을 제시했었음. 나는 그에 대해서 <곧 妥當한 對答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았음> 한편 東獨의 代表團은 여하한 새로운 觀點들도 내어 놓지는 않았음. <東西社會>는 이곳 獨逸에서 누가 歐洲平和秩序라는 方向에서 硬直한 政策을 추구하고자 努力하고 또한 누가 伸縮性 있는 政策을 추구하고자 努力하고 있는가를



區別할 것임. 나는 이 機會에 東獨宣傳의 虛偽造作과 뻔뻔스러움을 다시 한번 強調하여 거부해야 하겠음.

「슈토프」首相과 나는 意見交換을 금후에도 持續할 것에 同意했음. <具體的인 約束에 이르지 못한 것은> 獨逸의 兩部分間에 있는 <간격이 얼마나 깊으며, 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忍耐를 必要로 하고 있는가를 立証하고 있음.

특히 - 「캣셀」 以後- 우리의 善意를 否定할 사람은 없을 것임. 한편 우리가 東伯林과 條約上의 規制에 이르러는 우리의 努力이 이완될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임.

나는 이미 어제 午後 「슈토프」에게 -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우리 두 사람이 「캣셀」에서 行한 演說에서도 一聯의 接合點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示唆했음. 그러나 여기서 結實을 얻기 위해서는 勿論 相對方(東獨)이 <좀더 많은 善意와 <法律的인 公式에 덜 얽매일 것을 前提로 하고 있음.

西獨政府는 여하한 希望的 思考에도 침잠하지 않았음.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그릇된 希望을 경고하고 싶음. 兩 獨逸國家間의 條約上 規制에 이르러는 <길은 길고도 어려운 길일 것임> <時間은 自動的으로 理性과 平和를 지향하지는 않음>. <우리는 스스로 活動해야 하며> 나는 水曜日에 西獨會議에서 外交政策 테두리 안에서 「캣셀」會談의 經過에 關係 보고할 것임. 아마 당신들은 어제 「캣셀」會議場 밖에서 있었던 突發事件들에 關係 간단히 言及함을 許容할 것임. 나는 이 突發事件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그리고 나는 이를 東獨首相에게도 곧 말했음. 나는 東獨首相도 <그것을 중대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함> 「슈토프」는 나와, 「오스발트」, 그리고 「브란너」, 「캣셀」市長에게 厚待하여 준 점에 關係 感謝한다고 分明히 말했음. 나 자신도 이 기회에 내가 어제 밤에 이미 「캣셀」市와 州의 管轄官庁에 말했던 바를 되풀이하고 싶음.

즉 安全을 위해 召集된 警察과 其他 公務員들은 그의 어려운 義務를 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책을 해서는 안됨. 그러나 그와는 관계 없이 어제 일어났던 <突發事件들은 繼續 (檢討의 契機)가 되어야 함.

## 武力拋棄에 관한 西獨文公省의 聲明

(1970.6.3)

基民黨 院內總務는 지난 날에 여러 번 있었던 暴力拋棄에 관한 獨·蘇意見交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表明했음.

1. 「바르첵」은 「모스크바」對話에 있어서 主問題로 暴力拋棄가 問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講和條約이 問題되고 있다는 것을 看取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바르첵」이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임. 勿論 「그로미코」外相과 「비아르」國務相과의 意見交換은 包括的이었는데 이 意見交換에서는 西獨과 蘇聯간의 關係에 있어 모든 本質的인 問題들이 상세히 討議되었음. 그러나 그 問題들이 모두 暴力拋棄 協定에서 規制될 수 있고 規制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음. 오히려 그 反對임. 그러나 兩政府가 重要한 問題에서 意見一致를 보지 못한다 해도 暴力拋棄는 매우 有益할 수 있었던 것임. 따라서 西獨政府는 그 要求에 있어 野黨보다는 더 <現實主義的인 條約內容을 추구하고 있음. (소련과의 暴力拋棄에 관한 條約은 그 効力에 있어 西獨이 3 大國과 맺은 條約보다는 훨씬 앞지를 수는 없음. 西方 3 大國과 맺은 우리 條約을 先行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못함.
2. 「바르첵」이 「獨逸民族의 自決權」과 「伯林을 위한 確約」이 條約內容이어야 한다고 要求한다면 이는 自己自身の 뻔뻔스러운 主張일 뿐임. 獨逸問題와 伯林問題가 소련과 우리 사이에 가장 重要한 實質的인 紛爭問題들인 것임. 「바르첵」은 「獨逸問題에 관한 法形式的인 事前決斷」과 「소련에 利로운 自由獨逸의 完全히 一方的인 拘束들」에 관해 政府에 경고하고 있음. 한편 그는 1950年과 1970年間의 年度들이 전혀 存在치 않았던 것처럼 소련은 獨逸問題의 解決·確定을 갈

망하고있음. 그것은 眞實로 「바르첼」이 도시 獨逸問題가 規制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련과의 政治的 協定을 一 暴力拋棄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해도 -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意味함. 兩者択一의 이러한 態度는 20年동안에 소련이 獨逸統一의 敵對者에 대한 동조자로 되는 結果를 초래했음. 바로 이러한 發達을 中止할 時期라고 봄. 소련은 獨逸人에 이바지 하지도 않았고 歐洲平和에 이바지 하지는 않았음. <볼 수 있는 方向轉換의 표시를 設定하는 것이 <重要視>되는 바 그것이 바로 <暴力拋棄協定인 것임.>

3. 西獨政府와 소련政府는 現存하고 있는 現實的인 狀況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狀況을 平和스런 關係의 發達을 통해 正常化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條約으로 合意하고자 努力하고 있음. 그들 關係에 있어 兩 政府들은 「유엔」憲章의 諸原則에 立脚하고자 하며 歐洲에 있는 모든 境界는 尊重되어야 함. 즉 審議規定들에 의해 關與國家들 間に 成立되지 않은 모든 境界의 修正들에 대해서 保護되어야 함. 소련이나 西獨도 어떤 다른 國家에 대해서 領域의 要求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前에 第3國과 締結된 協定은 저촉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問題는 여하한 方向으로도 전혀 文書化되지 않고 있음. <兩政府는 意見交換 동안에 <基本立場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見解를 다시 한번 仔細히 제시했음. 소련政府는 이미 西獨政府의 態度를 알고 暴力拋棄協定을 締結할 생각이 있다고 宣言했음.

「바르첼」은 이미 大聯政의 政府가 여하한 領域要求도 제기치 않는다고 천명했던 것을 分明히 잊고 있음.

4. 「바르첼」이 소련政府가 過去에 發表했던 宣言들을 破棄하기를 要求한다면 그는 나쁜 政治를 위해 助言하고 있는 것이 됨. 그와 같은 宣言들은 <그것들을 成立시킨 時代的 精神에 비추어 理解해야 함. 그러한 宣言들은 大略 相對方의 宣言들로부터 由來되는 경우는 드물고 相對方의 宣言들에 대한 對答임. 소련이 西獨政府에게 單獨代表權 要求

를 廢棄할 것을 要求하는 경우 「바르첼」은 여기에 어떤 反應을 보일 것인가? 拒否할 것으로 推測됨. 그런데 그때 拒否에 대해서 拒否로 應수하는 것은 接近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 버리는 것임. (兩 國家의 關係에서 새로운 始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過去만을 돌아 본다는 것은 意味가 없음>). 「바르첼」은 스스로 西獨이 西方側 同盟과 西方 3 大國과의 連帶性이 소련의 모든 暴力行爲로부터 우리를 保護하는데 同意하고 있음. 그런데 「바르첼」은 소련이 아무 制限도 가하지 않고서 西獨과의 關係를 「유엔」憲章 第 2 條에 立脚하여 正常化할 것을 公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본」과 「모스크바」간의 協定을 沮害하고자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西獨政府가 西方 3 大國과도 合意한 것임.

5. 西獨政府는 <條約 안에서 使用되고 있는 概念들의 內容>에 관해 西獨政府와 條約相對國간에 <完全한 明確性이 存在하고 있지 않는 限> 그 條約에 署名할 意圖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 어떤 政府도 일찌기 自己나라 안에 있는 反對勢力의 모든 不信을 一掃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는 않음. 基民黨은 一面에 있어 소련의 暴力拋棄 約束의 信用을 根本적으로 疑問視하고, 한편 「모스크바」는 <그의 信用을 補充的인 宣言들을 통해 立証할 것을 계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基民黨은 스스로 自身을 信用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그와 같은 態度로 보아 基民黨院內 總務의 主張이 결국 西獨과 소련간의 暴力拋棄協定의 本文을 위한 <가장 좋은 定式化>들을 問題視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協定을 <表示 不可能>에 하려는 것을 問題視하고 있다는 結論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올브리히트」東獨國家評議會議長의 兩獨關係 演說

( 1970.6.10 東獨「社統黨」中央委 13次 會議에서 )

1. 親愛하는 男女同志들! 「알베르트·노르덴」同志가 政治局報告에서 講演한 東·西獨 關係의 現況 評価는 分明하고도 現實的임. 우리의 總會에서 「슈토프」同志와 「막스·라이만」同志에 의해서도 그 評価의 正当性은 立証되었음.

「에어후르트」와 「캇셀」에서 있는 東·西獨會談은 우리의「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 졌음. 平和, 歐洲安保 및 東獨과 西獨間의 同等한 平和共存關係라는 觀點에서 우리는「브란트」政府에게 東獨에 대해서 지난 20年 동안 추구해온 基民党的 冷戰政策과 单独代表라는 越權行爲를 탈피하도록 노력했음. 우리는「브란트」政府에게 同等한 國際法的인 基盤위에서 그리고 相互間에 여하한 差別도 없이 兩 國家가 平和共存한다는 새로운 政策을 發展시킬 수 있는 機會를 부여했음. 우리는 口頭宣言에 그친 것이 아니라, 國家評議會가 確認한 具體的인 條約案을 전달했음. 그 條約案은 물론 우리가 지난 20年 동안에 「본」의 政策에 대한 經驗을 고려하여 오늘날 東獨과 西獨間의 條約上의 關係規制를 제기해야 한다는 要求들과 부합함.

2. 유감스럽게도 - 나는 「유감」이라는 말을 강조함 - 「브란트」는 歐洲에서 西獨과 東獨間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現實的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음. 아마도 그것은 基民党和 其他的 極端的인 報復主義 勢力의 壓力에 대한 그의 軟弱性에 起因하고 있는것 같음.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낡은 政治的인 目的을 能率的인 變化된 方法으로 달성시키고자 試圖한다는 見解를 더 많이 肯定하고 있으며, 그 경우 그의 言行에는 깊은 矛盾을 자아내고 있음. 例를들면「본」議會에서 「브란트」는 自己가 「두개의 國家理論」을 발견해 냈다는 基民党的 非難을 거부했음. 그는 그 點에서는 理論이 問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두

개의 國家라는 現實」이 問題되고 있다는 것을 實質上 올바르게 確定했음. 故로써 그의 政府는 오직 「現實的 土台」위에 서 있다고 했고, 나아가서 「브란트」는 西獨에 있어서 基民黨政府의 20年 執權동안에 獨逸의 分斷은 더 深化되었고 東獨의 比重도 強化되었다고 公表했음.

3. 그러나 「브란트」가 그 모든 것을 洞察했음에도 不拘하고 東獨의 比重이 國際法上의 獨立的 規模로 끊임없이 增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兩國家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저해하고 있는 報復主義的인 잔재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現實主義的 政策으로 移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본」政府는 東獨의 國際的 權威의 增加가 그의 平和政策에 起因하며 歐洲의 人民들이 바로 西獨안에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10年以上 추구하여 온 東獨의 平和政策에 起因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도 明白히 알아야 할 것임.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協議에서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이 歐洲安保會議의 召集을 제의했는바, 歐洲國家들의 理解를 촉구하고 이 會議의 準備를 위해 基本構想을 제시한 그들의 「바르샤바」國家의 「이니셔티브」는 歐洲安保를 위해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음.

4. 歐洲諸國間의 暴力拋棄 協定の 締結과 歐洲安保會議의 準備를 위한 소련의 「이니셔티브」는 歐洲諸國의 人民들의 同情과 支持를 받고 있음. 이러한 條件下에서 「본」政府는 소련의 代表者인 外相「그로미코」同志와 소련과 西獨간의 暴力拋棄에 관한 條約에 관하여 對話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음. 따라서 나는 「본」의 政府가 6.7에 있는 特別會議에서 暴力拋棄條約에 관하여 소련과의 協商을 開始하기 위한 指針들을 議決했기 때문에 이 問題에 관해 言及하겠음.

5. 「본」政府의 告示들과 新聞에 發表된 「본」政府 「바르」國務相의 表明에 의하면 外相「그로미코」同志와의 對話에서는 暴力拋棄條約의 基本內容에 合意하고있음. 그 條約으로 歐洲에 있는 境界들의 不可侵性이 確定될 것이고 또한 兩獨의 어느 側도 現在 또는 未來에 있어 어떠한 領土의 要

求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言及하리라 봄. 「바르」는 公式적으로 그와 같은 暴力拋棄條約에서 「폴란드」 人民共和國의 兩쪽 境界로서 「오데르·나이세」線과 東·西獨간의 境界를 포함하여 現存하고 있는 境界들의 不可侵性이 保障된다고 報道했음. 그 對話에서는 歐洲安保會議의 問題도 論議되었다함. 「바르」는 「본」의 政府가 歐洲安保會議를 準備함에 蘇聯과 積極적으로 對立하고 兩獨은 「유엔」憲章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 「본」政府가 6. 7에 決議했던 原則에서는 西獨政府가 소련과 協商을 開始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본」政府는 모든 獨逸人の 「自決權」에 立脚한다는 것을 留保하고 있음.

6. 「본」政府가 兩獨 境界를 두고 自己住民의 自決權을 尊重하고 現實化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것이 確實함. 그러나 兩獨 境界를 무시하고서는 「본」政府는 絶對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要求할수도 없음. 즉 兩獨의 境界를 無視해서 나오는 西獨政府의 表明이나 宣言은 여하한 法的인 意義도 갖지 않음. 그 경우 우리는 그를 위해 言論이나 公式的인 政策宣言, 혹은 어떤 種類의 方案이 利用되든 이에 關心이 없음. 만일 「본」政府가 「본」의 基本法에 根拠해 暴力拋棄에 관한 協商原則으로 「民族自決」을 要求한다면 그것은 그 自体가 하나의 矛盾임. 그 理由는 「본」의 基本法은 美國의 占領官厅의 代表者들에 의해 西方占領地帶의 代表者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임. 西獨의 民主勢力들 또는 西獨의 住民마저도 이러한 基本法의 內容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權能을 가졌었다고 主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 이곳에서 公式化된 西獨의 单独代表라는 越權의 原則은 法的인 意義나 現實的인 意義를 갖지 않음. 결국 이러한 单独代表의 政策은 根本적으로 破産했음. 그리고 그때까지 그것을 理解하지 못했던 者도 1961. 8. 13에 認定하게 되었음.

7. 이제 이러한 問題들에 있어서 「브란트」·「셸」政府의 立場은 어떻게 評價될 수 있는가? 위에 말한 「테마」에 관해 소련과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事實을 肯定的으로 評價해야 함은 疑問의 餘地가 없음. 우리는 소



련과 西獨間의 暴力拋棄에 관한 條約에 관해 앞으로 있을 協商이 成功的으로 進行되기를 바라고 있음. 그것은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도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음. 그것은 歐洲安保를 爲하려는 努力과 부합됨. 「브다페스트」에서 있었던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協議에서 이루어진 「이니셔티브」가 歐洲에서 結實을 가져올것은 필지의 사실임. 歐洲에 있어서의 勢力關係는 西獨政府가 소련의 代表者와 暴力拋棄에 관하여 이러한 對話를 가져야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發展했음. 東獨에 관한 限우리는 國際法的基礎 위에서 西獨과의 同等한 關係 수립을 위한 條約에 대한 對話의 「이니셔티브」를 적절한 時期에 시도했음.

8. 가장 重要한 것은 우리가 現在의 5個年計劃에서 始作한 바와 같이 1971년부터 1975년에 걸친 5個年計劃에서 廣範한 視野에서 概念化된 우리

의 社会經濟政策과 우리의 社会 構造政策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임. 가령 廣範한 土台 위에서 이러한 政策을 決定的으로 持續한다는 것은 - 學術的 組織과 科學的 研究의 새로운 方法의 完成 그리고 새로운 技術的 處理過程에서 출발하면서 - 우리가 重要 分野에서 世界頂上에 到達할 뿐만 아니라 共同 落着지음을 可能케 할 것임. 그것이 바로 主課題임. 그것은 東獨의 安定된 經濟的, 政治的 및 文化的인 發達을 可能케 하는 것임.

9. 「본」政府의 政治는 그 政府안에서 分讓된 役割만을 수행하고 있는 印象을 주고 있음. 「브란트」는 소위 「兩獨關係」라는 方式으로 東獨을 「본」政府의 後見下에 넣고자 努力하고 있음. 그는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東獨에서 反革命을 組織化하기 위한 5個의 灰色的인 計劃을 가지고 있는 西獨의 內獨問題相을 「캇셀」에 데리고 왔었음. 그러나 「브란트」는 西獨內的 「파시즘」과 報復主義에 대한 鬪爭을 組織化하기 위해 한 長官을 自己 政府안에 데리고 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는 것을 「캇셀」會談에서 표시했음. 그랬더라면 그 長官은 「캇셀」에서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임. 「쉴러」經濟相은 「브란트」政府에서 西獨 勞働者들의 團體行動을 妨害하는 데만 專念하고 있음. 그리고 「슈미트」國

防相은 「히틀러」將星들과 함께 軍事化와 武装化를 위해 努力하고 있음. 그 모든 것은 물론 社会民主党의 「싸아르부룩켄」党大会의 決議들과 부합하고 있는 것이지 東獨에 대한 緊張緩和나 平和政策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임.

10. 「브란트」政權이 基督教民主聯盟(CDU)의 壓力下에 아직도 報復主義的인 「아데나워」政策을 斷切하지 못한다고 宣言했던 것은 事實임. 「본」政府는 基民党的 壓力下에 民族主義的인 煽動의 偽裝뒤에 숨겨 놓은 非現實的인 目的 設定에 집착하고 있음.

「본」政府는 「캇셀」에서 자신이 把握하고 있는 대로 西獨式의 「自由」를 示威했음. 「본」代表團의 代表는 「네오나찌」와 「파시즘」의 「갱」團의 「테로」가 - 「슈프링거」言論機關, 「타덴」(Thadden)의 政党(「네오나찌」團) 그리고 自由에 反對하는 그의 活動들과 마찬가지로 - 이러한 西獨式 「自由」의 構成要素라는 것을 分明히 確認했음.

11. 「본」의 文公担当責任者인 「알레크」(Ahlek)가 「파시스트」들의 出現을 「機智가 많다」고 불렀음. 그러나 그것을 「機智가 많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음. 그것은 「바이말」共和國時代에 있었던 「나찌」의 突擊部隊(SA)를 事前에 訓練한 것임. 새로운 것도 獨創的인 것도 아니며 새로운 것은 다만 이러한 「갱」團들이 미국식 制服을 입었다는 것임.

어떤 경우든 兩次的 무서운 戰爭을 體驗한 歐洲人民들은 이제 근심스럽게 西獨안의 「캇셀」, 「본」 및 其他 다른 곳에서 「네오나찌」들과 基民党的 極端的인 反動勢力의 拳動에서 나타난 우울한 現實을 보고 있음. 그래서 「슈트라우스」는 - 社会民主党 指導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서 - 모든 이러한 反動的이며 「네오나찌즘」적인 勢力의 集結을 公式的으로 絶叫할 수 있고 報復主義者들의 「테모」를 西獨의 救濟者라 公表할 수 있었음. 그리고 社会民主主義的인 長官이 「파시스트」들의 拳動은 西獨式 「自由秩序」와 부합한다는 見解를 가지는 경우, 그

것은 1931년부터 1932년에 걸친 突擊部隊 ( SA )에 대한 社会民主主義的이었던 「프로이센」 長官 「세버링」 ( Severing )의 行動과 拒否를 상기시킴. 「브란트」는 口頭로는 独逸땅에서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 된다는 우리의 原則을 받아들였음.

더나아가서 그는 그의 政府가 -나는 用語 그대로 引用함- 「歐洲平和와 歐洲安保에 대한 努力이 누구에 의해서도 뒤질수 없다」고 宣言했음.

12. 그러나 말만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西独에는 무엇보다도 純粹한 平和政策의 実体가 없음. 「본」의 平和와 安保에 관한 努力을 47萬兵士와 17萬名의 補充人員 도합 64萬의 兵力을 自由로 恣意로 処分하고 있는 「나치」 將校들의 指導下에 있는 西独軍 武装化 현상과 어떻게 一致할 수 있는가? 「바이말」 共和国은 -西独 보다도 2倍 以上이나 큼- 10萬名의 帝国軍隊를 가지고 있었음은 周知된 事實임.

또한 우리는 「브란트」 政府가 「아랍」 諸国에 대한 「이스라엘」 侵略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과 「캄보디아」 에 있어서의 美国의 侵略戰爭을 支持하고 있다는 事實을 두고 平和를 사랑하는 西独의 特殊한 精神態度의 表明이라 評價해야 하는가? 아니면 西独政府가 自己自身の 「東方政策」을 「나토」 政策과 美国世界戰略의 構成要素로서 본다는 事實을 平和를 상징하는 特殊한 精神態度의 表明이라 評價해야 하는가?

13. 도시 西独首相은 여기에는 너무도 많은 矛盾들이 있다는 것을 理解하지 못함. 그는 美帝国主義의 侵略政策 支持가 資本主義와 帝国主義로부터 解放된 平和愛護人民들과 善隣關係를 유지할 수 있다고 理解하고 있는가? 그는 自己 自身の 政治的 宣言들이 平和를 愛護하는 人民들로부터 不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못하고 있음.

独逸聯邦議會에서의 討論에서 基民党 院内總務인 「바르첼」은 「본」의 政府首腦가 社会主義諸国과의 暴力拋棄에 関한 對話에서 社会民主党 院内勢力과 基民党 院内勢力간에 「約束된 限界」를 넘어섰다고 비난했음. 「브란트」도 自己側에서 이러한 「約束된 限界」를 違反했다는 것을

열렬히 反駁했음.

그러나 그들 見解에 따르면 共同의 広場에 서야 할 基民党이 어떤 政策을 代表하고 있는가에 대해 基督教社会聯盟(CSU = 基民党的 一部)의 政治家인 「바아론·폰·구텐베르그」가 裏面化하고 있음. 基民党的 이름으로 이 右派의 代辯人은 노골적인 報復主義를 公表하였음. 그는 西獨이 여하한 領域(領土)의 要求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蘇聯에 보낸 「뵘政府의 外交的 覺書와 다른 公式的인 政策宣言에서의 表明들을 明白히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申明하였음. 즉 「우리 基民党은 소위 現實에 유의하여 尊重할 수도 없고 承認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본」의 单独代表라는 趣權행위를 固守할 것을 強調하였음.

5月末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나토」會議에서 参加国들이 全歐洲安保會議을 沮止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지연시키겠다는 陰謀에 合意한 「콤뮌이케」를 통해 앞으로 東獨에 대한 「본」政府의 政策은 「나토」政策과 一致하고 있다는 結論이 나옴.

나는 「나토」의 모든 国家가 이 問題들에 대해서 完全히 合意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몇몇 「나토」 国家들은 美国의 世界戰略과는 달리 보다 自主的인 政策을 展開시키려는 傾向이 있었음.

社会民主主義的인 西伯林的 「텔레그라프」는 6.7 한 論說에서 「결국 重大한 政治的 問題들의 解決이 可能케 될」「信賴의 雰囲氣」가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그 筆者는 이어서 歐洲가 自己 自身の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一面에 있어서는 美国資本에의 隸屬에서 벗어나야 하고 他面에 있어서는 이른바 蘇聯의 「독트린」(「브레즈네프·독트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음. 그 筆者는 美国과의 雙務的인 關係는 再檢討를 必要로 한다는 見解이고, 美国을 계속 絶對的인 秩序維持者로서 愛護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그 밖에 筆者는 1968年3月の 「바르샤바」 条約国家들의 「브다페스트」會議에서 있던 歐洲安保會議 開催에 관한 提議와 관련시켰음. 그러므로 社会民主黨 指導層의 政策은 여러가지 彩色으

로 빛나고 있는 것임.

社会民主党 指導層의 政治에는 가지가지의 策略的인 「뉴앙스」들이 있는 反面에 歐洲의 모든 人民들은 自身들에 관련된 하나의 基本問題가 있음. 즉 西獨에 있는 進歩的 民主勢力에 의한 「네오나찌즘」 勢力의 制圧과 報復政策(支持) 勢力의 구축임. 國際的인 協力은 「나토」 理念에 부합하지만, 國際的으로 東獨을 差別하는 「본」 政策으로 인해 沮害되고 있음. 「나토」와 基民党的 共同의 場은 결국 「본」의 持續的인 東獨差別政策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政策은 환히 들여다 보이는 속임수 같은 것임. 즉,

① 西獨의 對東獨 國際法的인 同等權 尊重은 —그렇게 主張되고 있음— 獨逸의 分斷을 固定할 것임.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음. 즉 帝國主義的인 西方強大國에 依해 完成되고 굳혀진 獨逸의 分斷을 完全히 固定시키는 것임. 이것은 根本的으로 이미 20年 前에 이루어 졌음. 20年 以前부터 두개의 國際法 主体인 東獨과 西獨이 並存하고 있고, 두 國家中 어느 나라도 다른 國家에 대해서 보다 높은 또는 보다 낮은 國際法的인 地位를 갖지는 않는 것임. 이러한 國際法的인 同等權을 尊重하지 않는 者는 스스로 國際法을 어기는 것임.

「본」 政府에 의한 東獨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地位에 대한 反駁 그리고 東獨과 東獨市民에 대한 差別政策의 持續은 東獨과 西獨市民의 多數가 추구하고 있는 同等한 關係 樹立을 방해하고 있음.

② 第3國과 東獨間의 正常的인 外交關係의 樹立은 —「브란트」 政府도 그렇게 主張하고 있음— 「內獨關係」를 成立시키는 明文規定에 抵触되고 또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한 非友好的인 行爲로 評價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이 分明히 밝히는 바임. 즉 「본」의 뜻하는바, 「內獨關係」—그것은 이미 充分히 立証되었음—는 獨占資本이 支配하고 있

는 西独과 社会主義的인 独逸民主共和国 간에 決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있게 되지도 않을 것임. 西独이나 美国 外交關係가 있는 어떤 國家가 東独과의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樹立하려는 경우나, 얹으려는 경우에도 「內独關係」에는 구애될 것 없음. 나는 우리의 눈에 그것이 該當國家의 主權과 行為의 自由問題라는 것을 아주 分明히 말하고 싶음. 이른바 「內独關係」 條約 規定을 沮害한다 云云은 事實上 갖가지 口實을 美国이나 西独의 政策이 조작해 낸 것임. 이러한 行動樣式은 主權 國家들에 대한 西独政府의 끊임없는 干渉이 되는 것임.

「본」의 國際法 위반이 이처럼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政治家들이 洞察하고 있음. 東西独間의 關係改善과 歐洲平和는 東独에 대한 「본」의 差別政策을 방조함으로써 促進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國家들이 「본」의 政策을 支持하고 「본」이 제시한 外交政策的 行動原則에 屈伏할 경우, 위태롭게 될 것임. 그에 따라 다른 國家들은 東·西独 對決의 渦中에서 유감스럽게도 中立性을 喪失케 될 것이 明白함.

「캄셀」會談은 특히 東·西独 兩社会体制의 非和解性을 특히 國際적으로 再認識시켰음. 「캄셀」은 未來에 있어서도 어떤 「特殊關係」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分明히 立証하였음. 第3國이 東独과의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樹立하기에 앞서서 第3國의 政府들이 東独과 西独간에 「內独關係」에 관한 合意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意義가 없으며 오히려 國際的 協力과 國際的 交流만 어렵게 하는 것이 됨. 따라서 第3國家들은 永遠히 되돌아 오지 않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임.

3. 東独과 西独의 「유엔」機構 同時加入은—「본」에서 그렇게 主張되고 있음—「獨逸分斷의 法律的인 永久化」를 意味할 것이고 그밖에도 「民族自決權의 違反」이라 말하고 있음. 나는 獨逸의 分斷이 이미 20餘年前에 完成되고 또한 法律上 兩獨의 分離國家 樹立은 「파리」條約에 의해서 確定되었다는 것을 이미 確認하였음.

東獨의 「유엔」機構에의 同等한 會員資格은 「유엔」憲章의 뜻에 부합하는 것임. 「유엔」機構는 第2次世界大戰以後에 第3次世界大戰을 막기 위해 수립되었고 「유엔」의 기능은 모든 國家들이 同等하게 加入하고 있는 경우에만 課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임. 그것은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西獨에 해당하는 것임.

4. 西獨內에서는 少數의 사람들만이 西獨과 東獨간의 關係를 西獨과 壤地利간의 關係와 마찬가지로 淸급하고자 努力하고 있는데 그것은 現實的이 아님. 그것은 우선 西獨이 帝國主義的인 國家이기 때문임. 壤地利에 대해서 西獨은 浸畧政策과 經濟·弱화를 追求하고 있음. 社會主義國家인 東獨이 그러한 政策을 甘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

獨逸國家의 樹立은 두가지 길이 있었음. 즉 反民主的이며, 半封建的이고 또 帝國主義的인 길이 「마르크스」「엔겔스」「베벨」「리브크네히트」에 의해 代表된 民主的인 革新과 決定的인 平和政策의 길이 바로 그것임. 「본」은 帝國主義의 낡은 길을 걸고 있음. 우리는 平和民主主義 그리고 社會主義의 새로운 길을 걸고 있음.

言語의 異質化 現象이 시작되었는데, 「휴머니즘」으로 充滿된 「괴테」, 「실러」, 「레쎅」, 「마르크스」 및 「엔겔스」의 傳統的인 獨逸語가 帝國主義에 의해 感染되고 資本主義的인 独占欲求에 의해 操作되어 西獨의 많은 集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言語에는 큰 差異가 있게 되었음. 이밖에 많은 言語도 이미 同一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 않음. 例를 들면 우리가 同等權과 無差別을 말하는 경우, 우리는 바로 純粹한 同等權과 無差別을 생각하는데, 「본」에 있는 많은 政治指導者들은 同等權이라 말하는 경우, 그들은 그 概念을 東獨의 屈伏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그들이 無差別을 말하는 경우, 그들은 西獨市民과 東獨市民의 永遠한 差別을 意味하는 것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히틀러」將星들, 「네오나찌」들 그리고 報復政治家들의 言語가 우리 獨逸語, 즉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 評價하여 繼續發展시키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平和를 사랑하는 市民의 言語에 屬하지 않고 있다고 봄.

文化分野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東獨에서는 「휴머니즘」적인 社會主義의 民族文化가 促進되어 發展하고 있는데 反해, 西獨에서는 民主勢力의 「휴머니즘」적인 文化의 利害關係와 獨逸文化의 本質을 反動的인 操作政策에 의해 歪曲하고 있고, 独占資本主義의 勢力間에 鬭爭이 이루어지고 있음.

5. 最近에 一나는 이미 이를 示唆했음-「本」政府와 西獨議會間의 討論에서 自決權 問題가 크게 浮刻되고 있음. 「本」政府의 代表者들은 그것이 可能하든 않든 自決權 行使로써 問題를 解決코자 試圖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은 勿論 西獨內에서 行使하는 自決權에 關係가 있을 뿐임. 당연히 西獨住民의 自決權에 대해 是非할 사람은 없음. 즉 오늘날까지 西獨의 勞動者들에게 진정한 團體行動權을 부여하는 것까지 反對하고 있는 西獨의 統治集團을 除外하고는 이것을 論爭삼을 사람은 없음. 이에 대한 우리 의 立場은 西獨住民이 원하면 곧 自身에 관한 問題에 대해 自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것임. 그와 꼭 마찬가지로 東獨의 人民 역시 양도할 수 없는 自決權을 가지고 있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憲法에 依해 人民投票라는 明白한 方法으로 이 權利를 行使하고 있음.

그러므로 西獨住民의 自決權問題는 여하한 경우에도 東獨人民의 自決權과 相關되는 것은 아님. 相關되는 것처럼 前提하고 自決이라는 常套語로써 東獨을 合併하려는 酬酌을 음폐하려는 「本」側의 모든 企圖를 우리는 斷乎히 拒否해야 함. 「本」政府는 그것을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第三國과의 條約에서 西獨住民의 自決權을 讓지시 어떠한 方法으로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오직 主權的인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 그 人民會議, 그리고 그 政府만이 獨逸民主共和國 市民의 自決權에 대한 權限을 가지고 있음. 現實主義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政治家는 反「히틀러」聯合의 勝利와 특히 소련 部隊에 의한 伯林의 征服에 따라 歐洲에 새로운 勢力關係가 創造되었다는 것을 알고있음. 戰後時期에 소련은 그의 歐洲에 있어서의 集團安保政策을 徹底히 관철했음. 소련과 人民民主諸國의 共同体는 歐



洲平和를 確保하기 위한 힘으로 發展했고 西独政府는 「아데나워」와 「덜레스」가 宣傳한 報復政策이 失敗했다는 것을 意識해야함. 「엘베」江과 「베라」江의 境界는 社会主義的인 国家共同体的 西方境界임. 蘇聯과 其他社会主義諸国은 결코 이러한 平和境界가 變化되고 또한 社会主義的인 独逸民主共和国이 위협을 받는 것을 許容하지 않을 것임. 榮光스러운 蘇聯人民과 歐洲諸国에 있는 反「과시즘」적인 勢力들은 25年후에 새로운 帝國主義的인 境界의 準備를 허용하기 위해 反對鬪爭에서 거대한 犧牲을 치렀던것이 아니었음을 蘇聯 共產黨 中央委員會의 理論的機關誌인 1970年 7月号의 「共產主義者」와 1970. 5. 21日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 드」에 公表된 나의 論文「解放後 四半世紀」에서 나는 現實的인 狀況의 評價를 제시했음. 蘇聯이 西独과 既存境界의 承認, 暴力拋棄, 他国家에 대한 不干涉, 緊張緩和에 따른 諸措置들을 內容으로 하는 暴力拋棄協定에 合意하고자 함은 소련의 平和共存政策과 부합하는 것임. 소련의 對西独對話에서 要求한 諸原則과 같이 東独도 西独에게 國際法的 基盤위에서 同等한 無差別的인 關係의 樹立을 제안했던 것임. 「에어후르트」와 「캇셀」에서 있었던 對話에서 政府가 아직도 그와같은 條約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政治的 現實들을 아직도 承認하지 않았다는 것을 表明했기 때문에, 東独은 兩独이 우선 「유엔」 同時加入을 合意하고 또한 東独과 西独間에 大使級次元에서 外交代表를 交換하자고 제의하였음.

여기서 생기는 結果들은 모든 사람에게 有益한 것이며, 東独과 西独은 모든 다른 「유엔」會員国들과 同等하게 이러한 世界機構의 課業에 參與할 것임. 兩国家는 「유엔」機構가 다루어야 하는 問題解決에 充分히 貢獻할 수 있을 것이며 「유엔」의 普遍性이라는 原則에서 複雜한 國際問題들을 解決함에 있어 「유엔」의 比重을 높일 수 있을 것임. 東独大使와 西独大使가 「유엔」機構에 同時에 그리고 同等한 資格으로 出席한다는 것은 그밖에도 그 國際法的인 意義에 있어 어떠한 方法으로도 「모스크바」나 「벨그라드」에 東独과 西独의 두 信任狀을 받은

大使들이 同時에 그리고 同等한 資格으로 駐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임. 그것이 어떻게 東獨人民이나 西獨人民의 自決權에 違反되는 것인지 理解할 수 없음.

그 밖에 「유엔」憲章에는 主權的인 會員國家들이 그들 相互間에 雙務的인 關係를 條約으로 또는 自由로운 合意로 規制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定은 전혀 없음. 그러므로 「유엔」에의 同時的인 그리고 同等한 會員資格 取得은 東獨과 西獨間의 雙務的인 關係形成에 絶對로 關係가 없는 것임.

東獨과 그 市民을 國際的으로 差別하는 「본」의 持續的인 政策은 國際法의 妥當한 規範과 國際生活에 있어서의 「모랄」에 비추어 결코 正当化될 수 없는 結果를 낳는 것임. 國際的 協力이라는 分野에서도 東獨과 東獨市民을 差別하는 이러한 「본」의 政策은 -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 東獨과 西獨이라는 兩國家間에 敵對的인 障壁을 이루었고 分斷을 「콘크리트」化하는 「세멘트」였음. 「에어후르트」와 「캣셀」에서 이루어졌던 東獨과 西獨의 政府首腦들의 公式的인 會合과 對話는 近30年만에 成立되었기 때문에 相互 事實上의 承認을 表明하는 確認하는 結果가 되었다고 國際的인 著名한 外國政治家들과 外國言論인들이 보고 있음. 적지 않게 複雜한 問題들을 調整해야 하는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的意味로는 完全한 相互承認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나 事實上 承認은 「에어후르트」와 「캣셀」에서의 對話進行에서 얻은 相互認定으로 補完되어 많은 政府에게 一定한 影響을 끼칠 수 있고 그 政府들이 東獨과 西獨과의 關係問題를 再考할 必要性을 느끼게 하였음.

어떻든 西獨의 政治的 要求는 一方的이며 平和의 利害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國際的 安全의 利害에도 一致하지 않는 것임.

「브란트」首相은 「캣셀」에서 兩獨間의 平和共存을 다시 拒否했음. 그 自身 바로 同等한 國際法的인 基盤위에서 東獨과의 平和共存이 西獨住民과 多數의 西獨「부르조아지」를 위한 最善의 解決策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슈트라우스」를 中心으로 한 軍需独占財閥과 反動勢力의 政策은 多數의

西独 「부르조아」에 대해서도 危險한 것임. 이밖에 高度의 軍費支出은 国内問題의 解決을 阻害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国内葛藤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나는 約 半年前에 西独 商工会議所議長과의 對話에서 당신은 무엇을 志向하는가? 당신은 어떠한 戰略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平和를 원하는가 아니면 戰爭을 원하는가라는 質問을 제기했을때 그는 戰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본」에서 하고 있는 政治는 결국에 戰爭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武裝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原子武器에 관한 共同管理權을 얻고자 鬭爭하고 있으며 「본」의 軍隊는 무엇때문에 東独의 境界線에서 原子지뢰 地帶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 對話에서 그는 西独의 大「부르조아지」勢力안에도 상당한 見解差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그의 政治的 概念이 「갓셀」에서 充分히 反映된 바 있는 「슈트라우스」右派들의 見解와 一部 大「부르조아지」를 包含한 一部 西独「부르조아지」의 見解 및 政策과 同一하지 않음.

즉 이러한 一部 「부르조아」人 集團은 第3次 世界大戰의 길을 달림으로써 다시한번 모든 것을 도박에 걸겠다는 必要를 느끼고 있는 것임.

이러한 集團의 影響下에서 「브란트」는 東独首相과의 對話를 할 생각이 있다고 宣言하였음. 「슈트라우스」 「네오나찌」黨(NPD)等等의 右翼反對派의 소동 背後에는 西独의 多数「부르조아지」勢力과 小市民的인 勢力들이 있다는 것임.

이제 平和의 길을 扞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戰爭의 길을 扞하느냐의 問題에서, 또 報復主義的인 政策으로 對決할 것인가, 양을 것인가에서 비로소 누가 어떠한 立場에서서 있는가를 알게될 것임.

여러 農民團體, 避難民團體들에서도 누가 「슈트라우스」와 「네오나찌」黨의 길을 意識的으로 支持하는가가 立証될 것임. 결국 軍備政策과 「브란트」政府가 約束한 다른 政策들간에는 聯関性이 없는 矛盾이 存在하고 있

음.

一年에 200 億「마르크」가 戰爭準備를 위해 支出된다면 같은 時期에 「브란트」首相의 政策宣言에서 言及했던 教育制度와 其他改革을 위해 이러한 200 億「마르크」를 支出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임. 「브란트」政府의 「콘체른」軍需와 「슈미트」国防相政策에 의해 西獨教育은 비참하고 다른 內政改革들은 解決한다는 것이 몹시 어렵게 되어 있어 결국 西獨住民의 広範한 勢力들의 충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西獨 軍備政策으로 말미암아 西獨의 社会的 發展은 重大問題로 되어 있고 東獨에 뒤지는 原因中的의 하나가 되고 있음. 西獨은 몇가지 分野에서 需要超過 商品을 供給할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은 길게 보아 人民에 대해서 決定的으로 有益한 것은 못되는 것임. 重要한 것은 未來의 主軸을 세우기 위해 基礎的인 課題들을 解決한다는 것, 即 學校와 大學 人民保健 等々の 分野에 걸쳐 社会的 課題들을 解決해 주고 未來를 위해 참다운 人間 關係가 確立되도록 解決하는 것임.

西獨의 宣傳廣告文으로 가득찬 宣傳政策 때문에 「본」은 결국 社會를 위해 지극히 重要한 몇가지 分野에 있어 東獨에 뒤지고 있다는 代價를 支払해야 했음. 무엇보다도 그들의 未來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결국엔 그것을 일단 捨어버려야 할 西獨의 젊은 世代가 오늘날 점점 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바탕에서 未來를 생각하고 있음.

그러므로 「브란트」는 西獨이 優越한 地位에서 東獨과 協商할 수 있다는 幻想을 버리는 것이 有益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브란트」는 여러번 兩國間의 協商이 <事前條件>에 의해서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음. 그러나 그는 바로 - <어떤 幻想에  
사로잡혀 - 東獨이 同等해서는 아니되고 國際關係에 있어서도 一種의 「  
본」의 後見에 屈伏해야 한다는 <事前條件>으로 協商을 封鎖했음.

「본」政府가 東獨의 國際關係의 形成에 개입 하기를 원하고 또한 東獨  
의 國際關係의 擴大를 「본」의 後見下에서 예측시키려는 僭越的 行爲는  
東獨과 모든 東獨市民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疑問의 여지가 없음.

그것은 아마도 平和共存과 對立하는 새로운 公式화된 攻勢的인 共存인  
가?

西獨首相은 東獨과 東獨市民의 差別政策을 持續하겠다는 자신의 信  
念을 1945年以後에도 事實上 單一性이 사라진 現實에서도 아직 單一民族  
에 屬한다는 人間的 感情에다 呼訴하는데 이용 했음. 1949年에 分斷은  
두번째로 確認되었고 「파리」條約에 의해 세번째로 確認되었음.

그러므로 우리는 몇가지 感情的 問題에 관해 말하고자 함. 分明  
히 血緣間에는 좋은 感情, 나쁜感情이 있으나 대부분의 一定한 共通  
性도 있는 것임.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社會秩  
序는 서로 同質의 것이 아님. 西獨의 市民은 全体的으로 獨占資本  
主義國家의 人民으로 表現되고 있고 「파리」條約에 의해 帝國主義的인 西方  
強大國들과 結合되어 있음.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를 표방한  
獨逸民族이 社會主義的인 祖國을 創造해낸 것임. 그러므로 血緣間의 感情  
은 決定的인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히틀러」戰爭에 대해서 共同  
責任을 지고 있는 것임. 오늘날 <東獨人民>은 <西獨의 軍과 行政府에서 地  
位를 차지하고 있는 帝國主義的이고 軍國主義的이며 「네오나찌즘」의 勢  
力에 대해 <憎惡感>을 가지고 있음. 西獨의 <大資本軍國主義者>와 「네오  
나찌」들은 東獨勞動者階級과 <하등感情>과 利害에서 <共通性>을 가지고 있지 않  
음. 그들은 非人間的인 利潤利害關係를 추구함으로써 兩次世界大戰을 일으  
켰던 収奪者임에 틀림 없는 것임. 다시 恩惠로운 主人과 종(奴隸)으로 東  
獨의 領域에서 活動하고 싶어하는 西獨大地主와 貴族들은 東獨의 協同組

合所屬農民과 農村勞動者의 感情 및 民族的 共通性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음. 東獨勞動者階級은 獨逸을 分斷시키고 東獨에 害를 加했고 協同組合農民들의 땅을 빼앗아 大地主와 獨占財閥인 非人間的 支配關係로 復歸하고자 하는 西獨의 支配階級을 멸시와 증오의 感情으로 對하고 있는 것임. 또한 勞動者들은 西獨大資本家, 大地主, 旧「나찌」들과 「네오나찌」들, 히틀러의 將星들과 東獨勞動者 死刑執行人들에게 적지 않은 民族的 感情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東獨 人民들속에서 自生한 증오와 경멸의 感情이며 동시에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 땅에 그들의 支配를 擴張하려는 데 대한 憎惡와 慾望의 感情임, 또 勞動人民의 業績들을 瓦解하려는 데 대한 憎惡와 경멸의 感情인 것임.

그러나 東獨에 있는 勞動者, 農民 그리고 其他 勞動하는 者들은 西獨에 있는 같은 階級의 兄弟들 그리고 西獨의 모든 平和를 사랑하는 民主的인 市民에 結合, 同情, 友誼 및 連帶의 感情을 느끼고 있음. 「캣셀」會談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兩獨間國民의 感情을 階級對決이라는 것으로 다시 나타났고, 民族的 感情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

西獨首相은 「西獨과 東獨間의 同等한 外交關係의 수립에서」兩國家안에 살고 있는 人間을 위해 어떠한 肯定的인 結果들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그렇다면 도시 「본」政府는 國際法 基盤 위에서 同等한 關係수립으로 歐州에 平和와 安保가 實現됨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본」政府는 國際法上 保證된 同等한 關係수립으로 兩國家가 平和的 共存生活를 하게 되고 條約上의 規制를 마련하는 基礎的 前提들이 생겨나는데도 兩獨住民에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캣셀」會談은 그 밖에도 平和共存을 위한 가장 基礎的인 國際法的 前提를 創造해야 한다는 不可避性을 確證했음. 相互關係의 國際的인 保障이 없다면 東獨, 東獨의 市民, 東獨의 國家的인 象徴 等等의 威嚴과 利害關係가 西獨에서는 法律의 保護 밖에 있게 되는 것임. 만일 國際法的인 同等權

의 基盤위에서 東獨과 西獨간의 外交關係가 수립된다면 東獨政府는 다른 問題들의 검토에 나아갈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본」에서는 東獨과 觀光사업을 發達시키는데 관해서도 말하고 있음. 그러나 「본」의 國防省은 觀光사업이 아니라 公公然하게 敵性冊子를 담은 氣球를 東獨에 띄우는가하면, 우리의 西쪽 境界에 原子機雷地帶를 만들고자 날뛰고 있음. 나아가서 우리는 分断으로 兩國家의 많은 市民들이 困難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브란트」는 과연 東獨과 西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골돌히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를 의심한다. 그 理由는 결국 그가 帝國主義 西方強大國 政府와 더불어 獨逸을 分断시킨 「본」 政府代表者이기 때문임. 最近에 이르러 그는 「아데나워」의 政策을 답습한다고 말했다가 分断을 촉구한 정책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人間的 苦痛들에 대해서도 責任을 지겠다고 公言했으나, 그 모든 녀두리는 순수하지가 않음.

帝國主義的인 強大國들에 의해 占領되었던 「본」의 政府는 자기 마음대로 人道的配慮없이 樹立되었다가 20年이 經過하는 동안 점점 그 非人道性은 深化되었음. 이는 獨逸帝國主義와 軍國主義가 되살아나는 時間을 얻을수 있었기 때문임.

周知하는 바와 같이 「아데나워」는 「본」과 「나토」가 1960년 부터 1961年 동안에 東獨, 往服에 成功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음. 그것이 失敗하자 大聯政을 스스로 조작한 報復政策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음. 이제 「브란트」政府는 하나의 길을 열어야 함. 이제 그가 생각해야할 일은 1961年以來 유지되어온 東獨의 國家的인 安措置들이 새로운단계에 들어감을 考慮,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임. 最近「사소한 措施」들을 追求하고 宣傳하나 이것은 問題가 되지 않으나 東獨에 있는 勞動者와 農民의 權力의 전복을 위한 다른 陰謀가 計劃되고 있음. 分明히 西獨首相이 주목할만한 部分에서 解明을 한바 있으나 그것은 序論格인 것임. 그

解明은 오랜時間을 要할 것임. 그러나 基民党的 「네오파시즘」적인 그리고 其他의 反動的인 勢力들과 原則的으로 對決하지 않고서는 西独政府가 人道的平和 및 諸人民의 安全에 對해 必要한 <基本的인 政策 修正>까지 나아갈수 없음을 明白함.

만일 많은 社会民主党 指導者들이 「폰타덴」으로부터 「슈트라우스」에 이르는 낡은 「나찌」들과 「네오나찌」들에 對해 行動의 自由를 許容하고 계속 右派勢力들이 加하고 있는 壓力에 따라 <姑息的인 處理方式>과 <애매한 方法>으로 <對決을 回避>하여 <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임. 그들은 언젠가 「바이말」共和國內의 「부르조아」民主主義 政府와 社会民主政府의 運命과 役割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上기해야 할 것임. 社会民主党 指導層과 「브란트」政府는 右翼으로부터 自己 自身들에게 그리고 西独「부르조아」議會主義體制에 어떠한 危險이 닥쳐오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社会民主党 指導層이 西独에서 이러한 危險을 막지 못하면 危險은 계속 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은가?

「캇셀」에서 일어났던 일은 「본」에서 (西独議會에서) 右派를 뿌리뽑고 다시 그들이 權力을 掌握하지 못하도록 「네오나찌」勢力에 對한 反對鬪爭을 強力히 시작하라는 警告의 表示라고 認識해야 함.

確實히 오늘날의 歷史的 狀況을 과거와는 다름. 특히 歐州와 世界에 있어서의 諸勢力關係는 根本的으로 社会主義에 有利하게 바뀌어 졌음.

帝國主義는 - 1969年에 世界共產黨 및 勞動黨會議에서 그렇게 確定되었음 - 물론 더욱 侵略的으로 되긴 했으나 強化되지는 않았음. 西独에서의 內的 發展은 여러 面에서 「바이말」共和國의 崩괴에 앞서 나타난 <一聯의 現象>과 宿命的 類似性이 있음.

「브란트」는 「싸아르브룩켄」에서 있었던 集會에서 西独政策의 轉換이 있을것이라 豫告했음. 우리는 그것이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蘇聯代表와 「바르」國務相의 對話에서 말미암아 그리고 「슈토프」東独首相과 「브란트」首相간의 「에어후르트」와 「캇셀」에서 있었던 對話로해서 導出된 당연한



結論이기를 바랄만큼 좋게 이해하고 싶음. 우리는 그것을 쌍수로 환영할 것임.

社会民主党 地位에 관한 評價에서 보면 「고데스베르그」의 党大会決議에서는 社会民主党이 国家独占 資本主義에 立脚하고 帝國主義的인 「나토」政策과 밀착해 있음을 宣言하고 있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社会民主党 黨員이 戰爭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음.

「슈미트」의 幻想的인 軍事政策과는 反對로 社民黨員은 緊張緩和와 同等 權維持로써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을 基반으로 東獨과의 理解증진을 支持하고 있음. 그리고 社会民主党 党幹部회가 西獨社会民主主義者와 共產主義者간의 對話를 禁止하고 있지만 미국의 好戰政策, 「네오나찌즘」, 報復主義에 대해서는 東獨 社会民主主義 同志들이 다른 平和애호 同志들과 共同鬪爭을 展開해 나갈것임.

帝國主義, 資本主義 및 戰爭勢力에 대한 社会民主主義 및 平和애호勢力의 鬪爭은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언제나 相對方이 宣傳的 基단 術策을 관찰하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少數의 社会民主主義的인 党要員들은 現在西獨의 國家独占資本主義를 民主社會主義에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西獨에서 어떤 새로운 用語가 등장하든 나는 原則적으로 西獨後期資本主義와 社會主義관에는 世界觀이 다르고 따라서 共通性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음.

만일 社会民主党의 党要員들이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동시에 바란다면 그들은 民主的인 革新과 더불어 社會主義的인 革新도 실현했어야 함. 社会民主党 指導層의 行績이 그러한 印象을 준적이 없음.

社会民主党 党指導層과 「본」의 政府는 적어도 이런 基단 術策이 모두 무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함. 兩次世界大戰을 前後한 經驗 그리고 東獨에 대한 미국과 「본」政府의 數十年동안에 걸친 心理戰등의 經驗에 비추어 볼때 社会民主党指導者가 1960. 6.30 에 西獨議會에서

目的을 設定하고 灰色的인 計劃에 매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드러운 말로 음흉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어두운 것임.

여러가지 点에서 「바이말」共和国時代의 報復目的과 西獨의 帝國主義的目的에 대해 오늘날 責任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제아무리 長廣告를 해도 平和的인 人民生活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過去의 事件들을 잊게만 들지는 못하고 또 그들이 偽裝術에 속아넘어가지는 않고 있음. 특히 兩次世界大戰에 대해서 責任을 져야 할 西獨내의 勢力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본」議會에서 右派勢力이 抬頭하고 있는데 관해 「바론스·폰·구넬베르그」는 演說을 통해 이를 確認하였음.

소련, 東獨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이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軍事的으로 保護하고 있고, 西獨帝國主義的인 報復政策에 의한 策略的인 奸計를 용이 주도하게 추적하여 모든 局面에서 올바르게 評價하고 적절한 時期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歐洲人民들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임.

「본」政府는 오늘날「슈트레제만」(Stresemann)式的 政策이 絶對적으로 非現實主義的이라는 것도 洞察해야 함. 西獨이 一方的으로 미국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西獨「부르조아지」를 위해서도 有益할 것임. 그 理由는 미국이 결국 西獨의 제일 尖端을 가는 競争者일 뿐만 아니라 「본」이 軍事的인 破局政府가 될 경우 主受益者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임. 특히 알려져 있는 것은 미국의 戰略的 計劃으로 戰爭이 일어날 경우 西獨都市의 爆擊과 西獨의 破壞도 考慮 變數로서 計劃되어 있다는 것임. 確實히 獨逸獨占資本의 利害를 代表했다고 알려져 있는「라테나우스」(Rathenaus)의 뜻에서 소련과 西獨과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改善한다는 것은 西獨「부르조아지」의 利害關係라는 觀點에서 볼 때 더 현명한 것임을 疑問의 餘地가 없음. 西獨 政府가 「베트남」人民과 「라오스」및 「캄보디아」人民들에 대한 미국의 야만적인 政策과 美國 자체안에서의 人種差別과 「아랍」人民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侵略政策支持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長期的 안목에서- 西獨에도 별로 이롭지가 못함.

그러므로 西獨「부르조아지」와 그의 「본」政府는 진정 새로운 政策을 取하여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그 政府는 「히틀러·파시즘」으로부터 諸人民이 解放된지 25年이된 오늘 그 政府를 信賴할 수 있게 해야하고, 낡은 帝國主義的 觀念들, 낡은 帝國主義的 戰略과 戰術을 分明히 포기해야 함. 平和共存이라는 뜻에서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를 條約으로 規制한다면 同等權과 無差別의 基반위에서 留保없는 相互間的 國際法的인 承認과 國際法的인 關係를 樹立하는것 以外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임. 우리는 東獨과 西獨間的 外交關係의 基반위에서 平和共存關係를 수립하는 것이 모든 点에서, 또 모든 歐洲諸國人民들의 安全과 平和의 利害關係 觀点에서도 重合되는, 前進을 위한 一大措施라고 생각함. 모든 歐洲人民들, 「나토」에 屬하고 있는 人民들까지도 이에는 合意할 것임. 그러므로「브란트」政府는 「나토」諸國의 人民들이 東獨과의 平和的 共存을 「본」政府가 拒否하고 있는 것을 계속 寬容할 것이라고 幻想을 가져서는 아니 됨.

西獨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質問에 대해서 우리는 「캣셀」에서 接觸을 방해했던 「파시스트」勢力의 毒蘂미를 잡아 平和의 反對者로 몰고 이들을 축출해 버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대답하겠음.

우리는 東獨과 西獨의 政府首腦間的 對話를 위한 第3次 協商에서 東獨과 西獨間的 外交的關係 수립에 관한 具體的인 協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

親愛하는 男女 여러同志! 이제 앞으로 어떻게 進展 될 것인가 하는 問題만이 남음. 그것은 明白함. 즉 早晚間에 國際法的 基盤위에서 東獨과 西獨間에는 同等한 外交關係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 以前에 兩國家는 「유엔」과 「유엔」산하 機構에 同等한 會員國이 되리라는 것임. 「본」政府가 어떤 報復主義的인 비열한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基民党的 壓力 또는 外國의 帝國主義的인 壓力을 두려워 하거나 이를 제대로 認識하고

있지 못하다면 東獨은 東西獨間의 平和共存을, 그리고 兩國家의 完全한 國際的인 同等權을 爲하여 힘차게 鬪爭 할것임. 東獨의 全面的 強化와 東獨勞動者에 의한 社會主義社會體制의 발달, 課業의 完수는 이러한 過程을 促進시킬 것임.

兩獨國務相 會談開催에 따른 「후랑케」西獨內獨關係相의  
記者會見

( 1970.11.12 )

質疑 1 : ( 「프레세」紙 記者 )

「후랑케」장관,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공식적인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公式的인 接觸」이란 말의 概念은 오히려 구속력이 없는 形式이며 이는 앞으로 세번째 頂上會談의 개최를 意味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한 형태로 兩獨간의 대화가 계속될 것인지 「본」정부의 의향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答辯 : ( 「후랑케」內獨關係相 )

「公式水準」에서의 의견교환이란 「에어후르트」와 「캇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頂上회담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며 이 표현은 또한 「모스크바」의 조약작성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實務「그룹」)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지닌 것임. 이러한 실무「그룹」이 提起할 主題 - 지금은 이에 대한 目錄이나 限界가 없지만 - 들이 의견교환을 통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임.

質疑 2 :

貴下는 「사전조건 없는」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言明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브란트」수상이 「캇셀」에서 「슈토프」수상에게 제시한 20개 조항은 어떤 의미로 평가해야 하는가?

答辯 :

20개 조항이란 우리가 애초부터 지녀온 입장인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어져온 <토의사항>과 <기본입장>의 意思交換을 具體的인 表現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인 것임. 이는 있을지도 모를 條約 締結의 경우 추진해 나갈 방향과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비추어 有益하다고 생각되는 <基本意思>와 <根本要素>를 表現한 것임.

質疑 3 :

이에 대하여 독일민주공화국 國家元帥「울브리히트」는 사전조건이라고 말했는데 ?

答辯 :

東獨의 특사는 西獨政府에 구두로 표명한 의견에서 「公式的인 회담」의 테두리 안에서는 <條件이나 事前條件없이 > 모든 주제를 토의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수락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거론되고 저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사이에 矛盾이 있을 수도 있음.

質疑 4 :

「울브리히트」는 人的 및 貨物의 相互通行問題에 對하여 東獨은 「本」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다른 국가의 西伯林 活動을 중지하는 것이 이에 대한 事前條件이라고 하였음.

귀하의 의견으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答辯 :

이 문제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이전이나 지금까지 繼續 취하고 있는 입장임. 말하자면 뒤에나 있게 될 協商과 成果에 대하여 미리 가능한 의견 교환을 해두는 것이고,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나는 이를 評價할 수 있겠음.

質疑 5 :

人的 및 物的 通行과 관련하여 특별히 協商할 用意이 있는가 ?

答辯 :

重要한 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이를 準備하느냐이며 伯林 및 全体獨逸에 關한 限 一률적으로 4개 聯合國이 「히틀러」독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임. 伯林問題에 關한 한 4 大國 大使會談에서 이는 分明히 되어 있고, 이들 <4 대국 大國의 協상에서 이들의 <위탁을 받아 다루게 될 <원칙이 성립되면 西獨과 東獨間에 協商이 進行될 것이라고 생각함.

質疑 6 :

4 대국의 위탁으로?

答辯:

그러함.

質疑 7 :

西伯林 議會가 이에 참여할 것인가?

答辯:

이 問題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런 뜻에서 귀하의 질문은 정통을 짚었다고 보겠음. 우리의 發想은 (伯林과 西獨 紐帶)에서 (출발하는데) 비해 저쪽은 그들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도 가능한 진전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進展되고 定立될 것인지 우선 두고 보아야 할 것임.

質疑 8 :

伯林에서 最近 4 大國 大使會談을 두고 진보를 보았다고 하는데 客觀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는가?

答辯:

여러분의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 더 이상 이야기 할 수는 없으며 언젠고 커다란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정세가 하도 눈부시게 돌아가 이제는 그보다도 자주 10 일 간격으로 觀察하고자 하고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會談이 그나름대로의 協商形式에서 특성을 지니게 될 것임.

質疑 9 :

伯林문제 해결에 앞서 個別的이고 실질적 문제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通行証이 발급될 것인가?

答辯:

通行証이 발급될 것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현재와 같은 閉鎖措置가 緩和할 수 있는 解決策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이는 자

신있게 말할 수 있음.

質疑 10 :

西伯林에서의 大使會談의 결과로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答辯 :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推測함.

質疑 11 :

「본」·東伯林간의 接觸에 대하여 다시 묻겠는데 兩獨관계에 있어 條約에 의한 解決外에 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改善策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答辯 :

대답하기 어려우나 예를 들면 市民과 貨物의 輸送과 같은 通行問題 등을 말할 수 있음. 그러나 清算計定같은 문제에 있어서 西獨市民에 의해 東獨에 所在하는 支払手段이나 東獨市民이 보유하고 있는 이쪽 銀行에 소재하는 지불수단이나 증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청산형식이나 기술적인 해결을 통해 변혁이 있을 것임.

質疑 12 :

이러한 交換이 이미 進行中인지?

答辯 :

그리 성숙하지는 않았으나 雙方의 基本立場은 서로 알 수 있도록 제시한 정도의 일정한 접촉은 이미 있었음. 그러나 이는 <포괄적인 조약에 의한 관계해결>에 앞서 兩獨관계 개선을 위한 가능성의 시도에 지나지 않음.

質疑 13 :

공식적인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는데도 東伯林側에서는 批判的인 意見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批判的인 의견이 있음. 이는 義務履行인가 아니면 흑종의 관련이 있는 것인가?

答辯 :

이 문제에 대하여 <獨逸社會主義統一黨 (SED - 共産黨)> 指導部내에 전해차



이가 있는 실질적 문제를 들어 보겠음. SED内에는 가능하면 빨리 協約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派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자신의 존재에 큰 위협을 느끼는 派가 있음. 물론 「에어후르트」와 「캄셀」의 兩獨수상회담이 독일민주공화국 내부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會談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검토한 결과임. 따라서 西獨政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써 온갖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이들은 西獨을 東獨人民들에게 험뜯으려 애쓰고 있음.

質疑 14 :

그래도 귀하는 다음 주에 실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가?

答辯 :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으며,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이 시간에 東伯林에서는 獨逸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가 열리고 있음. 최근의 伯林協商과 「그로미코」의 東伯林 및 西獨訪問以來로 저쪽에서 이번과 같은 대표자급의 會議가 없었고 며칠후면 아마 詳細히 알게 될 것임.

「바르」獨逸聯邦共和國國務相과 「콜」獨逸民主共和國國務相

間의 會談共同聲明

(1) 東伯林會談共同聲明 ( 1970.11.27 )

獨逸聯邦共和國國務相「바르」와 獨逸民主共和國國務相「콜」은 1970.11.27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庁舍에서 意見交換 後 다음과 같은 共同聲明이 발표됐다.

獨逸聯邦共和國 國務相「에곤·바르」와 獨逸民主共和國 國務相「미카엘·콜」 博士는 金曜일에 公式적인 意見交換을 위해 會談하였다. 會談은 獨逸民主 共和國 關係會議 庁舍에서 進行되었다. 이 회담에서 意見交換을 계속하기로 合意했다.

(2) 「본」會談共同聲明 ( 1971.1.15 )

「에곤·바르」獨逸聯邦共和國 國務相과 「미카엘·콜」獨逸民主共和國 國務 相과의 회담후 1971.1.15 「본」에서 다음과 같은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에곤·바르」獨逸聯邦共和國 國務相과 「미카엘·콜」獨逸民主共和國 國務 相은 1971.1.15 계속적인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본」의 聯邦首相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에곤·바르」國務相과 「미카엘·콜」國務相은 전문가를 대동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의 대표와 獨逸民主共和國의 대표가 1971.1.26 伯林에서 다시 會談하기로 합의하였다.

(3) 東伯林會談 共同聲明 ( 1971.1.27 )

「에곤·바르」獨逸聯邦共和國 國務相과 「미카엘·콜」獨逸民主共和國 國務 相間의 회담종료와 함께 1971.1.27 東伯林에서 다음과 같은 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에곤·바르」獨逸聯邦共和國 國務相과 「미카엘·콜」獨逸民主共和國 國務相은 1971.1.26 그들의 代表를 대동하고 다시 會談하였다.

회담은 獨逸民主共和國 閣僚會議 庁舍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表는 1971.4.2 「본」에서 다시 會談하기로 合意하였다.

(4) 「본」會談 共同聲明 ( 1971.2.26 )

「바르」西獨國務相과 「콜」東獨國務相은 1971.2.26 (본)에서 會談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에곤·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콜」東獨國務相은 1971.2.26 雙方의 代表團이 同席한 가운데 새로운 會談을 개최했다. 會談은 6時間 30分 동안 계속되었으며, 會談場所는 「본」의 聯邦首相室이었다. 이 會談에서 雙方은 兩獨代表團의 會談을 1971.3.8 伯林에서 續開하기로 合意했다.

(5) 東伯林會談 共同聲明 ( 1971.3.8 )

「에곤·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콜」東獨國務相은 1971.3.8 東伯林에서 會談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共同聲明을 발표했다.

「에곤·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콜」東獨國務相은 1971.3.8 雙方의 代表團을 참석시킨 가운데 會談을 개최했다. 東獨閣僚會議室에서 개최된 이 會談은 10:00 시에 시작되어 15:00 시에 끝났다. 이 會談에서 雙方은 兩獨代表團의 會談을 1971.3.17 「본」에서 續開하기로 合意했다.

(6) 「본」會談 共同聲明 ( 1971.3.17 )

「에곤·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콜」東獨國務相은 1971.3.17 「본」에서 會談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에곤·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콜」東獨國務相은 1971.3.17 雙方의 代表團을 참석시킨 가운데 會談을 개최했다. 「본」에 있는 聯邦首相室에서

개최된 이 會談은 10:30 시에 시작되어 15:00 시에 끝났다.

이 會談에서 雙方은 兩獨代表團의 다음 會談을 1971.3.31 伯林에서 統開하기로 合意했다.

兩獨國務相會談再開을 위한 西獨政府의 立場 發表

( 1971.9.3 )

1971.9.3日字 伯林 4 大國協定의 第 2 部 A와 第 2 部의 부록 I 의 補完 및 <施行細則協定>을 체결하기 위한 協商을 시작하기 위하여 西獨政府는 東獨政府官吏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음.

政府는 「바르」國務相을 協商代表로 임명하였음.

西獨政府는 協商이 빠른 시일내에 시작되기를 희망함. 中部歐洲의 緊張緩和와 西伯林 市民의 복지를 위한 1971.9.3日字 <4 大國伯林協定>과 그에 따른 兩獨間의 協定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効力を 發生하도록 하기 위하여 西獨政府는 東獨政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갖추고 있음.

政府는 「후랑케」內獨關係相과 「바르」國務相으로부터 지금까지 進行되어 온 <兩獨間 協商>의 경위를 보고받았음. 그 協商은 1970.10.29日字의 合意에 따라 兩獨 代表者들간에 전개되어온 것임. 그 協商에서 다루는 문제는 <兩獨의 상호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문제의 타결은 <中部歐洲의 緊張緩和>에 이바지할 것임. 그 協商은 <東·西兩獨間의 一般通行問題>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왔음.

政府는 內獨關係相의 제의에 따라 「바르」國務相에게 東獨代表들과의 協商을 벌일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음. 그 協商은 무엇보다도 通行改善을 위한 兩獨間協定의 준비작업과 通行者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다룰 것임.

政府는 앞으로의 兩獨間 協商過程에서 野黨을 포함한 <西獨議會> ( Bundestag )와 계속 접촉할 용의를 갖고 있음.

伯林協定 (1971.9.3 假調印, 1972.6.3 正式調印)

仏蘭西, 蘇聯, 英國, 美國의 4 個國政府는 伯林의 美國管理地域에 있는 舊 聯合國管理理事會의 建物에서 各自國의 大使를 代表로 하여 一連의 會議을 開催하고 今後에도 繼續될 4 個國의 權利와 責任 및 그에 相應하는 4 個國의 戰時와 戰後에 있어서의 協定과 결정에 依拠하여 關聯地域의 現狀을 考慮하고 狀況의 實際的인 改善에 貢獻하고자 하는 念願에 따라 4 個國의 法的 地位를 損傷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合意했다.

第 1 部 一般條項

1. 4 個國政府는 問題地域에 있어서의 緊張을 一掃하고 紛爭을 防止하기 爲해 努力한다.
2. 4 個國政府는 UN 憲章上의 各自國의 義務를 考慮하여 問題地域에서 武力行使 및 그 威脅을 行하지 않고 紛爭을 平和的手段만으로 解決할 것에 合意했다.
3. 4 個國政府는 今後에 있어서도 繼續되는 各自國의 個個의 權利와 義務 및 共同의 權利와 義務를 相互 尊重한다.
4. 4 個國政府는 法的 見解의 相違에 不拘하고 同地域에서 發展한 情勢 및 本協定과 本協定에 引用된 他協定에 規定된 情勢를 一方的으로 變更하지 않을 것에 合意했다.

第 2 部 伯林의 西方側 諸地域에 關한 諸條項

- A. 蘇聯政府는 市民 및 商品이 伯林 西方側 諸地區·獨逸聯邦共和國 (以下 西獨이라 略稱) 間에서 獨逸民主共和國 (以下 東獨이라 略稱) 의 領土를 通하여 行해지는 道路, 鐵道 및 水路에 依한 通過 (transit) 通行에는 障害가 없어질 일 또 이같은 通行이 가장 簡便하고도 急速한 狀態로

行해지도록 便宜가 圖謀되고 優先的 取扱을 받는다고 宣言한다.

上記 民間通行에 關한 細目は 附屬文書 1 에서 言及되어 있듯이 兩獨當局에 依하여 同意된다.

B. 仏蘭西, 英國, 美國 政府는 伯林의 西側地域이 繼續 西獨의 構成部分은 아니며 同國에게 統治되는 것이 아님을 考慮에 넣으면서 同地域과 西獨과의 關係가 維持, 發展될 것을 宣言한다. 伯林의 西側地域과 西獨과의 關係에 關한 取扱細目は 附屬文書 2 에서 記述된다.

C. 蘇聯政府는 伯林의 西側地域과 이 地域에 接하거나 또 接하지 않는 東獨地域間的 連絡이 改善된다고 宣言한다.

西側地區의 永住者는 이들 地域으로 들어가는 他人들에게 適用되는 것과 比較될 수 있는 條件으로 家族訪問, 宗教上理由, 文化, 通商 乃至는 旅行을 爲해 이들 地域을 訪問할 수 있다. 「슈타인슈톡켄」을 包含한 隔地問題는 領土交換으로서 解決할 수 있다. 附屬文書 3 에 記述된 旅行, 通信 및 領土交換의 詳細한 決定은 兩獨當局에 依하여 合意될 것이다.

D. 西伯林의 對外利益代表와 西伯林에 있어서의 蘇聯領事館의 活動은 附屬文書 4 에 記述된대로 行使된다.

### 第 3 部 最終條項

이 4 個國協定은 今後 締結될 最終議定書에 定해진 日時 即 本協定の 第 2 部 및 附屬文書에 記述된 措置가 合意에 到達할 때에 効力を 發生한다.

1971.9.3 英語, 仏蘭西語, 露語의 各 4 個의 原文으로 伯林의 美國管理地區에 있는 舊聯合國管理理事會에서 調印된 4 個의 原文은 多같이 同等하며 正式의 것이다.

仏蘭西政府代表

蘇聯政府代表

英國政府代表

美国政府代表

(註) 協定은 伯林協定外에 몇몇의 附属文書, 覚書, 合意附記 및 4個 國大使들 間에 交渉된 各種 決定의 詳細에 關한 最終議定書로 되어 있다.

○ 附属文書骨子

1. 西独은 蘇聯에 旅行하는 西伯林市民을 領事權限下에서 保護하고 同時에 西独은 西伯林을 對外的으로 代表한다.
2. 蘇聯은 西伯林에 西方側 3個國의 承認下에 領事館 開設이 許可된다.
3. 西独·西伯林間을 通過하는 貨物은 假令 出發 前에 封印된 것일지라도 檢査對象은 되지 않는다. 또 이 「루트」를 通行하는 個人은 東独國境에서 身分證明書를 提示하는 것으로 足하며 規制는 받지 아니한다.
4. 西独法令은 繼續 西伯林에도 適用되나 西独議회의 西伯林에서의 開會는 許容되지 않는다. 그러나 西独大統領, 政府, 議會, 政黨 및 議會委員會의 會合은 그것이 憲法上의 行爲가 아닌 境遇는 許可된다.



兩獨間遞信，郵便 및 遞信交流 合意書 (1971.9.30)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郵便 및 通信交流에 關한 通信 合意書

1.

1971.9.30 木曜日 東伯林에서 西獨 通信庁의 代表와 東獨通信庁代表間의 協商에 關한 覺書가 署名되었다.

本覺書의 詳細한 內容이 今日 ( 1971.9.30 ) 公開되는 바이다.

2.

西獨은 兩國의 共同努力에 依하여 西獨과 東獨間의 通信業務의 현저한 改善과 西伯林에 있어서의 電話 및 電信業務의 현저한 改善과 期待를 實現시킬 合意에 到達하였음을 滿足하게 生覺하며 確認하는 바이다. 이는 獨逸兩國間의 正常的인 關係를 實現시키는 途上에 있어서의 重要한 一步前進을 意味하는 것이다.

3.

西伯林에 있어서의 電話 및 電信의 擴張에 關한 西獨과 東獨의 通信庁 代表에 依해 取해진 合意는 同時에 1971.9.3의 4 大國協定 二章 C 節 3 項과 同協定의 別紙 III의 4와 5 項의 意味에 있어서 兩主務當局間의 最初의 解決이다.

西獨政府와 東獨政府는 그러기 때문에 本條約의 署名時에 本 條約의 6 項과 7 項이 1971.9.3의 4 大國協定의 別紙 III의 4에 一致한다는 事實에 對한 一致된 見解를 表示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 兩獨 ), 仏蘭西, 美國, 英國 및 蘇聯의 責任部署에 本 條約의 6 項과 7 項을 通告하고 4 大國의 最終議事錄에 記錄하기 為한 그들의 諒解를 求하는 바이다.

4.

西独政府는 本 原案이 署名과 同時에 交通部內에 關한 4大國의 基本協定の 履行의 길이 열리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西独政府는 此際에 西伯林 協商에 關한 問題와 西独과 東独代表者에 依한 同原案의 署名은 交通問題의 協商을 提供한다는 考慮에서 出発한 것이다. 西独政府는 独語 翻譯을 爲한 共同努力에 있어서 一致된 判斷에 到達할 수 있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3大國이 協議한 後에 「바르」國務相은 今日(1971年9月30日)「콜」國務相을 1971.10.1金曜日에 西独과 西伯林間의 市民과 物資의 輸送에 關한 西独과 東独間의 協商을 爲하여 또 西独과 東独間의 交通에 關한 條約을 爲하여 「본」으로 招待하였다.

兩獨間 通行協定 (西獨-東獨 經由-西伯林)

( 1971.12.17 )

( 西獨~西伯林間을 往來하는 民間人들의 通行과 民間物資通過에 관한 兩獨間協定 )

西獨政府와 東獨政府는 歐洲의 緊張緩和에 이바지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1971.9.3 美·英·仏·蘇 4 大國伯林協定이 定한 바에 따라 本 協定을 締結한다.

第 1 條

本 協定의 適用對象은 道路, 鐵道, 水路를 通해 東獨領土를 經由하여 西獨과 西伯林間을 往來하는 民間人들과 民間物資의 通行이며 以下 通行이라 略稱한다.

第 2 條

1. 通行은 더욱 簡便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通行妨害는 없애도록 한다.
2. 通行은 國際慣行에서 보는 바와같이, 가장 簡便하고 가장 迅速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通行에는 最大의 便宜를 提供한다.
3. 本 協定은 別途의 決定이 없는 한, 通行에 대해서는 一般적으로 通用되는 東獨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를 適用한다.

第 3 條

通行을 할 때에는 指定된 越境地點과 通行區域을 利用하도록 한다.

第 4 條

通行하는 者를 위한 「비자」는 東獨의 越境地域 管理事務所에서 發給한다.

本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直行「버스」, 直行列車등의 交通手段을 利用하는 通行에 대해서는 「비자」發給에 있어 最大限의 迅速을 期한다. 「버스」業者 또는 「버스」業者로부터 責任을 받은 者가 團體用「비자」發給에 必要한 團體旅行者 名簿를 提出하면, 当局은 直行「버스」를 利用하는 團體通行에 대해서 團體用「비자」를 發給할 수 있다.

### 第 5 条

1. 物資를 通過시키려 할 境遇에는 公式的인 送品書類를 提出해야 하며, 特定物資의 경우에는 官庁이 發給한 證明書와 許可書를 提出해야 한다.
2. 本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東独当局은 通過物資 그 自體와 物資運送手段에 대한 檢査를 實施한다.
3. 運送手段 또는 貨物이 지닌 特殊한 性格으로 因해 通過地域内에서 公式的인 保護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경우, 東独当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東独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에 依拠하여 東独을 通過하는 物資를 護送할 수 있다. 但, 이때의 護送費用은 運送業者의 負擔으로 한다.
4. 物資輸送時에 出發地의 該當稅關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西独法規가 定한 方法에 따라, 그리고 그 法規의 테두리내에서 該當貨物이 送品書類의 內容과 符合하는가의 與否를 檢査한다. 出發地의 稅關은 關係書類에 押印으로된 官印을 찍어, 위에 說明한 職務를 完璧하게 履行했다는 것을 表示한다.

送品書類가 여러장이고 그중 한장의 書類에 나머지 書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한장의 書類에 押印으로된 官印을 찍는 것으로 足하다.

第 6 条 2 項에 依拠하여 貨物密封을 委任받은 業體가 密封을 했을 경우, 官庁이 이 業體에 使用權을 委任한 印章의 押印은 出發地 稅關의 官印과 同等한 効力을 가진다.

## 第 6 条

1. 東独領土를 通過할 民間物資의 輸送을 위해서는 運送手段 (貨物自動車, 貨物列車, 內陸水路用 貨物船, 容器)을 使用할 수 있다. 위의 運送手段은 出發하기 前에 稅關의 密封, 鐵道 当局 또는 郵便局의 封印, 또는 該当官庁으로부터 委任된 公式密封 (이하 「密封」이라 부른다) 節次를 밟아야 한다.

반드시 許可를 얻어야 通過할 수 있는 物資, 그리고 東独이 輸入을 금지하고 있는 物資의 通過時에는 密封輸送이 特別히 要請된다.

貨物을 전혀 실지 아니한 運送手段도 역시 密封을 할 수 있다.

通過節次를 가장 簡素하고 迅速하며 正確하게 하기 위하여 西独 当局 은 運送手段의 形態로 보아 稅關이 密封하기 좋도록 必要한 裝置 또는 設備을 할 수 있는 運送手段에 대해서는 可能한 最大限으로 密封하기 좋은 形態로 만들도록 措置한다. 그리고 그 運送手段의 用途로 보아 密封裝置를 해도 좋은 運送手段에 대해서는 密封裝置를 갖추도록 措置한다.

密封하기 좋도록 設備을 갖춘 運送手段과 密封裝置를 갖춘 運送手段에 대해서는 東独当局은 그 運送手段의 通行手續에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한다.

2. 技術的인 條件을 감안하여 選定된 모든 部分에 密封裝置를 하고 密封裝置의 數는 必要에 따라 設定하며 密封을 할 수 있는 機關은 다음과 같다.

a) 出發地稅關

b) 西独鐵道局 및 郵便局

c) 該當稅關으로부터 密封作業을 委任받은 企業體, 密封權限을 委任받은 業體로 하여금 本協定의 規定에 따라 適法節次를 밟도록 하기 위하여 該當稅關은 그 業體에 대해 必要한 責任을 賦與하며 業體에게 委任된 密封이 合法的으로 施行되고 있는가를 監視한다.

鐵道局, 郵遞局 또는 委任받은 業體가 密封을 했을 境遇에도 該當稅關은 稅關 自身이 密封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本 協定에 依拠한 모든 責任을 진다.

3. 第2項에 依拠하여 密封權限을 賦與받은 機關은 密封한 部分의 數와 密封標識를 送品書類에 記入하고 署名, 日字 그리고 押印으로된 官印 또는 官으로부터 使用權을 委任받은 「스탬프」를 찍는다.

送品書類가 여러장으로 되어 있고 中 한장의 書類에 나머지 書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한장의 書類에 위의 事項을 記入하는 것으로 足하다.

4. 一般적으로 通用되는 國際慣行에 따라 稅關의 密封節次를 거쳐 貨物을 運搬할 수 있는 運送手段은 모두 稅關密封에 適合한 運送手段으로 認定한다.

陸路를 利用하는 諸般車輛과 內陸水路 內航船의 경우에는 稅關密封承認書를 密封의 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하며, 容器의 경우에는 許可書를 密封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한다. 密封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權限의 범위내에서 해당 運送手段이 稅關 密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檢査한다. 이때 上記者는 유효기간이 지난 稅關密封承認書가 사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해당 運送手段이 그 運送手段의 密封安全度에 관계되는 規定에 符合해야 한다는 점을 留意해야 한다.

5. 東獨當局의 檢問節次는 密封의 檢査와 送品書類의 調查에 국한된다.

6. 密封이 허술하여 더욱 완벽하게 손질을 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판단될 때 東獨當局은 별도로 密封裝置를 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物資의 通過가 遲延되어서는 아니된다.

7. 설치해 둔 密封裝置가 破損되거나 또는 다른 事由로 密封의 安全度에 이상이 생겼을 때 運送責任者는 즉각 이 사실을 東獨當局에 申告해야 한다.

不意의 事故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기타 절박한 동기때문에 貨物을 다른 運送手段으로 옮겨 실어야 할 경우, 運送者는 이 사실을 東独当局에 신고해야 한다. 貨物의 轉積은 반드시 東独当局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박한 위험사태하에서 貨物을 즉시 運送手段으로부터 내려 놓거나 또는 貨物積載場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運送者는 긴급한 安全措置를 강구한 후에 運送手段을 停止시켜 둔 채 이 사실을 東独当局에 보고해야 한다.

위의 경우에 東独当局은 調書를 작성하여 그 調書속에 運送責任者의 人的事項, 運送手段, 事件概要, 緊急措置內容, 그리고 임시로 설치한 密封裝置등을 기입한다. 運送責任者는 그 調書의 1부를 휴대한다. 其他事項에 대해서는 7條를 적용한다.

#### 第 7 条

1. 無蓋車와 같이 第6條 1項에 따른 密封裝置를 할 수 없는 運送手段에 대해서는 검사절차를 送品書類 調査에만 국한시킨다.
2. 運送手段에 積載된 貨物가운데 第6條 1項에서 지적한 物品으로서 수송도중에 내려 놓을 物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또는 그 속에 도중에서 태운 사람이나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가 질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封印되지 않은 運送手段의 내부를 調査할 수 있다. 東独当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東独法規에 의거하여 必要한 範圍内에서 調査를 실시한다. 이 調査에는 16條의 關係法規를 적용한다.

#### 第 8 条

1. 通行路를 운행하는 모든 車輛은 責任保險에 加入해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自動車와 「트레일러」의 運行証 및 운전사의 運轉免許証은 東西獨 雙

方에서 똑같이 인정된다.

3. 自動車의 構造와 裝備가 그 自動車의 運行을 許可한 지역의 該當法規에 抵触되지 아니할 때는 그 構造와 裝備는 他地域에서도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 짐을 실었을 때의 自動車 및 「트레일러」가 東獨規定에 명시된 容量 및 重量規格에 벗어나는 경우 그 自動車와 「트레일러」의 사용을 위해서는 東獨當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 第 9 条

1. 通行에는 個人用的 運送手段을 이용할 수 있다.
2. 本 協定에서 말하는 個人用 運送手段은 規定에 의거하여 運行許可를 받은 車輛으로 貨物輸送車輛 또는 直行「버스」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道路, 鐵道, 水路上으로 貨物에 실어나르는 運送手段의 여러 部分中에 貨物を 실지 않기로 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直行「버스」의 여러 部分中에 사람을 태우지 않기로 되어있는 부분은 個人用 運送手段과 같은 系列에 속한다.
3. 個人用 輸送手段을 이용하는 旅行者에 대한 手續은 지연되지 아니한다. 但, 本 協定 施行上의 例外는 별도로 한다.
4. 旅行者, 旅行者의 運送手段 그리고 旅行者의 個人用 手荷物은 搜索 및 逮捕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며, 도중에서의 使用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但, 16條에서 기술하는 바와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특별한 경우란, 伯林을 향해서 또는 伯林으로부터 直行하는 旅行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고 또 一般的으로 통용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法律에 저촉되는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악용할 의도가 있거나, 惡用하고 있거나, 惡用했다고 疑心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 原則은 個個의 경우마다 그리고 個人별로 따로따로 적용한다.
5. 貨物運送手段의 運轉手와 그의 手荷物에 대해서도 個人用 運送手段을 이용하는 旅行者에 대한 수속과 같은 수속을 적용한다.



## 第 10 條

1. 通行에는 直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本 協定에서 말하는 「버스」는 車體의 構造와 設備로 보아 9명이상(運轉士까지 포함)의 人員을 태우는데 사용되며 또 9명이상이 타기에 적합한 自動車를 의미한다. 直行「버스」는 4項에서 기술한 例外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의 通過 地点 사이에 있는 東獨領土를 한번도 정지하지 않고 運行하여야 한다.
2. 東獨當局은 탑승자의 身分 確認外에 어떤 檢問節次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本 協定施行上의 例外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속의 탑승자는 모두 境界線을 통과할 수 있다.
3. 通行路가 長距離일 경우 東獨當局은 直行「버스」를 위한 휴게소를 설치하며, 西獨當局은 휴게소 설치와 휴게소 밖으로의 통행금지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4. 不意의 事故, 「엔진」故障 또는 天災地變 등의 비상사태가 돌발하여 「버스」가 정거했을 경우, 運轉手와 旅行者는 東獨當局의 허가 또는 요구가 있어야만 「버스」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버스」에 지정된 휴게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버스」運轉士는 비상사태로 인한 運行중지와 그 이유를 東獨當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東獨當局은 運行중지의 이유와 旅行者 運轉士 車掌의 신분을 再調査 할 수 있다.
5. 4項에서 기술한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直行「버스」가 정거했을때 는 탑승자들과 그들의 手荷物 그리고 「버스」는 本 協定 16條가 정한 바에 따라 措置된다.

## 第 11 條

1. 鐵道運輸에 관해서는 協定 雙方의 該當 中央官庁이 交通量을 勘案하여 定期 및 臨時列車의 運行時間表를 合意에 의하여 정한다.
2. 交通量이 非正常的으로 增加할 경우, 鐵道の 可用限界의 테두리에서 列

車를 增加시켜 운행하기로 合意한다.

3. 西独과 東独의 接境線에 있는 駅과 駅사이의 鐵道運行을 위해서 協定 雙方의 該當 中央官庁은 合意에 의하여 關係規定을 定한다.
4. 協定 雙方은 互惠原則에 立脚하여 列車에 탑승한 乘務員들과 列車操縱 者들의 身分證明書를 認定해 주기로 한다.

## 第 12 条

1. 通行에는 直行列車를 이용할 수 있다. 이 直行列車-機關車를 포함- 는 接境通過地点에서 東独領土를 경유하여 다음 接境地点을 통과할 때까지 정거하지 않고 運行한다. 특별히 지정된 駅, 또는 공식적인 運行計 劃書에 明示된 東独地域의 駅에서는 通過 旅行者를 제외한 乘客들은 列 車에 올라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接境通過時에 停車와 기타 있을 수 있는 列車 정거는 꼭 必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東独當局의 檢問節次에는 乘客의 身分確認 이외에 어떤 다른 節次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本 協定 施行上의 例外 경우를 제외하고는 乘客에 대한 檢問은 列車內에서 실시한다.
3. 通過旅行者들은 불의의 사고, 機關故障, 또는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 下에서 東独當局의 요구 또는 허가가 있을 때만 直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東独當局은 乘客의 身分調査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4. 만약 어느 通過旅行者가 3項에서 기술한 이유와는 다른 이유에서 直 行列車로부터 이탈했을 때는 그 旅行者와 그의 手荷物은 本 協定 16條 의 該當規定에 따라 措置된다.

## 第 13 条

1. 貨物輸送을 위해서는 內陸水路船舶을 이용할 수 있다. 通過運航에 사 용되는 內陸水路船은 東独의 內陸水路船運航法規상으로 확정된 要件을 구

비한 것이라야 한다. 위의 要件은 特殊船舶, 물에 띄우는 諸般 器具, 그리고 新造船舶의 이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스포츠」用「보트」, 競漕「보트」, 그리고 기타 船舶들은 甲板에 짐을 실는 積荷用으로 또는 曳船用으로 운항할 수 있다.

2. 「엘베」江 및 內陸運荷에서의 運航을 허가한 運航証과 같은 선박 証憑書類와 內陸水路船의 人員配置에 관한 証憑書類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3. 1項에서 기술한 內陸水路船은 東独当局이 지정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 內陸水路船의 船員들은 특별히 허가된 휴게소에 上陸할 수 있다.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疾病 또는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가 발생했을 경우와 또 東独当局의 요구 또는 허가가 있을 경우, 船員들은 운항을 중단하고 다른 적절한 장소에 上陸한다.

이 경우 船長은 非常事態로 運航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東独当局에 보고해야 한다.

4. 水門, 船舶用起重機, 船舶休憩所를 포함한 水路의 이용에 대해서 東独当局은 東独法規에 의거하여 税金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 第 14 条

1. 東独은 東独領内를 運行하던 運送手段과 通過 旅行者들이 東独領内에서 不意의 災難, 機關故障, 그리고 水上事故를 당했을 경우, 故障修理, 曳引作業, 医療奉仕, 造船所 및 工場「서비스」등 긴급구조를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2. 災難과 事故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必要한 調書를 작성하는데는 東独의 規定을 적용한다. 東独当局은 피해복구에 必要한 調書들을 西独当局에 送付한다.

第 15 条

東独当局은 道路의 狀態, 水深, 水位, 水門開閉時間, 船舶運行禁止区域 등에 관한 慣例的인 通知事項과 通行에 해당 迂回路를 포함하여 通行에 관련된 기타 情報를 西独当局에 通知한다.

第 16 条

1. 本 協定の 発効이후 通行路를 利用하는 通行者가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東独의 法規에 저촉되는 違法行爲 또는 犯罪行爲를 할 때에는 本 協定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의 各 項目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된다.

- a) 실고 가던 물자를 配布하거나 도중에 物資를 積載하는 行爲
- b) 사람을 태우는 行爲
- c) 不意의 재난, 또는 疾病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또는 通行路를 이탈해도 좋다는 東独当局의 許可없이 지정된 通行路를 이탈하는 行爲
- d) 기타 犯罪行爲를 저지를 경우
- e) 道路通行規定에 저촉되는 不法行爲를 했을 경우

2. 本 協定에서 말하는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란, 特定경우에 어떤 일정한 사실 또는 구체적인 실마리를 土臺로 하여 불 때 위에 말한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惡用하려고 기도하거나, 惡用하고 있거나, 또는 惡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通行路를 惡用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東独当局은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東独法規에 의거하여 旅行者들과 그들이 利用하는 運送手段 그리고 그들의 手荷物에 대한 調査를 실시하거나 여행자들을 되돌려 보낸다.

3. 嫌疑事實이 확인되면 東独当局은 通行路 惡用行爲의 輕重에 따라,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공공질서에 관한 東独法規에 의거하여,

- a) 전책하거나, 秩序犯으로 처벌하거나, 訓戒와 벌금을 과하거나, 対象物을

물수한다.

b) 対象物を 差押하거나 押収한다.

c) 対象者を 돌려 보내거나 일정기간동안 通行路의 利用을 不許한다.

d) 対象者を 逮捕한다.

4. 과거의 通行路 利用時에 저지를 犯法行為에 대해서도 3項에 기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3項에 기술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東独의 公共秩序法規에 의거하여 작성한 文書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対象物を 押留하거나, 差押하거나 또는 물수하면 해당자에게 対象物の 明細書를 교부한다.

東独当局은 西独当局에게 여행자의 逮捕, 여행자에 대한 通行路 利用不許 措置 및 還送措置, 그리고 그러한 措置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즉각 통보한다.

6. 通行路를 惡用한 자가 東独領内の 通行地域을 通過한 뒤에 通行路 惡用の 사실이 발견되면 東独当局은 西独当局에게 通行路 惡用の 사실, 証拠資料 그리고 처벌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西独当局은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西独의 公共秩序 法規에 의거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東独当局에 그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第 17 条

西独政府는 本 協定 第16条에서 기술한 通行路의 惡用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範圍内에서 必要한 豫防措置를 강구한다.

西独政府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留意한다.

a) 通行路를 이용하는 사람과 業體에게 本 協定의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周知시킨다.

b) 西独当局이 通行路의 惡用企圖를 사전에 認知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西独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通行路의 惡用을 防止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運送手段의 運行이 安全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들어날 때, 그 運送手段의 境界線 通過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 第 18 条

1. 税金, 使用料 그리고 通行에 利用되는 通行路和 시설 및 設備의 維持費 등 기타 費用은 1年單位의 總額 計算方式으로 西獨이 東獨에게 支払한다.

2. 西獨이 支払할 全體金額 속에는 다음의 金額이 포함된다.

a) 道路使用料

b) 稅収欠損補償稅

c) 「비자」 發給 手數料

d) 「버스」에 대한 定期運行 許可取消과 內陸水路船에 대한 運航許可 發給取消로 인한 東獨財政上的 損害와, 이에 관계되는 기타 財政上的 損害에 대한 보상금

1972年부터 1975年까지의 年間 支払金額은 2億 3,490萬 「마르크」로 확정한다.

3. 西獨은 每年 3.31까지 (최초에는 1972.3.31까지) 東獨이 指定한 西獨銀行에 설치되어 있는 獨逸對外貿易銀行名義의 計定에, 該當年度에 支払할 總金額을 對替한다.

4. 1976年 이후에 支払할 全體金額의 규모와 그 支払이 이행될 期間은 1975年 後半期에 그 동안의 通行量增加를 勘案하여 확정한다.

## 第 19 条

1. 協定雙方은 本 協定の 해석 또는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難關과 見解 差를 해결하기 위하여 委員會를 설치한다.

2. 이 委員會에 참가할 兩側 代表團의 團長은 西獨交通相으로부터 全權을

- 委任받은 代表와 東独交通相의 全權을 委任받은 代表가 각각 말한다.
3. 委員會의 召集은 協定 雙方中 一方의 要請으로 이루어진다.
  4. 會議節次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은 委員會 會議에서 確定한다.
  5. 만약 委員會가 그들에게 委任된 見解差 調整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雙方은 이 문제를 각각의 政府로 넘긴다. 東西独 政府는 協議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한다.

#### 第 20 条

密封裝置를 하기에 적합하고 또 密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密封을 하지 않은 運送手段에 대해서는 第7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第 21 条

本 協定은 1971.9.3의 美·英·仏·蘇 4 大國伯林協定과 동시에 効力을 發生하며 그 協定の 有効期間동안 계속해서 有効하다.

1971. 12. 17 「본」

( 独逸語로 된 2 통의 原本을 작성함 )

西独政府를 대표하여

東独政府를 대표하여

「에곤·바르」

「미카엘·콜」 博士

兩 獨 間 通 行 協 定 ( 西 伯 林 - 東 獨 )  
( 1971.12.20 )

< 旅 行 및 訪 問 往 來 의 簡 素 化 와 改 善 에 관 한 伯 林 市 議 會 와 東 獨 政 府 間 의 約 定 >

1971.9.3 日 字 美 · 英 · 仏 · 蘇 · 4 大 國 伯 林 協 定 의 內 容 에 따 라 緊 張 緩 和 를 이 룩 할 목 的 으 로 伯 林 市 議 會 와 東 獨 政 府 는 西 伯 林 에 常 住 하 는 市 民 들 의 旅 行 및 訪 問 往 來 를 다 음 과 같 이 簡 素 化 하 고 改 善 한 다 는 데 합 의 한 다 .

第 1 條

- (1) 西 伯 林 에 常 住 하 는 市 民 들 은 1 年 에 한 번 또 는 여 러 번 에 걸 쳐 30 日 限 度 내 에 서 방 문 을 목 的 으 로 西 伯 林 에 인 접 한 地 域 과 인 접 지 역 이 아 닌 東 獨 內 의 地 域 을 여 행 할 수 있 다 .
- (2) 1 項 의 여 행 은 그 여 행 사 유 가 人 道 的 , 家 族 的 , 文 化 的 , 觀 光 의 動 機 일 때 허 가 된 다 .

第 2 條

- (1) 西 伯 林 常 住 者 가 東 獨 및 東 伯 林 으 로 들 어 갈 때 는 本 人 의 신 분 증 명 서 와 通 行 証 이 필 요 하 며 西 伯 林 으 로 귀 환 할 때 는 東 獨 發 給 의 歸 還 証 이 必 要 하 다 . 필 요 한 증 명 서 는 東 獨 이 지 정 한 해 당 관 청 에 신 청 한 다 .
- (2) 어 린 이 를 동 반 할 경 우 에 는 親 權 者 의 신 분 증 명 서 에 그 어 린 이 의 人 的 事 項 이 기 재 되 어 있 거 나 또 는 어 린 이 자 신 이 자 기 의 신 분 증 명 서 나 사 진 증 명 서 를 소 지 해 야 한 다 . 특 수 한 例 外 의 경 우 ( 家 族 訪 問 , 休 暇 동 안 의 滯 在 ) 에 는 19 세 까 지 의 어 린 이 는 동 반 하 는 成 人 없 이 도 東 伯 林 및 東 獨 을 방 문 할 수 있 다 .
- (3) 신 분 증 명 서 를 소 지 하 지 아 니 한 西 伯 林 常 住 者 는 旅 行 時 에 伯 林 市 가 規 定 한 절 차 에 따 라 발 급 한 증 명 서 류 를 휴 대 해 야 한 다 . 旅 行 者 의 신 분 이



확실할 때는 東独当局도 그에 해당하는 書類를 신청에 따라 有料로 발급할 수 있다.

### 第 3 条

- (1) 西伯林常住者が 東伯林으로 들어갈 때는 東独이 마련한 接境地域檢問所를 통과해야 한다.
- (2) 여행허가서나 또는 東独当局이 확인한 전보를 근거로 西伯林 常住者は 接境地域 檢問所에서 通行証을 發給받을 수 있다.

### 第 4 条

- (1) 긴급한 家族的인 용무나 人道的인 動機가 있을 때, 西伯林 常住者は 비록 1条에서 허가한 방문허용기간이 이미 완전히 消盡되었을 경우라도 東伯林으로 여행할 수 있다.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는 관청에서 확인한 電報를 근거로하여 接境地域檢問所에서 발급한다.
- (2) 1条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社会的, 學術的, 經濟的, 商業的, 文化的, 用務가 있을 때도 여행이 허가된다.
- (3) 1項에서 기술한 여행은 東独의 여러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一括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3個月 이내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차례에 나누어 실시할 여행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第 5 条

- (1) 西伯林 常住者は 東独旅行局과 独逸旅行社間에 맺은 協約에 의거하여 觀光旅行者의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東独 및 東伯林을 여행할 수 있다. 그들은 여러날이 걸리는 一週旅行, 当日旅行, 週末旅行 그리고 순방여행등에 참여할 수 있다. 休養旅行, 温泉療養, 특별행사참관도 合意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2) 西伯林常住者が 東独旅行局的 觀光計劃과는 관계없이 1日觀光만 하고 当日

- 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西伯林에 있는 「방문 및 여행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旅行許可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訪問 및 旅行事務所」는 旅行許可書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한다.
- (3) 西伯林 常住者는 巡訪旅行用으로 허가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4) 西伯林的 버스会社는 接境通過를 허가받을 수 있다.

#### 第 6 条

本約定의 施行으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왕래의 사정을 더욱 好轉시키기 위해 約定締結 双方은 本約定을 토대로 하여 한결음 진보된 旅行의 簡素化를 合意로 결정할 수 있다.

#### 第 7 条

約定双方은 本約定과 本約定의 施行細則을 각자의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周知시키며 約定과 施行細則이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第 8 条

- (1) 双方은 委員들을 임명하여 이 委員들에게 本約定의 적용과 施行過程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見解差와 難関을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 (2) 委員會의 召集은 一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이 委員들은 協調者를 동반할 수 있으며 協調者에게 委員의 權限을 위임할 수도 있다.
- (3) 委員들이 해결할 수 없는 問題는 東独政府와 西伯林市議會로 넘기며 이때 東独政府와 西伯林市議會는 協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 第 9 条

本約定은 1971.9.3日字 美·英·仏·蘇 4 大國 伯林協定과 동시에 効力を 發生하며 그 協定の 有効期間과 동일한 有効期間을 가진다.

第 9 条

本約定은 1971.9.3日字 美·英·仏·蘇 4 大 国 伯 林 協 定 과 동 시 에 効 力  
을 發 生 하 며 그 協 定 의 有 効 期 間 과 동 일 한 有 効 期 間 을 가 진 다 .

1971.12.20 獨 逸 語 로 된 2 통 의 原 本 作 成

西 伯 林 市 議 會 를 대 표 하 여

東 獨 政 府 를 대 표 하 여

울 리 히 밀 러

퀸 터 코 르 트

## 兩獨間一般通行協定

( 1972.5.12 )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歐洲緊張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여 獨立國家 상호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兩國의 正常的이고 友好的인 關係를 達成하고자하는 노력으로 協의를 보고 이 條約을 締結하는 바이다.

이는 兩條約當事國의 國境을 왕래하는 人的 또는 物的인 交通問題를 그들의 領土內에서 規制하려는 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 I. 一般協定

#### 第 1 條

- (1) 條約의 대상은 本條約에서 허가되고 등록된 교통수단을 통하여 道路, 鐵道, 水路, 相互往來 交通과 通過交通(以下 交通으로 呼稱), 特정한 交通수단 이용에 관한 內國的 법규정은 抵觸을 받지 않는다.
- (2) 條約當事國은 그들의 영토상의 또는 領土를 통과하는 交通에 있어서 相互性과 非差別性을 原則으로한 보편적인 국제간의 慣例에 일치하여 加급적 廣範圍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또 간소화하며 또 加급적 合理的으로 造成시킬 義務가 있다.

#### 第 2 條

交通은 本條約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한 그 領土가 사용되는 해 당국의 法律에 規制를 받는다.

#### 第 3 條

- (1) 交通參加者는 當事國이 公共交通을 위하여 허가한 交通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條約當事國의 一國이 自己領土를 통과하는 特정한 交通노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는 이 交通을 加급적 合理的으로 調整한다는 規定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 第 4 條

交通은 예정된 越境地點에서 이루어진다. 변경을 위하여 서독交通성과 동독의 交通성이 事前에 妥協을 한다.

#### 第 5 條

다른 條約당사국에 의하여 發行된 交通수단의 運行을 證明하는 官認書類와 자기 영토내에서 허가되고 등록된 交通수단을 위한 官認書類는 20條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以上 相互間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交通참가자는 條約국의 주무기관에 의하여 國境通過 證明을 위하여 公的으로 발급된 人的인 서류에 의하여 신분이 證明된다.

#### 第 6 條

- (1) 交通과 관련하여 徵收되는 公課金이나 手数料에 관하여는 一括計算으로 할 수 있다.
- (2) 交通참가자가 휴대하는 旅行使用品과 소비품은 入國 및 出國 공과금이나 類似한 공과금은 徵收되지 않는다.

#### 第 7 條

- (1) 條約當事國의 雙方은 그들의 영토상에서 발생하는 交通事故나 負傷者에 있어서 ฆ우, 事故車의 除去, 醫務的治療, 修理 등의 因조를 한다.
- (2) 負傷者 發生이나 事故時에는 발생 장소의 법규정이 사고의 조사나 필요한 調書의 작성에 適用된다. 負傷者의 處理를 위하여 필요한 調書는 彼此 이를 통지한다.

## 第 8 条

運行에 관련된 도로의 傷害, 高速道路의 장거리 回轉, 重要長距離道路, 水深, 水位, 水門管理時間, 船舶運行禁止, 기타정보등에 관하여는 상호간에 통보한다.

## 第 9 条

運行을 簡素化하고 합리적인 조성을 위하여 조약당사국은 工業의 計劃과 시행에 관하여는 他方의 조약당사국의 국경통과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통고하고 요건에 대응하여 意思의 결정을 한다.

## Ⅱ. 鐵道運行

### 第 10 条

- (1) 列車運行에 있어서 正規列車의 旅客列車組成등은 국제열차시간표協定을 基礎로한 交通協定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거나 조약당사국의 主務庁間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2) 例外的으로 過大한 교통량이 出現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운영능력의 範圍內에서 차량의 增量을 합의할 수 있다.

### 第 11 条

- (1) 旅客이나 貨物의 運送을 위하여는 鐵道旅客과 貨物交通에 관한 國際協定 ( CIV ) 과 그의 보충협정이 通用된다.
- (2) 大貨物運送을 위하여 鐵道大貨物 協定 ( CIM ) 에 관한 국제협정과 그의 補充 協定이 通用된다.

### 第 12 条

- (1) 本條約에서 限界区域이라고 하는것은 당사국 国境域간의 鐵道區間 사이에 所屬된 部署를 포함한 ( 중요치않음 ) 것을 말한다.

- 각 條約当事국에 놓여있는 이 路線의 區間은 해당국의 규정의 適用을 받는다. 이는 역시 鐵道運營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例外規定에 관하여는 별도로 合意를 보아야한다.
- (2) 各 鐵道當局은 자기 구역내의 철도시설을 維持, 修理, 改善한다. 本條約에서 例外事項이 규정되어 있지않으면 別途로 합의를 볼 수 있다.
- (3) 條約当事국의 주무 中央官庁은 시설의 변경 예정이나 限界地域이나 國境地域의 기술상의 변경을, 이것이 운송의 進展에 영향을 주는한, 상호간 통고를 한다.
- (4) 兩鐵道當局은 교통에 영향을 주는경우에는 限界區域에 있어서의 維持, 修理, 改善작업의 時點에 관하여 합의한다.
- (5) 兩鐵道當局은 他條約國境域內에 있는 安全裝置나 通信裝置의 修理에 관하여 합의한다.
- (6) 兩鐵道當局 철도영업소간의 信號는 오직 철도업무의 通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電線은 鐵道自体나 公共的인 網에 연결될 수 없다.
- (7) 限界地域의 鐵道運行에 관한 個個의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본다.

### 第 13 条

- (1) 乘務員의 증명서는 彼此에 認定한다.
- (2) 他條約國 영토에 근무케 되는 철도당국의 從業員은 그들의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그들은 條約当事國 철도당국의 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은 業務遂行에 필요한 소비품이나 기타 消費品을 關稅나 公課金없이 攜帶할 수 있다. 國境駅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休息處가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도움이 주어진다.

### 第 14 条

- (1) 東獨은 貨物運送이 이지역의 「카리」生産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독 국영철도의 화물차 운행<서독영토내에 位置하는 「헤링겐」(Herin-

gen), 「베라」(Werra)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오는>이 동독영토의 「게라트마겐」(Geratmagen)과 「단크마르스칸젠」(Dankmarskansen)을 통과하는것을 허가한다. 동운행의 事業上 或은 운영기술상의 條件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를 본다.

- (2) 「헤링겐」(Herringen), 「베라」(Werra)로부터 東獨을 위한 「카리」운송이나 第3 國으로 향하는데 있어 東獨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國境 駅「게르스트마겐」(Gerstmagen)을 직접 통과한다. 「게르스트마겐」(Gerstmagen)에 있어서 國境 手續은 「젠트마겐」(Sendmagen)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國境都市(邑)「베브라」(Bebra)(서독)「게르스트마겐」(Gerstmagen)(동독)을 통과하는 것이다.

#### 第 15 条

- (1) 東獨은 「오베르스툴」(Oberstul-서독)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오는 西獨鐵道運行이 自國의 영토 일부를 통과하는 것을 許可한다. 상기 허가내용은 同區建物, 附帶施設등에 필요한 敷地의 無償利用을 포함한다. 이 區間의 東獨鐵道는 西獨鐵道가 自己負擔으로 補修하고 管理한다. 「베브라」(Bebra)「게르스트마겐」(Gerstmagen)간의 越境은 이로 인하여 阻害되지 않는다.
- (2) 동독은 「슈베브타」(Schwebda-서독)과 「아이드라」(Eidra-서독)간의 서독철도의 운행이 1條에서 합의한바와 같은 條件下에 運行이 되는 것을 허가한다.

#### 第 16 条

서독은 동독철도가 서독영내에 있는 「바르타」(Wartha), 「베라」(Werra)區간의 2次線 통과를 허가한다. 이 區間은 동독철도에 의하여 그의 費用負擔으로 運營, 補修維持되고 그의 従業員에 의하여 管理된다.

허가내용은 同區間建物 및 附帶施設에 필요한 敷地의 無償利用을 包含한다.



### Ⅲ. 国内船舶運行

#### 第 17 条

- (1) 條約当事国은 自己의 領土內에 있어서 迅速하고 經濟的인 船舶運行을 爲한 前提가 주어지도록 主선 한다.
- (2) 相互利益性을 基調로 하여 水路의 運行을 爲한 許可는 要請되지 않는다.

#### 第 18 条

- (1) 他方의 條約國의 港口와 積荷場 (Kabotage) 間의 貨物의 運送은 主務 當局의 特別한 許可가 必要하다.
- (2) 萬一 通過運行의 歸路에 條約相對國에 貨物을 運送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 第 19 条

- (1) 碇泊場所가 規定되어 있는 境遇에는 第 17 条 1 項에 準한 適用을 받는다. 이를 爲하여 特別히 許可된 碇泊場所에서는 船舶의 乘務員에게 上陸이 保障된다.
- (2) 碇泊所가 規定되어 있는限 事故, 運營의 中斷, 病 및 自然의 災害等과 같은 非常的인 事故時에 또는 該當 條約國의 主務當局의 許可와 要請에 依하여 運行中止나 上陸이 다른 適當한 場所에 許可된다. 船長은 非常事故로 因한 運行中止에 關하여 또는 이에 適當한 理由를 主務當局에 通告해야 한다.
- (3) 高位 乃至 低水位, 凍結, 妨害等으로 因하여 繼續運行이 不可能하거나 制限을 받는 境遇에는 相互間에 貨物의 移轉積載의 可能性이나 内國船舶의 荷重의 輕減에 關한 保障을 提出한다. 豫定된 移轉積載나 荷重의 輕減은 主務當局에 通告되어야 하며 그의 立會下에서만 可能하다.

## 第 20 条

- (1) 5 条에 依한 主題의 相互間의 設定은 内国船舶運行에 있어서 「엘베」江과 内陸 運河를 爲하여 發給된 證明書에 限하여 有効하다. 東獨의 船舶證明書는 오직 水路를 爲하여서만 認定이 되는데 이는 西獨의 内国水路運行規定의 有効範圍에 屬하는 것이다. 西獨의 船舶證明書는 東獨의 水路에서 認定이 된다.
- (2) 一方의 条約國의 内国水路를 他方 条約國의 個個의 船舶이나 船舶團이 過度히 運行할 때는 主務當局의 同意가 必要하다. 過大한 運行이란 水路利用을 爲한 條約當事國의 法規定에 確定된 測定值를 超過하는 個個의 船舶運行이나 船舶團의 運行을 말한다.
- (3) 水泳道具나 水泳物体等은 輸送되고 新造船舶, 競技用「보트」나 其他의 水路運行手段은 積載되거나 견인되어 運送될 수 있다.
- (4) 運行路線이 規定되어 있는 限 이 路線을 벗어 나는 境遇에는 主務當局의 許可가 必要하다.

## 第 21 条

国内船舶은 萬一 이들이 貨物輸送을 爲한 一般의 慣例에 따라 通関閉鎖로 許可된 경우에만 通関閉鎖가 保障된 것으로 認定된다. 通関閉鎖가 保障된 証拠로서 通関閉鎖認定이 認定된다.

## 第 22 条

水門, 船舶提高(引揚)施設, 船舶碇泊場을 包含하는 水路의 利用時에는 그 곳의 有効한 法規定에 依하여 公課金이나 手数料가 徵收된다.

## 第 23 条

条約當事國은 「엘베」강의 472.6km에서 566.3 km 區間の 蹉跌없는 内国船舶運行을 保障한다.

#### IV. 自動車 運行

##### 第 24 条

- (1) 本條約에서 産業上의 人間運送이라 함은 自動車 或은 「트레일러」에 의한 人間の 有料運送이나 事業上의 運送을 意味한다.
- (2) 本條約上에 있어서 自動車에 의한 貨物의 輸送이라 함은 産業上의 貨物運送이나 自動車와 「트레일러」에 의한 工場間의 運送을 意味한다.

##### 第 25 条

- (1) 各 條約当事国은 臨時運行에 있어서 人間の 産業上의 運送을 爲한 許可手續과 自己領土内 또는 自己領土를 通過하는 自動車에 의한 物資의 輸送을 爲한 許可手續의 適用에 關한 法律을 相互性의 基礎로 行使하지 않는다.
- (2) 一方의 條約当事国の 企業체는 他方 條約国の 領土上에서 或은 領土를 通過하여 「버스」路線運行에 의한 人間の 産業上의 運送을 爲하여는 그 나라의 運送許可書가 必要하다.
- (3) 双方 條約当事国은 自己領土内에서 雇傭되는 産業人口의 輸送이나 物資의 輸送을 爲한 許可의 權限을 이것이 自國의 領土内에서 遂行될때 保有한다.

##### 第 26 条

自動車の 型이나 裝備가 許可地域에서 有効한 法律에 合당한 以上 相互間 充分한 것으로 認定이 된다.

自動車와 「트레일러」(積載量을 包含하여)가 條約当事国の 法定規格이나 重量을 超過한 때에는 그 條約当事国の 領土로 向한 運行이나 通過를 爲하여 主務当局의 特別許可가 必要하다.

## 第 27 条

運送에 사용되는 義務保險에 加入되어 있어야 한다. 自動車事故에 依한 損傷의 決濟는 特別한 處理法에 依한다.

## 第 28 条

道路運送에 있어서 物資의 輸送을 爲하여는 下記事項이 適用된다.

- 一 國際商品 輸送을 爲한 1959.1.15의 通關協定 ( Carnets TIR )
- 一 道路運送上의 國際危險物取扱 ( ADR )에 關한 1957.9.30의 歐洲協定

## V. 海 運

### 第 29 条

- (1) 條約當事國은 運送과 轉載積載를 爲하여 港口나 海運의 他施設의 相互間 利用을 可能케 하기 爲해 協定한다. 條約當事國은 그들의 港口에서 他方條約國의 船舶을 他國船舶과 같은 條件으로 取扱할것을 保障한다. 이것은 特別히 物資發送手数料나 港口公課金の 徵收, 港口의 自由로운 運行과 그 利用에 適用된다.
- (2) 一方의 條約當事國의 國旗를 揭揚한 海運船舶은 他方의 條約當事國으로부터 或은 그곳으로 向한 物資의 輸送을 할수가 있다. 他方의 條約當事國의 港口나 積載場間의 物資의 運送 ( Uobotage )에는 主務當局의 特別한 許可를 必要로 한다.

### 第 30 条

- (1) 自國法律에 依하여 國籍證明을 爲한 規定上의 書類를 持參하는 船舶으로서 一方의 條約當事國의 國旗를 揭揚한 船舶은 同條約當事國의 船舶으로 看做된다.
- (2) 合法的으로 發給된 船舶測定證書를 保有한 船舶은 再次測定이나 事後測

定이 免除된다.

(3) 港口 使用料의 計算은 船舶測定證書에 記載된 容積을 根拠로 한다.

### 第 31 条

一方의 条約当事國의 領海上에서는 他方条約國의 船舶은 同船舶이 掲揚하고 있는 國旗의 國家에서 有効한 乘務員, 裝備, 施設, 船舶安全을 爲한 手段, 測定, 海運性能等에 關한 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 VI. 終結規定

### 第 32 条

- (1) 本条約의 適用이나 解釋上 異見이 抬頭되는 境遇에는 이것은 兩条約當事國의 委員會에 依하여 解決 된다.
- (2) 委員會의 代表團은 西獨의 交通長官의 全權代表나 東獨 交通長官의 全權代表에 依하여 引率 된다.
- (3) 同委員會는 条約當事國의 一方의 提案으로 召集된다.
- (4) 進行上의 詳細한 點은 委員會에 依하여 定하여 진다.
- (5) 同委員會가 한가지의 異見을 解決치 못하는 경우에는 同 問題는 各國의 政府에 移管되며 政府는 이를 協商을 通하여 處理한다.

### 第 33 条

本条約은 無期로 締結된다. 同条約은 發効後 5年後에 每年의 年末前 三個月間의 期間을 가지고 解約할 수 있다. 本条約은 相互間에 覺書交換에 依하여 本条約의 發効를 爲한 國內的인 前提條件이 充足되었음을 通告하는 날에 發効된다. 그 証拠로 兩國의 全權代表는 本条約에 署名한다.

( 獨語로 된 二枚의 原本 )

獨逸聯邦共和國

獨逸民主共和國

獨·蘇條約 (1970. 8. 12 締結 1972. 6. 3 批准書交換)

前 文

歐洲와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強化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전념하고, 「UN」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諸國家들 간의 平和的 協調가 全世界人들의 깊은 熱望과 平和에서 오는 全般的 利益에 合당한 것임을 確信하고 있는 本 條約의 締約當事國들은 過去(特히 外交關係 樹立에 關해 1955. 9. 13 에 締結된 協定)에 締結되고 實現된 問題들이 兩國間的 相互關係를 發展시키고 強化하는데 有利한 諸 條件들을 조성했음을 인식하며, 兩國間的 利益을 위해 經濟, 科學, 技術 및 文化關係를 包含한 두나라간의 協調를 改善 및 強化하기 위한 決意를 條約形式에 立脚하여 表明하고자 熱望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第 1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聯邦 兩國은 그들의 政策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目的이 國際平和維持와 緊張緩和 達成에 있다고 看做한다.

兩國은 歐洲事態의 正常화와 全歐洲國家들 간의 平和的 關係의 發展을 鼓吹시키며, 歐洲의 現存事態를 이에 關한 始發點으로 삼을 의향임을 宣言한다.

第 2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歐洲 및 國際安保와 關聯한 諸 問題와 더불어 相互關係에 있어서 「UN」憲章에 명시된 諸 目的과 原則을 龜鑑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兩側은 그들 사이의 紛爭原因이 되는 諸 問題를 오직 平和로운 手段을 통해서 解決할 것이며, 그들의 相互關係나 歐洲 및 國際安保에 關한 諸 問題에 있어서 「UN」憲章 第2條에 따라 武力威脅이나 武

力行使에 호소하지 않기로 誓約한다.

### 第 3 條

上記 目的과 原則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国과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은 歐洲平和가 現国境線들에 대해 아무도 어떤 試圖를 하지 않는다는 條件下에서만 保障될 必要가 있다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그들이 全폭적으로 모든 歐洲諸国의 現国境線 테두리 안에서 領土權을 尊重하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그들이 어떤 國家에 대해서도 아무런 領土權 主張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將來에도 그런 要求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調印当日이나 將來에 있어서 兩側은 모든 歐洲諸国의 国境線을 「폴란드」 東部国境線인 「오데르·나이세」線 및 西独과 東独間 国境線을 포함한 當條約調印 当日에 規定된대로 不可侵인 것으로 看做한다.

### 第 4 條

独逸聯邦共和国과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間的 當條約은 이보다 앞서 兩側이 調印한 雙務條約 또는 多邊條約에 抵触되지 않는다.

### 第 5 條

當條約은 批准을 위해 提出될 것이며 (空白一場所未定)에서 거행될 條約批准文書交換当日에 生效된다.

獨·波條約 ( 1970 . 11 . 18 締結, 1972 . 6 . 3 批准書交換 )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폴란드」가 最初의 犠牲者였으며 歐洲諸國民의 苦惱를 초래했던 第2次大戰이 끝난지 25年餘가 지난 時點에서 兩國의 新世代에 平和로운 將來를 確約하고, 이들 사이에 平和共存을 爲한 永久한 礎石의 建立과 正常 善隣關係의 發展을 祈願하며, 永続的인 歐洲平和와 安全을 強化하기를 熱望하여, 現歐洲 全國境의 不可侵, 領土의 保存, 主權의 尊重이 이의 基礎的 條件임을 確認한다.

第1條

(1)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1945. 8. 2의 「포츠담」協定 第IV章에서 定한 「오데르·나이세」國境線이 恒久的인 「폴란드」西部國境이라는 것을 同意한다.

(2) 條約 當事國은 現在나 將來에 있어서 現 國境線의 不可侵을 宣言하며, 領土保全의 無制限이 尊重되어야 할 것임을 宣言한다.

(3) 條約 當事國은 相互 領土要求를 하지 않을 것이며, 將來에도 이러한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 것을 誓約한다.

第2條

(1)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相互關係와 歐洲 및 世界의 安全을 鞏固히 하는 問題에 관하여 UN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따르며,

(3) 따라서 UN 憲章 第1 및 第2條에 依拠, 모든 紛爭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것이며, 歐洲 및 世界의 安全, 相互關係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 武力이나 威力을 行使함을 삼가한다.

第3條

(1) 條約 當事國은 本 條約이 굳건한 基礎를 다진 相互關係의 完全한 正常化와 廣範圍한 發展을 促進한다.

(2) 兩國은 經濟, 科學, 技術, 文化, 其他 分野에서의 協調 擴大가 相互關



心事라는 것에 同意한다.

第4條

本 條約은 이보다 앞서 兩側이 締結한 國際間的 雙務條約 또는 多邊條約에 抵触되지 않는다.

第5條

當 條約은 批准을 爲해 提出될 것이며 「本」에서 거행될 條約文書 交換日字에 發效된다.

이를 確認하기 爲하여 兩側 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한다.

「바르샤바」에서 同一한 效力을 가진 獨逸語 및 「폴란드」語의 2個의 正本이 作成된다.

獨逸聯邦共和國을 爲하여

「폴란드」人民共和國을 爲하여

## 東西獨 基本條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關係의 基本에 關한 條約  
1972.11. 8 조인)

締約국은

平和 維持에 對한 責任에 留意하고, 歐羅巴에 있어서 緊張緩和와 安全保障에 寄與하기를 바라고,

現 國境內에서 歐羅巴의 모든 國家의 國境의 不可侵犯 領土保存과 主權에 對한 尊重이 平和를 위한 基本的 條件임을 認識하고,

따라서 二個의 獨逸國家는 그들의 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使用을 抑制하여야 함을 認定하고, 歷史的 事實에 基礎를 두고 또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國民에 關한 問題를 包含하는 根本的 問題에 對한 相異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二個의 兩獨逸國家에 있는 人間의 福祉를 위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協力を 위한 條件을 造成할 것을 希望하며,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는 相互間에 平等의 基礎위에서 相互間正當의 善隣關係를 發展시키기로 한다.

第2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는 國際聯合 憲章에 規定된 諸目的 原則 특히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存의 尊重, 自決權, 人權의 保護 및 無差別에 關한 諸目的과 原則에 따르도록 한다.

第3條

國際聯合의 憲章에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는 兩國間的 紛爭을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서만 處理하도록 하고,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抑制하도록 한다.

兩國은 現在와 將來에 있어서 兩國間의 現存하는 境界線의 不可侵을 再  
確認하여 兩國의 領土의 保存을 無條件 尊重할 義務를 진다.

#### 第 4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의 어느便도 다른便을 國際적으로  
代表하거나 다른 便을 爲하여 行動할수 없다는 立場을 取한다.

#### 第 5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歐羅巴諸國間의 平和的 關係를 增進하  
고 歐羅巴에 있어서의 安全과 協力에 寄與하기로 한다.

兩國은 參與하는 國家의 安全에 不利를 주지않고 歐羅巴에 있어서의 兵  
力과 軍備를 縮小하는 努力을 支持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有效한 國際的 統制下에서 全般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小를 目標로 하여, 國際的 安全에 寄與할 特히 核武器와 大  
量 虐殺武器 分野에 있어서의 軍備制限과 軍備縮小 努力을 支援하기로 한  
다.

#### 第 6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 各者의 主權이 各者의 國土에 限  
定된다는 原則에 立脚한다.

兩國은 兩國의 對內 및 對外問題에 있어서 各國의 獨立과 自主性を 尊  
重한다.

#### 第 7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의 關係를 正常化하는 過程에 있  
어서 實際적이고 人道主義的 諸問題를 規定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兩國은 이 條約을 基礎로 하여 또한 兩國의 共通된 利益을 爲하여 經  
濟, 科學, 技術, 交通, 司法, 公訴, 郵便, 通信, 電話, 保健, 文化, 運動競技, 環  
境保護에 關한 分野 및 其他分野에 있어서 協調關係를 開發하고 增進하기  
위하여 諸協定을 締結하기로 한다. 그 具體的인 內容에 關하여서는 附屬  
議定書에 合意되었다.

第 8 條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常駐 代表部를 交換하기로 한다. 同 代表部設置에 關係되는 具體的인 問題는 別途로 規定하기로 한다.

第 9 條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이 條約이 兩國에 依하여 이미 締結 되었거나 兩國에 關係되는 兩者 또는 「多者間」의 國際條約이나 協定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合意하였다.

第 10 條

이 條約은 批准을 要하며 이에 關한 覚書는 交換한 다음날부터 發效하다. 以上の 証拠로서 兩締約國의 全權代表는 이 條約에 署名하였다.

1972 年……에 伯林에서 独逸語로 原本 2 通을 作成하였다.

独逸聯邦共和国을 爲하여

独逸民主共和国을 爲하여

1. 附屬議定書

< 独逸聯邦共和国 및 独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 基本에 關한 條約에 關하여 >

第 3 條에 關하여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國은 兩國政府가 任命한 者로 構成된 委員會를 組織하기로 合意한다.

委員會는 兩國間에 現存하는 國境線의 劃定을 再檢討하고 必要에 따라 改正 또는 補完하며 同時에 國境線에 關한 必要한 文書를 作成할 것이다. 同時에 委員會는 其他 國境線에 關하여 現存하는 問題, 例컨대 水利, 「에너지」供給 및 破壞防止와 같은 問題를 規定하는데 寄与한다. 委員會는 條約이 署名된 後 이를 始作한다.

第 7 條에 關하여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國間의 貿易은 現存하는 協定の 基礎위에서 發展된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國은 經濟關係의 繼續的인 發展을 增進하며 지금까지의 規定을 調整하고 貿易構造를 改善함을 目的으로

長期的인 協定을 締結할 것이다.

②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側의 利益을 爲하여 科學 技術面에서 協調를 發展시키고 必要한 協定을 締結할 意思를 表明한다.

③ 1972. 5. 26 字 協定으로 始作된 交通分野에 있어서 協調는 擴大되고 深化된다.

④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法律當事者의 利益을 爲하여 特別民法·刑法分野에 있어서의 司法 公訴를 協定으로 可能한 限 簡素化하고 合目的的인 것이 되도록 規定할 意圖를 闡明한다.

⑤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万国郵便聯合 및 國際電氣通信聯盟規定을 基礎로 郵便電信電話協定을 締結하는데 合意한다. 兩國은 이 協定을 万国郵便聯合과 國際電氣通信聯盟에 通告한다. 이 協定에서는 現存하는 合意事項과 兩側의 有利한 節次가 包含된다.

⑥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本件 分野에 있어서 協調할 關心을 表明한다. 兩國은 該當된 協定에서 可能한 与件 範疇內에서의 醫藥品, 特殊病院 및 診療所의 治療方法의 交換도 規定이 되기로 合意한다.

⑦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文化的인 協調를 發展시킬 意圖를 가지고 있다. 이 目的으로 兩國은 政府間 協定을 締結할 것이다.

⑧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條約이 署名된 後 運動競技 關係增進을 위한 合意를 通하여 關係運動競技機關을 支援할 用意를 強調한다.

⑨環境保護 分野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相對方을 위한 損害 및 危險防止를 위하여 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⑩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書籍, 雜誌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죤」製作品의 相互間의 輸入을 擴大할 目的으로 交渉을 進行할 것이다.

⑪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關係있는 사람들의 利益을 위하여 非商業的인 送金 및 清算을 規定할 交渉을 開始할 것이다.

여기에서 兩國은 相互間의 利益을 위하여 社会的인 意義를 가지는 短期的인 契約締結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 2. 議定書註釈

財産問題에 對한 相異한 法的 見解때문에 이것은 條約으로서 規定될 수 없었다.

## 3. 議定書에 關한 說明

獨逸聯邦共和國은 議定書에 關해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國籍問題는 條約에 規定되지 않았다.」

獨逸民主共和國은 議定書에 關해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同條約이 國籍問題의 規定을 容易하게 할것이라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附 錄 2

東 西 獨 關 係 的 現 況





## 東西獨關係의 現況

### 1. 國境問題와 國境委員會의 業務

國境委員會는 東西獨 基本條約에 의하여 設立되었는데, 이 委員會는

- 兩獨間의 境界標識板을 点檢하고 必要時에는 新設하거나 補修하며, 또한 境界線에 관한 必要書類를 作成하며
- 同時에 境界線과 關聯된 其他의 諸問題에 對한 規則制定役割을 하기로 되어 있다.

國境委員會는 이 任務를 遂行한 다음 兩獨政府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하였는데, 이 報告書는 兩獨政府에 의해 하나의 議定書로서 承認되었고, 이 議定書는 1978年 11月 29日 「本」에서 署名되었다. 이 議定書에는 이른바 “國境文書”가 添附되어 있는데, 이 文書는 多數의 國境地圖와 境界線에 관한 說明들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國境委員會가 1975~1976年에 걸쳐 作成한 것이다.

그러나 「엘베」江의 境界線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國境委員會에서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地域問題는 一括하여 保留된 狀態에 있으며, 東西獨 基本條約의 指針도 아무런 變動이 없기 때문에 國境委員會에서의 討議도 適當한 時期에 가서 繼續하기로 되어 있다. 上記 議定書에 대한 覺書에서 兩獨은 將次 이 問題에 대한 뚜렷한 解決策이 나올때까지는 兩側이 취할 수 있는 모든 措置의 難關을 克服하는데 모든 努力을 傾注하자는 立場을 表明하였다. 이 議定書는 또한 6個의 政府間 協定과 20個以上の 國境委員會의 覺書가 包含되어 있는데, 이러한 協定과 覺書는 政府間 議定書로서의 公式効力을 갖고 있으며, 國境地帶의 食水供給問題, 國境河川의 保存 및 開發問題, 國境河川의 災害防止問題, 國境河川에서의 스포츠漕艇 및 낚시問題 등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國境委員會는 現存의 東西獨 基本條約의 法的基盤위에서 그 任務를 繼續

遂行하게 되어 있으며, 이 委員會의 將來의 主要活動도 지금까지 締結된 協定の 履行과 境界線 標識板의 管理維持에 있다.

国境委員會는 東獨側 境界線에 構築된 障壁을 弱화시킬 수 있는 位置에 는 있지 않지마는, 境界地域에 사는 住民들로 하여금 獨逸의 分斷結果에서 오는 苦痛을 좀더 忍耐할 수 있게 하는데는 効果적인 寄与를 하고 있다.

## 2. 西伯林과 西獨·東獨간의 通行

1970年以來 兩獨간의 通行分野는 刮目할만한 發展을 보아왔다. 西獨은 東獨과 두개의 重要的 條約을 締結하였다. 即

- 1971年 仏·英·美·蘇 4個國에 의해 締結된 4大國 베르린協定에 根拠하여 西獨과 「베르린」간의 通行을 爲해 締結된 1971年의 通行協定
- 兩獨간의 旅行分野에서 많은 改善을 가져왔던 1972年의 兩獨間 一般通行協定

上記의 通行協定들이 發効된 後 西베르린을 來往하는 自動車편과 철도편은 刮目할만큼 增大하였다. 西獨政府는 「베르린」의 孤立을 緩和하고 西「베르린」과 西獨을 密接히 연결시키기 爲하여 西獨과 西「베르린」을 잇는 道路建設에 관한 重要的 協定締結에 關하여 東獨政府와 協商했다. 이것은 既存의 旧道路外에 새로운 道路를 建設하는 問題와 鐵道運送의 加速化 및 水路의 再建에 關한 것이다. 이 協商의 結果로 「베르린」通行에 關한 몇개의 協定이 締結되어 1978年 11月 16日에 調印되었다. 이러한 事實은 그동안 兩獨關係를 改善하려 던 努力이 벽에 부딪치기도하고 심지어 後退까지 했던 點에 비추어 볼때 重要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兩獨政府는 이러한 一連의 協定에 커다란 政治的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다. 即

- 1982년까지 「베르린」과 「함부르크」사이에 高速道路를 建設한다. 西獨은 1978年부터 4年間에 걸쳐 道路建設에 必要的 費用中 最高 12億「마르크」를 東獨에 供與한다. 旧道路를 代替하게될 新道路에 對하여 通行協定上의 特權은 完全히 有効하다. 1980年以後 새로 建設된 道路와 國境을 形成하고 있는 「엘베」(Elbe)江 地域과의 連結에 關한 協商을 開催할 것을 約束한다.
- 東獨은 船舶運航의 円滑化를 爲하여 「베르린」으로 通하는 水路를

補修한다. 이를 爲하여 西獨은 費用中 1億2千萬「마르크」를 分擔한다.

— 「베르린」에 있는 「텔토우」(Teltow)運河는 通行協定에 規定된 條件과 같은 條件下에 修理하여 運航에 利用토록 再開한다.

이를 爲한 費用中 西獨은 7千萬「마르크」를 負擔한다.

— 西「베르린」과 西獨사이의 車輛通行의 차질없는 發展을 爲하여 西獨은 1980年에서 1989年까지 每年 5億2千5百萬「마르크」를 支払한다. 이것은 寄与金 및 税金 其他 經費조로 負擔하는 것이며,그 대신 「베르린」과 東獨을 경유하는 모든 通行者들은 個別的으로 經費를 負擔하지 않는다.

上記 새로운 協定들은 基本條約 發効以後 兩獨關係를 規定한 協定中에서 가장 방대한 것이다.

### 3. 兩獨間 旅行者 通行問題

兩獨사이의 1,346 km에 達하는 境界線에는

- 9 個의 道路横断点
- 8 個의 鐵路横断点
- 2 個의 水路가 있다.

9 個의 道路横断点中 4 個는 이미 1973 年以來 - 다시 말하여 兩獨 基本條約이 發効된 以來 - 存続되어 온 것이다.

「베르린」에는 - 10 個의 道路横断点과  
- 1 個의 鐵路横断点이 있다.

이중 5 個의 道路横断点은 1973 年以來 即 「베르린」에 관한 4 大國協定이 發効된 以來 使用되어 왔다.

1969 年 即 兩獨사이에 諸條約이 締結되기 以前에는 110 萬名이 西獨에서 東獨을 訪問하였다. 1978 年에는 무려 317 萬名이 東獨을 訪問했다. 이들중 大部分은 東獨에 사는 親戚과 親旧를 만나기를 願했다. 年間 12 萬 정도의 少数만이 東獨의 景觀 구경이나 博物館, 展示會, 演劇 등을 보기 爲한 觀光客으로서 東獨을 訪問하였다. 事業家들은 每年 봄이나 가을에 주로 「라이프찌히」에서 열리는 貿易博覽會에 가곤한다.

西獨의 國境地域에 사는 住民들에게는 東獨의 國境地域을 하루동안 訪問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 있다. 1978 年에는 이러한 "1日訪問"의 住民數가 年間 約 48 萬名에 達했으며, 그 傾向은 增加趨勢에 있다.

西獨에서 東獨地域을 通過하여 西「베르린」을 往來한 通行者數는 "4 大國協定" (Quadripartite Agreement)이 發効되었던 1972 年 6 月부터 1979 年 3 月까지 約 1 億人으로 推算되며, 1978 年 한해동안만해도 1 千 6 百萬名이나 된다. 이 期間동안 交通法規違反으로 東獨當局에 依해 체포된자는 158 名이다.

西「베르린」을 訪問하는 西獨의 住民들은 東「베르린」을 하루동안 訪問

할 수 있다. 東西「베르린」의 境界線은 3個의 橫断点을 經由하고 있다. 1972年以來 約140萬名이 每年 이 境界線을 通過하였다.

西「베르린」의 住民들 역시 東「베르린」을 訪問할 수도 있고, 東獨을 訪問할 수도 있다. 1978年에 東「베르린」과 東獨을 訪問한 西「베르린」 住民의 數는 326萬名이나 되었다. 말하자면, 1千7百萬名의 人口를 가진 東獨과 東「베르린」에 西獨 및 西「베르린」에서 온 訪問者數가 780萬名에 達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東獨의 住民들은 年金受領 年齡에 到達해야만 겨우 西獨과 西「베르린」에의 訪問이 可能하다. 그러나 1972年 通行條約 (Traffic Treaty)이 發効된 以後로는 東獨의 年金年齡以下의 젊은層도 西獨을 訪問할 수 있도록 許容은 되어 있으나, 不幸하게도 지금까지는 緊急한 家族事情의 경우에만 限定되어 있다.

緊急한 家族事情 (Urgent family matters)의 경우란 다음과 같다.

- 아기의 出生
- 結婚式, 銀婚式, 金婚式
- 親戚의 위독
- 獨逸聯邦共和國에 거주하는 親戚의 死亡

이러한 경우 東獨當局은 西獨에 거주하는 父母, 祖父母, 兄弟姊妹, 或은 子女들을 緊急家族事情으로 訪問하는 사람에 대해 訪問許可証을 發付할 수 있는 것이다.

1978年 東獨으로부터 들어온 年金該當者의 訪問數는 約138萬名, 緊急家族事情으로 因한 訪問者數는 約4萬8千名이었다.

#### 4. 家族再結合과 東獨으로부터의 移住

1970 年부터 1978 年末까지 約 8 萬 9 千名의 獨逸人들이 東獨으로부터 移住해서 西獨에 定着했다. ( 年金年齡者와 前科者 包含 ). 前科者까지 移住를 許容하고 있는 것은 西獨政府가 人道主義的 原則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5. 兩獨間의 交易

兩獨間의 交易은 1951年과 1960年에 締結된 "베르린協定" (Berlin Agreement)에 基礎하여 雙務交易의 特別한 方式을 取하고 있다. 몇가지 主要要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現金決濟는 禁止되어 있으나, 그대신 두 中央銀行에 依한 決濟方式을 取한다. 決濟는 兩國 通貨貨幣中 어느 하나를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貨의 通貨價值에 相應하는 소위 "決濟單位"에 依한다. 兩獨間의 交易價格은 西獨의 市場價格에 基礎한다.
- 關稅免除
- 몇해전부터 商業 및 財政信用을 爲한 機構가 設置·運營되어 왔으며, 決濟方式의 一部로서 無利子信用去來 즉, 소위 "스윙" (Swing) 去來方式이 適用되고 있다.
- 모든 商品引渡와 決濟는 公式的인 承認을 要하나, 大部分의 商品은 自動적으로 承認되고 있다.

兩獨間 交易의 經濟的 意義는 다음의 數値에서 그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 1978年의 絶對値는 88億 決濟單位이었는데, 이 數字는 1970年의 2倍, 1960年의 4倍이다.
- 兩獨間 交易의 全體量은 西獨의 對外貿易量의 1.8%이고, 東獨의 對外貿易量의 8~9%인데, 그 傾向은 減少趨勢에 있다.
- 지난 數年間 兩獨間 交易에서 東獨의 債務는 36億 決濟單位에 達했으나, 年間 總去來量 約9億 決濟單位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며, 36億 決濟單位는 8億 決濟單位의 「스윙」까지 包含하고 있다.

兩獨間交易의 政治的 意義는 特殊하고 成果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經濟的인 面에서 볼때는 東獨이 兩獨間交易을 더 많이 利用하고 있다는 點이다.



長期的인 面에서 보면, 兩獨間交易은 比較的 強力한 基盤위에 서 있으며, 이 때문에 過去에도 그랬지만, 어려운 政治的 問題를 解決해 내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安全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兩獨間交易을 直接壓力의 手段으로 利用하지 않을 때 그런 効果는 더 크게 나타난다.

## 6. 郵便 및 通信交流

1972년까지는 兩獨住民間의 通信交流은 주로 便紙와 小包의 交換에 그쳤다. 그런데 旅行과 個人間의 接觸이 增加함에 따라 이런 形態의 通信交流은 減少되고, 反面에 電話交換의 可能性이 크게 改善됨에 따라 東獨과 郵便協定을 締結할 수 있었다.

1970년까지는 겨우 34 手動電話回線이 있었을 뿐이나, 1978年末에는 941 回線으로 늘어났고, 그중 大部分이 自動回線으로 바뀌었다. 1978년까지의 305 地域間 電話網이 더 늘어나서 1978年 12月부터는 東獨의 324 地域間 電話網이 西獨과 直接 連結되게 되었다. 西「베르린」에서 東獨으로의 直接通話는 645 地域間 電話網에서 943 地域間 電話網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回線의 增設을 東獨이 約束하고있기 때문에 比較的 가까운 将来에 兩獨間에는 完全한 自動通話體制가 段階적으로 確立될 수 있으리라 期待하고 있다. 1978년에 西獨과 西「베르린」에서 東獨과 東「베르린」으로 걸린 通話數는 1千6百萬7千件이었다.

## 7. 物品 및 現金의 民間交流

物品의 民間交流은 주로 郵便에 의한 小包나 訪問者들에 의한 선물들이었다. 每年 2千5百萬~2千7百萬個의 小包가 東獨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免稅이다. 年間 約8百萬名의 西獨人이 東獨을 訪問한다는 事實과 견주어 볼때, 物品의 民間交流가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充分히 알수 있다. 그러나, 東獨側의 稅關檢閱은 그리 큰 問題가 아니다. 東獨으로 가는 書籍에 대한 東獨의 團束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兩獨間의 相異한 政治體制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現金을 個人에게 交換해 주는 일은 1974年까지는 없었으나, 그 以後부터는 東獨住民이 西獨通貨를 所有할 수 있게 되었다. 1979年 4月16日에 發効한 規定에 따르면, 西獨貨幣를 所有하고 있는 사람은 소위 "內獨間商店"에서 物件을 購入할때 使用하는 "購買券"으로 交換하게 되어 있다. 이 "購買券"은 순전히 個人間 通用을 위한 것은 아니고 "內獨間商店"에서 西方에서 生産된 物件을 사는데 使用한다. "內獨間商店"의 價格은 一般的으로 西獨內 價格의 水準이지마는, 免稅이기 때문에 實質적으로 그 이하의 값이다. 이들 物件中 어떤 것은 다른 特殊商店에서 西獨「마르크」로도 살수 있지만, 그 값은 "內獨關係商店"에서 사는 값의 4배나 된다. 이런 여러가지 可能性이 빛는 心理的 効果는 東獨住民들의 마음속에 大端히 重要한 影響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일들은 東獨住民들로 하여금 西獨의 正常的인 日常生活樣式이 어떤 것인가 接해볼 수 있는 機會로서 多少나마 代用役割을 해주기 때문이다. 東獨政府는 이런 制度로 말미암아 골치아픈 問題들이 派生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이런 制度는 東獨의 抑制政策에 의한 通常的 支配와는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다. 最近 東獨指導層이 發表한바에 의하면, "內獨間商店"에서의 販賣를 通해 年間 7億「마르크」가 東獨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또 1974年에 兩獨間에는 個人間送金에 관한 協定이 批准되었다. 年金

者나 生活扶助費受領者는 他方의 独逸側에 있는 口座로부터 月 200 「마르크」  
限度로 送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協定은 잘 施行되지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協定은 送金의 相互均衡原則에 基礎해야할 뿐만 아니라, 또  
東独住民들이 西獨에 있는 口座에서 送金을 받아 이것을 東獨通貨로 換金해  
서 받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協定의 補完에 關係  
最近 合意를 보았다. 東獨은 1982年까지 現存하는 어려운 問題들을 解  
消하기 위해 2億 「마르크」를 投入하기로 約束하였다.

## 8. 保健 및 環境保護

1974 年에 兩獨政府는 保健協定을 체결하였는데, 이協定은 1976 年에 發効되었다. 이協定중 가장 중요한 것은 觀光으로나 事業目的으로 한 쪽 獨逸에서 다른 쪽 獨逸로 訪問하는 모든 사람에게 無償醫療 施惠를 提供하게 되어 있는 規程이다. 이것은 兩獨間의 訪問者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規程이 되었다. 醫療治療에는 應急治療나 病院治療, 藥品의 供與, 眼鏡이나 補聽器의 支援 등은 勿論이고 必要한 경우에는 「앰브란스」에 의한 자기 집으로의 後送까지 包含하고 있다. 이協定은 訪問者가 위독 상태에 있거나 死亡하였을 경우 그 通報에 관해서도 規程하고 있다. 勿論 親戚들에게의 即時 通報도 規程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特別外科治療와 같은 特殊治療, 예컨대, 새로운 治療方法이 開發되었을 경우 - 의 可能性에 관한 規程이다. 이 規程을 利用하는 사람의 數는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더우기 旅行者가 病患으로 藥을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그 藥의 携帶도 許容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兩獨政府가 傳染病에 대한 相互 情報交換을 하고 麻藥의 去來 및 使用에 대해 共同團束을 하는 일이다. 1 年에 2~4 回 兩獨政府의 實務委員團이 「본」이나 東「베르린」에서 會晤하여 保健協定の 發展問題를 協議한다.

東西獨基本條約에 의하면, 兩獨政府는 環境保護에 관한 規程을 協商하도록 되어 있다. 그 첫協商은 1973 年 「본」에서 開催되었다. 그러나 東獨은 지금까지 이 協商의 再開를 拒否하고 있다. 兩獨 境界線地域의 環境保護問題에 관해서는 앞에서 言及한 國境委員會에서 가장 豫見可能한 경우의 災害防止를 위한 規程에 合意한 바 있다. 大氣汚染과 騒音 防止는 兩獨間에 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兩獨 境界線을 흐르고 있는 河川의 相当部分이 境界地域로 멀리서 부터 아주 많이 汚染된 狀態에 있다. 獨逸에는 東獨에서 西獨으로 흐르는 江이 大部分이고 西獨에서 東獨으로 흐

르는 江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河川汚染에 대해서는 西獨이 東獨보다 훨씬 많이 관심을 쏟고 있다. 特히 江 하나 때문에 큰 紛糾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江은 「베라」라는 江으로서 東獨의 鉸山들이 境界線 인접地域의 酸性鹽生産에서 나오는 廢水를 이 江에 흘러 보내고 있다. 이 廢水는 이 江의 動植物뿐만 아니라 200 km 이상이나되는 「워저」江의 生態界까지도 망쳐 놓고 있다. 이 廢水로 말미암아 西獨은 年間 數百萬「마크크」의 損害를 보고 있다. 西獨의 聯邦政府와 各州의 政府는 東獨과의 協商을 통해 그 解決策을 마련해야 할 必要性에 直面해 있다.

西獨政府는 이에 관련된 會談을 개최할 용의를 갖고 있으며, 東獨에 대해 早速히 개최할 것을 촉구해 왔다. 東獨도 이런 會談에 應할 용의가 있다는 시사가 있다.

## 9. 法律的 行政的 協調問題

兩獨이 각기 제 나름의 立法을 함으로써 法律體系가 점차 벌어지기는 했으나, 法律分野의 背景이 共通되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간의 類似性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法律에서 상호 도움을 주는 問題를 解決한다는것은 理論上 無理는 아닌것이다.

兩獨間에 條約協商을 하던 初期부터 西獨聯邦政府는 西獨市民들의 不利益을 덜기 위해서 協定을 맺어 立法에서 緣由하는 衝突을 除去하도록 서로 努力할것을 提議하였다. 그러나 市民權問題에 얽힌 뿌리깊은 異見이 -相互關係에 있어 高度로 敏感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고 또 現在로서는 解決하기 어렵지않나하고 보여지는-理論上 可能的 結果에 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있어 아직도 이分野에서는 아무런 合意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1972年의 基本條約에서 合意한대로 自己領域內에 限定된 相互主權 尊重의 原則은 個人에 대한 法律的 狀況을 解決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요한 進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東獨이 1971年末 以前에 東獨을 脫出한 全避難民에 대해 國籍剝奪 措置를 取한 點이다. 이것이 많은 難關을 除去하였다.

實際的인 問題는 大部分 家族法, 財産法 그리고 行政救濟같은 分野에 關涉되어 있다. 協調方法은 다음과 같다.

-東獨의 法律的狀況과 實際에 관한 客觀的인 情報를 준다. 西獨政府는 法的賠償請求를 하는것이 必要하고 또 適切하다고 看做할때는 이를 積極支援한다.

-入籍節次나 親權補佐制와 같은 事項에 대해서는 雙方의 下位當局間의 現存하는 通達制度나 相互協調制度를 維持, 強化한다. 基本條約에도 이에 該當하는 關係條項이 있는데, 즉 生計維持, 親權補佐問題, 個人身元, 社會保險問題등에 대한 兩獨의 責任있는 當局間의 行政的連絡은 東獨이 變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히려 維持하고 可能하면 促進하게 되어 있다.

一西獨의 東獨內 常駐代表部를 통해 介入關與한다.

이分野의 協商은 매우 까다롭다. 東獨은 或時나 피난민 전원에 대한 私  
有財産返還請求라도 提起치 않을까 전전 궁금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 聯  
邦政府는 꾸준히 이 分野에서 어떤 利害의 共通點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 10. 文化 및 科學的 關係

西独政府는 비록 두個의 独逸国家가 併存한다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独逸文化, 더 엄밀히는 單一의 文化的基礎와 傳統을 지니고 있다는 信念에서 出發한다. 外國에 進出해 있는 兩獨의 文化行事を 比較해 보면 이 點은 淸사리 把握된다.

東西獨間의 文化的關係에 關해서 西獨은 基本條約에서 科學·技術·文化·教育등 諸分野에서 協定을 締結할 用意을 闡明하였다. 그러나, 1973年 부터 시작한 文化協力에 關한 協商은 不幸히도 現在까지 아무런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西獨國民들은 東獨의 音樂演奏會나 美術展示會의 參觀이 대수롭지 않지만, 西方 藝術家들의 東獨訪問 交涉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 니다.

科學과 技術分野에서 東獨은, 過去에 있었던 産業發達, 그리고 몇 10년동 안 증사해 온 이 分野의 技術者, 勞働者들의 經驗과 知識 덕분으로, 生産 技術水準에 있어 소련은 말할것없고 COMECON ( 共產圈 相互經濟協議會 ) 會 員國중 어느나라에 比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認定되고 있다. 이것이 東獨 의 刮目할 經濟的 進歩의 바탕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進歩는, 모든 이데 올로기의 差異나 其他 깊게 差異를 가져오는 問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西獨의 發展에 아주 흡사함으로 해서 서로 協力할 수 있는 共通利害의 分野가 存在한다고 認定하는 것이 오히려 當然하다. 그리고 兩獨 모두 議 會에 科學者들이 서로 進出하고 있다는 理由로해서 오히려 正常的이라 하 겠다. 적어도 相互技術協力은 西獨보다 東獨側에 훨씬 많은 惠沢이 주어 졌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見解는 眞 眼目에서 볼 때 매우 淸確한 것이고 또 誇張된 것이다. 달리말해 西獨의 技術發展 速度와 그 量만 대충 보더라도 西獨이 東獨에 비해 圧倒的인 位置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見地에서 1973 年부터 科学 및 技術相互 協力條約에 관한 協商이 進行되고 있다. 이 協商은 대체로 当面問題를 處理하는데서는 相當히 進展된 段階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는 問題가 있다. 이것은 市民權에 대한 問題같은 것으로 兩獨間關係에 아주 微妙하게 作用하는 問題이다. 즉 西「베르린」을 이 條約에 包含시킬 것인가, 시킨다면 어떻게 包含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西獨과 西「베르린」間에 맺어졌거나 맺어질 여러 協定에 대해 屬地的 適用을 擴大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 11. 報道記者의 活動條件

엇갈리는 問題들을 놓고 서로가 다 根拠로 삼을 수 있는 規定들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앞서도 말한바 있거니와, 西獨에서 東獨쪽으로 派遣한 記者 또는 特派員들의 活動條件을 改善하는 問題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이 問題에 대한 協商은 始發부터 異常스레 難航을 하게 되어 最終적으로 落着된 것이 1972년 11월 8일 基本條約의 테두리 안에서 交換된 書翰形式으로 合意된 規定이다. 그 후에 提起된 特殊 問題들은 이 協定の 施行을 위해 처음으로 모인 專門家會談에서 解決을 보았다.

이 協定에 의하면 記者와 特派員들의 活動은 駐在國의 法的 秩序內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分明히 自由로운 取材와 報道를 保障하고 있다. 西獨에서는 一般市民들에게 適用하는 規定을 除外하고는 言論人들의 活動을 制限하는 아무런 特別規定이 없지만, 東獨에서는 記者活動이 特別히 制定된 “獨逸民主共和國內의 外國定期刊行物과 特派員의 活動에 관한 布告”의 規制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布告는 1973년 2월 21일과 1979년 4월 11일에 각각 公布된 施行令布告에 의해 補完되었다. 1973年의 布告에서는 모든 言論人들에 대해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國家機關 및 指導者 그리고 東獨의 同盟國에 이르기까지 그 名譽를 毀損하거나 威信을 墜落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 이 布告에 依하면 記者들이 위의 事項을 위반할 때는 어느 경우에든 東獨內에서 活動할 수 있는 公式許可를 取消당할 수도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이것은 國家와 社會秩序에 대한 兩國間의 根本的인 見解差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東獨에서의 取材記者의 活動條件을 改善하려고 西獨政府가 꾸준히 努力했음에도 不拘하고 東獨內에서의 制限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西獨에서 活動하고 있는 東獨記者가 西獨政府로부터 西獨의 法律

違反을 했다고 言論法律 같은 것에 따라 指摘된 일이 없지만, 東獨에서 登錄하고 활동하는 西獨記者는 過去 公式警告를 받은 적도 있고 登錄을 取消당한 적도 있으며, 또 東獨에서 強制追放을 당한 적도 있었다.

이와같은 東獨當局의 處事는 記者의 活動條件 改善을 明示하고 있는 「헬싱키 會談의 最終決議書에 분명히 違反되기 때문에, 西獨政府의 立場은 유럽 安保協力會, 議에 參加한 大部分의 國家와 世界輿論의 支持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獨政府는 오히려 1979년 4월 11일 布告를 公布함으로써 이런 制限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外國에서 온 記者는 公式樣式에 따라 取材申請書를 提出하고 東獨內에서 取材目的으로 移動旅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取材活動에 대해 許可를 받도록 措置하였다. 勿論 西獨政府는 이러한 東獨政府의 過度한 規制措置가 一般輿論에도 尙當치 않을뿐 더러 相互利益增進을 圖謀하고 있는 여러 協定에도 어긋나는 點을 分明히 밝히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 事實 東獨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런 規制措置를 강화케 했는지 断定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東獨政府는 西獨記者들이 1979년 4월 16일부터 發効한 西獨通貨의 物品購買券으로의 交換에 관한 東獨規定을 酷評해서 報道하고 또 論評하였기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東獨自身의 事情에도 있지만 兩獨關係에서도 특별히 複雜하게 얽히는 問題들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如何間에 西獨政府는 東獨政府의 內部規定이나 그들의 措置에 대해서는 다만 間接的인 關心 밖에 갖지 않지만, 東獨이 取한 一聯의 措置가 그것이 어떤 動機에서건 東獨政府스스로 調印한 諸協定을 實際 侵害하는 것인 때는 直接 介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때 記者活動에 관계된 問題들은 이런 憂慮되는 境遇의 素地를 남겨놓고 있다.

그렇지만, 現在 東獨通信인 ADN과 東獨 라디오, 텔레비전社, 그리고 日刊紙인 「노이에스 · 도이칠란트」(黨機關紙)와 「트리뷴」(勞組기관지)의 特派員등 6명의 東獨記者가 西獨에서 報道活動을 하고 있는데

反해서, 17 명의 西独編輯 報道陣 ( 통신 , 신문 , 잡지 , 라디오 , 그리고 TV )이 東独에서 記者登錄을 하고 報道活動을 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